議政白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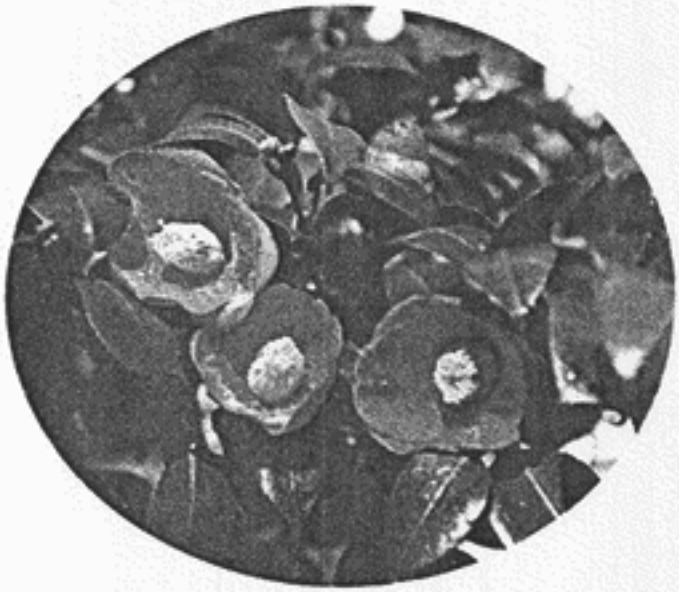
第1輯

(1991. 4. 15～1995.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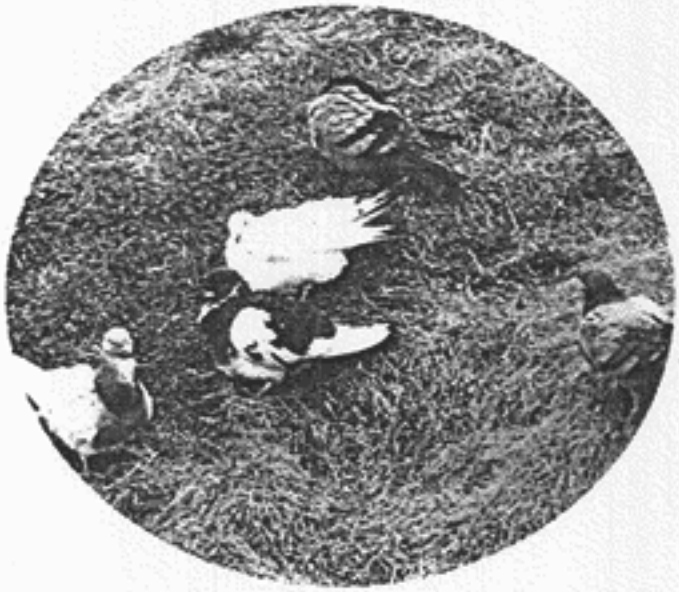


高敞郡議會

高敞郡의 상징



郡　　花 : 동백꽃
Gun Flower : Camellia



郡　　鳥 : 비둘기
Gun Bird : Pigeon



郡　　木 : 은행나무
Gun Tree : Gingko

군화 : 동백꽃 – 우리 고장 특유의 충, 효, 열로 인내와 새 인재 배출을 표상
군조 : 비둘기 – 군민 애향심과 온순성으로 군민 평화와 화합을 상징
군목 : 은행나무 – 강한 의지와 청백, 순박으로 깨끗한 환경속의 군민임을 기상

高敞郡 議會旗



발 간 사

군민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이돈우/고창군의회 의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자유 평등과 정의라는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이념을 구현하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출범했던 고창군초대의회 임기를 마치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헌신했던 제1대 의회의 4년여 의정은 값진 결실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 균형과 조화속에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따가운 격려와 성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만 짧은 경륜과 의욕에 앞서, 모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자치 실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역문화 터전위에 의와 예의 고장의 명성을 되살리고, 확고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위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진실해야 되고 전승해야 됩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의정백서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고창군 초대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진솔하게 수록하여 지나온 발자취를 의정사로 보존함과 동시에 후대 의정운영에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고창군의회 발전에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10만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큰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간 사

주민화합 통해 지역사회 발전



이호종/고창군수

우리군 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道場으로서 91년 4월 15일 개원된지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그 첫 임기를 마무리하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행정에 반영키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기초를 확고히 다지는데 공헌하였으며, 이러한 우리군의회의 활동이 뿌리를 내려 주민의식이 성숙되고 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의회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척자정신으로 군민복지를 위한 각종 자치법규 등을 제정·정비하고 주민의 세금이 알차고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승인 등 집행부에 대한 예리한 감시기능을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상호협력과 이해로서 공동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우리 고창의 보다 나은 발전과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간의 의회활동 기록이 책으로 출간되어 의회사의 찬란한 장을 장식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으며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초석이 되어 고창군 의회사에 길이 남게 되길 바랍니다.

축 간 사

지방자치 전통 쌓아가는 계기



정균환/국회의원

제1대 고창군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91년 3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의 출범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가치규범을 일상생활 구조 속에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집권체제의 통제적·획일적 지시와 명령에 의한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지역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의 위치를 찾게 되었고, 행정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의 개막입니다. 지방화시대는 지방경영의 자주성, 지역발전의 균형성, 활동 기회의 공평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권화된 고창의 정치행정을 고창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고창주민들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라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성과가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확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훌륭한 전통과 관례를 쌓아 복지 고창을 건설하는데 지방의회가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도 군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봉장 역할과 지방자치법을 만든 주역으로써 다시한번 제1대 고창군의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며, 의정백서가 고창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고창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대 고창군의회

의정활동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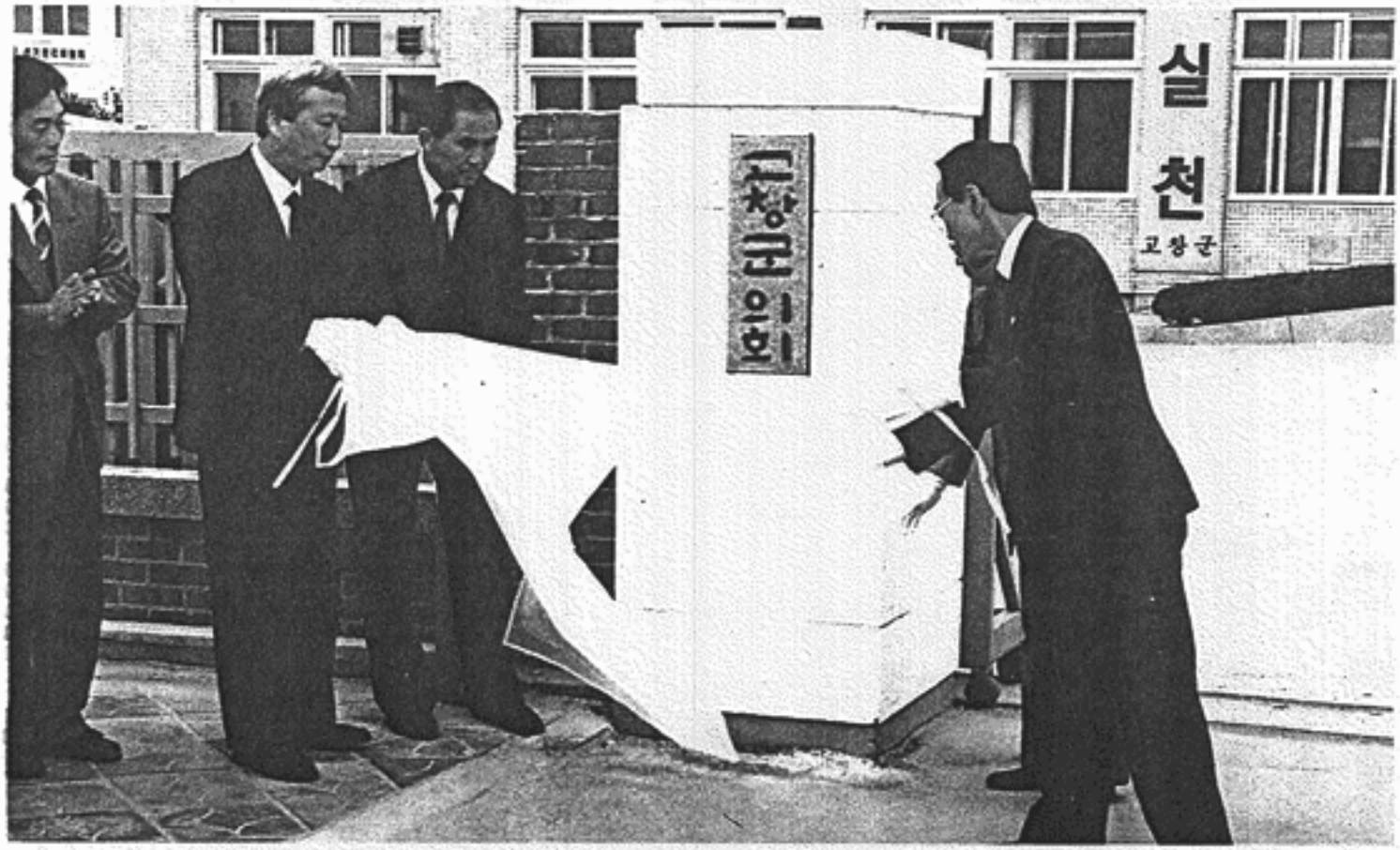
1991. 4. 15 ▶ 1995. 6. 30



제1대 고창군의회 개원기념 〈91. 4. 15〉



제1대 고창군의회 개원식 〈91. 4. 15〉



고창군의회 현판식 〈91. 4. 15〉



▲고창군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보고
〈91. 4. 16〉



◀교육청 업무보고
〈91. 4. 16〉



◀제6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91. 10. 20〉

제7회 임시회에서▶
읍면정 업무보고 청취
〈91. 1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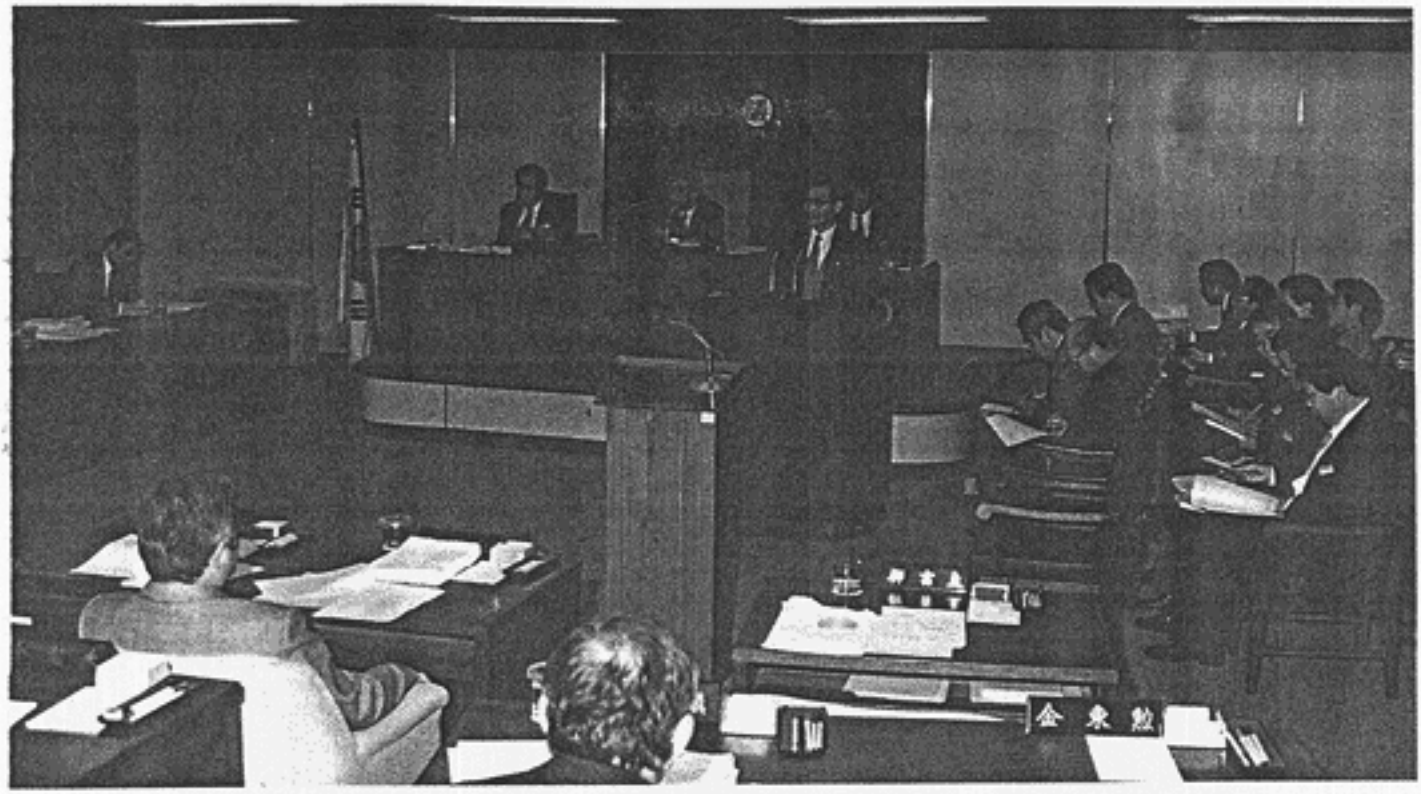


제8회 정기회 개회식▶
〈91. 12. 2〉



'제8회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1.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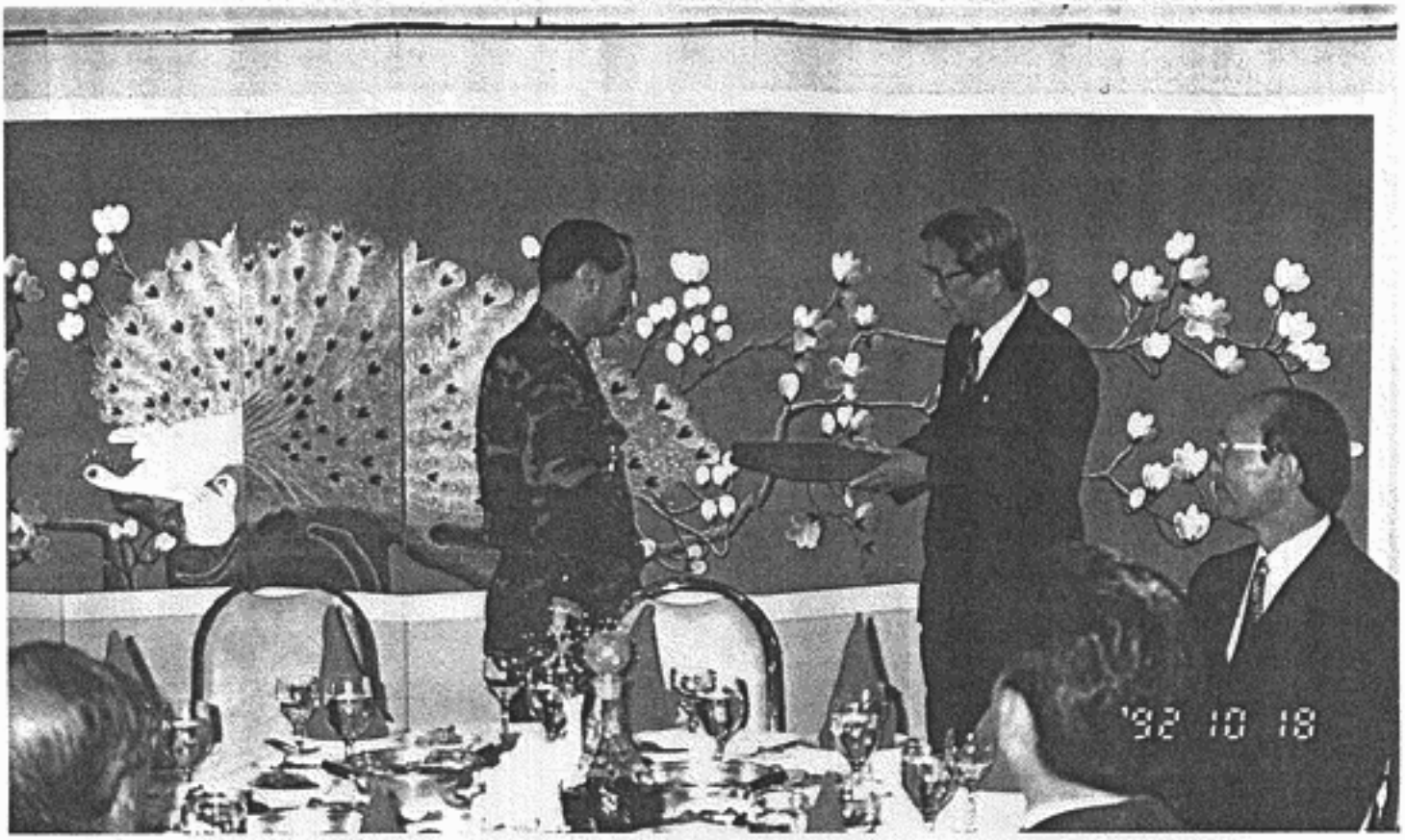
▲본회의장에서 심도있게 의안을 다루는 의원들



◀의사일정 조정 및 의안의 사전 조율 했던 의원간담회

현안사업해결에▶ 진력하는 의원들





▲조희태 35사단장 송별 기념패 전달 〈92. 10. 18〉



▲제20회 모양성제에 고창군의원들이 제관 참석 〈93. 10. 22〉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수박 축제 〈94. 7. 23〉



고창군 어업지도선 진수식 〈94. 8. 25〉



▲고창군 청사 준공식 〈93. 10. 23〉



▲효자 효부상 시상 〈93. 5. 14〉



무주에서 열린 의원세미나 참석 〈92. 10. 28〉



·제주도에서 열린 의원세미나 참석기념 〈94. 4. 29〉



▲읍면순회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과의 대화





◀고창읍성 외곽정비 인력지원
35사단 장병위문 〈92. 3〉



◀무장 애육원 위문
〈94. 2. 5〉

현장답사



무장토성 진무루 복원▶
사업장 방문



문수산 임도개설사업장▶
방문 〈94. 4. 11〉

▼상하 구시포 연륙도 사업장
방문 〈93. 10. 8〉





▲성송 낙양 축산단지 방문 〈94. 1〉



◀도립공원 선운산 4차선 진입로 확·포장 사업장 방문
〈95.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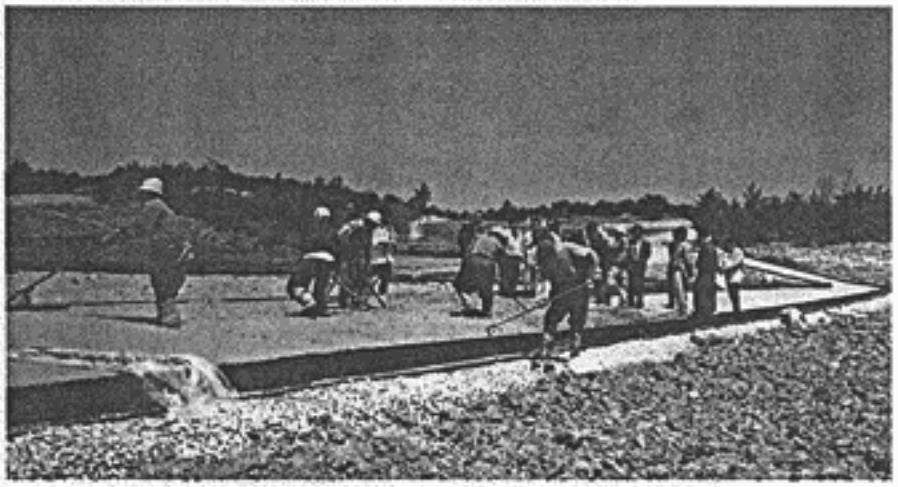


◀고수문수사 명부전 복원 사업장 방문
〈95.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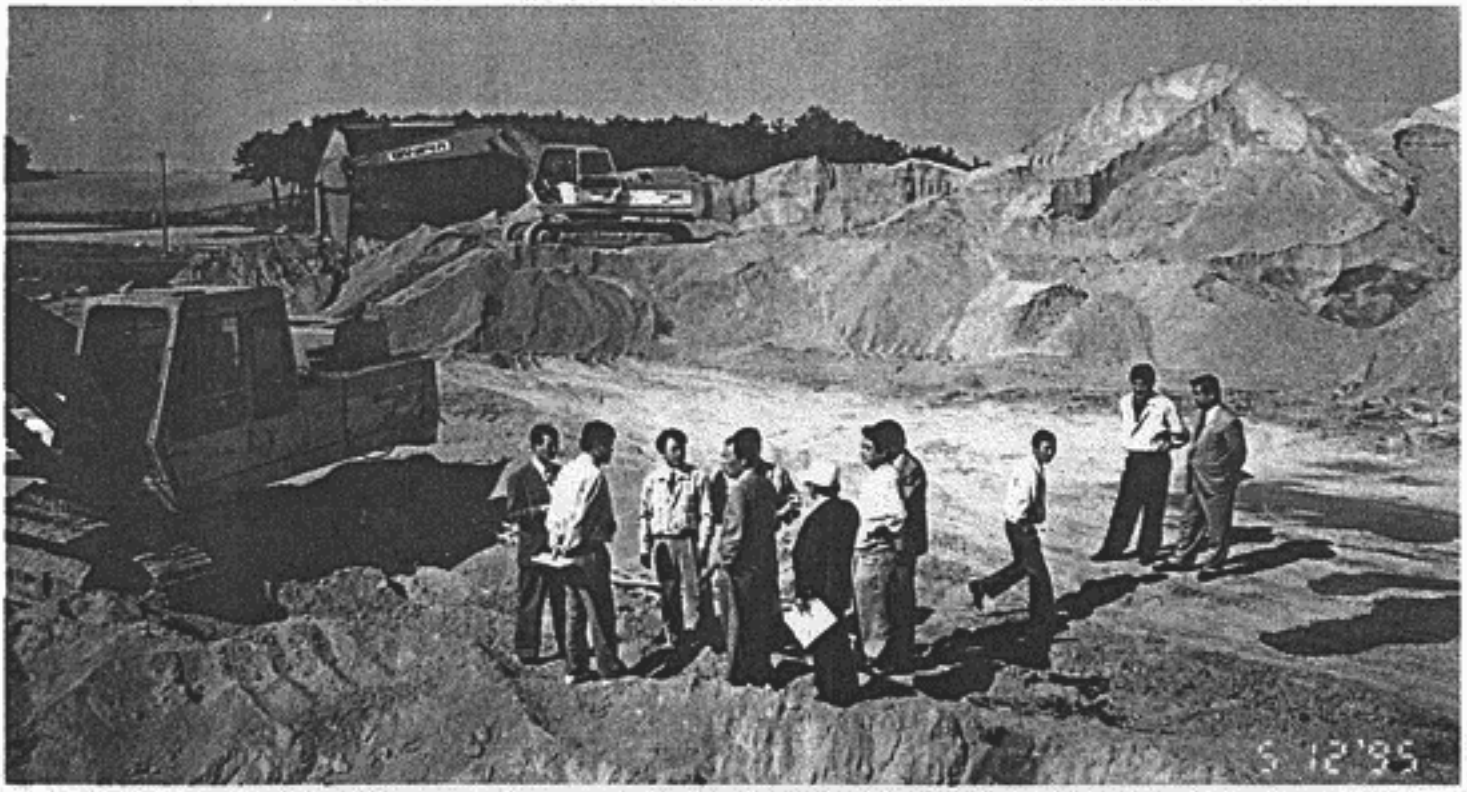
해리 동호해수욕장▶
숙박시설 사업장 방문
〈94. 4. 13〉



무장진입로 개설▶
현장 방문



▼대산 중산 고령토 및
골재 채취장 방문
〈95.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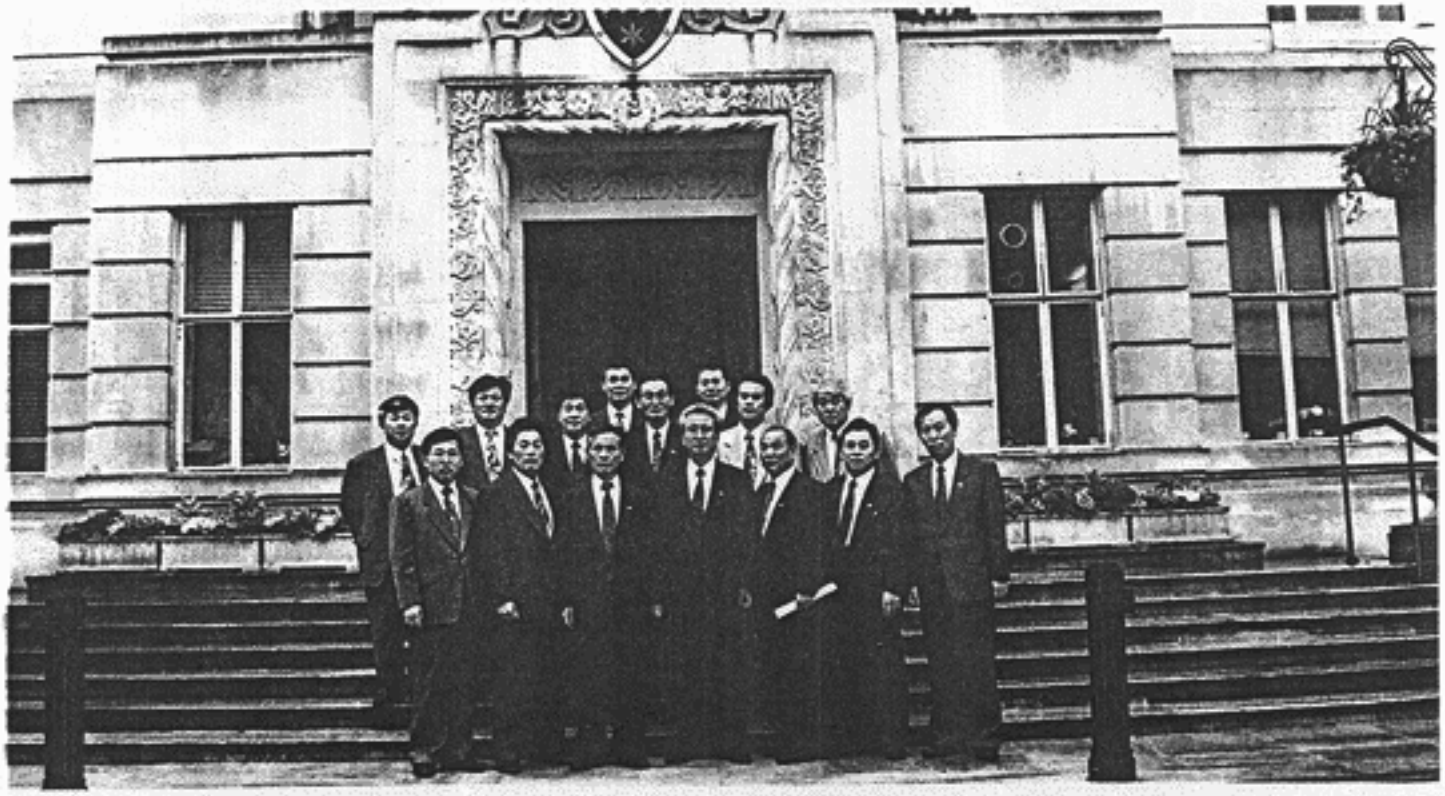


◀한해지구 방문
〈94. 7. 21〉



◀한해지구 주민 격려
〈94. 7. 21〉

▼영국 런던시의회 방문
〈94. 5. 13〉





▲런던시 의사당 안내를 받고있는
고창군의회 의원들 〈94. 5. 13〉



덴마크 선진 축산농가 방문▶
〈94. 5. 18〉



내부시설을 둘러보는 의원들▶
〈94. 5. 18〉

전반기 의장단

〈 '91. 4. 15 ~ '93. 4. 14 〉



의 장 : 반 기 진



부의장 : 김 동 훈



운영위원장 : 고 병 윤



내무위원장 : 김 양 진



산업건설위원장 : 전 종 열

후반기 의장단

〈 '93. 4. 15 ~ '95. 6. 30 〉



의 장 : 김 동 훈



부의장 : 류 길 규



운영위원장 : 김 기 채



내무위원장 : 최 석 기



산업건설위원장 : 이 돈 우

고창군의회 의원 프로필



성 명	金 東 勳	선거구	고 창 읍
생년월일	1937. 11. 2	직 업	기 타
주 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68번지		
학 력	고창고등학교 졸업		
경 력	• 민주당 고창군 부위원장 • 전반기 부의장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 • 후반기 의장		
재임기간	'91. 4. 15 ~ '95. 3. 29		



성 명	陳 南 杓	선거구	고 창 읍
생년월일	1947. 2. 19	직 업	기 타
주 소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95-2번지		
학 력	전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 력	• 지역개발연구회장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李 鐘 云	선거구	고 수 면
생년월일	1946. 5. 10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636번지		
학 력	조대부고 졸업		
경 력	• 민주당 고수면책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崔 亨 植	선거구	아 산 면
생년월일	1952. 11. 8	직 업	사 업
주 소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335번지		
학 력	정읍농고 졸업		
경 력	• 전북 농우회 이사 •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고창군 부회장 •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전북도 운영위원 • 1급 고창자동차공업사 대표		
재임기간	'91. 4. 15 ~ '93. 7. 15		



성 명	成 鎬 益	선거구	아 산 면
생년월일	1955. 4. 3	직 업	관광업
주 소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272번지		
학 력	전북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 력	• 고창군 체육회 이사 • 고창경찰서 선진질서위원장 • 재향군인회 전북대의원		
재임기간	'93. 11. 19 ~ '95. 6. 30		



성 명	李 敦 禹	선거구	무 장 면
생년월일	1934. 1. 7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198번지		
학 력	무장국민학교 졸업		
경 력	• 무장향교전교 • 고창군 삼향지편찬 부위원장 • 정읍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崔 錫 基	선거구	공 음 면
생년월일	1947. 3. 10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558번지		
학 력	법성상업고등학교 졸업		
경 력	• 민주당 공음면협의회장 • 고창경찰서 선도위원 • 고창군 체육회 이사 • 공음중·고 육성회장 • 후반기 내무위원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金 亮 鎭	선거구	상 하 면
생년월일	1948. 11. 4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433번지		
학 력	고창고등학교 졸업		
경 력	• 민주당 군 조직부장 • 상하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전반기 내무위원장		
재임기간	'91. 4. 15 ~ '94. 5. 7		



성 명	吳 均 鎬	선거구	해 리 면
생년월일	1945. 12. 16	직 업	축산업
주 소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571번지		
학 력	건국대학원 수료		
경 력	• 민자당 해리면협의회장 • 고창군 양돈협회 회장 • 고창군 축협 이사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潘 琪 鎭	선거구	성 송 면
생년월일	1935. 1. 20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79번지		
학 력	조대부고 졸업		
경 력	· 전반기 의장 · 고창군 재향군인회장 · 고창군 농촌지도자회 회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金 起 采	선거구	대 산 면
생년월일	1949. 2. 17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979번지		
학 력	고창고등학교 중퇴		
경 력	· 민주당 선거대책위원 · 고창경찰서 행정자문위원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후반기 운영위원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全 鍾 烈	선거구	심 원 면
생년월일	1946. 9. 26	직 업	수산업
주 소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629번지		
학 력	서울예고 졸업		
경 력	· 정읍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 · 고창군 산림조합 감사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愼 世 宰	선거구	홍덕면
생년월일	1943. 6. 13	직 업	사 업
주 소	고창군 홍덕면 사천리 53번지		
학 력	동국대학교 졸업		
경 력	• 예비역 중위 • 신갈농고 교사 • 홍덕 예비군 중대장 • 대통령 선거인단 당선		
재임기간	'91. 4. 15 ~ '93. 1. 26		



성 명	金 白 洙	선거구	홍덕면
생년월일	1940. 3. 30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홍덕면 오호리 151번지		
학 력	동국대학교 졸업		
경 력	• 홍덕단협장 • 홍덕중학교 육성회장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재임기간	'93. 3. 26 ~ '95. 6. 30		



성 명	高 炳 允	선거구	성내면
생년월일	1940. 5. 12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543번지		
학 력	이리공고 졸업		
경 력	• 성내단협 근무 • 성내농민회장 • 전반기 운영위원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柳 吉 圭	선거구	신 림 면
생년월일	1929. 12. 8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139번지		
학 력	전북대 대학원 졸업		
경 력	• 신림단협장 • 한림공영 대표이사 • 고창군 행정자문위원 • 전반기 부의장		
재임기간	'91. 4. 15 ~ '95. 6. 30		



성 명	全 在 準	선거구	부 안 면
생년월일	1932. 8. 5	직 업	사 업
주 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46번지		
학 력	곰소 수산고 중퇴		
경 력	• 중흥정미소 대표 • 부안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 온광석재 대표		
재임기간	'91. 4. 15 ~ '92. 2. 29		



성 명	金 俊 衡	선거구	부 안 면
생년월일	1948. 10. 4	직 업	농 업
주 소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28번지		
학 력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경 력	• 군정자문위원 • 고창군 체육회 이사 • 부안국교 장학회장		
재임기간	'92. 8. 26 ~ '95. 6. 30		

高敞郡民憲章

우리 고창은 의와 예의 고장이다. 슬기를 모아 전통을 빛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실천요강을 밝혀 복지고창 건설의 지표로 삼는다.

본 문

1. 우리는 선인의 얼을 이어 정의에 서서 불의 부정을 물리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한다.

1. 우리는 내 고장 전통국악을 중심으로 향토예술을 개발하여 예향의 명성을 내외에 선양한다.

1. 우리는 풍부한 농림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촉진하여 부를 쌓아 국리민복에 기여한다.

1. 우리는 창의와 근면과 협동으로 생업을 개척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앞서가는 국민이 된다.

1. 우리는 인륜도덕을 숭상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도의사회를 구현한다.

議 政 白 書

第 1 輯

(1991. 4. 15～1995. 6. 30)

高 敞 郡 議 會

목 차

제 1 장 일반현황

제 1 절 고창군 일반현황 ····· 43

1. 고창군 연혁 ····· 43
2. 지역여건 ····· 45
3. 지역특성 ····· 45
4. 고창군 위치 ····· 46
5. 행정구역 ····· 47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 48
7. 재정규모 ····· 49
8. 역대 고창군수 ····· 50

제 2 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 51

1. 의회 기구 ····· 51
2. 의회 현황 ····· 52
3. 사무과 현황 ····· 53

제 3 절 고창군 선거 현황 ····· 54

1. 전국 선거 ····· 54

가. 국회의원 선거 ····· 54

1) 제헌의원 선거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나. 참의원 선거 ····· 90

2. 도의원 선거 ····· 93

가. 제1대 도의원 선거 ····· 93
나. 제2대 도의원 선거 ····· 95
다. 제3대 도의원 선거 ····· 97
라. 제4대 도의원 선거 ····· 98

3. 군의원 선거 ····· 99

가. 군의원 후보자 현황 ····· 100

4. 읍·면의원 선거 ····· 104

가. 제1대 읍·면의원 선거 ····· 104
나. 제2대 읍·면의원 선거 ····· 111
다. 제3대 읍·면의원 선거 ····· 118

5. 교육위원 선거 ····· 120

6. 기타 선거 ····· 121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121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 126

7.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 130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 130
나. 지구당 등록상황 ····· 132
다. 연락소 등록상황 ····· 135

제 2 장　의원선거 및 개원준비

제 1 절　의원 선거 ····· 139

1. 의원 선거 현황 ····· 139

2. 의원 당선자 현황 ····· 145

제 2 절　개원준비 ····· 146

1. 의회 사무기구 신설 ····· 146
2. 지방자치 관련 조례·규칙 정비 ····· 146
3. 원구성 ····· 147

가. 집회 공고 ····· 147
나. 의장단 선거 ····· 147

제 3 장　초대 고창군의회 운영

제 1 절　집회와 회기 ····· 151

1. 집회 일람 ····· 151

제 2 절　본회의 주요의안처리상황 ····· 153

1. 주요의안처리상황 ····· 153

제 3 절　의안 제출 및 처리 ····· 178

1. 종류별 의안처리 상황 ····· 178
2. 예산안과 결산안 ····· 179

가. 회기별 처리 현황 ····· 179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현황 ····· 180
다. 예산·결산안 처리 현황 ····· 182

3. 조례안 ····· 183

가. 회기별 처리 현황 ····· 183
나. 유형별 조례안 처리 현황 ····· 184
다. 조례안 처리 현황 ····· 184

4. 승인안 ····· 195

가. 회기별 처리 현황 ····· 195
나. 승인안 처리 현황 ····· 196

5. 건의 및 결의안 ····· 199

가. 회기별 처리 현황 ····· 199
나. 건의(결의)안 처리 현황 ····· 200

6.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 201

7. 건의문 채택 ····· 208

가. 쌀 수입 개방 관련 대정부 건의문 ····· 208
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문 ····· 211
다. 고창경찰서 이전 건의문 ····· 213
라. 합동법무사 사무실 분산 건의문 ····· 215
마.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건의문 ····· 216
바. 영광 원전 냉각수 1·2호기 가동과 3·4호기 건설로 인한 피해용역조사 및 보상촉구 건의문 ····· 218
사. 목적세 전환반대 건의문 ····· 219
아. 고창읍 고속버스 운행 건의문 ····· 220
자. 농업부분 세제지원 및 감면확대 건의문 ····· 221
차. 지적업무 일원화 방안 건의문 ····· 223
카. 고창군 패류어가의 재해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 224
타. 월곡택지 재평가 결의문 ····· 225

제 4 절 군정질문과 답변 226

1. 군정질문과 답변내용 226

제 5 절 민원 처리 361

1. 민원 처리 현황 361

제 4 장 기타 의정활동사항

제 1 절 유럽 선진의회 시찰보고 377

1. 연수개요 378
2. 선진의회 농업의 시찰 및 연수 379
3. 국가별 일반연수 394

제 2 절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404

1. 의정활동 총결산 404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2. 지역여건
3. 지역특성
4. 고창군 위치
5. 행정구역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7. 재정규모
8. 역대 고창군수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2. 의회 현황
3. 사무과 현황

제3절 고창군 선거 현황

1. 전국 선거
2. 도의원 선거
3. 군의원 선거
4. 읍·면의원 선거
5. 교육위원 선거
6. 기타 선거
7.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제 1 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땅으로 모로비리국 (牟盧卑離國 : 1793년에 간행된 高敞邑誌에는 牟伊部曲이라고 기록)에 속했으며 삼국(三國)시대에는 백제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 : 지금의 고창 고수 아산), 송미지현(松彌知縣 : 지금의 성송 대산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로현(上老縣 : 상하 해리 심원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칠현(上漆縣 : 지금의 흥덕 신림 성내 부안 일부)의 4개현에 속하던 지역으로 757년(경덕왕 16년)에 모량부리현을 고창현(高敞縣), 송미지현을 무송현(茂松縣), 상노현을 장사현(長沙縣), 상칠현을 상질현(尙質縣)으로 개칭하였으며 보릿 고을을 상징하는 모양부리의 속명(俗名) 모양(牟陽)이 고창과 함께 불리어 왔다.

행정의 체제는 고창 무송 장사의 3개현은 무령군(武靈郡 : 지금의 靈光郡)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상칠현은 고부군(古阜郡)의 속현으로 떨어져 있었다.

(註) :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 唐에 의해 688년(新羅 文武王 8년)에 설치된 安東都護府 시절에 高敞縣은 無尽縣, 上老縣은 佐魯縣으로 불렀었다(참고문헌 : 三國史記).

고창현은 고려시대 초기에는 고부군에 속했거나 갈려서 상질현의 감무(監務)가 상칠과 겸하여 다스리게 되었고, 장사현은 영광군에 속하였고, 무송현도 초기에는 영광군에 속하였고, 후에 장사 감무가 무송을 겸해서 다스렸다.

상질현은 고부군에 속했다가 그 명칭을 장덕(章德) 또는 창덕(昌德)으로 고쳐 감무를 두었고 고창을 겸임하였다.

1308년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자 왕명(王名)을 피해 장덕을 다시 흥덕(興德)으로 고쳤다.

조선(朝鮮)시대에 들어서는 고창현은 1401년(太宗 1년)에 감무를 두게 되어 흥덕의 겸임에서 풀려났으며 1455년 (世祖 1년) 지방 방위 조직의 개편에 따라 나주진관(羅州鎭管)의 속읍(屬邑)이 되어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고 속오군(束伍軍)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후기에는 방리(坊里)가 8個面 (川北, 川南, 古沙, 水谷, 五東, 五西, 大雅, 山內)에 1982가구(1759년도)가 되었다.

1895년(高宗 32년) 5월 26일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勅令 98號)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06년 (光武 10년)에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

무송과 장사현은 1417년(太宗 17년)에 두 고을을 합병하여 무장현(茂長縣)으로 고치고 진

(鎭)을 두어 병마사(兵馬使)가 고을일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1423년 (世宗 5년)에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었다가 1482년(成宗 14년)에 현감으로 고쳤고 1455년에 나주진관의 속읍이 되었다.

후기에는 방리가 16면(面 : 一東, 二東, 白石, 托谷, 瓦孔, 冬音峙, 大梯, 大寺, 蔣子山, 星洞, 元松, 靑海, 五里洞, 心元, 上龍伏, 下龍伏), 6817가구(1759년도)가 되었다.

1836년(憲宗 2년)에 승격하여 군(郡)이 되었고 1895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에 의해 전주부(全州府)에 소속되었다가 1896년 다시 전라남도에 편입되어 2등군으로서 군세가 막강하였으며 1906년에 전라북도에 편입하였다.

흥덕현은 1392년(太祖 1년)에 겸임하던 고창과 갈라서게 되었고 1455년에 전주진관의 속읍이 되었으나 속오군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다.

후기에는 방리가 8면(縣內, 北, 一東, 二東, 一南, 二南, 一西, 二西), 2762호(戶 : 1759년도)가 되었다.

1895년에 군으로 승격하였고 1906년에 고부군(古阜郡)의 부외(富外) 부내(富內) 두면을 병합하여 부안면(富安面)으로 개칭하였다.

일제(日帝)시대에는 1914년 3월 1일 부군(府郡) 폐합령에 따라 무장군과 흥덕군을 병합하였고 비능률적인 행정단위를 통·폐합하여 천북·천남면과 오동·산내, 고사면의 일부를 합하여 고창면(高敞面)으로, 고사·수곡면을 합하여 고수면(古水面)으로, 오동·오서면을 합하여 오산면(五山面)으로, 대아·산내면을 합하여 아산면(雅山面)으로, 일동·이동면을 합하여 무장면(茂長面)으로, 와공·동음치면을 합하여 공음면(孔音面)으로, 대사·장자산면과 대제면의 일부를 합하여 대산면(大山面)으로, 성동·원송면과 대제면 일부를 합쳐 성송면(星松面)으로, 청해·오리동면을 합하여 해리면(海里面)으로, 심원은 심원면(心元面) 그대로, 상용복·하용복을 합하여 상하면(上下面)으로, 그리고 흥덕고을은 현내·북면을 합하여 흥덕면(興德面)으로, 일동·이동면을 합하여 성내면(星內面)으로, 일남·이남면을 합하여 신림면(新林面)으로, 일서·이서면을 합하여 벽사면(碧沙面)으로, 그리고 부안면을 합하여 17개면으로 줄었다.

1935년 3월 1일 면 폐합 및 구역 변경의 개편에 따라 오산면이 고창과 고수면으로 폐면 흡수되고 석곡면이 아산면과 무장면으로, 벽사면이 신림 부안 흥덕면으로 편입되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4개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건국후에는 1955년 7월 1일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13개면이 되고 1968년 4월 23일 180개 이동(里洞)으로 개정되었다가 1971년에 다시 489개 분리동을 나눠었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림면 제하리(堤下里)가 흥덕면에 편입 되었으며, 1987~1988 兩年에 성송면 상금리가 대산면으로, 신림면 송암리가 흥덕면으로, 성내면 일부가 정읍군 입암, 소성면으로 각각 편입되었고, 해리·상하·무장면 등 3개면의 분리가 조정되는 등 1993년 현재 고창군의 행정

조직은 1읍 13면 189개의 법정리, 533개의 행정리에 868개의 자연부락과 1,282개의 반조직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61년 10월 1일 당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읍면의 지방자치는 폐지되었고 1991년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역여건

본 군 동남은 노령산맥이 중첩하여 관내 방등산(742.8m), 방장산(640m), 문수산(620.5m), 고산(527.8m)등의 높은 산세를 보이며 해발 500m이상의 준봉이 연하였고, 고찰로 유명한 조계종 24교구의 본산인 선운사가 있으며, 그 외 고수면의 문수사, 부안면의 소요사,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크고 작은 암자들이 산재해 있다.

선운사 옆을 흐르는 주진천의 본류는 모든 산맥에서 발원하여 본 군의 중앙을 관류하여 서해에 유입하는 관계로 지세는 자연히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가 낮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하천 유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지로서 천연부여의 양질의 땅이며 해안은 전북 부안군계에서 본 군 5개면(흥덕, 부안, 심원, 해리, 상하)과 접하고 있으며, 그 연장이 73.7km로서 5개소의 포구(후포, 사포, 상포, 동호, 구시포)마을이 있고 굴곡이 많으며 해상은 무진장한 해산물이 있어 수산 발전이 크게 기대되며 해안일대는 남한 유일의 군소 염전들이 산재하고 있어 국내 소금생산의 절반량에 가까운 몫을 하는 천일염의 산지이기도 하고 그 염도가 높아 질 또한 우수하다 함.

본 군 지형상의 표고는 40m이며 그 중 평야가 전체면적의 40.7%인 245,867,447㎡이며, 임야가 46.2%인 279,213,598㎡이고, 기타가 13.1%인 78,912,441.5㎡로서 총 603,993,486.5㎡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이다.

3. 지역특성

미곡위주의 전통적 농촌으로 연간 56만석 이상을 생산하고 또한 전국 최대의 야산이 개발되어 과수원예와 특수작물(수박, 무, 땅콩 등) 재배지로 발전하고 있고 이후도 UR대체작물개발 잠재력이 큰 고장임.

- ㅇ 관광자원으로는 국민관광휴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내의 선운사찰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재의 보존군임. 여름 한철의 휴식처로서의 구시포 및 동호해수욕장이 서해의 휴양 명승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지역개발면으로 서해연안의 간척, 양식어업의 적지이며, 대단위 야산개발로 당도높은 수박, 양질의 땅콩, 무우 등의 생산이 전국제일의 주산단지임을 자부하는 고장임.
- 조선조 단종원년(1453년)에 축성된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원형이 보존된 전국유일의 자연석 성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관광객의 계속 증가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탐방 교육장과 안보교육의 장이기도 함.
- 한편, 인물의 고장으로서 金性洙(전 부통령), 白寬洙(독립운동가), 申在孝(판소리 창시자), 陳錤鍾(전 국무총리), 金相浹(전 국무총리), 金素姬(국악인 : 인간문화재)등의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함.

4. 고창군 위치

본 군은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위도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극동(極東) : 신림면 가평리 동경 126° 46′
- 극서(極西) : 상하면 자룡리 동경 126° 25′
- 극남(極南) : 대산면 지석리 북위 35° 18′
- 극북(極北) : 부안면 봉암리 죽도 북위 35° 34′에 달하며 그 연장이 동서 31.0㎞이고 남북이 31.5㎞인데다 군 전체면적은 603.993㎢ (도 전체면적의 7.4%)이며, 동북은 본 군과 인접된 정읍시 소성면과 입암면 부안군 줄포면이 위치하였고 동남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삼계면, 영광군, 대마면, 법성면, 홍농읍과 인접하고 있다.

서북부 일대는 73.7㎞에 달하는 서해안에 연장을 이루고 있다.

본 군에서는 주요지역간의 거리를 보면 전주가 고속도로편으로 69㎞인데 정읍시(28㎞)를 거쳐서 가야 되며, 광주 48㎞거리에 장성(24㎞)을 경유하고 영광읍이 30㎞, 법성면이 30㎞ 간격을 두고 있다.

본 군 관내 구시포해수욕장이 39㎞, 동호해수욕장이 29㎞의 거리를 두고 있다.

부안군이 4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국립공원 및 정읍시의 내장산 국립공원과 본 군의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읍성, 석정온천, 구시포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등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위치에 있다.

5. 행정구역

구분 / 연도및읍면별	면 적 (㎢)	구성비 (%)	읍	면	리 동		반	자연부락
					행 정	법 정		
1988	603.046	100	1	13	518	189	1,274	794
1989	603.069	100	1	13	533	189	1,282	824
1990	603.060	100	1	13	533	189	1,282	824
1991	603.087	100	1	13	533	189	1,282	824
1992	603.053	100	1	13	533	189	1,282	868
1993	603.993	100	1	13	533	189	1,282	868
고 창 읍	42.601	7.1	1	—	64	18	163	81
고 수 면	46.058	7.6	—	1	34	14	78	59
아 산 면	74.278	12.3	—	1	33	16	85	64
무 장 면	43.768	7.3	—	1	39	16	95	77
공 음 면	49.572	8.2	—	1	45	12	88	79
상 하 면	33.015	5.4	—	1	36	9	90	57
해 리 면	39.231	6.5	—	1	46	12	102	73
성 송 면	36.279	6.0	—	1	34	11	66	42
대 산 면	43.917	7.3	—	1	43	15	113	69
심 원 면	38.970	6.5	—	1	26	10	71	43
흥 덕 면	33.172	5.5	—	1	40	16	94	64
성 내 면	30.938	5.1	—	1	30	13	81	55
신 림 면	39.356	6.5	—	1	26	13	70	50
부 안 면	52.838	8.7	—	1	37	14	86	55

※ 자료 : 내무과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구분 / 연도별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세대당인구
1988	26,588	116,216	57,401	58,815	4.4
1989	26,302	112,004	55,149	56,855	4.3
1990	26,144	95,698	47,312	48,386	3.7
1991	25,348	90,299	43,538	46,761	3.6
1992	26,305	95,858	47,384	48,474	3.6
1993	26,391	91,855	45,523	46,332	3.5
고창읍	5,517	19,998	9,882	10,116	3.6
고수면	1,297	4,622	2,276	2,346	3.6
아산면	1,652	5,800	2,935	2,865	3.5
무장면	1,849	6,612	3,302	3,310	3.6
공음면	1,692	5,936	2,961	2,975	3.5
상하면	1,458	4,921	2,406	2,515	3.4
해리면	1,923	6,620	3,222	3,398	3.4
성송면	1,220	4,142	2,051	2,091	3.4
대산면	2,270	7,753	3,887	3,866	3.4
심원면	1,390	5,081	2,505	2,576	3.7
흥덕면	1,863	6,265	3,088	3,177	3.4
성내면	1,275	4,241	2,138	2,103	3.3
신림면	1,341	4,509	2,226	2,283	3.4
부안면	1,644	5,355	2,644	2,711	3.3

※ 자료 : 기획실

7. 재정규모

1994년도 고창군의 예산규모는 총 106,071,42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6,743,004천원으로 9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9,328,418천원으로 9%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 지방세 5,016,601천원, 세입수입 11,625,810천원, 지방교부세 30,045,215천원, 지방양여금 5,798,458천원, 보조금 52,555,338천원, 지방채 1,03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11,372,464천원, 물건비 11,005,234천원, 경상이전 8,553,888천원, 자본지출 70,510,403천원, 융자 및 출자금 1,365,386천원, 보전재원 1,079,184천원, 내부부거래 1,164,000천원, 예비비 및 기타 1,020,863천원으로 자본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교적 건전한 재정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 세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06,071,422	96,743,004	9,328,418
세입	지방세		5,016,601	5,016,601	
	세외수입		11,625,810	7,983,669	3,642,141
		경상적세외수입	2,306,329	1,524,934	781,395
		임시적세외수입	9,319,481	6,458,735	2,860,746
	지방교부세		30,045,215	30,045,215	
	지방양여금		5,798,458	5,798,458	
	보조금		52,555,338	47,899,061	4,656,277
		국고보조금	36,033,896	32,696,055	3,337,841
		도비보조금	16,521,442	15,203,006	1,318,436
	조정교부금				
	지방채		1,030,000		1,030,000
세출	인건비		11,372,464	11,372,464	
	물건비		11,005,234	7,483,271	3,521,963
	경상이전		8,553,888	8,112,488	441,400
	자본지출		70,510,403	67,638,461	2,871,942
	융자·출자금		1,365,386		1,365,386
	보전재원		1,079,184	116,659	962,525
	내부거래		1,164,000	1,164,000	
	예비비및기타		1,020,863	855,661	165,202

※ 자료 : 재무과

8. 역대 고창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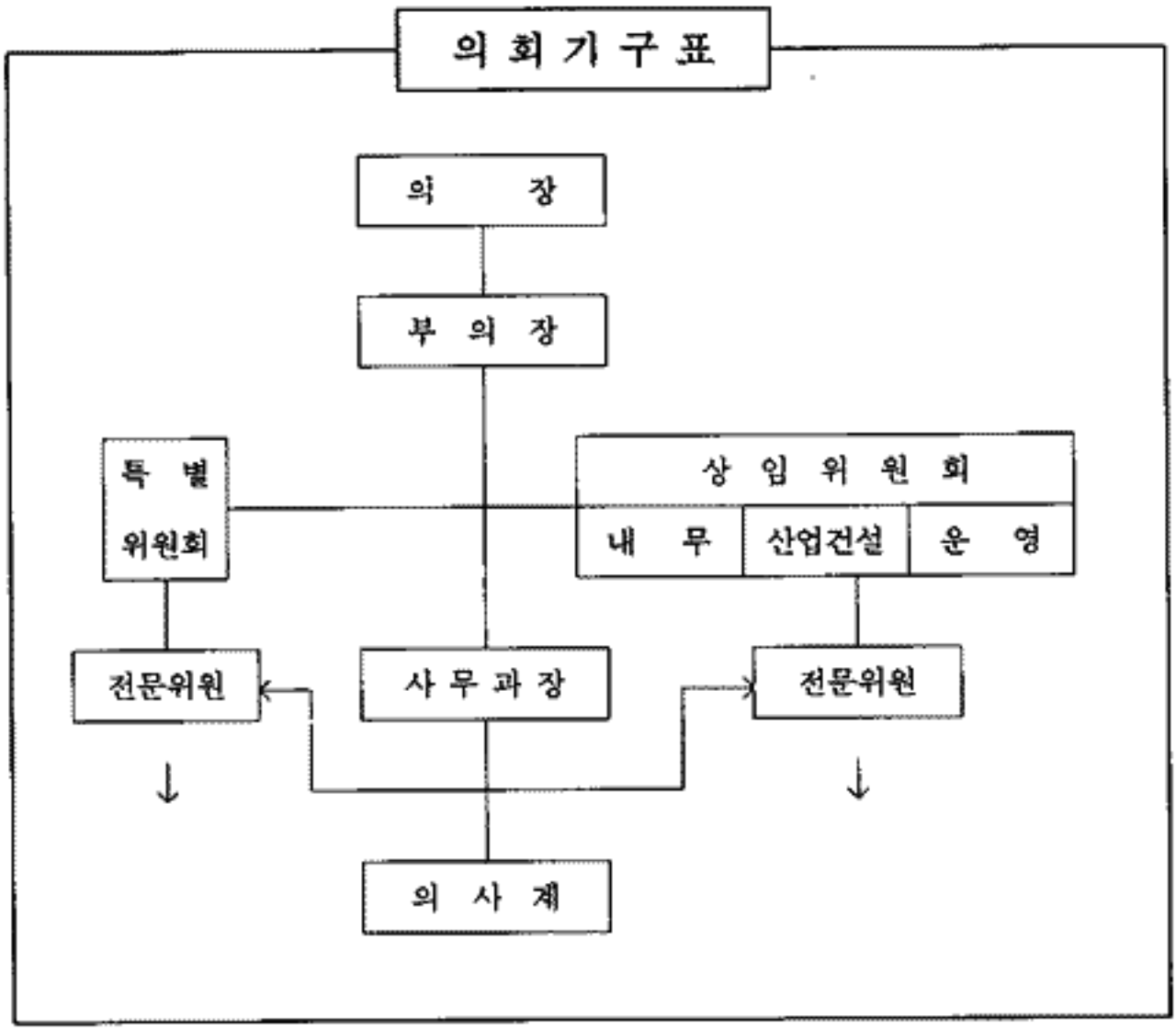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嚴柱完	45. 3 ~ 47. 4 (25개월)	21	崔琦彩	67. 1 ~ 70. 3 (38개월)
2	許洪錫	47. 4 ~ 48. 3 (11개월)	22	李吉衍	70. 3 ~ 71. 8 (17개월)
3	安晋吉	48. 3 ~ 48.12 (9개월)	23	李錫在	71. 8 ~ 73. 6 (22개월)
4	오보균	48.12 ~ 50. 2 (14개월)	24	權承周	73. 6 ~ 74.12 (18개월)
5	柳燦朝	50. 2 ~ 50. 5 (3개월)	25	金準洙	74.12 ~ 75. 6 (6개월)
6	엄병선	50. 5 ~ 50.12 (7개월)	26	曺相勳	75. 6 ~ 77. 2 (20개월)
7	白南祺	50.12 ~ 52. 4 (16개월)	27	金年喆	77. 2 ~ 79. 5 (27개월)
8	高在烈	52. 4 ~ 53.12 (20개월)	28	柳完淳	79. 5 ~ 80. 7 (14개월)
9	金倫相	53.12 ~ 56.12 (36개월)	29	宋載久	80. 8 ~ 81. 7 (11개월)
10	金仁德	56.12 ~ 59. 1 (25개월)	30	柳秀澤	81. 7 ~ 82.11 (16개월)
11	金永信	59. 1 ~ 59. 8 (7개월)	31	柳萬永	82.11 ~ 83. 4 (5개월)
12	임재항	59. 8 ~ 60. 1 (5개월)	32	高光淳	83. 4 ~ 85. 3 (23개월)
13	金寬默	60. 1 ~ 60. 5 (4개월)	33	李允甲	85. 3 ~ 88. 2 (35개월)
14	梁昌鉉	60. 5 ~ 60.10 (5개월)	34	朱尤哲	88. 2 ~ 88.12 (10개월)
15	柳南起	60.11 ~ 61. 6 (7개월)	35	金完柱	89. 1 ~ 91. 1 (24개월)
16	柳龍圭	61. 7 ~ 61.12 (5개월)	36	朴丙植	91. 1 ~ 91.12 (11개월)
17	李廷相	61.12 ~ 62.11 (11개월)	37	崔忠一	91.12 ~ 92. 7 (7개월)
18	申祥雨	62.11 ~ 65. 3 (28개월)	38	張鉉燉	92. 7 ~ 94. 1 (18개월)
19	柳凡秀	65. 3 ~ 66.12 (21개월)	39	梁圭章	94. 1 ~ 94.12 (12개월)
20	崔完相	67. 1 ~ 67.11 (10개월)	40	원종태	95. 1 ~ 95. 6 (6개월)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의결기관인 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내무, 산업·건설,운영)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 운영을 보좌한다.

고창군 의회기구는 다음과 같다.



2. 의회 현황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면에서 각 1명씩이다.

초대 전반기 의장은 성송면 선거구의 반기진의원이며, 부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1. 4. 15~1993. 4. 14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의원이고 부의장은 신림면 선거구의 류길규의원으로 임기는 1993. 4. 15~1995. 6. 30일까지이다. 김동훈의장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1995년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부의장 류길규의원이 1995. 3. 30~6. 30일까지 의장직무대리를 하였다.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金東勳	37. 11. 2	고창읍 읍내리 268-5	고 졸	
부의장	柳吉圭	29. 12. 8	신림면 무림리 139	대학원졸	
의 원	陳南杓	47. 2. 10	고창읍 삼우연립 204호	대학원수료	
〃	李鍾云	46. 5. 10	고수면 상평리 636	고 졸	
〃	崔亨植	52. 11. 8	아산면 중월리 335	〃	93. 7. 15 퇴직
〃	成鎬益	55. 4. 3	아산면 목동리 272	대학원수료	93. 11. 19 의원당선
〃	李敦禹	34. 1. 17	무장면 강남리 198	국 졸	
〃	崔錫基	47. 3. 10	공음면 칠암리 558	고 졸	
〃	金亮鎭	48. 11. 4	상하면 검산리 433	고 졸	94. 5. 7 사망
〃	吳均鎬	45. 12. 16	해리면 하련리 208	대학원수료	
〃	潘琪鎭	35. 1. 20	성송면 향산리 79	고 졸	
〃	金起采	43. 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고 퇴	
〃	全鍾烈	46. 9. 26	심원면 월산리 629	고 졸	
〃	愼世宰	43. 6. 13	흥덕면 사천리 53	대 졸	93. 1. 26 퇴직
〃	金白洙	40. 3. 30	흥덕면 오호리 151	대 졸	93. 3. 26 의원당선
〃	高炳允	40. 5. 12	성내면 옥제리 543	고 졸	
〃	全在準	32. 8. 5	부안면 중흥리 146	고 퇴	92. 2. 29 퇴직
〃	金俊衡	48. 10. 4	부안면 중흥리 128	대 졸	92. 8. 26 의원당선

3. 사무과 현황

고창군의회의 사무과는 전문위원과 1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명으로 사무과장 1명 전문위원 3명과 의사계장 1명, 정규직원 8명, 청원경찰 1명, 사무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사무과 직원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 창 진	
〃	전문위원	황 태 성	
〃	〃	안 재 식	
〃	〃	오 동 근	
〃	의사계장	유 병 열	
〃	직원	최 창 규	
〃	〃	조 병 균	
〃	〃	김 광 웅	
〃	〃	조 재 길	
〃	〃	권 오 택	
〃	〃	오 운 탁	
〃	〃	염 숙 희	
〃	〃	전 미 옥	
〃	〃	이 천 수	
〃	〃	홍 선 희	
〃	〃	김 현 숙	

제3절 고창군 선거 현황

1. 전국 선거

가. 국회의원 선거

1) 제헌의원 선거

1948년 2월 UN소총회에서는 "가능지역내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UN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한국위원단은 바로 가능지역인 남한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미군정당국이 선거준비와 집행을 맡았다.

군정당국은 먼저 1947년 9월에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선거법(立法議員選擧法)'을 골자로 해서 잠정적인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을 제정하였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반민족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에 구별없이 국민으로 만 21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② 피선거권은 '각 선거구마다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선거구의 확정은 부(府), 군(郡)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에서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에서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에서 45만 미만의 부(府)는 4개구로 하되 동법(同法) 부표(附表) 제1호에 의하여 총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하되 법정선거구획정주의(法定選擧區劃定主義)를 따랐다.

③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면 누구에게나 부여하였다.

④ 비밀투표를 보장하였으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총 20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치안관계로 인하여 북제주 갑구와 을구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좌익계와 남북협상파(南北協商派)가 불참하고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선거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무려 49개의 정당들이 참여함으로써 난립하게 되었다. 선거인의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무표결과를 보면 총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한 대한독촉국민회(大韓獨促國民會)가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선거 전에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한민당(韓民黨)은 당중진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91명의 후보 중에서 29명만이 당선되어 총의석의 14.5%에 머물고 말았다. 그 외에 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등의 군소정당(群少政黨)이 3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었고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하여 총의석의 42.5%를 얻었다. 이는 원내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였다.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거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었다. 갑구에는 고창을 비롯하여 고수면, 성송면, 무장면, 대산면, 공음면, 상하면이 그리고 을구에는 아산면,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이 포함되었다.

갑구에는 무소속의 金永東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27.3%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을구에서는 한민당(韓民黨)소속의 白寬洙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7.5%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김영동은 조선전업사원의 경력을 가진 노동자 출신으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급진적인 노선을 추종한 세력들이 지하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가 출생한 무장면은 그 당시에 고창군 인민위원장이 그곳에서 나올만큼 진보성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을구에서 당선된 白寬洙는 일본 명치(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장을 역임한 당시의 인물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해방이 되자 그는 1946년에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여 민주입법의원의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백관수는 초대 법사위원장과 헌법기초의원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건국 초기의 각종 법률 제정에 참여하여 건국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그는 그의 자택에서 공산군에 의해 납북당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62세였다.

제헌의회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林芳郁	남	43	고창읍 읍내리	농 업	대졸·농업	한국민주당	6,963	
李逢春	〃	59	〃	〃	대졸·농업	대한독촉농민총맹	2,091	
吳敎均	〃	66	〃	〃	한수10년·군수2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88	
金基采	〃	41	〃	회사원	대졸·산업사4년	무소속	6,499	
金永東	〃	42	무장면 무장리	실 업	중졸·조선전업사원	〃	8,317	당선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白寬洙	남	60	성내면 덕산리	입법의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한국민주당	19,787	당선
朴洪根	〃	47	흥덕면 흥덕리	농업	보전졸·면장5년	무소속	4,448	
愼鎭義	〃	44	〃	〃	대중회·국민회장	대한독립조선국민회	5,062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나면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위해 국회는 1950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제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선거법이 시한적(時限的)이었던 것으로 미군정(美軍政)과 함께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새 선거법은 미군정(美軍政)하에서 제정되었던 제헌의회의원 선거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단지 달라진 사항이라면 선거구를 200개에서 210개로 늘린 것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항을 일부 변경시킨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선거권 중에서 달라진 내용을 보면 이 때에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거의 만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해제하였으며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원(審計員), 감찰원, 경찰관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외에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의 원칙,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 그리고 행정구역 및 인구에 의한 선거구 법정획정주의(法定劃定主義)등 선거제도상의 중요사항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제2대 총선거는 남북협상파를 포함하여 제헌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선거결과 대통령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 들었고 무소속(無所屬)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함으로써 이승만정권의 지지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도록 만들었다.

1952년 1월 정부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大統領直選制改憲案)을 내놓았으나 국회는 이를 찬성 19표, 반대 14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부결시켰다.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이승만은 직접 경찰력을 동원하고 원외자유당(院外自由黨)을 앞세워 개헌안부결반대(否決反對)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운동(召還運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야당은 오히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를 한 사람 넘는 123명의 연서(連署)로 의원내각제안(議員內閣制案)을 제출하여 그에 맞섬으로써 두 세력간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시 한번 직선제개헌안을 제출하여 야당의 의원내각제에 맞서는 한편, 직선제개헌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와 계엄령(戒嚴令)이었다.

서둘러서 시행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의 사람들이 당선됨으로써 국회에 대항할 기반을 구축하고, 공비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선포한 계엄령은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킬 의도였다. 계엄령 하에서 의원내각제개헌을 주장한 의원들을 검거하는 등 일대 혼란을 일으킨 후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연금한 상태에서 모든 법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기립표결(起立表決)로서 대통령직선제(大統領直選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釜山政治波動)이다.

고창군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金永東	남	43	무장면 무장리	국회의원	중졸 1대국회의원	국민당	2,373	
金秀學	〃	54	고창읍 읍내리	회사 중역	경도제대졸 상공부차관	무소속	10,999	당선
鄭泰煥	〃	49	성송면 하고리	농업	한문수학 고창중학이사	〃	7,532	
嚴柱昇	〃	56	고창읍 읍내리	무직	중졸·공무원	〃	895	
金永守	〃	30	고수면 와촌리	상업	명치대학상학졸 회사원	〃	사퇴	
姜無	〃	53	대산면 지석리	실업	일본동양대학졸· 면장 민주이민개척단장	〃	3,125	
吳穀均	〃	67	고창읍 읍내리	농업	한문수학·군수	국민당	1,146	
金基采	〃	42	고창읍 읍내리	회사 사원	대졸·회사원	무소속	4,860	
林暢郁	〃	38	고창읍 읍내리	농업	대졸·인쇄업	〃	3,941	
鄭淳默	〃	40	성송면 계당리	광업	국졸·면서기	〃	사퇴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및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朴洪根	남	48	흥덕면 사천리	농 업	국 졸 · 면 장	무소속	5,678	
徐廷天	〃	43	심원면 월산리	수리조합 도지부장	수원농고졸 도농지개량과장	〃	1,326	
元成容	〃	44	흥덕면 신송리	회사원	대 졸 · 토건업	〃	2,500	
金奉洙	〃	56	고창읍 읍내리	인쇄업	중 졸 · 인쇄업	국민당	1,022	
白寬洙	〃	61	성내면 덕산리	국 회 의 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민국당	6,098	
愼鏞頊	〃	48	흥덕면 사천리	항 공 사 업	동경항공전문대졸 대한항공사장	무소속	6,360	당선
李龍雨	〃	59	해리면 성문	농 업	한 문 수 학	〃	1,150	
朴柱璜	〃	29	흥덕면 흥덕리	〃	대 졸 · 교 원	〃	2,700	
洪淳熙	〃	37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대 졸 · 공 무 원	〃	4,821	
姜錫東	〃	41	해리면 금평리	농 업	전문대졸·농장농감	〃	2,750	
金宇成	〃	25	부안면 수남리	〃	고대예과3년재학 전국고학생연맹장	〃	879	

갑·을구 다같이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갑구의 경우 10명이, 을구의 경우는 11명이 각기 경합을 벌여 국회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헌국회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 당시의 열망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더라도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학벌의 경우 한문수학에서 대졸자까지 다양하였고 직업에 있어서도 농업을 위시로 해서 고급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심대함을 알 수 있다.

선거결과 갑구에서는 일본에서 경도대학을 졸업하고 상공부차관을 지낸 무소속의 金秀學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37%를 얻음으로써 당선되었다.

한편 을구의 경우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곳의 선거전은 제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전국적 인물인 국민당의 백관수 후보와 재력이 튼튼한 무소속의 愼鏞頊후보로 좁혀졌으며 이들간의 선거전은 치열해졌다. 당시 이승만의 후광을 업은 신용욱은 튼튼한 재력을 바탕으로 백관수 후보진영을 공략하여 262표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국가적 인물인 백관수의 탈락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고창 사람들은 세간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한다.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에 의해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과 같은 국내외의 혼란된 정세로 인하여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1954년에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도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민의원 의원선거만이 개성시를 포함한 휴전선 이북지역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헌법상으로는 양원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1950년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유당(自由黨)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이 각각 공천자를 내어 우리의 선거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는 소위 정당정치(政黨政治)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전체투표의 36.8%를 얻은 자유당(自由黨)이 114석을 차지한 반면 전체투표의 47.9%를 얻은 무소속이 67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선거구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후보자의 득표 차이에는 관계없이 최다득표자를 뽑음으로써 소수지지에 의한 다수당(多數黨)이 출현하기 쉽다는 단점이 드러난 것이다.

고창군의 경우 갑구에서는 7인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반면 을구에서는 3인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

갑구의 경우 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陳認鍾후보와 무소속의 鄭世煥후보의 싸움이었다. 젊은 지식인으로서 집권당의 공천을 받은 진의종 후보는 젊은층에 파고들어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갔으나 대산·무장 등 갑구지역에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정세환 후보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진의종 후보는 10,458표를 얻었고 정세환 후보는 10,713표를 획득함으로써 정세환 후보가 25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진의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갑구의 선거는 혈연관계가 투표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는 자유당의 현역의원인 愼鏞頊후보와 무소속의 洪淳熙후보간의 경쟁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 소문날만큼 이승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신용욱은 탄탄한 재력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6,977표차로 홍순희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陳懿鍾	남	32	무장면 무장리	변호사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부장	자유당	10,458	
徐炳南	〃	48	고창읍 읍내리	의 사	세부란스의전졸 의 학 박 사	국민당	1,443	
鄭世煥	〃	38	대산면 율촌리	농 업	일본정치대학졸 가사에 종사	무소속	10,713	당선
金永久	〃	53	무장면 성내리	회사원	동양대학졸 대한날염공사장	〃	2,789	
姜 無	〃	57	대산면 지석리	농 업	일본동양대학졸 면 장 5 년	〃	1,155	
林暢部	〃	42	고창읍 읍내리	〃	조도전대학졸 금융조합장	〃	4,563	
申三勳	〃	47	고창읍 읍내리	〃	국졸·대한노총 고창군연맹장	대한노총	1,079	

□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愼鏞頊	남	52	서울 종로구 청운동	민의원 의 원	대 졸 민의원의원	자유당	16,103	당선
洪淳熙	〃	41	고창군 읍내리	회사원	일본명치대졸 홍해산업(주)전무	무소속	9,126	
閔晶植	〃	55	서울 종로구 4가	〃	조도전대졸 동양맥주감사역	〃	3,801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집권세력과 야당은 다같이 1958년에 실시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른 선거법개정이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1952년 발췌개헌 이후의 헌법은 국회의 구성을 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50년에 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은 단원제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를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은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두 개정안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을 둘러싼 파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80여차례나 협상을 벌여 단일안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 의원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을 공포하였다.

1958년의 민의원 선거법과 1950년의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교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의 확정·설치방법 및 당선인 결정, 투표방식 등 투표제도상의 기본골격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에 의해 투표참관인(投票參觀人)의 권한 확대, 각급 선거위원회의 의원 중 일정수의 정당에 의한 추천 등이 보완 또는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여당의 주장에 의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제(寄託金制)와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었다.

참의원 의원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와 도(道)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외의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선거는 법공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하여 3대 국회의원선거 때 보다도 30개 선거구가 늘어난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90.6%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선거 후에 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이 105건에 달했고 여론에 못이긴 자유당이 당선된 1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만큼 행정력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였다.

선거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자유당이 126석을, 민주당이 79석, 통일당이 1석을, 그리고 무소속이 27석을 차지함으로써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둘째, 1956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나타난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당이 126석을 차지하긴 하나 이 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26개 시지역에서 당선된 의석은 13석에 불과하였고, 민주당의 79석 중에서 43석은 도시지역에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3대선거에서와 같이 제1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이점을 이용하여 자유당

은 득표율 42.1%에 의석수는 54.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민주당과 무소속은 34.2%와 21.5%의 득표를 하였으나 실제의 의석수는 33.9%와 11.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현상 즉 '여촌야도(與村野都)'가 들어맞지 않았다는데 있다.

갑구의 경우에는 무소속의 鄭世煥후보가 재선되었고, 을구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洪淳熙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정세환 후보가 무소속이면서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정씨문중(鄭氏門中)의 지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본다. 정씨 자신이 소탈하여 인심을 잃지 않고 아직도 혈연이 투표행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풍토에서 그의 당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에는 재력이 약한 민주당의 홍순희 후보가 재력이 강한 여당의 신용욱 후보를 누를 수 있었는데 이는 홍순희에 대한 동정과 민의원으로서의 신용욱 후보가 보여준 실적에 유권자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을 쥔 신용욱의 권력남용은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하여 그는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陳 懿 鎭	남	36	무장면 무장리 260	변호사	대 졸 · 회 사 원	자유당공천	10,296	
李 範	〃	54	서울 종로구 원남동 28-4	회사원	상고졸·정당인	민주당공천	2,985	
曺 秉 厚	〃	36	고창읍 월산리 482-5	농 업	고려대졸·대한상무회전북지회장	무소속	9,673	
鄭 世 煥	〃	42	대산면 율촌리 174	민의원	일 본 대 졸 민 의 원	〃	10,946	당선

※ 金秀學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고창군 갑선구에 후보등록 하였다가 사퇴함.

□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愼 鏞 頊	남	56	서울 종로구 창운동 51-21	민의원	비행전문졸업 민 의 원	자유당공천	14,543	
洪 淳 熙	〃	45	고창읍 읍내리 87	회사원	대 졸 · 정 당 인	민주당공천	15,321	당선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4·19의거로 이승만이 사임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의원 가운데 208대 3이라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법이 마련되었는데 헌법과 선거법 모두 선거 부정을 막고 자유·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강하였다.

우선 헌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가 처음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민의원은 선거위원회법(選擧委員會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거관리기구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통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었다.

새로운 선거법도 자유·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4대 민의원선거에 적용되었던 협상선거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닌다.

① 입후보 등록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장제도(推薦狀制度)를 폐지하였다.

② 선거권을 더욱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는 매년 1월 1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기본선거인명부(基本選擧人名簿)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구역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보통선거인명부(普通選擧人名簿)를 병용토록 하였다.

③ 부재자(不在者)의 현지투표(특히 軍에 있어서의)가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재자투표제도(不在者投票制度)를 채택하였다.

④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참관인제도(投票參觀人制度)를 강화하고 릴레이식 투표방지를 위한 투표용지 일련번호삽입제(一連番號揷入制)를 채택하였다.

자유·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제외하면 선거제도상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4·19의거가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층의 힘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참의원 피선거권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각각 내렸다.

제5대 민의원선거는 7월 29일에 전국 233개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에서의 선거와는 달리 경찰과 관권의 개입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매표매수행위(賣票買收行爲)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하였는데 민주당은 총의석의 75.1%인 175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유당은 2석밖에 얻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와해되었고 그 외에 사대당(社大黨)이 4명, 한민당(韓民黨)과 통일당(統一黨)이 각 1명씩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은 전체의석의 21.1%인 49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또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가 강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은 총투표의 41.7%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총의석의 75.1%를 얻었고, 무소속의 경우는 총투표의 46.8%를 얻었으나 의석에 있어서는 21.1%를 얻는데 그쳤다. 또한 사대당(社大黨)은 총투표의 6%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1.7%를 얻었고, 자유당은 2.7%의 득표에 0.9%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경우 갑구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柳 津후보가 당선되었고,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金相欽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고창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갑구에서 당선된 유 진 후보는 서울대 영문학 교수로 그 당시 그의 저서인 《구문론》이 대학입시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민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4·19이후의 제2공화국 주체가 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대학교수로서의 신선한 이미지와 적지않은 유씨종친들의 지지가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이나 근소한 표차이로 정세환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진의종 후보는 이번에도 유진 후보에게 2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또 다시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불리한 자유당의 소속으로 출마한 정세환 후보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4,998표라고 하는 상당수의 득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때까지도 혈연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鄭世煥	남	44	대산면 율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학전문부졸 민 의 원	자유당	4,998	
金宇鎭	〃	50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3-28	회사장	민주일보사장 대한행정신문사장	무소속	2,707	
金亨石	〃	36	성송면 행산리 415	회사원	해양대학교졸 해양대학조교수	〃	2,899	
裵祥基	〃	38	고창읍 읍내리 185	양조업	성균대정경대수료 도의회의장	〃	5,668	
陳琓鎰	〃	38	나주군 나주읍 교동리	회 사 취청역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무국장	〃	8,775	
柳 津	〃	54	서울 종로구 영륜동 3가 137	출판업	연희전문졸 경도동지사대학영문학부졸 서울대교수	민주당	8,800	당선

□고창군 을구

성명	성별	연령	주 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단체명	득표수	비 고
元永喜	남	31	전주시 풍남동 83-8	농 업	고려대학졸 삼남일보편집위원	무소속	2,016	
金孝南	〃	37	흥덕면후포리 495	〃	단국대학1년중퇴	〃	6,792	
李炯澤	〃	26	서울시 종로구 화동 90	기 자		민주당	4,736	
洪淳熙	〃	47	고창읍 읍내리 77	민의원		무소속	4,636	
愼鏞頊	〃	58	서울시 종로구 창운동 52-21	회사장		〃	5,907	
金相欽	〃	39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25	회사원		〃	7,648	당선

율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흠 후보가 민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 김성수의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성수는 2대 부통령을 역임하였고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고창이 배출한 전국적 인물이었다.

김상흠 외에 그 당시 부친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예로는 조병옥의 아들인 조윤형과 신익희의 아들인 신하균을 들 수 있다. 당시에 정계의 '삼총사'라고 불리운 김상흠, 조윤형, 신하균은 큰 기대를 모았었다.

김상흠은 그 자신은 고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치문화를 반영한 일단으로,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후대가 거두어 들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그의 자식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5·16 군사정부(軍事政府)는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후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을 제정하여 1963년 1월 16일 공포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 8월에 제1차 개정을 거쳐 11월 26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했다.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회복기간을 연기하고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에 대해서 형의 집행완료 내지는 면제된 후 7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② 선거구(選擧區)를 지역구(地域區)와 전국구(全國區)의 2종으로 하고 지역구는 과거의 233개의 선거구를 변경하여 131개구로 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 1인 44석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기로 하였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운영에 있어 각 정당이 후보를 미리 서열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는 엄정구속명부제(嚴正拘束名簿制)를 채택하였다.

③ 후보자의 정당추천제(政黨推薦制)를 실시하였다.

④ 선거운동은 정당 본위로 하고 개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였으며, 공영선거운동(公營選擧運動)을 확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비례대표제는 사표(死表)를 구제하고 전국적인 인물이나 직능대표(職能代表)를 선출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비례대표제는 양당정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제1당과 제2당에게 유리한 배분방식(配分方式)을 가지고 있었다. 제1당은 득표비율(得票比率)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득표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정받게 되었다. 제2당은 제3당 이하 정당들이 득표한 총득표의 2배를 초과할 때는 제1당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나, 이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득표비율에 관계없이 잔여의석의 3분의 2를 배분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은 득표비율에 따라 제3당 이하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봉쇄조항(封鎖條項)을 두어 지역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전국구 의석배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1963년 11월 26일 전국 131개 지역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2년 7개월 동안의 군정기간(軍政期間)동안 혁명정부를 책임진 朴正熙가 민주공화당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민정당의 尹潽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은 유리한 조건에서 난립한 야당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총선거인의 72.1%가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33.5%, 민정당은 20.1%, 구민주당계(舊民主黨系)의 민주당(民主黨)은 13.6%, 국민당은 8.8%, 자유민주당은 8.1%, 그리고 이외의 7개의 군소정당들이 도합 13.9%의 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특징이 나타나 공화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전국의석의 68%에 해당하는 88석을 차지하였다. 민정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의 20.6%인 27석을 얻어 득표비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정당에 있어서는 의석점유율이 득표비율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공화당(共和黨)은 전국구 의석에서도 유리하게 배분받았다. 33.5%의 득표율로 44석의 총의석 중에서 절반인 22석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제2당인 민정당(民正黨)은 20.1%의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의 31.8%인 14석을 배정받았다. 그 외에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5석과 3석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당선자 3명과 득표비율 5%의 조건에 미달되어 전국구 의석이 돌아가지 않았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 11. 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8	183,385	89,827	64,084	1,903	65,987 (2,467)	23,840	73.5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자유민주당	金秀學	고창읍 읍내리 202	대졸	2대국회의원	3,241	
신흥당	孫明燮	고창군 심원면 302	정읍농고졸	육군특수대근무	1,524	
국민의당	李炯淵	서울 서대문구 292-450	대졸	언론인	9,382	
보수당	陳斗銀	흥덕면 흥덕리 352	고졸	흥덕중학원장	2,181	
민주당	姜澤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7의 558	대졸	초대참의원	7,357	
민정당	金相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5	연전졸	제5대민의원	16,680	당선
추풍회	安判童	흥덕면 흥덕리 560	독학	9지구당조직책	1,361	
민주공화당	成正基	서울 신당동 372-444	대졸	삼양교역주식회사 상무이사	16,531	

고창군의 경우에는 선거구에 있어서 종전에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선거법의 개정으로 1인만을 선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3.5%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무효투표는 선거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여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 중에 무학자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촌야도'의 현상이 아니라 야당인 민정당 김상흠 후보가 민주공화당의 성정기 후보를 149표차로 힘겹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상흠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 국회가 5·16으로 말미암아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동정여론과 인촌 김성수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주 아깝게 패배한 성정기 후보는 1963년 12월 5일 개표(開票)및 계표부정(計票不正)을 들어 선관위원장 정진홍(鄭鎭洪)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64년

12월 10일에 원고의 소취하로 간주되어 재판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김상흠 후보의 당선은 유효하게 되었다.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는 1963년에 실시된 선거법에 여러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개원 초부터 지적하여 오다가 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이전 선거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다만 몇가지 운용상의 문제점만을 시정하였다.

첫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의 신설

둘째,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일부 완화

셋째, 투표통지표의 교부제도 변경

넷째,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구역표를 새로 정립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선거법에 의거하여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참여율은 76.1%였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은 선거직전 통합야당(統合野黨)으로 출발한 신민당(新民黨)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공화당은 50.6%의 득표율로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을 차지하였고, 신민당은 32.7%의 득표율로 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외에 9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총합계 16.7%의 표를 얻었으나 전국구 배분방식에 따라 대중당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양당제가 아닌 1.5의 정당체제가 확립되어 거대 여당의 독주가 예견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2.6%로 전국 투표율의 76.1%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효투표도 투표율의 증가와 더불어 많아졌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우에는 1,903표였으나 7대에 이르러서는 3,419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집권당이 과열하게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킨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모르는 무학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킴으로써 무효표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고창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공화당의 愼鏞南후보는 5대, 6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상흠 후보와 12,151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孫明燮후보는 당선된 신용남 후보의 부위원장인 丁奎淵을 걸어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모든 경찰력과 행정조직, 그리고 공화당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이고, 또한 부정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당선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가 제시한 소장에 기록된 부정사실을 몇가지만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같은 해 5월 3일에 치뤄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의 총수는 부재자신고인 223명을 포함

하여 86,311명이었던 것이 6월 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때에 이르러서는 불과 1개월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부재자신고인 3,910인을 포함하여 10,024인이나 급증한 96,335인으로 사전에 결탁하여 격지자로서 투표가 불가능한 자는 물론이고 그 중에에 혹은 5년 내지는 10년전에 사망한 유령자까지 유권자로 조작하여 6·8국회의원선거 명부에 등재된 부재자신고인 3,910명을 제외한 순증가분 7,337매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 통지표와 5·3대통령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령유권자 약 6,000명의 통지표를 합한 약 13,000여표 가운데 약 8,000표의 통지표를 면직원 각리의 참사 및 공화당원 등으로 하여금 미리 확보케 하여 이들 모두 사위(대리)투표케 함으로써 당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신용남 후보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케 하여 당선될 수 있었다.

② 공화당 조직은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전유권자(全有權者)의 성분을 분석하고 조사케 하고 신민당의 공천을 받은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통지표 8,000매를 매당 100원 내지 200원씩 매수하여 고의로 기권하게 함으로써 김상흠 후보가 득표할 8,000표를 사전 득표방해를 하였다.

③ 각 면장, 부면장 등은 면직원과 리참사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시부터 투표통지표 교부시까지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 약 2,000인에게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누락케 하였거나 투표 통지표를 교부치 않음으로써 신민당 공천자인 김상흠 후보의 득표 2,000여표를 사전에 방해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④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나타난 총 3,910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2,000인의 거소를 각기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장들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케 하여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지역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일괄 회수해서 그 중 거소가 전혀 다른 투표용지 2,000통 가운데 500통은 다시 반송되어 오도록 하고 잔여 1,500통은 당시 공화당의 공천자인 신용남 후보에 기표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함으로써 선거관리상의 부정을 감행하였고 따라서 피고 신용남은 1,500표를 부정득표하였다.

⑤ 홍덕면 제1투표구 동사리 축정부락 건거인 120인에게 일금 3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키로 약속하고 공화당에서 이들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홍덕면 제3투표구, 해리면 제1·2투표구 등 도합 약 2,120인의 선거인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하는 불법·부정을 감행하였다.

⑥ 해리면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신민당의 공천자인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에게 위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배부함으로써 원고가 투표할 100표를 무효표가 되게 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위의 ①항에서 지적한 부정사실 가운데 피고 신용남이 관의 협조아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사위(대리)투표를 함으로써 부정득표한 ①항의 8,000여표와 ②항의 원고가 득표할 8,000여표의 투표용지를 매수함으로써 고의로 기권케 하여 피고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본 8,000표, 그리고 ③항의 원고가 득표할 2,000표를 투표통지표를 교부치 않았거나 또는 선거인 명부에 아예 누락시킴으로써 역시 피고 신용남 후보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보게된 2,000표, 또한 ④항의 1,500표의 부재자신고인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피고 신용남 후보란에 기표해서 우송하여 부정득표한 1,500표, 그리고 ⑤항의 원고가 득표할 표를 무효표가 되게 한 100표 등 이를 종합해 보면 총 19,600표를 피고 신용남 후보가 부정득표를 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득표할 표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차점자인 원고와 표차 12,151표를 감한 7,449표차로 도리어 피고 신용남 후보가 낙선할 것이 분명하므로 당시 공화당의 신용남 후보의 당선결정공고가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선거 전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궐선거는 1968년 9월 24일에 실시되었는데 후보자가 지난 선거보다 2인이 늘어나서 모두 7명이 경합을 벌였다. 투표율은 82.6%에서 75.1%로 낮아졌으나, 무효표는 3,419표에서 4,933표로 증가하였다. 후보등록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정세환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손명섭 후보가 재출마하지 않고 들어갔으며 정의당의 林均錫후보, 자민당의 孫一權후보, 통일사회당의 兪永峯후보, 그리고 서울에서 3·4대 민의원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낙선한 통일당의 吳在泳후보가 가세하였다.

선거결과 대중당으로 나온 신용남 후보가 32,563표를 얻어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를 3,519표차로 누르고 재승리하였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6. 10. 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335	76,131	3,419	79,550 (3,236)	16,785	82.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자유당	鄭世煥	대산면 174	대졸	제3·4대국회의원	1,269	
민중당	陳斗鎭	홍덕면 홍덕리	고졸	홍덕중학원장	891	
신민당	金相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5	대졸	국회의원	27,804	
민주공화당	愼鏞南	홍덕면 사천리 69	대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9,955	당선
통일사회당	孫明燮	삼원면 302	고졸	통사당중앙당임위원	570	

제7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 11. 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505 (5,172)	67,485	4,933	72,418 (4,166)	24,087	75.1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신민당	金相欽	읍내리 196	연전졸	5·6대국회의원	29,044	
정의당	林均錫	부안면 433	대졸	정의당·중앙당당위원	1,832	
대중당	愼鏞南	홍덕면 사천리 69	대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2,563	당선
자민당	孫一權	극성면 신기리 306	대졸		969	
민중당	陳斗鎭	홍덕면 352	고졸	63·67년 국회의원입후보	292	
통일사회당	兪永峯	영등포구 봉천동 46	중졸	통일당당무위원		사퇴 9. 21
통한당	吳在泳	서울 마포동 195-2	보통교4년 중퇴	3·4대민의원	2,785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압승으로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들로 말미암아 선거 후의 정국은 쉽게 정상화될 수 없었다. 야당은 선거가 모두 부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부만을 인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여야는 제3차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안에 합의하였다.

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관권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투·개표의 부정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구 15개구가 증설되는 것을 제외하면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운동의 방법, 투표용지의 형식·인쇄·배부방식, 개표참관과 무효표의 기준 등 선거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선거제도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제3차 개정을 거친 선거법은 1969년 10월 17일의 소위 삼선개헌안(三選改憲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고 난 다음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국민투표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문제로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막후 접촉에서 다시 선거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었다. 제4차 개정선거법은 1970년 12월 22일 공포되었는데 역시 관권의 개입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개정의 목적이었다.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사의 기공식(起工式), 단합대회, 야유회, 종친회 등의 금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외의 출장금지 등의 규제조항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선거구가 다시 7개구 증설되고 전국구 의석배분(議席配分)요건 중 종래의 지역구 3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개정하여 배분기준을 높였다.

제7대 국회에서 2번이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73.2%이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은 관권의 개입이 제7대 선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금력선거(金力選擧)라고 불리울 만큼 돈에 의한 매수가 극심하였다.

선거결과는 제1당의 신민당(新民黨)이 42.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역구에서 65석과 전국구 24석을 각각 얻어 지역구 153석과 전국구 51석 총 204석의 43.6%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집권당인 공화당은 48.9%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86석, 전국구에서 27석을 얻어 총 의석의 55.4%인 113석만 얻음으로써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양당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여당에 버금가는 야당의 부상은 박정희 정권에 새로운 정치적 위협이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79.9%로 전국의 수준인 73.2% 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무효투표는 3,161표로 아직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공화당의 신용남 현역의원과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安鍾燁후보가 출마하여 결국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진의종 후보는 유효투표 66,805표 중에서 40,765표를 얻어 61.0%를 차지함으로써 여유있게 당선될 수 있었다. 이로써 진의종 후보는 제3대 국회의원에 3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출마하여 낙

선의 고배를 마시고 이어 제4대와 제5대에 재도전하였으나 역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제8대에는 야당의 공천을 얻어 실로 오랫만에 선량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단행된 유신(維新)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해산되어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 11. 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56	188,803	87,612 (3,552)	66,805	3,161	69,966 (3,359)	17,646	79.9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민주공화당	愼鎭南	홍덕면 사천리 69	대졸	제7대국회의원	23,012	34.4%
신민당	陳懿鍾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대졸	상공부차관	40,765	61.0%
민중당	安鍾燁	대산면 산정리 467	고졸	신민당10지구당 선전부장	1,435	2.1%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이 실시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따라서 모든 정당활동이 중지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그 기능과 권한은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로 넘어갔다.

대통령선출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대통령의 추천에 의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헌정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접선거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사례를 남겼던 것이다.

간접선거제도의 도입 외에도 유신초기의 선거제도는 그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유신헌법이 확정·공포된 직후 제정된 6년 임기의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새로운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공영제 선거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국구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3개 선거구로 하여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선거구 확정과 관련하여 지역구의 기준인 인구수 조항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역구를 나누었으나 유신체제하에서는 지역구의 확정에 있어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이를 확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구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못되었다.

③ 제3공화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유신체제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④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개별적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전벽보의 첨부, 선거공보의 발행, 후보자가 참가하는 합동연설회에서만 하도록 하였다.

⑤ 정당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유신체제하의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의 채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거제도는 대정당(大政黨)에게만 유리한 1구 1인의 소선거구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반선거'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여당과 야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과 직결됨으로써 공천권을 가진 정당간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지역민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준 인구수의 책채는 선거구간의 대소(大小)의 격차를 크게 벌림으로써 자칫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멋대로 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 선거구인 서울 성북구의 선거인수는 532,514명으로서 최소 선거구인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선거인수인 107,266명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온 대도시의 선거구가 큰 선거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수의 삭제는 여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72.9%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전체 38.7%의 득표율로 73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32.5%의 득표율로 52명, 민주통일당은 1.4%의 득표율로 2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19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고창군의 경우는 선거법에 의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지리적으로나 교통편 및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고창군과 정읍군이 같은 선거구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비슷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수를 보

면 고창군은 84,133명이고 부안군은 75,426명으로 고창군이 8,707명이 더 많다. 이와 같이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실세이었던 김제 출신의 장경순과 부안군의 이병옥이 김제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로 될 경우 집권당의 공천을 받을 때 둘 중의 하나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김제군과 정읍군을 같은 선거구로 묶고 고창군과 부안군을 한 선거구로 묶게 된 내력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투표율을 보면 고창군이 77.5%이고 부안군은 71.7%로써 고창군의 투표율이 다소 높았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동반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부안군에서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李炳玉후보가, 고창군에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의 金相敦후보가 출마하였고 무소속으로는 부안군 출신의 金正基후보와 고창군 출신의 陳鍾鍾후보가 연고지의 표를 의식하고 출마하였다. 그러나 집권당과 제1야당의 '동반당선'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김상흠 후보는 제일 저조한 득표를 기록하여 낙선하고 말았다. 그가 낙선하고 진의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와 제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흠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만큼 알았다는 인식과 평상시에는 지역의 관리에 소홀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중앙에서 공천을 얻어 내려오는 낙하산식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식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진의종 후보는 제3·4·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표차로 계속 낙선했다가 제8대에 들어 제1야당인 신민당의 공천을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나 의원직 1년여만에 유신의 대변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해야 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정이 그를 당선되게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진의종은 한국전력이나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고창군 출신들을 등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평소에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72. 9. 3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6	339,458	159,559 (4,849)	116,548	2,790	119,338 (4,078)	40,221	74.8
고창군	14	78	181,262	84,133 (2,476)	63,588	1,657	65,245 (4,678)	18,888	77.5
부안군	11	68	158,196	75,526 (2,373)	52,960	1,133	54,093	21,333	7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민주공화당	李 炳 玉	부안군 부안읍 소외리 105	대 졸	6·7·8대 국회의원	39,684	당 선
신 민 당	金 相 欽	서울 종로구 가회동 27-1	대 졸	5·6대 국회의원	23,664	
무 소 속	金 正 基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56-1	동경고등공학 운전기과졸	교 원	24,555	
무 소 속	陳 鎔 鍾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 성 제 국 대 졸	제8대 국회의원	28,545	당 선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1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놓고 제9대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선거법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지엽적인 것들만 개정되었다. 즉 선거구의 증설, 합동연설회 횟수의 증가, 투·개표 참관인의 범위 및 선정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유신체제에 관한 논쟁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1978년 12월 12일 치뤄졌다. 지역구도 제9대 때보다 4개가 증설되어 총 77개구였다. 선거결과 공화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4.2%인 68석을 차지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39.6%인 61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1.9%인 3석에 미달었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민당이 32.8%로서 공화당의 31.7%보다 1.1%를 앞서게 되었다.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에 있어서 앞선 것은 총선사상 처음있는 일로써 이는 국민의식의 성장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 구 수 (78.10.31)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8	313,324	154,494 (4,980)	128,055	2,157	130,212 (4,845)	24,282	84.3
고창군	14	78	164,386	79,266 (2,359)	63,977	1,215	70,192 (4,845)	9,074	88.6
부안군	11	70	148,938	75,228 (2,261)	59,078	942	60,020	15,208	79.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명	주소	학력	경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李昊鍾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436	고대상과졸	은성산업(주) 대표이사	36,478	당선
신민당	陳懿鍾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성대 법과졸	제8·9대 국회의원	34,831	
민주통일당	金一凡	부안군 부안읍 151-1	원광대졸	전북제6지구당 위원장	5,748	
무소속	金鍾洙	부안군 부안읍 263	전북법정대 정치외교과졸	신민당·중앙당 경리부장	7,346	
무소속	朴龍基	부안군 부안읍 431-3	남원농고졸	전북곡물협회장	36,941	당선
무소속	鄭均桓	고창군 대산면 광대리 439	성균관대 정치외교과졸	無	6,675	

고창군의 경우 제9대 선거처럼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이 부안군과 한 선거구가 되어 선거가 치루어졌다.

투표율은 고창군이 88.6%로서 부안군의 79.8%보다 8.8%가 높았다. 무효투표 역시 고창군과 부안군이 거의 비슷하게 1,000여표를 기록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고창군 출신의 李昊鍾을 추천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 역시 고창군 출신의 진의종 현역의원을 추천하였다. 또한 무소속으로 鄭均桓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부안군 출신으로는 재력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무소속의 朴龍基와 역시 무소속인 金鍾洙, 그리고 민주통일당의 金一凡이 출마하여 고창군 출신이 3인, 그리고 부안군 출신이 3인으로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집권당과 제1야당이 맞붙는 결전장이어서 두 후보에 표가 고르게 분산되었으나 부안군의 경우는 박용기 후보가 부안 출신의 타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많은 득표를 할 수가 있었다.

투표결과 무소속의 박용기 후보가 36,941표를 얻어 최고 득표자로 당선되었으며 고창 출신의 이호종 후보는 36,478표를 얻어 같은 고창군 출신인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보다 1,637표를 더 얻어 차점자로 당선되었다.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에 따라 12월 6일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崔圭夏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출범 즉시 '위기관리정부(危機管理政府)'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 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5·17광주항쟁(光州抗爭)이라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최규하는 대통령을 사임하고 다시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계엄당국을 책임지고 있던 全斗煥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후에 10월 26일 이를 공포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가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1981년 1월 29일 공포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유신헌법에서와 같이 지역구의 기준인구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즉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②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병용하며 전국구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 2분의 1로 한다.

③ 지역구는 92개를 두되 1개 지역구에 의원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한다.

④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 순으로 배분한다.

⑤ 전국구에서의 당선은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기재된 순위에 의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선거법이 지니는 특징은 선거구의 획정문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된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당선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준인구수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유신체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선거구와 작은 선거구 간의 크기에 있어 많은 격차가 생겼다. 예를 들면 서울의 최대 선거구인 동대문구의 인구는 511,208명인데 반하여 최소 선거구인 전북의 진안(鎭安), 무주(茂朱), 장수(長水)는 불과 100,544명으로써 동대문구의 선거구 5분의 1에 불과한 많은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대도시에 야당의 세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당이 매우 유리하도록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국구 비례대표제(全國區比例代表制)라고 할 수 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제3공화국에서도 채택된 바 있으나 제5공화국에서 채택한 비례대표제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로 배정되었으나, 제5공화국에서는 2분의 1을 배정하여 전국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둘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제1야당에게 전체 전국구 의석의 최소 50%에서 최다 3분의 2까지를 배정하고 제2야당에게는 제1당이 차지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의석의 최소 3분의 2까지를 배정하여 제1당과 제2당에게 프레미엄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는 양당정치를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치 아래 제1당에게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의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나누도록 하였다. 즉 제1당에게만은 높은 프레미엄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셋째,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의석의 배정을 각 정당의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제5공화국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되었다. 많은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이 묶인 상태에서 1개의 정당이 후보를 냈으며 또한 10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참여율은 78.4%였으며, 선거결과 집권당인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35.8%의 득표율로 90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이 21.6%의 득표율로 57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이 10.3%로 7석을 얻었다. 전국구 의석은 민주정의당이 전국구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61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각각 24석과 7석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제1당인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로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전체의석의 54.7%를 차지함으로써 국회내에서의 안정세를 확보하였다.

고창군의 경우 선거구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부안군과 한 선거구로 되어있었으나,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정읍군과 묶여 한 선거구로 되었다.

정읍군 인구수와 고창군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정읍군의 인구수는 232,741명으로 고창군의 인구수 149,080명보다 83,661명이 더 많다. 선거인 수에 있어서도 정읍군의 경우 117,898명으로 고창군의 76,411명에 비하여 41,487명이 더 많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81. 1. 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31	189	381,821	194,309 (6,437)	156,374	1,854	158,228 (6,096)	36,081	81.4
고창군	14	78	149,080	76,411 (2,358)	61,105	684	61,789	14,622	80.9
정읍군	17	111	232,741	117,898 (4,079)	95,269	1,170	96,439 (6,096)	21,459	81.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사회당	曺秉厚	고창읍 월산리 528-2	대 졸	육군대령예편	9,473	
민주정의당	陳懿鍾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60	대 졸	제8·9대 국회의원	61,443	당 선
신 정 당	申正宰	서울 마포구 공덕동 29-5	대 졸	광일기업대표	3,699	
한국국민당	李昊鍾	성내면 산성리 436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20,316	
원일민립당	李景泰	정읍군 고부면 백운리 442	장노교성서연구과졸	대한청소년신문논설위원	3,374	
민주한국당	金元基	정읍 정주읍 수성리 643-19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41,789	당 선
무 소 속	魯棟采	고창 부안면 송현리 187	대 졸	새교육신문사장	16,280	

투표참여율은 고창군이 80.9%, 정읍군이 81.8%로 비교적 비슷하다. 무효표의 경우 선거를 치룰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제는 1,000표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를 보면 민주정의당의 陳懿鍾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金元基후보, 그리고 민주사회당의 曺秉厚, 신정당의 申正宰, 한국국민당의 李昊鍾, 원일민립당의 李景泰, 그리고 무소속의 魯棟采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지역별로 후보자를 살펴보면 고창군 출신으로는 진의종, 조병후, 신정재, 이호종, 노동채 후보이고 정읍군 출신으로는 김원기와 이경태 후보 2인 뿐이었다.

선거결과는 민주정의당의 진의종 후보가 61,443표를 차지하여 1등으로 당선되었고 민한당의 김원기 후보가 41,789표를 차지하여 2등으로 당선되었다. 후보들 중에 10,000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국민당의 이호종 후보가 20,316표를, 무소속의 노동채 후보가 16,280표를 얻었다. 이는 고창군 지역의 투표가 열전이었음을 의미한다.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11대 국회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84년 7월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 주로 선거운동의 규제와 투·개표 참관인 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선거제도의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 직전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풀린 구야당계(舊野黨系)의 정치인들이 새롭게 조직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중심으로 하여 대거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이 35.3%의 득표율로 87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제1당의 자리를 계속 지켰고 신당인 신한민주당이 29.3%의 득표율로 50석을 얻

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 외에 민한당과 국민당이 19.7%와 9.2%를 각각 얻어 26석과 15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국구 의석은 이러한 지역구의 의석수에 따라 민주정의당이 61석을, 신한민주당이 17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각각 9석과 5석을 배정받았다. 이 선거에서도 제1당인 민정당은 35.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53.6%를 차지함으로써 원내에서의 안정세를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1981년 7월 1일에 시로 승격한 정주시(井州市)를 포함하여 기존의 정읍군과 묶어 한 선거구로 되었다.

고창군의 투표율은 8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효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때 1,174표로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경합을 살펴보면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를 비롯하여 신한민주당의 이원배 후보, 그리고 제10·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기 후보가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정정법(政淨法)에 묶여 제11대 국회위원에 출마할 수 없었던 柳甲鍾은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신민주당(新民主黨)을 창당하여 출마하였다.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년여의 의원직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에 유신으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전력과 감옥생활을 했다는 과거의 경력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써 고창의 전종천 후보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될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는 정읍과 고창에서 골고루 지지표가 나와 68,248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놓고 이원배와 김원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원배에게 낙점되자 김원기는 민주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이원배 후보가 26,314표, 김원기 후보가 26,449표를 얻음으로써 거의 대등한 지지표를 획득하였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이밖에도 한국국민당으로 출마한 유종기 후보가 있으나 그의 득표는 2,212표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종천 후보만이 고창군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정주시와 정읍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기 자신들의 지역표를 놓고 경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주시와 정읍군의 표는 분산된 반면 고창군의 표는 전종천 후보에게 몰림으로써 다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85. 1. 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78	135,843	75,120 (3,011)	60,185	1,174	61,357	13,761	8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한국국민당	柳 鍾 基	정주시 상동 498-3	대 졸	동학사상연구소장	2,212	
신민주당	柳 甲 鍾	정주시 상동 18	〃	제8대 국회의원	37,688	당 선
민주정의당	全 鍾 千	정주시 시기2동 170-17	〃	치안본부치안감	68,248	당 선
신한민주당	李 元 淳	정읍군 입암면 봉양리 472	〃	정 치 인	26,314	
민주한국당	金 元 基	정주시 수성동 450-14	〃	제10·11대 국회의원	26,449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출범한 제5공화국은 경제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87년에 들어서서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한편으로 제5공화국은 88년도에 시행하는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한다는 4·13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폭발하자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권후보자인 노태우는 민주화를 위한 6·29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에 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헌법 편재상 제5공화국의 헌법이 '정부'를 '국회'보다 앞에 놓아두고 있으나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서는 그 반대로 '국회'를 '정부'앞에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제5공화국에서는 7,0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 제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으로 하였으나 새 헌법에서는 5년 단임으로 하였다. 넷째, 구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의 권한을 삭제하였다. 다섯째,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구헌법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정가국회의 회기에 대해서 구헌법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새 개정헌법에서는 1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선거법에 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제5공화국 헌법이 지역구에 대하여 92개를 두고 1지역구에 의원 2인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지역구를 224개로 늘리고 1구에 1인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전국구의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 선거법이 지역구의 2분의 1로 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3분의 1로 감축하였다.

③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구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이 된 정당이 지역구 총의석의 50%미만일 때는 전국구 총의석의 2분의 1을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의 정당에 그 지역구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전국구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은 5석 이상의 지역구를 얻은 정당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평균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당별로 득표상황을 보면 민주정의당이 33.96%를, 평화민주당이 19.26%를, 통일민주당 23.83%를, 신민주당이 15.59%를,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1.25%를 각각 얻었으나 나머지 정당들, 즉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기독성민당, 민중의당, 사회민주당, 우리정의당, 제3세대당, 한국의통일 한국당 등은 1%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무소속은 4.75%를 획득했다.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를 보면 민정당이 총 224석 중에서 87석을, 평화민주당이 54석을, 통일민주당이 46석을, 신민주공화당이 27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9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민주정의당에 38석, 평화민주당에 16석, 통일민주당에 13석, 신민주공화당에 8석이 각각 배분되었다. 결과적으로 총의석 299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125석,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야당

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의석들을 확보하여 이른 바 4당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득표율에서는 통일민주당에 4% 이상 뒤진 평화민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통일민주당을 8석이나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번 13대 선거가 이른바 지역감정에 의하여 지역성을 크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정의당은 경북·강원·충북 및 경기에서 득세한 반면, 평화민주당은 전남·북과 서울에서, 통일민주당은 부산과 경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은 충남과 충북 일부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평민당이 다소 우위를 차지한 반면,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이 각축전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1.6%로 전국 평균의 75.8%를 상회하고 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평화민주당의 정균환 후보가 31,188표를 차지하여 총 유효투표의 54.3%를 얻음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정균환 후보가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황색바람'이라고 하는 평화민주당의 바람이 고창지역에도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이다. 전라남·북도의 어느 선거구에서도 평화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유권자수가 많은 정씨 문중의 지지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 구 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9	121,679	71,420 (2,887)	57,425	856	58,281	13,139	81.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기 호	성 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비 고
민주정의당	1	李昊鍾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13,159(22.9%)	
통일민주당	2	鄭在吉	〃	전 북 대 교 수	2,421(4.2%)	
평화민주당	3	鄭均桓	〃	평화당조직4국장	31,188(54.3%)	당선 1
무 소 속	4	魯棟采	〃	언 론 인	10,657(18.5%)	인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년 3월 24일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수는 지역구 1,052명, 전국구 154명 등 총 1,206명으로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는 총유권자수 29,003,828명중 20,843,482명이 참여 71.9%의 투표율을 보여 역대국회의원선거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민주자유당 116명, 민주당 75명, 통일국민당 2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당선되었으며, 전국구는 지역구의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자유당에 33명 민주당에 22명, 통일국민당에 7명이 배분되어 국회의원 총당선자는 민주자유당 149명, 민주당 97명, 통일국민당 31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되었다. 그러나 공명민주당, 민중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등록하였으나 당선된 후보자가 한명도 없을 뿐만아니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92년 3월 30일 정당법 제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공명선거정당협의회개최 등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등의 선거법준수 및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운동유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처, 그리고 언론기관, 각종사회단체, 직능단체, 학교 등과 협조·연계를 통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범국민적인 전개 등 공명선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평온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공명하게 치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4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64,004명중 49,669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7.6%이며 전국 평균(71.9%)을 5.7% 상회하고 있으며 기호 1번 민주자유당의 이호종 후보와 기호 2번인 민주당의 정균환 후보, 기호 3번 통일국민당의 노동채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균환 후보가 26,061표로 총유효투표수의 53.2%를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13대에 이어 황색바람의 열풍과 정균환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 당 명	기 호	성 명	학 력	경 력	득 표 수	비 고
민주자유당	1	이호종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17,868(36.5%)	
민 주 당	2	정균환	〃	제13대 국회의원	26,061(53.2%)	당 선
통일국민당	3	노동채	〃	언 론 인	5,034(10.3%)	

□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현황

투표구명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비고
			1	2	3	계 (가)					
			민주자유당 이호종	민주당 정균환	통일민주당 노동채						
합 계	**64,004**	**49,869**	**17,868**	**26,061**	**5,034**	**48,963**	**706**	**14,335**	**77.8**	**98.6**	
부 재 자	2,703	2,652	811	1,639	149	2,599	53	51	98.1	98.0	감2
소 계	**12,167**	**9,344**	**3,858**	**4,725**	**662**	**9,245**	**99**	**2,823**	**76.8**	**98.9**	
고창읍1	1,350	1,053	444	514	86	1,044	9	297	78.0	99.1	
〃 2	1,598	1,198	488	601	94	1,183	15	400	75.0	98.7	
〃 3	1,466	1,120	429	619	62	1,110	10	346	76.4	99.1	
〃 4	1,699	1,341	594	648	88	1,330	11	358	78.9	99.2	
〃 5	1,628	1,236	560	595	70	1,225	11	392	75.9	93.1	
〃 6	670	515	240	219	48	507	8	155	76.9	98.4	
〃 7	252	196	76	105	8	189	7	56	77.8	90.4	
〃 8	706	527	182	317	26	525	2	179	74.6	99.6	
〃 9	689	542	172	320	39	531	11	147	78.7	98.0	
〃 10	799	623	227	343	45	615	8	176	78.0	98.7	
〃 11	1,310	993	446	444	96	986	7	317	75.8	99.3	
소 계	**3,255**	**2,512**	**881**	**1,334**	**262**	**2,477**	**35**	**743**	**77.2**	**98.6**	
고수면1	1,434	1,101	371	597	116	1,084	17	333	76.8	98.5	
〃 2	594	448	152	262	25	439	9	146	75.4	98.0	
〃 3	688	552	219	244	84	547	5	136	80.2	99.1	
〃 4	539	411	139	231	37	407	4	128	76.3	99.0	감1
소 계	**3,916**	**2,911**	**1,038**	**1,624**	**203**	**2,865**	**46**	**1,005**	**74.3**	**98.4**	
아산면1	725	537	171	316	43	530	7	188	74.1	98.7	
〃 2	753	581	229	318	28	575	6	172	77.2	99.0	
〃 3	547	401	124	242	34	400	1	146	73.3	99.8	
〃 4	696	502	136	331	31	498	4	194	72.1	99.2	
〃 5	341	264	123	112	17	252	12	77	77.4	95.5	
〃 6	854	626	255	305	50	610	16	228	73.3	97.4	

투표구명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비고
			1 민주자유당 이호종	2 민주당 정균환	3 통일민주당 노동채	계 (가)					
소 계	4,453	3,381	1,031	1,832	469	3,332	49	1,072	75.9	98.6	
무장면1	1,208	910	362	425	107	894	16	298	75.3	98.2	
〃 2	458	353	85	181	82	348	5	105	77.1	98.6	
〃 3	695	504	105	338	52	495	9	191	72.5	98.2	
〃 4	964	724	122	485	111	718	6	240	75.1	99.2	
〃 5	1,128	890	357	403	117	877	13	238	78.9	98.5	
소 계	4,055	3,063	936	1,758	331	3,025	38	992	75.5	98.8	
공음면1	863	642	204	346	81	631	11	221	74.4	98.3	
〃 2	972	743	264	379	93	736	7	229	76.4	99.1	
〃 3	988	759	154	494	96	744	15	229	76.8	98.0	
〃 4	748	543	169	342	29	540	3	205	72.6	99.4	
〃 5	484	376	145	197	32	374	2	108	77.7	99.5	
소 계	3,208	2,497	787	1,331	341	2,459	38	711	77.8	98.5	
상하면1	779	628	205	369	49	623	5	151	80.6	99.2	
〃 2	572	440	198	213	19	430	10	132	76.9	97.7	
〃 3	301	227	58	152	11	221	6	74	75.4	97.4	
〃 4	778	595	168	326	92	586	9	183	76.5	98.5	
〃 5	778	607	158	271	170	599	8	171	78.0	98.7	
소 계	4,490	3,519	1,347	1,859	250	3,456	63	971	78.4	98.2	
해리면1	1,188	919	371	489	49	909	10	269	77.4	98.9	
〃 2	519	398	125	229	39	393	5	121	76.7	98.7	
〃 3	338	276	87	153	29	269	7	62	81.7	97.5	
〃 4	438	351	111	197	40	348	3	87	80.1	99.1	
〃 5	705	552	159	330	40	529	23	153	78.2	95.8	
〃 6	744	581	231	305	35	571	10	163	78.1	98.9	
〃 7	558	442	263	156	18	437	5	116	79.2	98.9	
소 계	2,964	2,304	725	1,335	199	2,259	45	660	77.7	98.0	
성송면1	720	555	171	344	33	548	7	165	77.1	98.7	
〃 2	883	704	248	384	58	690	14	179	79.7	98.0	
〃 3	793	602	186	325	81	592	10	191	75.9	98.3	
〃 4	568	443	120	282	27	429	14	125	78.0	96.8	

투표구명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비고
			1 민주자유당 이호종	2 민주당 정균환	3 통일민주당 노동채	계 (가)					
소 계	5,265	3,860	1,090	2,409	295	3,794	66	1,405	73.3	98.3	
대산면1	987	726	210	446	44	700	26	261	73.6	96.4	
〃 2	1,250	910	289	559	57	905	5	340	72.8	99.5	
〃 3	784	570	117	383	65	565	5	214	72.7	99.1	
〃 4	637	471	153	264	47	464	7	166	73.9	98.5	
〃 5	741	551	158	336	43	537	14	190	74.4	97.5	
〃 6	866	632	163	421	39	623	9	234	73.0	98.6	
소 계	3,195	2,563	1,190	1,138	191	2,519	44	632	80.2	98.3	
삼원면1	673	541	230	250	53	533	8	132	80.4	98.5	
〃 2	797	620	303	258	47	608	12	177	77.8	98.6	감1
〃 3	1,019	832	375	388	57	820	12	187	81.6	98.6	
〃 4	706	570	282	242	34	558	12	136	80.7	97.9	증1
소 계	4,216	3,304	1,203	1,645	424	3,272	32	912	78.4	99.0	
흥덕면1	1,014	799	307	391	96	794	5	215	78.8	99.4	
〃 2	754	575	241	252	76	569	6	179	78.8	99.0	
〃 3	423	343	119	166	55	340	3	80	81.1	99.1	
〃 4	805	650	200	370	73	643	7	155	80.7	98.9	
〃 5	647	501	185	245	64	494	7	146	77.4	98.6	
〃 6	573	436	151	221	60	432	4	137	76.1	99.1	
소 계	3,046	2,380	1,334	772	245	2,351	29	666	78.1	98.8	
성내면1	657	501	291	170	36	497	4	156	76.3	99.2	
〃 2	389	288	159	85	40	284	4	101	74.0	98.6	
〃 3	669	562	444	102	12	558	4	107	84.0	99.3	
〃 4	686	528	279	123	119	521	7	158	77.0	98.7	
〃 5	645	501	161	292	38	491	10	144	77.7	98.0	
소 계	3,182	2,414	742	1,292	349	2,383	31	768	75.9	98.7	
신림면1	731	556	183	274	91	548	8	175	76.1	98.7	
〃 2	635	469	152	265	47	464	5	166	73.9	99.0	
〃 3	497	378	138	192	44	374	4	119	76.1	98.9	
〃 4	722	551	152	308	84	544	7	171	76.3	98.7	
〃 5	597	460	117	253	83	453	7	137	77.1	98.5	

투표구명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유효투표율 %	비고
			1 민주자유당 이호종	2 민주당 정균환	3 통일민주당 노동채	계 (가)					
소 계	3,889	2,965	895	1,368	664	2,927	38	924	76.2	98.7	
부안면1	865	673	212	351	101	664	9	192	77.8	98.7	
〃 2	639	485	157	243	79	479	6	154	75.9	98.8	
〃 3	749	593	202	287	97	586	7	156	79.2	98.8	
〃 4	1,089	785	217	373	183	773	12	304	72.1	98.5	
〃 5	547	429	107	114	204	425	4	118	78.4	99.1	

□ 역대국회의원 선거일

역대별	공고일		선거일		선거기간	임기	선거구수	의원정수	비고 (해산)
	연 월 일	요일	연 월 일	요일					
제 헌	'48 3. 30	화	'48 5. 10	월	42	2년	200	200	
제 2 대	'50 4. 12	수	'50 5. 30	화	49	4년	210	210	
제 3 대	'54 4. 7	수	'54 5. 20	목	44	4년	203	203	
제 4 대	'58 3. 31	월	'58 5. 2	금	33	4년	233	233	'60. 6. 23
제 5 대	'60 6. 27	월	'60 7. 29	금	33	4년	233	233	'61. 5. 16
제 6 대	'63 10. 26	토	'63 11. 26	화	32	4년	131	175	
제 7 대	'67 5. 8	월	'67 6. 8	목	32	4년	131	175	
제 8 대	'71 5. 1	토	'71 5. 25	화	25	4년	153	204	'72. 10. 17
제 9 대	'73 2. 9	금	'73 2. 27	화	19	6년	73	219	
제 10 대	'78 11. 24	금	'78 12. 12	화	19	6년	77	231	'80. 10. 27
제 11 대	'81 3. 5	목	'81 3. 25	수	21	4년	92	276	
제 12 대	'85 1. 23	수	'85 2. 12	화	21	4년	92	276	
제 13 대	'88 4. 8	금	'88 4. 26	화	19	4년	224	299	
제 14 대	'92 3. 7	토	'92 3. 24	화	18	4년	237	299	

나. 참의원 선거

1952년 발췌개헌(抜萃改憲)이후 헌법은 국회를 양원(兩院)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여 오던 국회는 1958년에 치르게 될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당은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 등록절차의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내놓았다. 이러한 두 개의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의 상정과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80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양안을 절충한 단일협상안을 작성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을 공포하였다.

참의원 의원 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 도(道)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에 선거에 관한 일반사항은 민의원선거법을 준용(準用)토록 하였고 법 공포 후 1년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1960년 4·19를 맞이하게 되었다. 4·19이후 제2공화국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조항도 수정되었는데, 1958년에 마련된 참의원 선거법과 비교하여 볼 때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선거구를 서울특별시와 도(道)단위로 하고 의원정수를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인 내지 8인으로 하였으며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당별 당선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자가 해당선거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制限連記投票制)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일에 전국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제5대 민의원선거와 더불어 초대 참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대선거구제 실시로 후보자는 최저 7인에서 최고 34인까지 출마하였으며, 정치의식과 수준이 낮은 관계로 서울을 제외한 그밖의 9개의 도에서 기호 1번이 전부 당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총의석의 53.4%인 31석을 차지하였고 자유당은 겨우 4석만을 얻었다. 그 외에 사회당, 한국사회당 등이 각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무소속의 당선자는 전체의 34.5%인 20명이었다.

대선거구제와 제한연기투표제에 의하여 민주당은 39.0%의 득표로 53.4%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에 무소속은 49.3%의 득표율로 총의석의 34.5%만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전역을 2부로 나누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은 85.5%로서 전국 평균인 84.1%와 거의 비슷한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선거결과 6명의 참의원 정원 가운데 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고창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창 출신의 강택수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얻어 참의원 부의장으로 피선된 소선규 의원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 초대 참의원선거 현황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및 단체명	득표수	비고
계			16인			1,878,900	
梁春根	남	36	무직	청주대졸 육군대령	무소속	163,181	당선 2부
姜澤秀	〃	53	〃	일본동양대졸 전주사범교장	민주당	197,071	당선 1부
柳壽福	〃	45	〃	전주고보졸 도의원	〃	133,392	
嚴敏永	〃	45	변호사	일본구주상대졸 미시카고대학원졸 경희대법대학장	〃	133,459	당선 2부
李承穆	〃	59	무직	明大전문부졸	무소속	53,734	
宋邦鑄	〃	47	이사	연전졸 제2·3대민의원	〃	165,206	당선 1부
閔晶植	〃	61	무직	와세다대졸 민주당중앙상임위원	민주당		사퇴
申奎植	〃	53	민의원	와세다대졸 제3·4대민의원	자유당	93,573	
朴東根	〃	47	광업	상고졸 도의회의장	무소속	53,740	
李愚植	〃	58	변호사	경성법전졸 대법관	〃	91,748	
金基玉	〃	45	〃	변호사시험합격	민주당	124,514	
李要漢	〃	61	농업	佛專2년졸 제헌의원·전북지사	자유당	78,984	
盧銳濕	〃	56	문교계 단이사	고려대졸 서울시상공국장	무소속	46,668	
嚴秉學	〃	42	농업	전주고보4년수료 제2대민의원	민주당	139,983	당선 2부
蘇宣奎	〃	56	정치인	福島高商졸 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	264,695	당선 1부
金秀學	〃	64	회사 중역	京都帝大졸 제2대민의원	자유당	67,259	
金奉斗	〃	54	농업	일본明大졸 제헌의원	무소속	70,883	
金大容	〃	47	변호사	九州帝大졸 판사	〃		사퇴

□ 초대 참의원 정당별 당선 상황

정당별 / 구분	민주당	자유당	무소속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한국독립당	기타단체	합계
후보자수	60	11	115	7	2	1	5	201
당선자수	31	4	20	1	1	—	1	58

2. 도의원 선거

가. 제1대 도의원 선거

제헌헌법은 제96조와 제97조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포함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제헌국회는 이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분권화(分權化)에 따르는 집권의 불안을 고려하여 법률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하자는 李承晩측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야 제정공포되었다. 이 초대 지방자치법은 다시 동년 12월 제1차 개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시와 도 및 시·읍·면으로 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견제케 한다.

③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한다.

④ 집행기관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장, 도에는 도지사, 그리고 시·읍·면에는 각각 시·읍·면장을 두며 이들 중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간접 선출된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1950년 12월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韓國動亂)이 발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는 갑자기 1952년 4월 임시수도를 부산에 두고 있는 전쟁의 와중 속에서 지방의회선거를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위해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의도를 지닌 이승만의 책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의 간선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선개헌을 시도하였는데 원외자유당의 세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하여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지방의회선거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쟁 중에 선거가 치루어진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자치장 선출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에 관한 조항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와 같이 선거권 연령은 만21세 이상이며, 금치산자(禁治産者)나 형집행(刑執行)중에 있는 자 등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내 동일자치단체(同一自治團體)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이면 모두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주어지며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선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군·구의 구역으로 한다.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시·읍·면 의회의원의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는 도규칙(道規則)으로 정하되 이 역시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④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에 의하고 후보자가 의원정수에 미달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

시군명	의원정수	자유당	민주당	한청	국민회	무소속
계	32	16	1	6	1	8
전주시	2	1				1
군산시	2	1	1			
이리시	1	1				
진안군	2					2
금산군	2	2				
무주군	1	1				
장수군	1			1		
임실군	2	2				
고창군	4	3		1		
부안군	3	1				2
김제군	5	2		2	1	
옥구군	3	1		1		1
익산군	4	1		1		2

□ 도의원 당선 상황표

의원정수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4	64,659	54,518	51,586	3,322

□ 제1대 도의원 선거현황

후보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정 당	득 표	비 고
安基南	1914. 2. 14	대산면 매산리	농업	중졸	면 장	자유당	11,129	당선
朴東鎭	1903. 7. 5	고창읍 읍내리	〃	대졸	중 학 교 장	〃	7,516	〃
裵祥基	1923. 2. 25	고창읍 읍내리	〃	전졸	한청군부단장	한 청	7,046	〃
朴聖烈	1916. 1. 12	무장면 무장리	〃	중졸	면 장	자유당	6,413	〃
鄭淳默	1906. 6. 14	성송면 계당리	광업	〃	회 사 사 장	〃	5,021	차점
韓敏煥	1913. 5. 14	흥덕면 흥덕리	농업	국졸	〃	무소속	3,775	
李昇淵	1916. 3. 20	정주시 수성동	기 자	중졸	학 원 장	〃	4,035	
李昌奎	1906. 2. 2	심원면 연화리	농업	〃	면 장	〃	3,496	
金在沃	1916. 1. 10	전주시 전동 121	변호사	대졸	판 사	〃	3,155	

이러한 선거규정에 의하여 전선(戰線)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와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전국 도의회 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81%가 투표에 참가하여 30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4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친 반면 여당인 자유당은 의원 총수의 48%인 147석으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한청(韓靑), 노총(勞總), 국민당(國民黨)등의 친여세력을 합하면 여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 〉에서 보는 것처럼 4인의 정수에서 자유당이 3석, 한청(韓靑)이 1석씩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원 4석을 놓고서 9인의 후보가 경쟁하여 2.3 대 1의 경쟁력을 보였다.

나. 제2대 도의원 선거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선거의 방식에 적

지않은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로 바뀐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이 폐지된 것이다.

이밖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선거권에 있어서 주소요건을 6개월에서 90일로 완화하였고 둘째,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후 3년까지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는 것과 셋째, 선거구에 있어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선거구는 민의원 의원선거구를 분할·확정하여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는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투표현상이 나타났다. 도시성이 약한 충청북도에서는 의원정수 30석 중에서 1석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 전의석을 차지하였고, 강원도의 경우도 총 25석 중에서 2석을 제외한 23석을 자유당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의원정수 47명 중 자유당은 단 1석을 차지하였을 뿐이고 민주당이 40석, 무소속이 5석, 그리고 농민회가 1석을 차지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19석 중에서 4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을 뿐이고 무소속이 10석, 국민회가 3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대구의 경우 총 9석 중에서 2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고, 민주당이 6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얻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원 44석 중에서 자유당이 16석, 민주당이 6석, 그리고 나머지 22석을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제2대 도의원 선거 현황

□ 제1선거구

성 명	성 별	나 이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裵鮮基	남	35	고창군 고창읍 85	양조	대 졸	도의원	자유	12,139	당 선
金仁錫	〃	38	고창 대산 중산리	농업	중 졸	수리조합장	자유	9,126	차 점

□ 제2선거구

성 명	성 별	나 이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韓勳燁	남	43	고창 흥덕 흥덕리	농 업	중 졸	회사사장	자유	5,945	당 선
李昇淵	〃	40	고창 부안 오산 183	〃	정치학교졸	당 원	민주	5,256	차 점
金永春	〃	41	고창 신림 법지 205	〃	경학원졸	면 장	무	1,595	
柳烈碩	〃	53	고창 신림 외화리	〃	중 졸	면의원	자유	3,130	
金利洙	〃	35	고창 부안 용산 490	〃	전문졸	교 원	무	2,073	
尹炯重	〃	43	고창 부안 사창리	〃	중 졸	면의원	〃	860	
柳齊煥	〃	36	고창 아산 목동리	〃	〃	면 장	〃	3,146	

□ 제3선거구

성 명	성 별	나 이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聖烈	남	40	고창 무장 무장 64	농 업	중 졸	도 의 원	자 유	8,869	당 선
金鍾洙	〃	26	고창 해리 방축리	〃	대 재	〃	무	7,195	차 점
李柱洙	〃	31	고창 해리 기호 187	〃	중 졸	면 서 기	〃	2,106	
李鍾涉	〃	44	고창 해리 라과 100	〃	대 졸	교 원	〃	3,171	

고창군의 경우 정원수에 있어서 제1대 때에는 4인이었으나 이번에는 3인으로 조정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대 때에는 고창군 전체에서 4인을 득표순으로 뽑는 중선거구제였으나 제2대 때에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창군의 선거구는 3지구로 분할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이 포함되었고, 제2선거구는 성내면, 흥덕면, 신림면, 부안면, 아산면을, 그리고 제3선거구는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공음면, 무장면을 포함하였다.

당선자들은 모두가 무소속이었다. 제1선거구에서 당선한 배상기 의원은 제1대 때에도 도의원에 당선된 관록을 가진 재선의원으로, 제2대 전라북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피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훈엽 의원은 제1대 때에는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기어코 당선을 차지하여 초선의원이 되었다.

제3선거구에서 당선한 박성열 의원은 제1대에 이어 또다시 당선되는 재선의원이 되었다. 각 후보별 득표현황은 위와 같다.

다. 제3대 도의원 선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1958년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장(長)의 선거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자유당은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1958년 12월 24일 소위 2·4파동시 자유당 의원들만에 의해 신국가보안법(新國家保安法)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은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1960년 8월에야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법은 사용되지 못한 채 4·19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도 바꾸어짐으로써 지방자치법은 또 한차례의 손질을 요구하였다. 7·29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는 곧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선거관계 조항을 이전의 지방자치법의 관계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완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헌법에 규정된 시·읍·면장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② 선거권의 연령을 민의원(民議院) 및 참의원(參議院) 선거에서와 같이 만 2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피선거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및 시·읍·면장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만 25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경우는 만30세 이상으로 하였다.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하는 자서식(自書式)투표제도를 채택하였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선거에서와 같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였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선거구와 당선자 결정은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1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제3대 도의원선거가 1960년 12월 12일에 치루어졌다. 선거 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투표참여율이 1차와 2차선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1차 도의원선거의 투표율은 81%, 제2차 선거의 투표율은 86%였으나 제3차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61.4%에 머물렀다. 둘째,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전체 의석 중 민주당과 신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무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유권자 1,096,308명의 71.8%인 787,62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투표율은 제1회의 83%, 제2회의 90%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조한 것으로 점차 도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내 도의원 정수 48명에 대해 178명이 입후보하여 3.7대 1의 경쟁율을 보였는데 당선자를 당적별로 보면 민주당이 26명, 무소속이 17명, 신민당이 5명으로 되어 있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3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고창지구 출신은 鄭基洙, 朴用奭, 李仁圭, 李昇淵 등 4명이었다.

라. 제4대 도의원 선거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지금까지 그 실시를 미루어 온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재연되었다.

야당의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는 제12대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를 의결하였고 이듬해인 19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 시·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 졌는데, 제1선거구에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등이 포함되고, 제2선거구에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3선거구에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등이 포함되었다.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의 선거결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그대로 판을 쳐 이 지역에서는 평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북도의 경우 평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정치판도를 그대로 재연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3인의 당선자 모두가 평민당원이었다.

각 선거구의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卓 正 淵	민 주 자 유 당	2,825	
崔 百 圭	신 민 당	9,606	당 선
鄭 厚 泳	무 소 속	3,915	

□ 제2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 成 宇	민 주 자 유 당	3,878	
崔 康 善	신 민 당	6,742	당 선
金 榮 俊	무 소 속	1,264	
李 相 振	무 소 속	3,250	

□ 제3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朴 炳 煒	민 주 자 유 당	2,625	
金 容 元	신 민 당	9,140	당 선

3. 군의원 선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1990년 12월 31일 전문개정이 이루

어지고, 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으로써 동년 3월 26일에 자치구 시·군을 포함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의 정수는 5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각 면단위로 1인씩 13명과 고창읍 2인을 합쳐 15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초단체 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특색은 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 지방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정당이 관여하는 선거가 되었다. 후보들은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물에 당적표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암암리에 이용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야당인 평민당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 군의원 후보자 현황

□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고창읍	1	金相國	남	1942. 3. 16	고창읍 읍내리 590-1	상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수료	고창고 육성회장 구시포종합개발위원장	
	2	金蒼勇	〃	1933. 12. 11	고창읍 읍내리 256-12	상업	고 졸	평민당부위원장	
	3	陳南灼	〃	1947. 2. 10	고창읍 교촌리 85-10	사업	전주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연구회장	당 선
	4	金東勳	〃	1937. 11. 2	고창읍 읍내리 268-5	상업	고 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당 선
고수면	1	金沃鉉	〃	1932. 5. 23	고수면 장두리 139	농업	고 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2	李鍾云	〃	1946. 5. 10	고수면 상평리 636	농업	고 졸	평민당고수면책	당 선
	3	柳信承	〃	1955. 3. 25	고수면 남산리 439	농업	인천체육대졸	고수면체육회부회장 고수면청년회장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아산면	1	柳顯泰	〃	1931. 2. 1	아산면 목동리 158	농업	중졸	아산면농협조합장 16년 역임 아산중학교육성회장역임	
	2	崔亨植	〃	1952. 11. 18	아산면 중월리 335	상업	고졸	정읍농고총학생회장 고창자동차공업사대표	당선
	3	成鎭益	〃	1955. 4. 3	아산면 목동리 272	농업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창군예향청년회이사 (유)대부관광사장	
무장면	1	李敎禹	〃	1934. 1. 17	무장면 강남리 178	농업	성균관유도회본부 경학원수료	무장향교전교 고창군새마을지부회원회장 정읍검찰청소년선도위원	당선
	2	金南圭	〃	1952. 5. 7	무장면 무장리 59-2	상업	국졸	무장영선출학교육성회장 체육회부회장	
	3	鄭基杓	〃	19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건설업	고졸	민주평통위원	
	4	林炳吉	〃	1934. 11. 20	무장면 송현리 295	농업	고졸	고창군정자문위원	
	5	朴鎭洙	〃	1954. 4. 8	무장면 무장리 345-2	농업	고졸	무장면체육회총무 평민당민연청지회장	
공음면	1	崔錫基	〃	1947. 3. 10	공음면 칠암리 558-3	상업	고졸	공음농협감사 평민당공음면조직책	당선
	2	羅信柱	〃	1943. 10. 11	공음면 칠암리 588-3	사업	고퇴	신영석재이사	
	3	金潤哲	〃	1949. 10. 3	공음면 장곡리 365	농업	전북농대졸	새마을지도자	
상하면	1	李又衍	〃	1944. 12. 8	상하면 자룡리 360	농업	고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상하면새마을협의회장	
	2	金亮鎭	〃	1948. 11. 4	상하면 검산리 432	농업	고졸	평민당고창지구당 조직부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해리면	1	金漢炳	남	1926. 2. 6	해리면 하련리 110-6	농업	고졸	정주시청선도위원회 고창군회장	
	2	鍾沖洙	〃	1957. 12. 7	해리면 하련리 205-2	상업	고졸	장주석산고총동창회장 한겨레신문지국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3	李晩雨	〃	1954. 12. 29	해리면 하련리 155	수산업	대재	고창JC회장 평민당해리면운영위원장	
	4	吳均鎬	〃	1945. 12. 16	해리면 하련리 208-6	상업	건국대학교 대학원수료	해리초·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당선
성송면	1	李鍾財	〃	1955. 3. 27	성송면 계당리 571-2	상업	고퇴	평민당성송면책 항공학교설립반투위원장	
	2	潘琪鎭	〃	1935. 1. 20	성송면 항산리 79-1	농업	고졸	전새마을군지회장 새마을협의회도부회장	당선
대산면	1	趙重賢	〃	1933. 11. 13	대산면 매산리 175-7	농업	전북대학교 대학원수료	전북부산물비료협의회장	
	2	鄭泰洙	〃	1943. 11. 9	대산면 광대리 589	농업	고졸	대성고등학교이사	
	3	具貴會	〃	1943. 10. 5	대산면 연동리 601	농업	고졸	동아일보대산지국장	
	4	金正基	〃	1940. 5. 15	대산면 중산리 927	농업	고졸	대산농협이사	
	5	金起采	〃	1949. 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농업	고퇴	민주당군선거대책위원 고창경찰서행정자문위원 평통정책자문위원	당선
심원면	1	李在洙	〃	1951. 8. 21	심원면 연화리 723-3	수산업	중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대표	등록무효
	2	劉已奉	〃	1940. 3. 28	심원면 두어리 327	농업	국졸	고창군청군정자문위원 심원농협수석이사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심원면	3	全鍾烈	남	1946. 9. 26	심원면 월산리 629	수산업	고졸	산림조합감사 청소년선도위원	당선
	4	李甲鑑	〃	1934. 5. 15	심원면 주산리 667	농업	해리고등공민학교수료	1970~1987년까지 심원면아당면책역임	
흥덕면	1	愼世宰	〃	1943. 6. 13	흥덕면 사천리 53	농업	대졸	예비군중대장 선거인당선	당선
	2	李伯龍	〃	1936. 10. 19	흥덕면 치룡리 596-5	도정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위원장	
성내면	1	高炳允	〃	1940. 5. 12	성내면 옥계리 543	농업	고졸	성내단협근무 성내면농민회장	당선
	2	朴炳燁	〃	1936. 7. 27	성내면 산림리 279	농업	고졸	성내국교육성회장	
신림면	1	申東夏	〃	1942. 1. 22	신림면 벽송리 57	농업	중졸	법률신문고충보급소장	
	2	柳吉圭	〃	1929. 12. 18	신림면 무림리 139	농업	전북대학원졸	신림단협장 (주)한림공영이사 광주고등지구당운영위원	당선
	3	柳煥永	〃	1938. 2. 8	신림면 무림리 124	농업	국학대학 법률과졸	신림면새마을협의회장 고창군군정자문위원	
	4	李東範	〃	1948. 4. 29	신림면 덕화리 287	농업	전북대학원재학	신림단협이사 고창군농촌지도자부회장	
부안면	1	全在準	〃	1932. 8. 5	부안면 중흥리 146	상업	고퇴	중흥정미소운영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
	2	金海東	〃	1937. 2. 24	부안면 사창리 243	도정업	국졸	고창군청군정자문위원 한국양곡가공협회고창지부장·삼계농협이사	
	3	張世泳	〃	1949. 8. 29	부안면 검산리 71	상업	고졸	정주지청상임선도위원	

4. 읍·면의원 선거

가. 제1대 읍·면의원 선거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어, 그해 12월에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1차 시·읍·면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승만은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위하여 반국회운동(反國會運動)을 전개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실시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세력기반인 원외자유당 인사들이 지방의회를 장악케 함으로써 반대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선거결과 선거인 총수의 약 90%가 선거에 참여하여 378명의 시의원과 1,115명의 읍의원, 그리고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당이 25.3%, 자유당 기간단체가 31.3%를 차지함으로써 이승만은 그의 세력기반을 시·읍·면의원 선거에서 구축할 수 있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전체의석의 0.2%밖에 차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승만의 지방의회를 통한 반국회투쟁의 의도는 적중한 셈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의 경우 면의원 179명 중에서 자유당이 84석, 국민회가 5석, 한청이 2석, 그리고 무소속이 86석을 차지하였다.

제1대 면의원들의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면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 고창읍(高敞邑)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曺必承	45	한문수업	농업	402	무소속
朴東英	41	소졸	약국상	381	〃
徐東鉉	30	〃	면서기 3년	364	자유당
洪鍾升	53	〃	경찰관 3년	317	무소속
金一炳	38	〃	면서기 3년	270	자유당
申吉同	49	〃	군서기 3년	260	무소속
林柱成	27	중학중퇴	무	454	〃
趙澤承	42	한문수업	농업	414	〃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林洪祚	57	소졸	농업	298	국민회
金在昌	39	중졸	군서기 3년	404	무소속
徐用鉉	34	〃	〃	402	〃
金在喆	42	소졸	이장 2년	389	〃
柳弘錫	38	무	농업	383	〃
柳翰錫	41	한문수업	〃	282	〃

□ 고수면(古水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安秉浩	55	한문수업	농업	270	무소속
柳龍胎	35	소졸	〃	259	자유당
徐致容	50	한문수업	〃	219	무소속
金在吉	48	〃	〃	199	〃
李圭烈	65	〃	〃	209	〃
朴暢休	40	소졸	〃	195	〃
金鳳會	38	한문수업	〃	182	자유당
金四春	47	〃	〃	180	무소속
趙炳學	38	〃	〃	295	〃
安錫元	58	〃	〃	225	〃
金玉植	42	〃	〃	222	자유당
柳鳳錫	42	〃	〃	201	무소속

□ 성송면(星松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鄭琪煥	44	소졸	농업	407	무소속
姜壽遠	41	한문수업	〃	302	〃
鄭休燮	44	소졸	〃	400	〃
鄭休成	50	〃	〃	296	〃
姜汰文	47	한문수업	〃	318	〃
朴今年	47	〃	〃	218	〃
金四錫	40	〃	〃	215	〃
鄭碩均	47	〃	〃	197	〃
李基天	37	소졸	〃	268	〃
金鎭源	41	중졸	〃	193	자유당
權赫鎭	40	소졸	〃	178	무소속
庾鳳	40	〃	〃	163	〃
鄭基萬	41	〃	〃	160	〃

□ 아산면(雅山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梆濟煥	33	중졸	농업	366	자유당
朴炳元	40	소졸	면서기 3년	324	〃
申東九	49	〃	이장 9년	299	〃
姜瑢元	30	중졸	농업	257	〃
李冕載	42	소졸	경찰관 3년	무투표당선	〃
鄭四得	52	〃	이장 8년	〃	〃
金在烈	33	〃	이장 5년	〃	〃
吳福煥	38	〃	농업	〃	무소속
吳碩根	39	한문수업	구장 8년	〃	〃
趙哲振	41	〃	농업	〃	〃
李基昊	55	〃	〃	〃	〃
金判根	45	소졸	이장 3년	〃	〃

□ 상하면(上下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金在燁	38	소졸	면서기 3년	280	무소속
金剛容	51	〃	농업	221	〃
金鳳彩	30	중졸	철도국 3년	181	자유당
全白龍	41	소졸	농업	133	〃
李永圭	44	〃	〃	118	〃
金謹浩	65	한문수업	면회원 2년	108	〃
朴永武	34	소졸	농업	167	무소속
金在坤	33	〃	면서기 3년	156	〃
黃致業	47	한문수업	농업	142	자유당
吳太性	33	소졸	이장 3년	146	〃
徐奎鉉	36	〃	농업	128	〃
表尙天	45	한문수업	〃	115	〃

□ 해리면(海里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金堯哲	48	소졸	농업	325	자유당
朴炳旭	38	〃	〃	298	〃
金永泰	35	〃	이장 3년	291	〃
金大鎭	39	한문수업	농업	281	〃
成夏錫	38	소졸	이장 3년	265	〃
李鉉澤	45	〃	농업	254	〃
金喆洙	54	한문수업	이장 3년	320	〃
金彩炯	61	〃	농업	226	무소속
金湧泰	39	〃	〃	225	자유당
金一元	39	소졸	회사원 3년	189	〃
이영래	43	한문수업	이장 11년	무투표당선	무소속
이성윤	49	〃	이장 5년	〃	〃
李權泳	45	〃	이장 4년	〃	〃

□ 부안면(富安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鄭寅洛	33	중학중퇴	면서기 3년	296	무소속
曺璟煥	53	소졸	면서기 10년	276	〃
尹炯重	40	중졸	면서기 3년	241	〃
愼在晟	52	한문수업	농업	192	자유당
姜吉秀	33	소졸	〃	152	무소속
金日來	54	한문수업	〃	181	자유당
李殷雨	41	소졸	면서기 8년	312	무소속
鄭東學	35	〃	농업	223	자유당
李銓雨	30	중학중태	면서기 3년	192	무소속
趙東煥	45	한문수업	농업	158	〃
安昌憲	38	소졸	〃	195	〃
田成煒	49	한문수업	이장 4년	152	〃
趙圭晟	30	중졸	농업	125	〃

□ 흥덕면(興德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金相會	30	중학중퇴	우편국 3년	215	자유당
愼鏞善	55	소졸	농업	173	〃
朴柱燦	46	중졸	상업 8년	152	무소속
沈甲植	43	소졸	회사원 3년	139	〃
陳洙成	52	〃	구장 3년	109	자유당
李鳳吉	38	〃	회사원 3년	108	〃
崔壬煥	58	〃	이장 12년	243	〃
邊禹燮	36	중졸	이장 4년	183	〃
李采煥	39	소졸	면서기 3년	175	〃
金一南	43	〃	농업	238	무소속
朴奉基	37	〃	〃	206	〃
金鍾淑	46	〃	〃	193	자유당
金潤丙	46	〃	운전수 10년	156	무소속

□ 신림면(新林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金麟秀	30	소졸	농업	351	한청
朴祿求	39	한문수업	〃	286	자유당
李春植	59	〃	〃	231	무소속
趙成彩	55	소졸	〃	225	자유당
金長洙	27	〃	〃	235	무소속
高光泰	33	〃	〃	225	〃
奇奉錫	26	중학중퇴	〃	208	자유당
李儀權	60	한문수업	이장 7년	179	무소속
金正洙	26	대학2년수료	교원 6년	376	자유당
高光南	33	중졸	면서기 3년	347	〃
吳濟金	39	한문수업	이장 4년	274	무소속
柳熙碩	49	중졸	면서기 3년	218	민국당
柳鍾泰	39	소졸	농업	212	무소속

□ 성내면(星內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李喆洙	31	중졸	회사원 9년	275	자유당
鄭休善	28	소졸	농업	183	〃
李秉魯	47	〃	국민회 2년	225	〃
黃晶九	42	중졸	농업	248	〃
白南燮	31	소졸	경찰관 3년	276	〃
李秉淵	40	중졸	회사원 1년	232	〃
白南伊	55	한문수업	면협의원 1년	206	무소속
高判吉	51	소졸	이장 12년	166	자유당
黃鳳翼	42	〃	농업	216	〃
魯學鍾	37	〃	이장 3년	216	〃
李載範	49	〃	농업	139	〃
張禧東	41	중학중퇴	경찰관 3년	214	〃

□ 대산면(大山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金在卜	39	소졸	면서기 3년	무투표당선	자유당
金在輕	40	한문수업	이장 3년	〃	〃
姜智奎	39	소졸	〃	〃	〃
金東洽	59	한문수업	이장 3년	〃	〃
姜永秀	53	〃	이장 5년	〃	〃
李亨錫	46	전문3년수료	농업	〃	〃
安圭連	35	중졸	상업	〃	〃
鄭桂默	40	〃	이장 3년	〃	〃
吳應鍾	35	〃	면장 2년	〃	〃
辛斗碩	59	한문수업	면장 2년	〃	〃
吳晦根	36	소졸	무직	〃	〃
兪東植	45	한문수업	농업	〃	〃
奇宇燮	52	〃	〃	〃	〃

□ 무장면(茂長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金源容	54	한문수업	면서기 9년	무투표당선	자유당
金方洙	47	〃	회사원 9년	〃	〃
金正彬	47	〃	이장 9년	〃	〃
金京洙	40	〃	회사원 8년	〃	〃
李應哲	45	〃	이장 9년	〃	〃
金孟圭	37	소졸	농업	〃	〃
鄭基柱	36	〃	소방대장 1년	〃	〃
魯棟立	36	〃	이장 5년	〃	무소속
鄭基柱	31	〃	농업	〃	한청
李康洙	53	〃	〃	〃	무소속
鄭休春	36	중졸	경찰관 3년	〃	〃
鄭棋湜	31	대졸	회사원 3년	〃	〃
金允成	43	한문수업	농업	〃	〃

□ 공음면(孔音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朴允求	31	소졸	군인 3년	무투표당선	무소속
蔡弘葉	35	〃	이장 3년	〃	자유당
崔判吉	38	〃	이장 2년	〃	무소속
金宋會	35	〃	소방대장	〃	자유당
金瑢燮	41	〃	이장 8년	〃	〃
裵炯燮	52	한문수업	농업	〃	무소속
全根鎬	56	〃	〃	〃	〃
金永琪	25	소졸	군인 8년	〃	〃
鄭均澤	25	〃	군인 3년	〃	자유당
文昌煥	33	중졸	경찰관 3년	〃	〃
丁景日	56	한문수업	농업	〃	무소속
金洋奎	33	중학중퇴	경찰관 3년	〃	자유당
李泰鎭	44	소졸	농업	〃	무소속

□ 심원면(心元面)의회

당선자	연령	학력	경력	득표수	정당
鄭在厚	50	한문수업	이장 5년	무투표당선	무소속
金堯聖	45	소졸	면서기 3년	〃	국민회
陳世彦	48	〃	이장 4년	〃	무소속
朴年喆	38	한문수업	이장 5년	〃	국민회
金炳友	52	소졸	면서기 5년	〃	무소속
李寬憲	35	〃	이장 1년	〃	〃
金聖烈	49	한문수업	국민회장 8년	〃	국민회
梁珍涉	58	〃	이장 3년	〃	무소속
金在丁	55	〃	면서기 3년	〃	〃
李昌洙	29	소졸	이장 5년	〃	〃
金昌基	40	〃	면서기 8년	〃	자유당
孫亮協	52	한문수업	이장 5년	〃	〃

나. 제2대 읍면의원 선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서 간선되던 것을 주민에 의한 직선으로 바꾸었다는 것과 지방자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도 폐지시켰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변경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을 뽑는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은 제1대 지방의회 때보다 높은 안정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면의회도 갈수록 그러하였다.

고창군의 읍·면장 및 의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창읍(高敞邑) 의회

科 읍장 : 曺秉昕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裵宗璡	남	40	상업	소졸	상업 10년	무소속
徐東鉉	〃	33	농업	〃	교원	자유당
金一炳	〃	41	토목청부업	〃	〃	〃
曺珌升	〃	45	농업	〃	면의원	무소속
朴東浣	〃	33	〃	〃	〃	자유당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崔萬基	남	31	회사원	중졸	회사원	무소속
曺甲承	〃	42	농업	소졸	면서기	〃
林柱成	〃	30	〃	대졸	면의원	〃
朴南雙	〃	32	〃	소졸		자유당
金在成	〃	43	〃	〃		〃
柳泰錫	〃	28	〃	〃		무소속
嚴京雙	〃	37	〃	〃		자유당
柳弘錫	〃	37	〃	〃		〃

□ 고수면(古水面) 의회 면장 : 安秉一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丁成秀	남	49	농업	소졸	이장	자유당
安珍煥	〃	46	〃	한문수업		〃
李公雨斗	〃	27	〃	중졸	제대군인	〃
金柄鍾厚	〃	31	〃	고졸		〃
李鍾惠	〃	39	〃	중졸	순경	〃
吳鍾均	〃	27	〃	〃	제대군인	〃
朴宗點	〃	49	〃	한문수업	이장	〃
金點童	〃	33	〃	소졸	순경	〃
柳鳳錫	〃	45	〃	한문수업	면의회의장	〃
金玉植	〃	43	〃	〃	면의원	〃
安錫煥	〃	35	〃	소졸	면서기	〃

□ 아산면(雅山面) 의회 면장 : 朴良默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姜天秀	남	34	농업	소졸	이장	무소속
崔翼相	〃	34	상업	〃	이장	〃
羅弘燦	〃	37	농업	중졸	면의회의장	자유당
劉永三	〃	33	〃	중학중퇴	이장	〃
李俊載	〃	42	〃	중학중졸	이장	〃
吳永煥	〃	26	〃	소졸	군인	무소속
李寬載	〃	40	〃	중졸	면의원	자유당
林東柱	〃	42	〃	〃	이장	〃
李江煥	〃	40	〃	한문수업		〃
趙承勳	〃	27	〃	중학퇴	이장	〃
金源燮	〃	31	〃	중졸	군인	〃
趙奉勳	〃	28	〃	소졸	면의원	무소속

□ 무장면(茂長面)의회 면장 : 鄭吉洙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徐鍾來	남	37	농업	소졸	이장	자유당
金珍徹	〃	35	〃	중학중퇴	면의원	〃
金在成	〃	40	〃	소졸	이장	〃
朴龍柱	〃	41	〃	〃		〃
金澤	〃	46	〃	중학중퇴	면서기	〃
魯棟立	〃	38	〃	소졸	면의원	〃
金全順	〃	39	〃	〃	이장	〃
孫炳一	〃	30	〃	중졸	면서기	무소속
吳鳳煥	〃	30	〃	소졸	이장	자유당
鄭基湜	〃	34	〃	중졸	면의원	〃
劉相昱	〃	33	〃	소졸		무소속
金筆煥	〃	34	〃	〃		자유당

□ 공음면(孔音面)의회 면장 : 金基成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金斗會	남	47	농업	소졸		자유당
崔福男	〃	39	〃	〃	면의원	〃
羅承男	〃	37	〃	〃	신문사원	무소속
金守根	〃	54	〃	〃		〃
李鍾現	〃	33	〃	〃	소방대장	자유당
庾庸中	〃	34	〃	대졸	〃	무소속
鄭學燮	〃	60	〃	〃	면의회의장	자유당
崔必周	〃	35	〃	〃	부면장	〃
南宮炫	〃	43	〃	〃	사친회장	무소속
文昌煥	〃	63	〃	소졸		〃
全性璘	〃	53	〃	〃		〃
崔炳奉	〃	34	〃	〃	경찰 2년	자유당

□ 상하면(上下面)의회 면장 : 房二鎭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金在默	남	33	농업	대졸	면의원	자유당
金相得	〃	33	〃	중졸		〃
李蓂關	〃	55	〃	소졸	면장	〃
金鍾五	〃	32	〃	〃	경찰	〃
金容垣	〃	30	〃	〃	면서기	〃
黃致一	〃	36	〃	〃		〃
朴永默	〃	37	〃	〃		〃
魯淵熙	〃	28	〃	〃		〃
徐奎鉉	〃	37	〃	한문수업	면의원	〃
魚鍾年	〃	29	〃	소졸	면서기	〃
魯元燮	〃	46	〃	〃		〃

□ 해리면(海里面)의회 면장 : 金永泰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成夏徹	남	40	농업	소졸	면서기	민주당
李鉉三	〃	28	〃	〃	〃	무소속
李喆寧	〃	42	〃	〃	이장	〃
金孟洙	〃	40	〃	〃	이장	자유당
殷俊約	〃	30	〃	대졸	회사원	무소속
成夏碩	〃	37	〃	중졸	면의원	자유당
朴錫容	〃	41	〃	소졸	이장	〃
박승철	〃	37	공무원	중졸	회사원	무소속
金一元	〃	41	농업	소졸	〃	자유당
李判雨	〃	36	〃	〃	이장	무소속
李漢泳	〃	38	〃	중졸	면서기	〃
文圭石	〃	44	〃	한문수업	이장	〃

□ 성송면(星松面)의회 면장 : 權赫鎭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姜大玉	남	39	농업	소졸	이장	자유당
鄭大默	〃	34	〃	중졸	면서기	〃
金寧海	〃	31	〃	소졸	이장	〃
鄭相烈	〃	30	〃	중졸	교원	민주당
權泰洪	〃	37	〃	한문수업		자유당
周東燮	〃	27	〃	중졸	면서기	〃
姜奉遠	〃	28	〃	소졸	〃	〃
鄭上鐸	〃	29	〃	중졸		〃
權赫承	〃	27	〃	〃	면서기	〃
鄭芳默	〃	27	〃	〃	〃	〃
權寧奉	〃	28	〃	〃	군서기	〃
庾炳泰	〃	28	〃	〃	이장	〃

□ 대산면(大山面)의회 면장 : 鄭均磨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金龍鉉	남	40	소졸	이장	자유당	농업
鄭在豊	〃	40	〃		〃	〃
趙誠柱	〃	39	중졸	면의원	〃	〃
金奉琪	〃	33	소졸	이장	〃	〃
鄭均昌	〃	33	〃	공무원	〃	〃
安鍾連	〃	25	중졸		〃	〃
卓坂洙	〃	44	〃		〃	〃
朴一南	〃	31	소졸	이장	〃	〃
吳應鍾	〃	53	〃	변장	〃	〃
李炳琪	〃	33	〃	신문기자	〃	〃
辛一夏	〃	33	〃	이장	〃	〃
鄭鳳彩	〃	34		이장	〃	〃

□ 심원면(心元面)의회 면장 : 孫亮淳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李 미 石	남	35	염 업	중학중퇴	회 사 원	무소속
李 圭 采	〃	31	농 업	소 졸	〃	자유당
裵 容 淡	〃	29	〃	〃	군 인	〃
朴 鎔 求	〃	42	〃	〃	구 장	무소속
鄭 吉 萬	〃	41	회 사 원	〃	면 서 기	〃
李 行 烈	〃	34	농 업	〃	군 인	자유당
金 辰 根	〃	31	〃	〃	〃	〃
金 鍾 遠	〃	37	〃	한문수업	구 장	〃
李 昌 洙	〃	31	〃	소 졸	면 의 원	〃
孫 奉 遠	〃	36	〃	소 중 퇴	구 장	〃
孫 奇 焱	〃	30	〃	중학중퇴	면 서 기	무소속

□ 흥덕면(興德面)의회 면장 : 愼鏞善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崔 東 煥	남	30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沈 甲 植	〃	46	상 업	〃	면 의 원	자유당
愼 鏞 椅	〃	53	농 업	중 졸		〃
鄭 点 洙	〃	26	〃	소 졸	군 인	참전회
李 奉 喆	〃	47	〃	〃		무소속
宋 在 萬	〃	33	〃	〃	이 장	자유당
李 載 南	〃	28	〃	〃	면 서 기	무소속
蔡 喆 默	〃	39	〃	〃	회 사 원	자유당
金 鍾 淑	〃	49	〃	중학중퇴	면 의 원	〃
尹 平 燮	〃	31	〃	소 졸	면 서 기	〃
朴 泰 基	〃	39	〃	중학중퇴	〃	〃

□ 성내면(星內面)의회 면장 : 高鉉圭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南 載 鋼	남	29	농업	소졸		무소속
高 箕 相	〃	30	〃	〃		〃
金 尙 永	〃	44	〃	중졸	회사원	자유당
李 國 鍾	〃	45	〃	〃	면장	〃
黃 晶 九	〃	45	〃	〃	면의원	〃
李 點 烈	〃	28	〃	소졸	〃	〃
白 南 雙	〃	36	〃	〃	〃	〃
高 河 相	〃	45	〃	〃		〃
黃 鳳 翼	〃	47	〃	한문수업	〃	〃
金 正 義	〃	50	〃	소졸		〃
魯 學 鎭	〃	38	〃	〃	〃	〃

□ 신림면(新林面)의회 면장 : 高光南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朴 東 來	남	42	농업	소졸	이장	무소속
尹 炳 贊	〃	30	〃	〃	경찰	자유당
조 익 년	〃	29	〃	〃	면서기	무소속
朴 子 承	〃	25	〃	〃	〃	자유당
李 南 信	〃	29	〃	〃	한의사	무소속
林 漢 豊	〃	38	〃	한문수업	이장	자유당
金 星 壽	〃	31	〃	소졸	면의원	무소속
金 基 立	〃	47	〃	한문수업	이장	〃
柳 甲 圭	〃	31	〃	국졸	면의원	자유당
李 三 圭	〃	52	〃	소졸	면서기	〃
吳 濟 金	〃	43	〃	〃	면의원	〃
金 元 喆	〃	29	〃	〃	대청장	〃

□ 부안면(富安面)의회 면장 : 愼在晟

당선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정당
金日來	남	57	농업	한문수업	면의화의장	자유당
李銓雨	〃	35	〃	소졸	면의원	〃
朴商圭	〃	29	〃	중학중퇴	교관	〃
崔鎭大	〃	47	〃	소졸	조합원	무소속
尹京重	〃	45	〃	〃	이장	〃
이두범	〃	53	〃	한문수업		〃
李正九	〃	39	〃	소졸		〃
金潤成	〃	29	〃	중졸		자유당
趙炳秀	〃	33	〃	소졸		무소속
曺圭晟	〃	39	〃	중학중퇴	면의원	자유당
金命植	〃	44	〃	농졸		〃
金甲童	〃	33	〃	소졸	소방대원	〃

다. 제3대 읍·면의원 선거

허정 과도내각이 퇴진하고 뒤를 이어 들어선 민주당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당이 1958년 2·4파동 때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었던 지방자치법을 다시 직선제로 복귀하는 한편 시비점을 보완하여 4·19정신에 맞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규로 도지사 및 특별시장까지 직선토록 하였다.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에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 읍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정수 92명에 대해 입후보자는 200명으로 2.2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투표율은 80.1%로 비교적 높았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9명, 민주당이 12명, 신민당이 1명으로 무소속이 단연 높은 진출을 보였다.

면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면의원 정수 1,763석을 놓고 3,465명의 후보자가 나서 약 2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1,350명, 민주당이 372명, 신민당이 37명, 기타 3명이 당선되어 면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단연 우세한 진출을 보였다.

읍장선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개의 읍장직을 놓고 40명이 입후보하여 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명, 민주당이 1명을 각각 당선시킴으로써 여기서도 무소속의 현저한 진출을 볼 수 있다.

또한 164개의 면장직에 대해 783명이 입후보하여 4.8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121명, 민주당이 40명, 신민당이 3명을 당선시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이 단연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무소속의 눈부신 진출과 민주당의 패배는 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낮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보여진다.

고창군의 읍·면의원 및 장(長)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읍·면장〉

고창읍장 : 박은구, 공음면장 : 김기성, 심원면장 : 손기염, 부안면장 : 김부성, 상하면장 : 김상득, 흥덕면장 : 이채한, 고수면장 : 이종후, 해리면장 : 김한병, 성내면장 : 이진범, 아산면장 : 이옥재, 성송면장 : 정기만, 신림면장 : 고광남, 무장면장 : 김진철, 대산면장 : 정균선(이상 14명)

〈읍·면의원〉

고창읍 : 曺源承, 崔萬基, 裵宗建, 劉慶鍾, 李起華, 曺琓承, 全昌燮, 曺甲承, 劉永會, 金永斗, 鄭瑩基, 曺東洙, 李洪雨

고수면 : 安甫淵, 吳鍾德, 徐致容, 丁成秀, 金壽鉉, 崔石金, 李義福, 安載燦, 趙常元, 劉永元, 李公雨

아산면 : 羅弘燦, 金源晩, 劉世永, 姜天秀, 朴晋根, 李鍾萬, 李俊載, 趙龍勳, 吳性烈, 趙榮奐, 康成煥, 尹奉祚

성송면 : 宋炳玉, 柳南錫, 廣炳琪, 權泰正, 洪淳錫, 周東燮, 李權鉉, 兪致旭, 姜喆秀, 鄭龍煥, 姜興錫, 柳鉉鍾

대산면 : 金容煥, 辛鍾源, 趙重賢, 金寧春, 朴在鶴, 金鍾烈, 崔炳先, 鄭昌煥, 林才衍, 丁炳熹, 金千石

무장면 : 金永來, 金在成, 柴泰洵, 李熾, 金海成, 康休權, 鄭休重, 金筆煥, 吳鳳煥, 徐鍾來, 千丙德, 金永杓

공음면 : 金守根, 金斗會, 崔龍周, 崔判吉, 羅承男, 崔福南, 權寧述, 廣庸中, 鄭奉默, 文昌煥, 李鍾現, 全性璘

상하면 : 金休源, 金在千, 孫亨澤, 裵泰熙, 朱永坤, 朴憲澤, 李運熙, 金大鎭, 金在泳

해리면 : 金在錫, 金勝坤, 金容基, 崔炳模, 李正錫, 李和範, 李錫雨, 李錫泳, 趙成夏, 李德淵, 孫俊植

심원면 : 孫基炫, 裵瑢淡, 閔炳烈, 李奎采, 陳世彦, 朴年喆, 李周憲, 孫泰述, 金翔昊, 吳壽鶴

흥덕면 : 李允錫, 金在慶, 吳元鍾, 鄭在植, 金喆洙, 金珍錫, 李正錫, 李晋寧

성내면 : 南載鎭, 李點烈, 白南燮, 高永植, 魯鎭河, 黃潤翼, 朴性仁, 黃晶九, 高光得, 李鍾基, 白一鉉, 高容淑

신림면 : 柳鍾洙, 李明儁, 金元喆, 吳東洙, 李正範, 金堯鎭, 李文千, 高大植, 趙孟連, 李承烈

부안면 : 金鍾連, 鄭得采, 朴東永, 金正鉉, 李主烈, 李京九, 金容燮, 金幸洙, 金鍾述, 崔振鎭, 申鉉根, 吳然哲

5. 교육위원 선거

자유당 정권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49년 12월 교육법을 제정하고 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52년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한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위원 선거는 특별시·도와 시·군단위의 2계층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특별시와 도의 경우에는 시·군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시·군자치구는 면·읍·동에서 직선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시·군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선출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직선된 1명씩,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창군 교육감은 李升永씨가 1·2대를, 金容純씨가 3대를 맡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각 시·군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의 대표와 도지사가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에서는 吳成鐸씨가 1·2·3대의 대표로 선출되어 도교육위원이 되었다. 오씨는 3대 때에 도부의장직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에 시작되어 3번 실시되었던 교육위원 선거는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와 더불어 그 막을 내리고 깊은 잠을 자다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4월 23일에 동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재현될 수 있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법은 자유당 시절의 2단계 관할구역을 축소하여 시·도에만 국한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을 도의회에 추천해야 하는데 이때 피추천자 2인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의회는 각 시·군·구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 1인씩을 선출하는데 이때에도 전체 담선자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경력자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의 경우 유병천과 정규동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도의회는 비교육 경력자인 유병천씨를 도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다.

□ 제1대 고창군 교육위원

성 명	연 령	직 업	경 력
林 暢 郁	41	농 업	면 장 3 년
金 憲 奎	31	농 업	면 서 기 5 년
金 榮 洙	38	회 사 원	신 문 기 자 (대 졸)
成 夏 潤	38	농 업	국 교 후 원 차 장
鄭 均 善	38	〃	면 협 의 원
愼 碩 載	35	〃	면 농 회 장

성 명	연 령	직 업	경 력
金 正 洙		〃	면 직 원 8 년
鄭 寅 洛	34	신 문 지 국	면 의 회 부 의 장
鄭 在 淳	37	농 업	소 졸
李 昌 根	36	중 학 교 장	대 졸
金 在 寬	46	농 업	사 친 회 장
金 奉 海	31	〃	중 학 중 퇴
金 允 植	62	〃	면 장 8 년
孫 葛 淳	37	〃	면 의 회 의 장

※ 제 2.3대는 자료구입 불가

6. 기타 선거

이 항에는 국회의원, 참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으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15명의 대의원 정수를 놓고 36명이 경합하여 24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경합을 하였다. 14개 지구 중 어느 지역구에도 무투표 당선이 없었다는 것은 대의원 직책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고 창 읍	金 判 淳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柳 錫 滿	1938. 3. 5	고창읍 읍내리 353-3	
고 수 면	安 井 會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 산 면	鄭 善 默	1938. 4. 5	아산면 용계리 80	
무 장 면	朴 成 宇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 음 면	庾 東 奕	1939. 3. 5	공음면 건동리 770	
상 하 면	魯 淵 業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55	
해 리 면	李 德 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6	
성 송 면	姜 聲 昱	1935. 6. 20	성송면 암치리 319	
대 산 면	康 九 丁	1929. 7. 23	대산면 회룡리 452	
심 원 면	朴 來 灼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05	
흥 덕 면	金 秉 甲	1924. 10. 3	흥덕면 치룡리 596-3	
성 내 면	李 點 烈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 림 면	高 一 圭	1930. 1. 3	신림면 무림리 452	
부 안 면	朴 知 吾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1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庾東蘭	1,504	金判淳	2,945	殷鳳灼	1,318	柳錫滿	2,615
고 수 면	崔炳日	1,728	安正會	2,019				
아 산 면	鄭善默	1,495	金永載	624				
무 장 면	朴成宇	2,954	鄭益煥	1,537				
공 음 면	鄭玟妓	1,364	庾東奕	1,941	姜大振	1,268		
상 하 면	魯淵業	2,412	金在默	1,381				
해 리 면	殷浚灼	1,512	李鍾述	1,618	李德淵	1,883		
성 송 면	姜聲昱	2,109	鄭在哲	1,639				
대 산 면	趙重賢	831	姜九丁	1,937	金範起	1,846		
심 원 면	孫亮淳	1,100	金道性	990	朴來灼	1,586		
흥 덕 면	金秉甲	2,045	李康南	1,745				
성 내 면	李點烈	1,720	金泰奭	966	李守京	848		
신 림 면	高一圭	1,667	趙主熙	1,294	李孟起	1,590		
부 안 면	朴知吾	2,529	洪淳範	1,9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748) 88,541**	**62,574**	**5,379**	**65,953**	**20,588**	**76.2**
고창읍	11	(421) 11,376	8,382	171	8,553	2,823	75.2
고수면	4	(155) 4,996	3,747	135	3,882	1,114	77.7
아산면	6	(226) 6,272	2,119	2,506	4,625	1,647	73.7
무장면	5	(261) 6,577	4,591	276	4,367	1,710	74.0
공음면	6	(205) 5,996	4,573	120	4,693	1,303	78.3
상하면	5	(134) 5,103	3,793	461	4,254	849	83.4
해리면	7	(169) 7,085	5,013	407	5,420	1,665	76.5
성송면	4	(156) 5,171	3,748	183	3,931	1,240	76.4
대산면	5	(220) 6,377	2,614	125	4,739	1,638	74.1
심원면	4	(149) 4,676	3,676	148	3,824	852	81.8
흥덕면	5	(148) 5,381	3,790	225	4,015	1,366	74.6
성내면	5	(151) 5,062	3,534	249	3,783	1,279	74.7
신림면	6	(207) 6,337	2,551	158	4,709	1,628	74.3
부안면	5	(146) 6,132	4,443	215	4,658	1,474	76.0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정수 15인에 32인이 경합하여 평균 2.1대 1의 경쟁을 보였으나 제1대 때와는 달리 무장면, 성송면, 심원면 등 3개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각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고 창 읍	曺 秉 泰	1935. 8. 21	고창읍 월암리 139	
	金 判 淳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고 수 면	安 井 會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 산 면	羅 弘 燦	1920. 12. 30	아산면 목동리 397	
무 장 면	朴 成 宇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 음 면	鄭 玟 鉉	1936. 7. 6	공음면 군유리 190	
상 하 면	魯 潤 燁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43-1	
해 리 면	李 德 淵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5	
성 송 면	鄭 哲 默	1935. 1. 15	성송면 산수리 85	
대 산 면	金 範 起	1942. 4. 3	대산면 덕천리 145	
심 원 면	朴 來 杓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25	
흥 덕 면	李 康 南	1931. 11. 7	흥덕면 신덕리 108	
성 내 면	李 點 烈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 림 면	韓 相 薰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 안 면	朴 知 吾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曺秉泰 2,342	李起華 2,276	陳南權 540	金判淳 2,455
고 수 면	安井會 2,126	李相勇 1,764	林垣柱 2,120	
아 산 면	姜程熙 2,159	羅弘燦 2,440		
무 장 면	朴成宇 무투표당선			
공 음 면	金明植 657	朴泳石 1,208	情玟鉉 1,648	金吉洙 1,462
상 하 면	魯潤燁 2,382	金俊鉉 1,908		
해 리 면	李德淵 2,707	尹錫山 2,467		
성 송 면	鄭哲默 무투표당선			
대 산 면	吳晦根 1,989	金範起 1,993	辛禹夏 1,207	
심 원 면	朴來杓 무투표당선			
흥 덕 면	金秉甲 2,002	李康南 2,171		
성 내 면	梁淳喆 1,390	李點烈 2,433		
신 림 면	高一奎 1,189	韓相薰 1,661	金永喆 1,559	
부 안 면	朴知吾 2,936	洪淳範 1,8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309) 81,941	55,005	1,931	56,936	9,640	85.5
고창읍	11	(368) 11,572	9,733	205	9,938	163	83.1
고수면	4	(115) 4,670	3,890	124	4,014	645	85.9
아산면	6	(169) 5,754	4,599	198	4,797	957	83.3
무장면	5	(158) 6,252	무투표당선				
공음면	6	(151) 5,756	4,975	157	5,132	624	89.1
상하면	5	(112) 5,063	4,290	217	4,507	556	89.0
해리면	7	(210) 6,631	5,174	216	5,390	1,241	81.2
성송면	4	(146) 4,673	무투표당선				
대산면	5	(167) 6,207	5,189	188	5,377	830	86.6
심원면	4	(88) 4,440	무투표당선				
흥덕면	5	(150) 5,119	4,173	174	4,347	772	81.9
성내면	5	(139) 4,632	3,823	95	3,918	714	81.6
신림면	6	(181) 5,338	4,409	160	4,569	769	85.5
부안면	5	(155) 5,834	4,750	197	4,947	887	84.7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제1대 통일주체 선거인 선거〉

1972년 10월 17일 '유신(維新)'의 대변혁에 의하여 제4공화국은 탄생되었다.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의 전권적 수임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구 1인에게 1구 5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선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용하였고 철저한 선거공영제 아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1972년 12월 15일과 1978년 5월 18일 각각 제1차와 제2차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1차에서는 전국 1,630개 구에서 2,359명을 선출하였으나 2차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여 1,665개 구에서 2,583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기능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 지역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위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토론도 없이 투표를 진행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게 하였다. 그리고 유정회 국회의원선거도 또한 대통령의 추천에 의한 유정회 국회의원 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치루어진 대통령선거는 1972년 12월 23일과 1978년 7월 6일에 제8·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하였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되자 1979년 12월 6일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全斗煥)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1980년 10월 22일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신에 대통령선거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인의 임무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주업무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다른 것이 있다면 대통령선거인은 대통령을 선출할 뿐 지역선거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구와 대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의원선거를 하돼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까지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추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을 초과하여 획정될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인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2인의 대통령선거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선

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1만까지마다 1인의 대통령선거인을 더 추가하여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1선거구의 인구가 5만을 초과하여 획정하는 경우 그 선거구의 대통령선거인과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인은 5,277명으로 이전보다 2배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3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것에 비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이지만 자유경쟁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제13대 대통령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 대통령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한국국민당	민권당	민주한국당	민주정의당	계			
		金鍾哲	金義澤	柳致松	全斗煥				
5,277	5,271	85	26	404	4,755	5,270	1	6	99.9
후보자별득표율(%)		1.6	0.5	7.7	90.2	100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고창읍	金寧完	1946. 3. 22	고창읍 읍내리 223	
	金東勳	1937. 11. 2	고창읍 읍내리 177	
	金正雄	1938. 6. 21	고창읍 덕산리 73	
고수면	徐淳基	1948. 9. 9	고수면 부곡리 293	
	崔炳日	1931. 3. 13	고수면 황산리 148	
아산면	姜程熙	1926. 9. 17	아산면 하갑리 67	
	鄭金悅	1939. 6. 8	아산면 남산리 645	
무장면	鄭基杓	19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李達洙	1948. 4. 18	무장면 강남리 751	
공음면	金永植	1935. 12. 29	공음면 칠암리 산 28	
	金明會	1938. 2. 27	공음면 선동리 773	
상하면	金箕柱	1927. 11. 2	상하면 장산리 1002	
	李又衍	1944. 12. 8	상하면 자룡리 360	
해리면	李晶洙	1935. 7. 19	해리면 사반리 179	
	李德潤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25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성 송 면	金 範 山	1935. 12. 12	성송면 상금리 172	
	鄭 庸 煥	1928. 8. 17	성송면 학천리 313	
대 산 면	鄭 昌 永	1941. 6. 18	대산면 덕천리 123	
	卓 正 淵	1936. 4. 14	대산면 율촌리 529	
심 원 면	韓 潤 錫	1940. 9. 1	심원면 만돌리 675	
	李 辰 奎	1940. 6. 2	심원면 주산리 170	
흥 덕 면	愼 世 宰	1943. 6. 13	흥덕면 사천리 53	
	李 伯 龍	1936. 10. 19	흥덕면 치룡리 596-5	
성 내 면	朴 秉 燁	1936. 7. 27	성내면 산림리 279	
	高 光 緑	1932. 9. 12	성내면 옥제리 406	
신 림 면	尹 正 鉉	1932. 3. 17	신림면 무림리 81	
	韓 相 薰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 안 면	朱 秉 來	1933. 2. 9	부안면 송현리 234	
	李 康 奉	1947. 11. 28	부안면 용산리 산 5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金寧完 1,860	柳清善 1,627	金東勳 2,480	柳齊旭 777	金正雄 2,535
고 수 면	徐淳基 1,105	崔炳日 1,629	安在燦 774		
아 산 면	姜程熙 1,748	劉贊植 961	鄭金悅 1,450		
무 장 면	鄭基灼 1,729	李連洙 1,511	徐吉泳 1,382		
공 음 면	金永植 1,506	金明會 1,738	金大錫 1,352		
상 하 면	金冀柱 1,579	李又衍 1,453	金 洙 843		
해 리 면	李晶洙 1,896	李德淵 1,636	趙權行 1,433		
성 송 면	李永燁 990	金範山 1,465	鄭庸煥 1,180		
대 산 면	金鍾玉 906	金敏鉉 1,303	鄭昌永 1,468	卓正淵 1,313	
심 원 면	安準鉉 987	韓潤錫 1,475	李辰奎 1,019		
흥 덕 면	愼世宰 1,088	李峴桓 1,005	李伯龍 1,468	李載南 528	
성 내 면	李載琳 761	朴秉燁 926	曺秉湜 646	高光緑 867	南栽金 411
신 림 면	尹正鉉 1,551	韓相薰 1,212	高南奎 1,167	文成烈 117	
부 안 면	朱秉來 594	李康奉 90	金在準 258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인 구 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150,292	(2,284) 75,841	63,193	1,110	64,303	(109) 11,538	84.8
고 창 읍	11	22,260	(330) 11,239	9,279	86	9,365	(23) 1,874	83.4
고 수 면	4	8,355	(102) 4,144	3,503	52	3,560	(4) 584	85.9
아 산 면	6	10,355	(158) 5,130	4,159	82	4,241	(6) 889	80.7
무 장 면	5	11,297	(180) 5,664	4,622	129	4,751	(13) 913	83.9
공 음 면	6	10,848	(188) 5,322	4,596	81	4,677	(5) 645	87.8
상 하 면	5	9,138	(139) 4,721	3,875	90	3,965	(12) 756	84.0
해 리 면	7	11,647	(170) 5,754	4,905	127	5,092	(4) 662	88.5
성 송 면	4	8,587	(154) 4,297	3,635	94	3,729	(7) 568	86.8
대 산 면	5	12,064	(167) 6,072	4,990	74	5,064	(7) 1,008	83.4
심 원 면	4	8,500	(99) 3,930	3,481	57	3,538	(8) 392	90
흥 덕 면	5	9,411	(148) 4,947	4,089	56	4,145	(8) 802	83.8
성 내 면	5	8,172	(132) 4,299	3,611	43	3,654	(3) 645	85
신 림 면	6	9,197	(144) 4,907	4,047	55	4,102	(4) 805	83.6
부 안 면	5	10,461	(173) 5,415	4,336	84	4,420	(5) 995	81.6

7.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이 장에서는 고창군에서 활동했던 각 지구당의 창당과 소멸 및 변경, 그리고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서 약술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업무가 196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 민정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 10 결성신고 (대표자 金相欽)
- 1963. 4. 18 지구당 등록

□ 민주공화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 22 결성신고 (대표자 金永寅)
- 1963. 5. 22 지구당 등록

□ 자유민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준비위원회
- 1963. 8. 13 결성신고 (대표자 金秀學)
- 1963. 8. 22 지구당 등록

□ 추풍회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 (대표자 陳斗銀)
- 1963. 9. 21 지구당 등록

□ 국민의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단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 (대표자 金相欽)
- 1963. 9. 4 지구당 등록
- 1963. 9. 15 결성신고 (대표자 李炯淵)
- 1963. 10. 5 지구당 등록

□ 민주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7 결성신고 (대표자 朴用奭)
- 1963. 9. 12 지구당 등록

□ 신한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8. 1 결성신고 (대표자 柳昇錫)
- 1966. 9. 1 지구당 등록

□ 자유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9. 16 결성신고 (대표자 鄭世煥)
- 1967. 1. 23 지구당 등록

□ 민중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7. 4. 27 결성신고 (대표자 陳斗銀)
- 1967. 5. 1 지구당 등록

□ 대중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8. 1. 20 결성신고 (대표자 李炯淵)
- 1968. 2. 15 지구당 등록
- 1970. 1. 22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대표자 徐用鉉)
- 1970. 4. 28 지구당 등록

□ 신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9. 9. 10 결성신고 (대표자 金相欽)
- 1969. 9. 18 지구당 등록

□ 통민당(가칭) : 전북 제10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1. 1. 13 결성신고 (대표자 金鳳九)
- 1971. 5. 8 중선관정 제813호(71. 5. 5) 중앙당 등록 취소통지에 의해 말소

□ 민주통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3. 1. 16 결성신고 (대표자 李熙天)
- 1973. 1. 23 지구당 등록

□ 민주정의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15 결성신고 (대표자 陳鎭鍾)
- 1981. 1. 5 지구당 등록

□ 민주한국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 (대표자 金珍培)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민주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 (대표자 曺秉厚)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한국국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 (대표자 李昊鍾)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8 결성신고 (대표자 鄭均桓)
- 1981. 1. 24 지구당 등록

□ 민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14 결성신고 (대표자 崔在燮)
- 1981. 1. 24 지구당 등록

※ 1988. 3. 17.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으로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고창군 위원회가 정당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음.

□ 민주정의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3. 24 결성신고 (대표자 李昊鍾)
- 1988. 4. 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2 결성신고 (대표자 鄭在吉)
- 1988. 10. 2 활동기간 만료로 소멸

□ 평화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6 결성신고 (대표자 鄭均桓)
- 1988. 4. 1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9. 3. 20 결성신고 (대표자 鄭在吉)

나. 지구당 등록상황

□ 민정당
- 1963. 4. 10.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在규)
- 1965. 6. 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민주공화당
- 1963. 5. 6.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炯寅)
- 1963. 8. 12. 대표자 金炳鐸으로 변경 등록
- 1964. 9. 26. 대표자를 愼鏞南으로 변경 등록
- 1968. 8. 27. 당기위원회 규정 18조(제명)에 의하여 대표자 愼鏞南 제명
- 1969. 3. 4. 대표자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70. 7. 29. 대표자 직무대행 金秉甲으로 변경 등록

- 1971. 1. 21. 법개정에 따라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단 변경 등록
- 1971. 3. 11. 愼鎬南으로 변경 등록
- 1971. 8. 23.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73. 6. 14. 정당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편 보완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玉)
- 1979. 7. 18. 대표자 李昊鍾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자유민주당

- 1963. 8. 23. 전북 제9지구당(高敞) 등록 (대표자 金秀學)
- 1964. 12. 4. 민정당으로 흡수 합당

□ 국민의당

- 1963. 9. 4.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63. 9. 10. 중앙당의 지구당 창당취지통지에 따라 말소
- 1963. 10. 5. 전북 제9지구당 등록 (대표 李炯淵)
- 1964. 10. 8.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 민주당

- 1963. 9. 12.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朴鍾律)
- 1964. 12. 8. 대표자를 李炯淵으로 변경 등록
- 1965. 6. 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추풍회

- 1963. 9. 21.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陳斗銀)
- 1964. 3. 20. 대표자 安判童으로 변경 등록
- 1967. 3. 31.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지구당의 명칭이 통한당으로 변경 등록

□ 민중당

- 1965. 6. 25.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민정당과 민주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함) (대표자 金相欽)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1967. 5. 1. 지구당 등록 (대표자 陳斗銀)
- 1972. 9. 18. 법개정에 의하여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3. 7. 2. 중선관정제 607호 지구당 취소통지에 의거 말소

□ 신한당

- 1966. 9. 1.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淵)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자유당

- 1967. 1. 23.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鄭世煥)
- 1970. 2. 2. 신민당으로 흡수 합당

□ 통한당

- 1967. 3. 31. 전 추풍회가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등록 (대표자 安判童)
- 1971. 5. 4. 중선관정제 780호 중앙당 등록 취소통지에 의하여 말소

□ 신민당

- 1967. 4. 7.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 (신한당과 민중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
- 1969. 9. 8. 정당법 제39조에 의해 자진 해산
- 1969. 9. 1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70. 2. 2. 자유당을 흡수 합당
- 1970. 10. 1. 대표자 李元祥로 변경 등록
- 1971. 2. 1.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4. 13. 대표자 陳懿鍾으로 변경 등록
- 1973. 6. 27. 선거구 조정으로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개편 보완 등록 (대표자 金相欽)
- 1980. 4. 29. 대표자 金相欽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대중당

- 1968. 2. 15. 전북 제9지구당(高敞)으로 등록 (대표자 李炯淵)
- 1969. 12. 26. 등록 취소 (법정 당원부족으로)
- 1970. 4. 2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徐甲鉉)
- 1971. 1. 16. 전북 제10지구당(高敞)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5. 10. 지구당 자진 해산

□ 민주통일당

- 1973. 1. 23.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대표자 李熙天)
- 1978. 5. 8. 대표자 金一凡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민주정의당

- 1981. 1. 5.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대표자 陳懿鍾)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井邑)에 이관

- 1990. 2. 15.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신설합당

□ 한국 국민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李昊鍾)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주한국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金珍培)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주사회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에 등록 (대표자 曺乘厚)
- 1981. 1.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권당

- 1981. 1. 2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崔在燮)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위원회(井邑)에 이관

□ 사회당

- 1981. 1. 24. 전북 제6지구당(高敞 扶安)으로 등록 (대표자 鄭均桓)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위원회(井邑)에 이관

□ 민주자유당

- 1990. 5. 15. 전북 고창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李昊鍾)
- 1994. 10. 18. 대표자 변경등록 (대표자 金柱燮)

□ 신민주연합당

- 1991. 4. 13. 명칭변경 등록 신청
- 1991. 4. 15. 명칭 변경 승인
- 1991. 9. 16.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신설 합당

□ 민주당

- 1991. 9. 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 통일국민당

- 1992. 3. 7.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1994. 7. 15.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의 신설합당

□ 새 한국당

- 1992. 11. 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林東甲)
- 1995. 3. 6. 새한국당 민주당 흡수합당

□ 신민당

- 1994. 7. 8.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1995. 5. 31. 신민당 자유민주연합 신설합당

□ 자유 민주연합

- 1995. 5. 31.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魯棟采)

□ 새정치 국민회의

- 1995. 9. 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鄭均桓)

다. 연락소 등록상황

□ 민주정의당

- 1982. 2. 25. 전북 제6지구당 고창군 연락소로 등록 (대표자 李相禧)
- 1988. 3. 24.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읍, 고창에서 고창지구가 분리되어 소선거구가 되면서 당지구당 연락소는 소멸

제 2 장 의원선거 및 개원준비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2. 의원 당선자 현황

제2절 개원 준비
1. 의회 사무기구 신설
2. 지방자치 관련 조례·규칙 정비
3. 원구성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고창군 의회 정수는 15명에 45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3대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3개면(아산·흥덕·부안)의 보궐선거 지구에는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대1의 경쟁율을 보였고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5	6	계				
				김상필	김창용	진남표	김동훈							
고창읍	부재자	416	403	120	56	91	83			350	53	13	96.9	86.8
	1 투	1,426	1,034	137	139	294	452			1,022	12	392	72.5	98.8
	2 투	1,458	1,022	220	170	279	335			1,004	18	436	70.1	98.2
	3 투	1,437	1,065	322	170	228	333			1,053	12	372	74.1	98.9
	4 투	1,732	1,189	293	194	297	386			1,170	19	543	68.6	98.4
	5 투	1,561	1,072	250	173	310	323			1,056	16	489	68.7	98.5
	6 투	656	492	116	46	88	233			483	9	164	75.0	96.9
	7 투	253	192	48	43	34	61			186	6	61	75.9	96.9
	8 투	722	483	136	67	96	176			475	8	239	66.9	98.3
	9 투	719	528	155	70	110	185			520	8	191	73.4	98.5
	10 투	826	593	131	98	186	161			576	17	233	71.8	97.1
	11 투	1,054	709	174	126	203	197			700	9	345	67.3	98.7
	계	12,260	8,782	2,102	1,352	2,216	2,925			8,595	187	3,478	71.6	97.8
				김옥현	이종운	유길승								
고수면	부재자	156	148	39	57	36				132	16	8	94.9	89.2
	1 투	1,455	1,058	215	440	374				1,029	29	397	72.7	97.3
	2 투	623	437	94	210	126				430	7	186	70.1	98.4
	3 투	725	573	281	208	76				565	8	152	79.0	98.6
	4 투	591	411	60	268	77				405	6	180	69.5	98.5
	계	3,550	2,627	689	1,183	689				2,561	66	923	74.0	97.5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5	6	계				
				류현태	최형식	성호익								
아	부재자	196	193	74	70	27				171	22	3	98.5	88.6
	1투	755	575	218	279	72				569	6	180	76.2	99.0
	2투	772	584	111	308	156				575	9	188	75.6	98.5
산	3투	557	408	88	215	99				402	6	149	73.2	98.5
	4투	741	543	122	249	167				538	5	198	73.3	99.1
	5투	375	268	93	79	87				259	9	107	71.5	96.6
면	6투	899	648	184	292	151				627	21	251	72.1	96.8
	계	4,295	3,219	890	1,492	759				3,141	78	1,076	74.9	97.6
				이돈우	김남규	정기표	임병길	박진수						
무	부재자	254	246	65	31	39	28	45		208	38	8	96.9	84.6
	1투	1,064	764	188	124	74	288	80		754	10	300	71.8	98.7
	2투	704	530	162	139	65	48	103		517	13	174	76.3	97.5
장	3투	729	522	335	30	54	53	38		510	12	207	71.6	97.7
	4투	1,008	734	299	51	190	79	103		722	12	274	72.8	97.7
면	5투	1,139	844	261	258	81	99	126		825	19	295	74.1	97.7
	계	4,898	3,640	1,310	633	503	495	495		3,536	104	1,258	74.3	97.1
				최석기	나길주	김윤철								
공	부재자	239	232	80	50	75				205	27	7	97.1	88.4
	1투	874	670	240	303	112				655	15	204	76.7	97.8
	2투	1,031	779	253	191	323				767	12	252	75.6	98.5
음	3투	733	523	281	134	101				516	7	210	71.4	98.7
	4투	800	575	295	181	93				569	6	225	71.9	99.0
	5투	512	392	169	112	106				387	5	120	76.6	98.7
면	6투	272	197	75	88	28				191	6	75	72.4	97.0
	계	4,461	3,368	1,393	1,059	838				3,290	78	1,093	75.5	97.7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5	6	계				
				이우연	김양진									
상	부재자	116	113	33	57					90	23	3	97.4	79.6
	1투	828	638	187	438					625	13	190	77.1	98.0
	2투	590	436	82	345					427	9	154	73.9	97.9
하	3투	298	215	64	145					209	6	83	72.1	97.2
	4투	820	604	314	276					590	14	216	73.7	97.7
면	5투	810	629	303	310					613	16	181	77.7	97.5
	계	3,462	2,635	983	1,571					2,554	81	827	76.1	96.9
				김한병	한충호	이만우	오균호							
해	부재자	157	151	17	23	44	50			134	17	6	96.2	88.7
	1투	1,245	984	263	168	190	348			969	15	261	79.0	98.5
	2투	562	414	72	47	112	177			408	6	148	73.7	98.6
	3투	369	286	49	58	92	83			282	4	83	77.5	98.6
리	4투	480	358	81	78	62	129			350	8	122	74.6	97.8
	5투	748	581	79	48	130	306			563	18	167	77.7	96.9
	6투	781	577	225	43	123	172			563	14	204	73.9	97.6
면	7투	614	460	115	44	164	135			458	2	154	74.9	99.6
	계	4,956	3,811	901	509	917	1,400			3,727	84	1,145	76.9	97.8
				이종위	반기진									
성	부재자	166	164	67	80					147	17	2	98.8	89.6
	1투	761	533	273	251					524	9	228	70.0	98.3
송	2투	939	737	296	423					719	18	202	78.5	97.6
	3투	810	618	289	315					604	14	192	76.3	97.7
	4투	624	456	216	222					438	18	168	73.1	96.1
면	계	3,300	2,508	1,141	1,291					2,432	76	792	76.0	97.0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5	6	계				
대산면				조증현	정봉수	구귀회	김정기	김기채						
	부재자	264	257	31	92	14	43	46		226	31	7	97.3	87.9
	1투	1,025	782	16	226	8	370	148		768	14	243	76.3	98.2
	2투	1,293	991	121	186	23	251	390		971	20	302	76.6	98.0
	3투	828	595	57	130	35	119	245		586	9	233	71.9	98.5
	4투	667	482	32	48	159	79	157		475	7	185	72.3	98.5
	5투	815	579	37	120	54	125	235		571	6	236	71.0	98.6
	6투	879	668	50	74	16	81	436		657	11	211	76.0	98.4
	계	5,771	4,354	344	876	309	1,068	1,657		4,254	100	1,417	75.4	97.7
심원면					유기봉	전종열	이갑용							
	부재자	140	133		48	30	19			97	36	7	95.0	72.9
	1투	703	539		47	164	254			465	74	164	76.7	86.3
	2투	845	629		162	226	110			498	131	216	74.4	79.2
	3투	1,607	863		195	384	55			634	229	204	80.9	73.5
	4투	745	589		53	335	42			430	159	156	79.0	73.0
	계	3,500	2,753		505	1,139	480			2,124	629	747	78.7	77.2
흥덕면				신세재	이백용									
	부재자	205	200	93	69					162	38	5	97.6	81.0
	1투	1,017	757	395	333					728	29	260	74.4	96.2
	2투	771	581	238	306					544	37	190	75.4	93.6
	3투	432	343	170	166					336	7	89	79.4	98.0
	4투	849	635	360	257					617	18	214	74.8	97.2
	5투	642	486	307	169					476	10	156	75.7	97.9
	6투	557	424	254	158					412	12	133	76.1	97.2
	계	4,473	3,426	1,817	1,458					3,275	151	1,047	76.6	95.6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1	2	3	4	5	6	계				
				고병윤	박병엽									
성	부재자	158	141	47	60					107	34	17	89.2	75.9
	1 투	666	475	253	214					467	8	191	71.3	98.3
	2 투	418	296	181	108					289	7	122	70.8	97.6
내	3 투	683	512	270	233					503	9	171	75.0	98.2
	4 투	750	555	248	297					545	10	195	74.0	98.2
면	5 투	695	543	444	87					531	12	152	78.1	97.8
	계	3,370	2,522	1,443	999					2,442	80	848	74.8	96.8
				신동하	류길규	류환영	이동범							
신	부재자	161	157	8	42	31	34			115	42	4	97.5	73.2
	1 투	759	555	177	178	105	84			544	11	204	73.1	98.0
	2 투	646	473	13	130	114	208			465	8	173	73.2	98.3
림	3 투	523	391	27	163	66	130			386	5	132	74.8	98.7
	4 투	759	592	18	251	218	93			580	12	167	78.0	98.0
면	5 투	621	481	64	214	106	88			472	9	140	77.5	98.1
	계	3,469	2,649	307	978	640	637			2,562	87	820	76.4	96.7
				전재준	김해동	장세영								
부	부재자	177	175	58	44	52				154	21	2	98.9	88.0
	1 투	881	696	219	251	210				680	16	185	79.0	97.7
	2 투	681	495	124	224	137				485	10	186	72.7	98.0
안	3 투	761	576	178	166	220				564	12	185	76.7	97.9
	4 투	1,150	836	268	262	292				822	14	314	72.7	98.3
면	5 투	552	428	257	123	37				417	11	124	77.5	97.4
	계	4,202	3,206	1,104	1,070	948				3,122	84	996	76.3	97.4
합 계		(2,085) 65,967	(2,713) 49,500							47,615	1,885	16,467	75.0	96.2

□ 보궐선거 상황

선거구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상황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강신교	성호익	계				
아산면	부재자	49	31	14	15	29	2	18	63.3	93.5
	1투	710	498	214	277	491	7	212	70.1	98.6
	2투	757	595	402	183	585	10	162	78.6	98.3
	3투	537	387	208	171	379	8	150	72.1	97.9
	4투	689	483	168	300	468	15	206	70.1	96.9
	5투	344	252	82	165	247	5	92	73.3	98.0
	6투	880	626	267	350	617	9	254	71.1	98.6
	계	3,966	2,872	1,355	1,461	2,816	56	1,094	72.4	98.1
흥덕면				김백수	변재승					
	부재자	48	27	15	12	27	0	21	56.3	100
	1투	1,082	674	403	262	665	9	408	62.3	98.7
	2투	745	481	283	194	477	4	264	64.6	99.2
	3투	407	294	69	224	293	1	113	72.2	99.7
	4투	829	552	240	306	546	6	277	66.6	98.9
	5투	666	439	279	152	431	8	227	65.9	98.2
	6투	563	386	161	218	379	7	177	68.6	98.2
	계	4,340	2,853	1,450	1,368	2,818	35	1,487	65.7	98.8
부안면				장세영	김준형					
	부재자	80	59	32	25	57	2	21	73.8	96.6
	1투	883	676	336	325	661	15	207	76.6	97.8
	2투	637	472	179	282	461	11	165	74.1	97.7
	3투	764	578	314	253	567	11	186	75.7	98.1
	4투	1,104	771	371	389	760	11	333	69.8	98.6
	5투	523	388	107	277	384	4	135	74.2	99
	계	3,991	2,944	1,339	1,551	2,890	56	1,047	73.8	98.2

2. 의원 당선자 현황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자를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별 현황

구분 / 계	농 업	상 업	수산업	기 타	비 고
15	8	5	1	1	

□ 학력별 현황

구분 / 계	국졸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졸	비고
15	1		2	8		4	

□ 연령별 현황

구분 / 계	36~40	41~45	46~50	51~55	56~60	60이상	비 고
15	1	6	2	2	3	1	

제 2 절 개원준비

1. 의회 사무기구 신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91. 4. 4 조례 제1205호)되어 고창군의회 사무기구가 신설되었다.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행정사무관)을 두며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 의회사무과 직원 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기능직			청경	일용	비고
	계	5~9급	별정직	기능직	청경	일용	소계	행정	행정·별정	소계	행정	행정·별정	소계	행정	소계	9급	10급			
정원	13	7		6			3	1	2	2	1	1	2	2	6	3	3			
현원	16	6	1	6	1	2	3	3		2	1	1	2	2	6	2	4	1	2	

2. 지방자치 관련 조례·규칙 정비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관련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 완료되어 의회관련 자치법규 10종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제정공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례(6종)

1)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1992. 5. 7 조례 제1236호)
2) 고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1991. 4. 4 조례 제1205호)
3) 고창군의회공인조례(1991. 3. 30 조례 제1200호)
4)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991. 4. 12 조례 제1169호)
5)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1991. 4. 13 조례 제1201호)
6) 고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1991. 4. 21 조례 제1172호)

□ 규칙(4종)

1) 고창군의회회의규칙(1991. 4. 13 조례 제629호)
2) 고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1991. 4. 4 조례 제628호)
3) 고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1991. 4. 4 조례 제627호)
4) 고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1991. 4. 13 조례 제630호)

3. 원구성

가. 집회 공고

총선 후 처음 개원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의회의 집회공고를 1991년 4월 9일 고창군수가 공고하였으며 집회일시는 1991년 4월 15일 10시로 공고되었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 선거

91년 4월 15일 10시에 개의된 제1회 제1차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과장 홍종섭으로부터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류길규 의장직무대행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4명중 김동훈의원 7표, 반기진의원 7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수 3차 결선투표 결과도 동수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반기진의원이 당선되었다.

2) 전반기 부의장 선거

의장선거에 이어 실시한 부의장 선거는 반기진의장의 사회로 총투표수 14명중 김동훈의원 7표, 류길규의원 7표로 2차 투표결과도 동수였으며, 3차 결선투표 결과 김동훈의원 8표 류길규의원 6표로써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동훈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3) 후반기 의장 선거

의장선거는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기진의장의 사회로 총투표수 15명으로 김동훈의원이 15표를 득표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다.

4) 후반기 부의장 선거

의장선거에 이어 반기진의장의 사회로 총투표수 15명으로 류길규의원 9표, 김기채의원 6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류길규의원이 당선되었다.

제3장 초대 고창군의회 운영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제2절 본회의 주요의안처리상황
1. 주요의안처리상황
제3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상황
2. 예산안과 결산안
3. 조례안
4. 승인안
5. 건의 및 결의안
6.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
7. 건의문 채택
제4절 군정질문과 답변
제5절 민원처리
1. 민원처리 상황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고창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초대의회 개의를 시작으로 91년도 임시회 7회, 정기회 1회로 60일간의 회의를 가졌으며 95년도 상반기까지 총 35회에 285일의 회의를 갖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연도별 집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집회 현황

년도별	구 분	개 회 수	회의일수	비 고
계	합 계	35	285	
	임 시 회	31	160	
	정 기 회	4	125	
'91	계	8	60	
	임 시 회	7	30	
	정 기 회	1	30	
'92	계	8	60	
	임 시 회	7	30	
	정 기 회	1	30	
'93	계	9	60	
	임 시 회	8	30	
	정 기 회	1	30	
'94	계	6	80	
	임 시 회	5	45	
	정 기 회	1	35	
'95	계	4	25	
	임 시 회	4	25	
	정 기 회			

□ 본회의 운영

회 수	구 분	기 간	일 수	처리된 안건
제 1 회	임 시 회	'91. 4. 15 ~ 4. 16	2	2
제 2 회	〃	6. 4 ~ 6. 8	5	10
제 3 회	〃	7. 15 ~ 7. 18	4	9
제 4 회	〃	7. 24 ~ 7. 25	2	3
제 5 회	〃	9. 26 ~ 9. 27	2	6
제 6 회	〃	10. 14 ~ 10. 23	10	3
제 7 회	〃	11. 18 ~ 11. 22	5	13
제 8 회	정 기 회	12. 2 ~ 12. 31	30	24
제 9 회	임 시 회	'92. 2. 27 ~ 2. 28	2	12
제 10 회	〃	4. 20 ~ 4. 25	6	10
제 11 회	〃	7. 20 ~ 7. 25	6	16
제 12 회	〃	8. 31	1	4
제 13 회	〃	10. 19 ~ 10. 22	4	9
제 14 회	〃	10. 27 ~ 10. 31	5	3
제 15 회	〃	11. 16 ~ 11. 21	6	5
제 16 회	정 기 회	11. 25 ~ 12. 24	30	18
제 17 회	임 시 회	'93. 2. 15 ~ 2. 18	4	4
제 18 회	〃	4. 7 ~ 4. 8	2	4
제 19 회	〃	4. 13 ~ 4. 15	3	18
제 20 회	〃	5. 20	1	4
제 21 회	〃	6. 15 ~ 6. 18	4	9
제 22 회	〃	8. 10	1	8
제 23 회	〃	10. 6 ~ 10. 13	8	5
제 24 회	〃	11. 9 ~ 11. 15	7	14
제 25 회	정 기 회	11. 25 ~ 12. 24	30	27
제 26 회	임 시 회	'94. 2. 28 ~ 3. 5	6	14
제 27 회	〃	5. 2 ~ 5. 7	6	5
제 28 회	〃	6. 28 ~ 7. 11	14	20
제 29 회	〃	9. 26 ~ 10. 1	6	16
제 30 회	〃	11. 2 ~ 11. 14	13	14
제 31 회	정 기 회	11. 25 ~ 12. 29	35	28
제 32 회	임 시 회	'95. 2. 27 ~ 3. 8	10	15
제 33 회	〃	4. 10 ~ 4. 15	6	7
제 34 회	〃	5. 1 ~ 5. 6	6	7
제 35 회	〃	5. 22 ~ 5. 24	3	17

제 2 절 본회의 주요의안처리상황

1. 주요의안처리상황

□ 주요의안처리상황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 1 회 임시회 (2일간)	1차	· 의장단 선거의 건 · 개원식	· 의 장 : 반기전(성송면) · 부의장 : 김동훈(고창읍)
	2차	· 군정보고 및 교육청현황 청취의 건	· 박병식 군수의 군정보고 및 김규삼 교육장의 교육청 현황 청취
제 2 회 임시회 (5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청실과소별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 · 군청 청사 신축의 건 · 도시계획 재정비의 건 ·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 고창군민헌장조례 제정 건의의 건 · 삼양사소유 궁산저수지 관리에 관한 청원의 건	· 회기 : '91. 6. 4 ~ 6. 8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 전실과소 업무보고키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이송 · 특별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구성 · 보고 청취 · 건의안 이송 · 원안대로 의결 이송(군)
	2차	·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 답변—군수 및 전 실과소장
	3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보고 기획실, 건설과, 내무과, 산업과, 수산과
	4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회 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회 임시회 (4일간)	1차	• 회기 결정	• '91. 7. 15 ~ 7. 18
		•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동의안	• 원안대로 의결
		• 군청사 신축 승인의 건	• 부결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고병윤의원, 이기우(교육청) 소근섭(전북은행)
		• 고창군리장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
	2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보고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3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보고 축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 지방채(차입금) 승인 신청의 건	• 승인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 매입, 교환의 건 부결
제4회 임시회 (2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1. 7. 24 ~ 7. 25
		• 교육위원 후보 선출	• 경 력 직 : 정기동
			• 비경력직 : 유병천 후보 선출
	2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보고 농촌지도소, 문화공보실, 지적과, 보건소
제5회 임시회 (2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1. 9. 26 ~ 9. 27
		• 군청사 신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해리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의 건	• 승인
	2차	• 군민헌장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제분비료공장 설치사업 승인의 건	• 부결처리

회 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6회 임시회 (10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 '91. 10. 14 ~ 10. 23
	2차	·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 예결특별위원 선임 · 수정의결 승인
제7회 임시회 (5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읍면정 보고의 건	· '91. 11. 18 ~ 11. 22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14개 읍·면정 보고
	2차	· 군민헌장조례제정 재의의 건 · 문수사 개발에 관한 건의의 건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구성의 건 · 지방채(차입금) 융자신청 승인의 건 ·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교육위원 활동상황 소개의 건 · 쌀 수입개방 및 추곡수매관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 설치관련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	· 군민헌장으로 채택 · 문수사개발 타당성 조사의뢰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부결 · 승인 · 유병천 교육위원의 활동상황 청취 · 만장일치로 채택 —중앙부처에 이송 · 만장일치로 채택
	3차	· 군정질문의 건	·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오균호의원외 9인
	4차	·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동리국악당 하자발생 경위 조사위 구성 · 군수, 부군수 및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5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지도소장

회 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8회 정기회 (30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2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90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91 제3회 추경 승인의 건 • 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 제정의 건 • 지방채 차입금 융자신청 승인의 건 •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 '91. 12. 2 ~ 12. 31 • 예결위원회 구성 • 제안설명 청취 • 예결위원회 회부 • 원안대로 의결 • 승인 • 기간연장 (12. 5 ~ 12. 11)
	2차	• '90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92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 '91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정의결 승인 • 원안대로 승인
	3차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매입의 건 : 의결 • 교환의 건 : 의결 • 매각의 건 : 부결
		• 고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면세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새마을공장등에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에대한조례 폐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

회 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8회 정기회	3차	· 고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행정사무조사결과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집행부에 이송 시정 요구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차	· 성송면 도시계획 재정비 동의의 건	· 원안대로 동의
제9회 임시회 (2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2. 2. 27 ~ 2. 28
		· '92 군정보고의 건	· '92 군정보고 —최충일 군수
		·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옴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승인
	2차	·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승인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0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2. 4. 20 ~ 4. 25
		• 실과소별 군정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 군정보고(실과소별)
		•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공인조례중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 보고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2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 보고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3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 보고 산업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수산과, 축산과, 민방위과
	4차	• 업무(실과소별) 보고	• 업무 보고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5차	• 군정질문	•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이돈우의원외 8인
	6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1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2. 7. 20 ~ 7. 25
		· '92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 예결위원회 구성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물품관리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수정의결
		·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승인
		·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의 건	· 승인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승인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승인
	2차	·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 차수변경
	3차	·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 차수변경
	4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수정의결 승인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선임 유보
		·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 운영위원장 : 고병윤 · 내무위원장 : 김양진 · 산업·건설위원장 : 전종열
제12회 임시회 (1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2. 8. 31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류길규의원, 최형식의원, 신세재의원
		· 상임위원 구성의 건	· 부안면 김준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선임
		·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 보고의 건	· 보고 청취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3회 임시회 (4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92. 10. 19 ~ 10. 22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상임위원회별 의원 심의토록 10. 20 ~ 21까지 휴회 의결
	2차	•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 •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 동의안 • 고창경찰서 이전건의 결의안 • 합동법무사 사무실 분산설치 건의 결의안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동의의결 • 의결(중앙부처 이송) • 의결(중앙부처 이송)
제14회 임시회 (5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읍면순회 간담회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92. 10. 27 ~ 10. 31 • 읍면순회코자 휴회 의결
	10.27	• 읍면순회 간담회	• 흥덕, 성내, 신림면
	10.28	• 읍면순회 간담회	• 고창, 무장, 해리
	10.29	• 읍면순회 간담회	• 성송, 대산, 공음
	10.30	• 읍면순회 간담회	• 부안, 심원, 상하
	10.31	• 읍면순회 간담회	• 고수, 아산면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5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농어촌 장기발전계획 보고의 건 · 실과소 주요업무보고의 건	· '92. 11. 16 ~ 11. 21 · 원안의결 · 보고청취 · 보고청취 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2차	·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보고청취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3차	·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보고 청취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4차	· 본회의 휴회의 건	· 지역구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10. 19 ~ 10. 21
제16회 정기회 (30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93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92. 11. 25 ~ 12. 24 · 원안의결 · 제안설명 청취 -상임위별로 회부 · 예결위원회 회부 · 원안의결 · 신세재의원외 7인 선임
	2차	· 군정질문의 건	· 이돈우의원외 9인 군정질문 실시
	3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본회의 휴회의 건	·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 답변 청취 · 상임위별 운영을 위한 본회의 휴회 의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6회 정기회	4차	• 고창군공인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행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승인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매입의 건 : 의결 매각의 건 : 부결
		•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92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 승인
		• '92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건	• 원안의결
		•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채택
		• '93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 승인
제17회 임시회 (4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3. 2. 15 ~ 2. 18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93 군정보고	• 장현돈 군수로부터 군정보고 청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보고청취 기획실
	2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업무보고 청취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
	3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업무보고 청취 지역경제과, 새마을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수산과
	4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업무보고 청취 보건소, 지도소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8회 임시회 (2일간)	1차	· 의원선서—김백수(홍덕)의원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93. 4. 7 ~ 4. 8 · 원안의결 · 산업건설위원회 —김백수의원 · 운영위원회 —김기채의원 ·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토록 본회의 휴회
제19회 임시회 (3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정의 건 · 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의 건 ·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의 건 · 고창군화재예방조례중 폐지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의 건 ·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 개정의 건 · 고창군건축조례 제정의 건 · '93 지방채 차입신청 승인의 건 · 영광원전 냉각수 피해보상에 관한 진정서 심의의 건	· '93. 4. 13 ~ 4. 15 ·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승인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수정의결 · 승인 · 심의의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19회 임시회	2차	• 군정 질문의 건	• 김준형의원외 6명이 군정전반에 걸쳐 군정질문 실시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장현돈군수외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
		• 의장 선거의 건	• 김동훈의원(고창) 선출
		• 부의장 선거의 건	• 류길규의원(신림) 선출
		• 본회의 휴회의 건	• 본회의 휴회 의결
제20회 임시회 (1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3. 5. 20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반기진 전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계획승인
		• 목적세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 채택 —중앙부처에 이송
제21회 임시회 (4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3. 6. 15 ~ 6. 18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의결
		•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 최영수 부군수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회부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 최석기 간 사 : 김준형 위 원 : 오균호, 고병윤, 이돈우, 전종열, 김백수
	휴회	• 내무·산업·건설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예결위원회 회부
	2차	•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이돈우, 최석기의원 이한구회계사 선임
		• 행정쇄신추진 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서 승인 이송
		•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 승인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2회 임시회 (1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3. 8. 10
		•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부지매입 : 승인 부지매각 : 부결
		•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승인
		• 농업(농촌)부분 세제지원 및 감면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 채택 —중앙부처 이송
		• 지적업무 일원화 방안 건의문 채택의 건	• 채택 —중앙부처 이송
		• 고창읍 고속버스운행 건의문 채택의 건	• 채택 —중앙부처 이송
제23회 임시회 (8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3. 10. 6 ~ 10. 13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출석요구의결
		• 실과소별 업무보고 및 사업장 순방의 건	• 원안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사업장 순방을 위한 본회의 휴회 의결 (10. 7 ~ 10. 10까지 4일간 28개 사업장 확인)
	2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림과,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
	3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도시과,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내무과 업무보고 청취
	4차	• 업무보고 (실과소별)	• 서면보고

회 수	차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4회 임시회 (7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93. 11. 9 ~ 11. 15 • 원안의결 • 위원회별 회의로 인한 휴회 (11. 10 ~ 14 (5일간))
	2차	• 고창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의 건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고창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기금지급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고창군4-H회장학기금지급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의 건 • 지방채(차입금) 융자승인 신청안(팡역상수도) 심의의 건 • 지방채(차입금) 융자승인 신청안(월곡택지개발)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승인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승인 • 승인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5회 정기회 (30일간)	1차	• 의원선서—성호익의원(아산)	
		• 회기 결정의 건	• '93. 11. 24 ~ 12. 24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 '94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안설명 청취 —상임위원회 회부
		• '93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예결위원회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진남표위원외 7인 선임
		•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류길규의원외 8인 선임
		• '93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 선임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운영위원장 김기채 • 내무위원장 최석기 • 산업·건설위원장 이돈우
	2차	• 시책보고의 건	• 시책보고청취 기획실, 문공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3차	• 시책보고의 건	• 시책보고청취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4차	• 시책보고의 건	• 시책보고청취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5차	• 군정질문의 건	• 오균호의원외 6인 군정질문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5회 정기회	6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군수 및 관계실과소장 답변 청취
		• 본회의 휴회의 건	• 상임위원별 운영을 위한 본회의 휴회 의결
	7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류길규의원외 5인 변경요구 의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최석기의원외 6인
		• 본회의 휴회의 건	• 상임위별 운영을 위한 본회의 휴회 의결
	8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변경의결
	9차	• '94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3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2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고창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3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승인
		• 고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재단법인고창군애향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부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6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4. 2. 28 ~ 3. 5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군정보고의 건	· 국종철부군수로부터 군정보고 청취
		· 본회의 휴회의 건	· 의결
	2차	· 군정질문의 건	· 성호익의원외 5인 군정질문
		· 본회의 휴회의 건	· 의결
	3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양규장군수 및 각 실과소장 답변
		· 고창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3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일연기승인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 채택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의결
제27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4. 5. 2 ~ 5. 7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 주요업무보고 기획실, 문공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2차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3차	· 진정서 처리의 건	· 원안가결
		· 사업장 순방결과 질의의 건	· 서면 답변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8회 임시회 (14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의 건 •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94. 6. 28 ~ 7. 11 • 의결 • 보류 • 보류 • 보류
	2차	•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실과소장보고 기획실, 문공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3차	•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실과소장 보고 사회과장,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4차	•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실과소장 보고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5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의결 • 실과소장 보고 산림과, 수산과
	6차	• 실과소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 실과소장 보고 민방위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7차	•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94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양규장군수 제안설명 청취 • 최석기의원외 7인 • 김백수의원외 2인 • 의결
	8차	• 회기연장의 건	• 의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8회 임시회	9차	·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가정복지과업무중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사항 그리고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승인
		·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승인
제29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4. 9. 26 ~ 10. 1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상임위별 운영을 위한 본회의 휴회 의결
	2차	·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29회 임시회	2차	•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여비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4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 폐류양식어가의 재해피해보상에 관한 건의안 심의의 건	• 승인
			• 원안대로 의결
제30회 임시회 (13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4. 11. 2 ~ 11. 14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읍면순회간담회 및 사업장 순방의 건	• 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상임위별 운영을 위한 본회의 휴회 의결
	2차	• 군정질문의 건	• 이돈우의원외 2인
	3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당일은 산회
	4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기획실, 문공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0회 임시회	5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내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6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7차	·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다음 회기로 청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양규장군수 답변 및 실과소장 답변
		·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및운영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보육시설자금지원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읍면순회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진남표의원외 6인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 의결
제31회 정기회 (35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4. 11. 25 ~ 12. 29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진남표의원외 8인 선임
		· '9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진남표의원외 6인 선임
		· '9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의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1회 정기회	2차	• '95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93 세입세출결산 설명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양규장군수 제안설명 청취 • 재무과장 제안설명 청취 • 군정질문의 건 성호익의원외 5인
	3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양규장군수 및 실과소장 답변
	4차	• '95 시책보고의 건	• 실과소장보고 청취 기획실, 문공실, 재무과, 사회과
	5차	• '95 시책보고의 건 • 휴회의 건	• 실과소장보고 청취 내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 상임위원회별 운영을 위한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6차	• '95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	• 의결 • 의결 • 상임위별 안건심사
	7차	• '94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물품관리조례 개정의 건 • 고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 지방채(차입금)승인신청안 승인의 건 •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개정의 건	•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원안대로 의결 • 승인 • 원안대로 의결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1회 정기회	7차	•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3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경위 및 처리계획청취 승인
제32회 임시회 (10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정보고의 건	• '95. 2. 27 ~ 3. 8 • 의결 • 원종태군수 업무보고 청취
	2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기획실, 분공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3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사회과,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림과, 산업과
	4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민방위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5차	•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 실과소장 업무보고 청취 축산과, 건설과, 지도소, 보건소
	6차	• 군정질문의 건	• 김준형의원외 5인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2회 임시회	7차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원종태군수 및 실과소장 답변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세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세감면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건축조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지방채(차입금)융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	• 수정의결
		• 월곡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재평가 권고결의안 채택의 건	• 결의채택의결
제33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5. 4. 10 ~ 4. 15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결
		• 사업장 순방의 건	• 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의결
	2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결
		• '95 1/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보고의 건	• 기획실장 보고청취
		• 지방채(차입금) 융자신청 승인의 건	• 승인
제34회 임시회 (6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5. 5. 1 ~ 5. 6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요구 의결
		• 채무부담행위승인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전의원 선임
	2차	•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의 건	•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청취 사회진흥과
	3차	•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의 건	•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청취 산업과

회 수	차 수	부 의 된 안 건	심 의 결 과
제34회 임시회	4차	· 관내어장 순방의 건	· 부결
		· 골재채취 행정사무조사위원 선임	· 선임은 의장에 위임
		· 선진농업(천마재배단지) 시찰의 건	· 의결
제35회 임시회 (3일간)	1차	· 회기 결정의 건	· '95. 5. 22 ~ 5. 24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대로 의결
	2차	· 고창군고문변호사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민자사업유치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지방세(차입금)융자신청승인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골재채취 행정사무조사 보고 심사의 건	· 원안대로 의결

제3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상황

구분 / 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철회	
			원안	수정				
계	**247**	**247**	**148**	**23**	**7**	**1**	**4**	
조례안	114	114	99	7	3	1	4	
규칙	3	3	3					
예산·결산	16	16	7	9				
승인·동의	38	38	27	7	4			
청원·진정 및 건의	64	64						
건의안 및 결의안	12	12	12					

2. 예산안과 결산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출건수		가결		비 고
	예산안	결산안	예산안	결산안	
계	12	4	12	4	
제 6회 임시회	1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8회 정기회	2	1	2	1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11회 임시회	1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16회 정기회	2	1	2	1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21회 임시회	1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25회 정기회	2	1	2	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28회 임시회	1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31회 정기회	2	1	2	1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현황

구 분	자치단체 제출예산안		수정액		의회의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대비 증·감액	비 고
			삭감액	증 액			
제6회 임시회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50,351,897	166,100		50,351,897	3,590,687	
	일반회계	43,172,986			43,172,986	3,337,883	
	특별회계	7,178,911			7,178,911	252,804	
제8회 정기회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51,559,369			51,559,369	1,207,472	
	일반회계	44,465,033			44,465,033	1,292,047	
	특별회계	7,094,336			7,094,336	△84,575	
제8회 정기회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52,718,617	679,680	872,350	53,590,967	2,031,598	
	일반회계	39,367,668	679,680	872,290	40,239,958	△4,225,075	
	특별회계	13,350,949		60	13,351,009	6,256,673	
제11회 임시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59,003,667	195,326	560,176	59,563,843	5,972,876	
	일반회계	43,674,240	191,276	560,176	44,234,416	3,994,458	
	특별회계	15,329,427	4,500		15,329,427	1,978,418	
제16회 정기회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59,349,615			59,349,615	214,228	
	일반회계	45,019,407			45,019,407	784,991	
	특별회계	14,330,208			14,330,208	△999,219	
제16회 정기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59,206,610	1,190,076	2,033,811	61,240,421	1,890,806	
	일반회계	46,575,062	1,190,076	776,230	47,351,292	2,331,885	
	특별회계	12,631,548		1,257,581	13,889,129	△441,079	

구 분	자치단체 제출예산안		수정액		의회의결 예산액	당초(전회) 예산대비 증·감액	비 고
			삭감액	증 액			
제21회 임시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66,319,632	143,924	184,919	66,504,551	5,264,130	
	일반회계	51,585,781	143,924	171,919	51,757,700	4,406,408	
	특별회계	14,733,851		13,000	14,746,851	857,722	
제25회 정기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69,864,516	5,000		69,864,516	3,359,965	
	일반회계	54,769,220	5,000		54,769,220	3,011,520	
	특별회계	15,095,296			15,095,296	348,445	
제25회 정기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78,663,406	580,753	△1000000	77,663,406	7,798,890	
	일반회계	70,190,653	580,753	(580,753)	70,190,653	15,421,433	
	특별회계	8,472,753		△1000000	7,472,753	△7,622,543	
제28회 임시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84,170,577	305,932	981,966	85,152,543	7,489,137	
	일반회계	76,251,632		981,966	77,233,598	7,042,945	
	특별회계	7,918,945			7,918,945	446,192	
제31회 정기회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	106,071,422			106,071,422	20,918,879	
	일반회계	96,743,004			96,743,004	19,509,406	
	특별회계	9,328,418			9,328,418	1,409,473	
제31회 정기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	102,877,569	912,355	1,181,668	104,059,237	△2,012,185	
	일반회계	93,249,389	912,355	1,181,668	94,431,057	△2,311,947	
	특별회계	9,628,180			9,628,180	299,762	

다. 예산·결산안 처리 현황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창군수	91.10. 2	제 6회	제2차	91.10.23	수정가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91.12.20	제 8회	〃	91.12.23	원안가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91.12. 2	〃	제1차	91.12.23	수정가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91.12. 2	〃	〃	91.12.23	원안가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2. 7.10	제11회	〃	92. 7.25	수정가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92.12.10	제16회	제4차	92.12.21	원안가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92.11.24	〃	〃	92.12.21	수정가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92.11.24	〃	〃	92.12.21	원안가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3. 6. 7	제21회	제1차	93. 4.13	수정가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93.12.10	제25회	제9차	93.12.22	〃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93.11.25	〃	〃	93.12.22	〃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93.11.25	〃	〃	93.12.22	원안가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4. 6.25	제28회	〃	94. 7.11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94.12. 7	제31회	제6차	94.12.21	〃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94.11.22	〃	〃	94.12.21	수정가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94.11.24	〃	제7차	94.12.24	원안가결

3. 조례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별	제출수	가 결		부 결	계 류	철 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114	99	7	3	1	4	
제 3회 임시회	2	2					
제 5회 임시회	1	1					
제 8회 정기회	10	10					
제 9회 임시회	7	7					
제10회 임시회	5	5					
제11회 임시회	3	3					
제13회 임시회	4	4					
제16회 정기회	2	2					
제19회 임시회	8	8					
제21회 임시회	2	2					
제22회 임시회	3	3					
제24회 임시회	8	6	1			1	
제25회 정기회	4	2	1	1			
제26회 임시회	4	4					
제28회 임시회	6	6					
제29회 임시회	12	12					
제30회 임시회	3	3					
제31회 정기회	11	7	2	1	1		
제32회 임시회	5	4	1				
제35회 임시회	13	7	2	1		3	

나. 유형별 조례안 처리 현황

구분 / 회기별		총계	의원발의				군수제출				비고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114	7	3	4		107	35	65	7	
가결	원안	99	7	3	4		92	27	58	7	
	수정	7					7	3	4		
부결		3					3	3			
계류		1					1		1		
철회		4					4	2	2		

다. 조례안 처리 현황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월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고창군수	91. 7. 9	제3회	제1차	91. 7.15	원안가결
고창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1. 7. 9	〃	〃	91. 7.15	〃
고창군군민헌장에관한조례안	이돈우 의원외 3인	91. 9.16	제5회	제2차	91. 9.27	〃
고창군군민헌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	고창군수	91.11.10	제7회	〃	91.11.19	조례안을 헌장으로 채택
고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1.12.10	제8회	제3차	91.12.24	원안가결
고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1.12.10	〃	〃	91.12.24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수	91.12.10	제8회	제3차	91.12.24	원안가결
고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1.12.10	〃	〃	91.12.24	〃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	92. 2.10	제9회	제2차	92. 2.28	〃
고창군의용소방대설치및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	92. 2.10	〃	〃	92. 2.28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2. 2.10	〃	제1차	92. 2.27	〃
고창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2. 2.10	〃	〃	92. 2.27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고창군수	92. 2.10	제9회	제1차	92. 2.27	원안가결
고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 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안	〃	92. 2.10	〃	〃	92. 2.27	〃
고창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	92. 2.10	〃	제2차	92. 2.28	〃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김양진 의원외 2인	92. 4.13	제10회	제1차	92. 4.20	〃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2. 4.13	〃	〃	92. 4.20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2. 4.13	〃	〃	92. 4.20	〃
고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92. 4.13	〃	〃	92. 4.20	〃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고창군수	92. 4.13	〃	〃	92. 4.20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석기 의원외 2인	92. 7.10	제11회	〃	92. 7.20	〃
고창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	〃	92. 7.10	〃	〃	92. 7.20	〃
고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개정안	〃	92. 7.10	〃	〃	92. 7.20	〃
고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수	92. 6.26	〃	〃	92. 7.20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수	92. 6.26	제11회	제1차	92. 7.20	원안가결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류길규 의원외 5인	92. 7.20	〃	〃	92. 7.20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수	92.10.10	제13회	제1차	92.10.19	〃
고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2.10.10	〃	〃	92.10.19	〃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2.10.10	〃	제2차	92.10.22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2.10.10	〃	〃	92.10.22	〃
고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92.11.24	제16회	제4차	92.12.21	〃
고창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행등외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2.11.24	〃	〃	92.12.21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3. 2.13	제19회	제1차	93. 4.13	〃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3. 2.13	〃	〃	93. 4.13	〃
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93. 2.13	〃	〃	93. 4.13	〃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3. 2.13	〃	〃	93. 4.13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	고창군수	93. 2.13	제19회	제1차	93. 4.13	원안가결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3. 2.13	〃	〃	93. 4.13	〃
고창군건축조례안	〃	93. 2.13	〃	〃	93. 4.13	〃
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조례안	〃	93. 2.13	〃	〃	93. 4.13	〃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93. 5.11	제21회	제2차	93. 6.18	〃
고창군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3. 5.18	〃	〃	93. 6.18	〃
고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93. 8. 2	제22회	제1차	93. 8.10	〃
고창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3. 8. 3	〃	〃	93. 8.10	〃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3. 9.23	〃	〃	93. 8.10	〃
고창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	93.10. 5	제24회	제2차	93.11.15	〃
고창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3.10. 5	〃	〃		철회가결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3.10. 5	〃	〃	93.11.15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폐지안	고창군수	93.10. 5	제24회	제2차	93.11.15	원안가결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	93.10.29	〃	〃	93.11.15	수정가결
고창군4--H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93.11. 4	〃	〃	93.11.15	원안가결
고창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	〃	93.11. 4	〃	〃	93.12.22	〃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기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	93.11. 4	〃	〃	93.12.22	〃
재단법인고창군향향장학재단기금 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	93.10.27	제25회	제9차	93.12.22	부 결
고창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93.11. 4	〃	〃	93.12.22	수정가결
고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3.11.17	〃	〃	93.12.22	원안가결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	93.12. 1	〃	〃	93.12.22	〃
고창군지프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 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94. 2.17	제26회	제3차	94. 3. 4	〃
고창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4. 2.21	〃	〃	94. 3. 4	〃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	94. 2.21	〃	〃	94. 3. 4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구성 운영에관한조례안	고창군수	94. 2.26	제26회	제3차	94. 3. 4	원안가결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	94. 5.20	제28회	제9차	94. 7.11	〃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	94. 6.25	제29회	제2차	94.10. 1	〃
고창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94. 6.25	〃	〃	94.10. 1	〃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관한조례안	〃	94. 6.25	제28회	제9차	94. 7.11	〃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	94. 6.25	제29회	제2차	94.10. 1	〃
고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	94. 6.25	〃	〃	94.10. 1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	94. 6.25	〃	〃	94.10. 1	〃
고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4. 6.25	제28회	제9차	94. 7.11	〃
고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안	〃	94. 6.25	〃	〃	94. 7.11	〃
고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	94. 6.27	제29회	제2차	94.10. 1	〃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94. 6.27	제28회	제9차	94. 7.11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고창군수	94. 6.27	제28회	제9차	94. 7.11	원안가결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4. 9.12	제29회	〃	94.10. 1	〃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4. 9.12	〃	〃	94.10. 1	〃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4. 9.12	〃	〃	94.10. 1	〃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94. 9.12	〃	〃	94.10. 1	〃
고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4. 9.15	〃	〃	94.10. 1	〃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4. 9.15	〃	〃	94.10. 1	〃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4.10.24	제30회	제7차	94.11.14	〃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4.10.24	〃	〃	94.11.14	〃
고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4.10.24	〃	〃	94.11.14	〃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4.11.22	제31회	제7차	94.12.24	〃
고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4.11.22	〃	〃	94.12.24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고창군수	94.11.22	제31회	제7차	94.12.24	원안가결
고창군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	94.11.22	〃	〃	94.12.24	〃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94.12.24	〃	〃	94.12.24	〃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4.11.22	〃	〃	94.12.24	수정가결
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안	〃	94.11.22	〃	〃	94.12.24	원안가결
고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94.11.22	〃	〃	94.12.24	부 결
고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4.11.22	〃	〃	94.12.24	수정가결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4.11.24	〃	〃	94.12.24	계 류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4.12.12	〃	〃	94.12.24	원안가결
고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성호익 의원외 3인	94.12.19	〃	〃	94.12.24	〃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수	95. 1.27	제32회	제7차	95. 3. 8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95. 1.27	〃	〃	95. 3. 8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고창군수	95. 1.27	제32회	제7차	95. 3. 8	원안가결
고창군세감면조례안	〃	95. 2.17	〃	〃	95. 3. 8	〃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	〃	95. 2.22	〃	〃	95. 3. 8	수정가결
고창군고문변호사조례안	〃	95. 4.28	제35회	제2차	95. 5.24	원안가결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5. 4.28	〃	〃	95. 5.24	철 회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	95. 4.28	〃	〃	95. 5.24	〃
고창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	95. 4.28	〃	〃	95. 5.24	〃
고창군계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5. 4.28	〃	〃	95. 5.24	수정가결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5. 4.28	〃	〃	95. 5.24	원안가결
고창군향토농경유물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	〃	95. 4.28	〃	〃	95. 5.24	〃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95. 5.16	〃	〃	95. 5.24	부 결
고창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95. 5.16	〃	〃	95. 5.24	수정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창군수	95. 5.20	제35회	제2차	95. 5.24	원안가결
고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	95. 5.20	〃	〃	95. 5.24	〃
고창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5. 5.20	〃	〃	95. 5.24	〃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95. 5.20	〃	〃	95. 5.24	〃

4. 승인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별	제출수	가 결		부 결	계 류	철 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38**	**27**	**7**	**4**			
제 2회 임시회	3	2		1			
제 3회 임시회	2	1	1				
제 5회 임시회	3	2		1			
제 7회 임시회	2	1		1			
제 8회 정기회	3	2	1				
제 9회 임시회	2	2					
제11회 임시회	3	3					
제13회 임시회	1		1				
제16회 정기회	2	1	1				
제19회 임시회	2	2					
제22회 임시회	2	1	1				
제24회 임시회	3	3					
제25회 정기회	1		1				
제26회 임시회	1	1					
제31회 정기회	3	2	1				
제32회 임시회	1	1					
제34회 임시회	1			1			
제35회 임시회	3	3					

나. 승인안 처리 현황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안	고창군수	91. 6. 1	제2회	제1차	91. 7.18	원안가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승인안	〃	91. 6. 1	〃	〃	91. 6. 4	〃
고창군청 신축에 관한 승인안	〃	91. 6. 1	〃	〃	91. 7.15	부 결
지방채(차입금)발행 승인안	〃	91. 7. 9	제3회	제3차	91. 7.18	원안가결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1. 7.10	〃	〃	91. 7.18	수정가결
고창군 청사 신축 승인안	〃	91. 9.13	제5회	제1차	92. 9.26	원안가결
계분비료공장 설치 승인안	〃	91. 9.27	〃	제2차	91. 9.27	부 결
'91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	91. 9.13	〃	제1차	91. 9.26	원안가결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	91.11.10	제7회	제2차	91.11.19	원안가결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안	〃	91.11.10	〃	〃	91.11.19	부 결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안	〃	91.11.30	제8회	제1차	91.12. 2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수	91.11.25			91.12.24	수정가결
성송면 도시계획 재정비(변경)안	〃	91.11.30	제8회	제4차	91.12.30	원안가결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2. 2.22	제9회	제1차	92. 2.27	〃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	92. 2.22	〃	제2차	92. 2.28	〃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	92. 6.26	제11회	제1차	92. 7.2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2. 6.26	〃	〃	92. 7.20	〃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안	〃	92. 6.26	〃	〃	92. 7.20	〃
무장면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안	〃	92.10.12	제13회	제2차	92.10.22	수정가결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2.11.24	제16회	제4차	92.12.21	〃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	92.11.24	〃	〃	92.12.21	원안가결
'93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	〃	93. 3.10	제19회	제1차	93. 4.13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3. 3.30	〃	〃	93. 4.13	〃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수	93. 8. 2	제22회	제1차	93. 8.10	수정가결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	93. 8. 2	〃	〃	93. 8.10	원안가결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3.10. 5	제24회	제2차	93.11.15	〃
지방채 차입금 용자 승인안	〃	93.10. 5	〃	〃	93.11.15	〃
지방채 차입금 용자 승인안	〃	93.11. 6	〃	〃	93.11.15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3.11.17	제25회	제9차	93.12.22	수정가결
'93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일 연기안	〃	94. 2.17	제26회	제3차	94. 3. 4	원안가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4.11.22	제31회	제7차	94.12.24	수정가결
지방채 차입금 용자 승인안	〃	94.11.22	〃	〃	94.12.24	원안가결
지방채 차입금 용자 승인안	〃	94.11.22	〃	〃	94.12.24	〃
지방채 차입금 용자 승인안	〃	94. 2.27	제32회	〃	95. 3. 8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95. 4.28	제35회	제2차	95. 5.24	〃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안	고창군수	95. 4.28	제35회	제2차	94.12.24	원안가결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	95. 4.28	제34회			위원회 부결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	95. 5.19	제35회	제2차	95. 5.24	원안가결

5. 건의 및 결의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별	제출수	가결		부결	계류	철회	비고
		원안	수정				
계	**12**	**12**					
제 7회 임시회	2	2					
제13회 임시회	2	2					
제16회 정기회	1	1					
제18회 임시회	1	1					
제20회 임시회	1	1					
제22회 임시회	3	3					
제29회 임시회	1	1					
제32회 임시회	1	1					

나. 건의(결의)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리내용			
			회 기	차수	의결일	의결내용
쌀수입 개방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고병윤 의원외 2인	91.11.10	제7회	제2차	91.11.19	원안채택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이돈우 의원외 2인	91.11.10	〃	〃	91.11.19	〃
고창 경찰서 이전 건의안 채택의 건	진남표 의원외 4인	92.10.21	제13회	〃	92.10.22	〃
합동 법무사 사무실 분산 건의안 채택의 건	〃	92.10.21	〃	〃	92.10.22	〃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고병윤 의원외 2인	92.12.21	제16회	제4차	92.12.21	〃
영광원전 냉각수 1·2호기 가동과 3·4호기 건설로 인한 피해용역조사 및 보상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전종열 의원외 2인	93. 4. 8	제18회	제1차	93. 4. 8	〃
목적세 전환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고병윤 의원외 2인	93. 5.17	제20회	〃	93. 5.20	〃
고창읍 고속버스 운행 건의안 채택의 건	최석기 의원외 3인	93. 8.10	제22회	〃	93. 8.10	〃
농업부분 세제지원 및 감면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김준형 의원외 3인	93. 8.10	〃	〃	93. 8.10	〃
지적업무일원화 방안 건의안 채택의 건	오균호 의원외 3인	93. 8.10	〃	〃	93. 8.10	〃
고창군 폐류 양식어가의 재해 피해보상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	전종열 의원외 3인	94. 9.30	제29회	제2차	94.10. 1	〃
월곡택지 재평가 결의안 채택의 건	진남표 의원외 4인	95. 3. 8	제32회	제7차	95. 3. 8	〃

6.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군청청사신축 특 별 위 원 회	제 2 회 임시회	91. 6.24 (1일간)	위원장 류길규 간 사 최형식 위 원 김동훈 〃 이돈우 〃 김기채 〃 오균호	• 군청청사 신축 승인안에 대한 조사활동
도시계획재정비 특 별 위 원 회	제 2 회 임시회	91. 6.26 (1일간)	위원장 김동훈 간 사 오균호 위 원 진남표 〃 신세재 〃 이종운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승인안 심의 활동
예 산 ·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 6 회 임시회	91.10.20 ~10.22 (3일간)	위원장 류길규 간 사 김양진 위 원 진남표 〃 김기채 〃 최석기 〃 전종열 〃 전재준	•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50,351,897천원 일반회계 : 43,172,986천원 특별회계 : 7,178,911천원
행정사무조사 특 별 위 원 회	제 7 회 임시회	91.11.25 ~11.30 (6일간)	위원장 신세재 간 사 최석기 위 원 진남표 〃 이종운 〃 최형식	• 조사대상 —동리국악당 건물 하자 —읍성 복원 공사 —기타 각종 시설물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예 산 ·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 8 회 정기회	91.12.10 ~12.22 (13일간)	위원장 진남표 간 사 전종열 위 원 김동훈 〃 이종운 〃 오균호 〃 김기채 〃 전재준	·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51,559,369천원 일반회계 : 44,465,033천원 특별회계 : 7,094,336천원 ·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50,351,897천원 일반회계 : 43,172,986천원 특별회계 : 7,178,911천원 ·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행정사무감사 특 별 위 원 회	제 8 회 정기회	91.12 6 ~12 9 (3일간)	위원장 이돈우 간 사 최석기 위 원 최형식 〃 신세재 〃 김양진 〃 고병윤 〃 류길규	· 지적대상 실·과·소 : 13실·과·소 · 시정 요구 사항 : 30건
예 산 ·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11회 임시회	92 7.22 ~ 7.24 (3일간)	위원장 최석기 간 사 최형식 위 원 진남표 〃 이돈우 〃 신세재 〃 고병윤 〃 류길규	·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59,563,843천원 일반회계 : 44,234,416천원 특별회계 : 15,329,427천원 위원회 삭감액 : 195,326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성위원	처 리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6회 정기회	92.12. 7 ~12.16 (10일간)	위원장 신세재 간 사 최형식 위 원 최석기 〃 이돈우 〃 김양진 〃 김기채 〃 고병윤 〃 류길규	•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59,349,615천원 일반회계 : 45,019,407천원 특별회계 : 14,330,208천원 •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61,240,421천원 일반회계 : 47,351,292천원 특별회계 : 13,889,129천원 위원회 삭감액 : 1,190,076천원 •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 예 산 : 51,559,369천원 세입결산 : 52,450,694천원 세출결산 : 43,771,936천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6회 정기회	92.12. 2 ~12. 4 (3일간)	위원장 김기채 간 사 전종열 위 원 진남표 〃 최형식 〃 최석기 〃 신세재 〃 김준형 〃 이돈우	• 감사대상업무 : 16실과소외 47건 • 시정요구사항 : 12개 실과소 23건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군정쇄신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0회 임시회	93. 5.24 ~ 6. 4 (12일간)	위원장 이돈우 간 사 전종열 위 원 진남표 〃 최석기 〃 김백수 〃 고병윤 〃 김기채 〃 류길규	•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 36건
예 산 ·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21회 임시회	93. 6.16 ~ 6.17 (2일간)	위원장 최석기 간 사 김준형 위 원 오균호 〃 이돈우 〃 김백수 〃 고병윤 〃 전종열	•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66,504,551천원 일반회계 : 51,757,700천원 특별회계 : 14,746,851천원 위원회 삭감액 : 143,924천원
예 산 ·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25회 정기회	93.12.13 ~12.22 (10일간)	위원장 진남표 간 사 전종열 위 원 이종윤 〃 오균호 〃 반기진 〃 최석기 〃 김백수 〃 김준형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69,864,516천원 일반회계 : 54,769,220천원 특별회계 : 15,095,296천원 위원회 삭감액 : 5,000천원 •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77,663,406천원 일반회계 : 70,190,653천원 특별회계 : 7,472,753천원 위원회 삭감액 : 580,753천원 •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 예 산 : 59,349,615천원 세입결산 : 63,498,981천원 세출결산 : 53,489,583천원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5회 정기회	93.12. 3 ~12. 6 (3일간) 일요일 제 외	위원장 김백수 간 사 고병윤 위 원 성호익 〃 김양진 〃 이돈우 〃 전종열 〃 김기채	· 감사대상 : 18실과소 108건 · 시정요구사항 : 17실과소 53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5회 정기회	94. 1.18 ~ 1.20 (3일간)	위원장 류길규 간 사 이돈우 위 원 성호익 〃 오균호 〃 최석기 〃 김기채 〃 김백수	· 모양성 외곽도로 정비사업 관련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 3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8회 임시회	94. 7. 8 ~ 7.11 (4일간)	위원장 오균호 간 사 성호익 위 원 진남표 〃 이종운 〃 최석기 〃 전종열 〃 김백수 〃 김준형	·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85,152,543천원 일반회계 : 77,233,598천원 특별회계 : 7,918,945천원 위원회 삭감액 : 305,932천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8회 임시회	94.10. 4 ~10. 5 (2일간)	위원장 최석기 간 사 김백수 위 원 진남표 〃 이종운 〃 반기진 〃 김기채 〃 고병윤	·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중 보육 시설자금 지원사항 및 운영 일 체에 대하여 조사 실시 시정 사항 : 7건

위원회명	회 기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특별위원회	제30회 임시회		진남표 최석기 김기채 전종열 김백수 고병윤 김준형	조사활동 보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1회 정기회	94.12.16 ~12.22 (12일간)	위원장 이종운 간 사 김백수 위 원 진남표 〃 성호익 〃 이돈우 〃 최석기 〃 고병윤 〃 류길규 〃 김준형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심사 의결 예산액 총 액 : 106,071,422천원 일반회계 : 96,743,004천원 특별회계 : 9,328,418천원 •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액 : 104,059,237천원 일반회계 : 94,431,057천원 특별회계 : 9,628,180천원 위원회 삭감액 : 912,355천원 •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산 액 : 69,864,516천원 세입결산 : 74,833,636천원 세출결산 : 63,919,718천원

위원회명	회 가	활동기간	구 성 위 원	처 리 내 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1회 정기회	94.11.26 ~12. 2 (7일간)	위원장 성호익 간 사 김기채 위 원 진남표 〃 반기진 〃 전종열 〃 김백수	• 감사대상 : 18실과소 157건 • 시정 및 개선 요구 : 72건
채무부담행위 승 인 심 사 특 별 위 원 회	제34회 임시회	95. 5. 4 (1일간)	위원장 김준형 간 사 성호익 위 원 진남표 〃 이종운 〃 이돈우 〃 최석기 〃 반기진 〃 오균호 〃 전종열 〃 김백수 〃 고병윤	•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승인요구액 경지정리사업외 3건에 3,559,771천원, 위원회에서 부결
행정사무조사 특 별 위 원 회	제34회 임시회	95. 5. 9 ~ 5.13 (5일간)	위원장 김백수 간 사 성호익 위 원 진남표 〃 이종운 〃 오균호 〃 최석기 〃 고병윤	•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채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조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 13건

7. 건의문 채택

쌀 수입 개방 관련 대정부 건의문

1991년도 쌀 수입 추곡 수매가 수매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경제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숫자를 다루는데 미흡한 생각이 들어 듣는 우리 의원님이나 회의실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쌀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정착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생활을 연명시켜준 절대 필요한 곡식이며 몇 천년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석이 된 핵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농촌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우리 농촌 농민들의 수는 약 7백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7백만 농민과 연계된 공무원, 회사원, 상인에 관계가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일 우리 농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재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사회질서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현 경제가 유지를 못하는 큰 원인은 기본 경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허술한 집, 기계를 조립할 때 좌대가 허술한 부분인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농촌의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농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 합니다.

현정부에서는 농민들의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찌 과잉 생산입니까. 하여튼 표를 보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총 쌀 생산량이 3,742만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으로 나누면 아니 그것을 kg로 나누자면 한석에 144kg이기 때문에 총 kg수는 426,702만kg입니다. 총 생산에서 소비량을 빼면 46,358만kg이 나옵니다. 석으로 나누면 3,219천석이 나옵니다. 부족량은 3,219천석 부족하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뽑은 것이 아니고 91년 유통공사 사장이 TV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나라 현재 쌀 생산은 100% 자급 자족할 수 없고 약 92%정도 자급 자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기에 거기에 준해서 한번 뽑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왜 남아 돌아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공때 전씨라는 분이 너무나 과잉 수입을 해가지고 약 9백5십만석이나 수입되어 남아 있고, 또 카츄샤에 군납분 캘리포니아산을 국민 일인당 배분하면 약 4kg씩 해당된

답니다. 이것이 잔여분으로 남아오기 때문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특 적자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양특 적자에 대하여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만 해도 약 7%, 하곡수매 때만 하여 20% 미만에서 인상하였으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바로 수매한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1월까지 수매하며 농촌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수매치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매하여 다음해 2월을 지나 3~4월부터 정부에서 수매한 후 농촌에는 잔량이 없습니다.

3공~5공때 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만은 시중에 오른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방출합니다.

헐값에 사들이고 비쌀 때 소비자들에게 방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자의 요인이 없을 것으로 합니다.

우리의 현재 국민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됩니다. 몇년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쌀은 절대 자급 자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적 자급 자족하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38백만석 돌파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각 부락에 증산왕은 상금으로 금전도 주었습니다.

또 녹색 혁명이라 하여 농사 다수확을 성공한 공무원은 대통령 훈장 및 포상을 푸짐하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행정부에서 요구한대로 38백만석 생산을 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바라는 대로 농민들이 했다면, 우리 농민들은 위대한 애국자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가다듬어 전 주민의 경제적인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책에 있는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농민을 죽이는 농정입니다.

본 의원이 잘 모르지만 이 농정 정책이란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때에 생산자의 모든 면에서 타산이 맞게 수매하여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매출할 때 어느 장소에서 사들여도 적당한 가격과 품질면에서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농정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정 정책이 무엇입니까?

생산자로부터 생산한 쌀을 일찍 사들이지도 않고 중간 상인에게 농락을 당하고 나면 상인보다 좀 더주어 사들이고 쌀이 품귀 현상일 때 정부가 쌀을 시중에 방출합니다.

생산자에게서 득을 보고 소비자에게도 득을 보아 우리 농민을 죽이는 농정정책이라 봅니다.

현명하신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현 정부는 현 사회에서 쓰러져가는 우리 농민들을, 특히나 죄없는 농민들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 애국하는 우리 농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고창군청 앞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우리 농촌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피맺힌 소리를 하고 있을 적에, 저는 점심때 어떤 주민이 고창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여 가 보았습니다. 그 넓다란 홀에는 농민을 지도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농민들까지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양담배를 피워야만 매국노이며, 외국 물품을 선호하는 자만이 매국노입니까? 중화요리집에서 외국산 밀가루 음식을 사먹는 사람은 생각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여기 계신 공무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고창 공무원들께서 쌀 소비에 앞장서서 선구자 역할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일을 잘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민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해 달라고 훌륭한 여러분들을 의원님으로 선출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가 형성되어 이 일을 제일 큰 일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현명하신 의원님들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수매가는 몇%로, 수매량은 몇 천만석 이런 부분을 건의하셨으면 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하였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 개방 및 추곡 수매 관련 대정부 건의문

현재 우리의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 할 쌀 수입 개방과 농가 소득과 곧바로 직결되고 있는, 91년산 추곡 수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대정부 건의합니다.

1. 쌀 수입 개방은 고창군민 모두의 이름으로 하여 절대 반대한다.
2. 91년산 추곡수매가격은 91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91년도산 추곡 수매량은 총 1000만석을 상회하여야 한다.

1991년 11월 19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문

산업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 질주해 온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위기에 처해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제 가치에 기준해서 욕망의 충족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산업사회의 경제 윤리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설문제는 기본적으로 동기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는 생명 가치의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자연과 생명공존 우위론을 본인은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또한 동조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생태사상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발전이 앞으로 생태계적 균형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상이변과 공해 피해 현상은 천재라고 탓할 수 없는 인재 및 개발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공해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자가당착적 모순 행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속에 우리 고창군민은 또하나 핵이라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불과 20㎞ 옆에 두고 사는 우리 고창군민들은 몇해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먼 남의 나라 사고 사건으로 무관심 망각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고 가능성 관련에 상존하여 항상 우리들의 뇌리를 불안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공간적 여건 속에서 신문 보도에 의하여 과학 기술처에서 핵 시설물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40여곳이라고 집계 발표하고, 그중 우리 전라북도에 두곳이라는 건수가 발표되자 우리 고창에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민심이 동요되어 급기야는 상하면 용정리 한전 소유 임야에서 주민 약 2천여명이 모여 핵 폐기물 처분장 건설 결사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4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집단 행동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진전의 주위는 첫째, 처분장 유치 신청이 우리 전라북도에 2건이나 접수되었다는 점에 우리 고창이 후보지로써 유력시 된다는 판단의 비약과 둘째, 건설에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목되는 부지 매입의 절차가 한전 소유로 이미 해결되어 있어, 건설부지로 용이하다는 예측 심리가 선행하여 조상 대대로 가꾸어온 고향 산천을 버리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애착심에서 발동한 자구책의 정당한 집단행동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정부 후보지 선정 발표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고창 군민은 저항의식이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는 군 의회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립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정당한 사명이요, 중대한 임무라고 간주되며, 불초 본 의원이 외람되게 반대 건의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결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이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단순 애향심에서나, 내고장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의 발로만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15,000여 정보에서 생산되는 벼 75만석의 주곡과 10,000여 정보에 생산되는 수박, 고추, 무우, 배추, 땅콩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품질 좋은 과채류가 성수기 때는 매일 200여차 이상 외지로 출하하여 명실공히 국리 민복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고창에 만에 하나 처분장이 건설된다면, 하필이면 처분장 옆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겠습니까? 끔찍스러운 핵 폐기물이라는 선입감이 바로 구매력과 연결되어 수요를 잃고 천혜옥토가 황무지 폐허화 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전의 가능성 앞에 효율적인 국토 관리 차원에 우리 고창은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지난 10월 15일 과학기술처에서 보내준 설명서에 위험물이 아니라고 극력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은 의견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의 주의를 가중해 보려 합니다. 금번에 건설되는 처분장 앞으로 30년간에 걸쳐 전기 수급상 50기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부 계획과 크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많은 원전에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처분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유출 사고 가능성을 가정할 때 상하면 처분장을 중심으로 시내 거리 반경 20㎞로 원을 그린다면 우리 고창군 전역은 물론 인접 부안군 일부와 영광군 일부 지역이 사정권 안으로 포함되어 육지와 바다가 반달처럼 양분될 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애국적 견지에서 도서나 반도지역보다 피해 확산 폭이 훨씬 광활한 우리 고창은 후보지 선정 대상 지역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결을 관망하며 설명을 마치오니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문

최근 과학기술처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고창군 관내 지역인 상하면 용정리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예상되어 관내 주민 2천여 명이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던 바, 이같은 정부의 발상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써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건의합니다.

1.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을 우리군 관내 설치는 고창군민 모두 이름으로 하여 절대 반대한다.
2. 만약 방사성 폐기 처분장이 우리군내에 설치된다면 고창군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991년 11월 19일

고창경찰서 이전 건의문

구시대적인 관행과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자세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발전 구상안을 제시하여 전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대 고창시 승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지혜를 결집하여 쾌적하고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 고유문화의 보존과 전승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실로 본 의원이 경찰서 건물 이전 결의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상념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현 우리 세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난관들을 이해와 설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여 나갈 때 진정한 지역발전이 이룩되리라는 소신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경찰서 건물 이전이 불가피한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선운산 도립공원, 동호 및 구시포해수욕장, 모양성, 석정온천을 연계하여 개발하여 군민소득증대를 기하고 또한 대단위 야산 개발지의 관광 농원화가 이루어질 때 더욱 전원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두번째로 동건물이 모양성과, 동리 국악당, 동리 신재효선생의 고택과 연접되어 당군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모양성 주변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협소로 지역 발전의 가속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번째 옵 소재지의 도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만 도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동 건물로 인하여 편중된 지역 개발과 상가의 미조성으로 도시발전의 맥이 절단되어 기형적인 도시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조속한 기간내에 지역 주민의 뜻이 관철되어지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의원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창경찰서 이전 건의 결의안

우리 고창인은 2000년대 우리 고장의 중심권인 고창읍을 쾌적한 전원 도시로 가꾸고 전통 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 전군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선구자적인 점신으로 모든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하며 발전의 저해요소를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살

기좋은 대 고창건설의 초석으로 삼고자 전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창의 발전은 모양성, 석정온천, 선운산과 동호·구시포해수욕장 그리고 광활한 야산 개발의 관광 농원화가 선행될 때, 다가오는 2000년대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창이 되리라 확신한다.

1. 고창경찰서의 건물은 모양성과 동리 국악당,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과 연접되어 있어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성 주변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문화 공간의 협소로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걸림돌로 인식을 같이하며,

1. 읍소재지의 도시는 지역간 균형된 발전이 전제되어야만 도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현 고창경찰서 건물로 인하여 편중된 개발과, 상가의 미 조성으로 도시발전의 맥이 절단되며, 도시의 기형화를 가속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전군민은 공감한다.

1.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고창경찰서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한다.

1992년 10월 22일

합동법무사 사무실 분산 건의문

우리의 주변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밝은 면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권장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어둡고 옳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평소 주민의 불만과 민원의 사항이 되는 법무사 합동사무실 운영의 제도적인 모순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 주민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에는 법무사 합동 사무실이 1개소밖에 없어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민주화시대에 역행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법무사는 직업인으로서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자세로 봉직하여야 함에도 직업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제도적인 모순과 일방적인 운영으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지방화시대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의원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합동법무사 사무실 분산 설치 건의 결의안

자본주의의 원리란 모든 분야에서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하에서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얻을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어떠한 분야의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을 한다는 것은 주민 편익과 민주화의 과정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특히 주민의 이용이 가장 많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무사 사무실 운영에 관하여 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고창군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무사의 자격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정한 직급으로 다년간 근무한 자로, 법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와,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인 신망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친절한 자세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신뢰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법무사 사무실이 합동 법무사 1개소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법무사법에 의하면 법무사는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읍관내 거주하는 전체의 법무사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운영방법과 제도적인 모순으로 민원인이 겪는 갈등과 불편, 형평을 잃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군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과 관행을 관계기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2년 10월 22일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19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내년 연초에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냉엄한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있음에 전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낙후된 국내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군민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현명한 의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우리 민족은 5,000여년 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민족으로서 쌀을 "민족의 혼"이라고 일컬어 왔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와 정부는 지금까지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기초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 식량 생산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 나라의 존립이요, 국민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존립기반이 쌀에 달려있고 보면 우리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수입개방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쌀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쌀 농사 기반이 무너진 후에 쌀 수출국이 외교수단으로 쌀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턱없이 높은 가격

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쌀 수입개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은 10만 고창군민의 뜻과 의지를 결집하여 제16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1. 고창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1일

영광 원전 냉각수 1·2호기 가동과 3·4호기 건설로 인한 피해용역조사 및 보상촉구 건의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였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개발을 자제하고 대처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윤리규범이다. 60년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파괴는 물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증가일로에 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의 확보와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영광원자력발전소 1·2호기 가동과 3·4호기 가동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6천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1·2호기 가동시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한 수온 2℃상승지역만(가막섬)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0.5℃ 상승지역(해리)까지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1차 보상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1. 원전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안개 번무 등)가 지대하므로 품종을 제한하지 말고 피해 구역내의 모든 어업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3·4호기 가동에 대비하여 어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에 피해용역 기관을 선정 조사를 실시하고 선 보상책을 강구한다.

1. 선진국(일본)과 같이 어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993년 4월 13일

목적세 전환반대 건의문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창군민이 신정부에 갖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며 현재까지 추진해온 정부 쇄신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새로운 도약으로 신한국 창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나 할까 시책을 구태의연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실로 유감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 정부에서는 경부 고속도로와 신 공항건설을 위하여 특별 소비세중 휘발류, 경유세 등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코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각계각층의 반대와 시행상의 불합리로 백지화 한 것에 우리 모두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만,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또다시 목적세 신설이 거론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취약케 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예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은 10만 군민의 뜻과 의지를 결집하여 목적세 신설의 부당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창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6.3%로서 자체재원으로서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극히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진 자치단체로서 전체세입중 지방교부세가 52.6%, 양여금과 보조금이 31.1%로서 의존 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민주화의 물결로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와 지역개발, 복지증진, 생활편익을 위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되는 추세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극히 역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면 본군의 경우 연간 25억여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간 불화로 인하여 선진국 도약에도 걸림돌로 작용되리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목적세로의 전환을 즉각 중지하여 주실 것을 10만 고창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3년 5월 20일

고창읍 고속버스 운행 건의문

우리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1읍 13면 533개 행정리에 10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규모가 큰 군으로써 동쪽으로 정읍군, 남쪽으로 전남 영광·장성권과 접하고, 북쪽으로 부안군, 서쪽으로 서해에 접하고 있는 유서깊은 문화고장으로써, 전국유일의 답성민속이 전승되고 있는 모양성과 울창한 동백숲과 기암괴석을 자랑하는 도립공원 선운산, 동호·구시포해수욕장 등의 관광지를 비롯하여 92년도에 개장한 석정온천은 성인병 특효가 있다는 게르마늄 온천으로 매일 3천여명 이상의 입욕객들로 붐비는 등 사람들의 흐름으로 생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전남 장성과 정읍군은 열차와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영광군은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데 비하여 우리 고창군은 열차도 고속버스도 운행되지 않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고창~서울간 직행버스만 운행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직행버스 이용을 꺼려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인접지역인 정주, 영광 등에 나가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 8만명이 넘는 고창출신 서울거주 인구의 연고에 의하여 내왕자수와 늘어나는 관광객, 사업상 이동하는 인구등 고창~서울간 여행자수는 93년 6월 현재 월평균 1,600명에 이르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송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없어 이로인한 주민의 짜증과 불편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만 군민과 8만 출향민들의 편익과,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 써비스제공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근간이 될 수 있는 서울~고창간 고속버스 운행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1993년 8월 10일

농업부분 세제지원 및 감면확대 건의문

우리나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의지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며,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또한 농업이 경제적 가치 이외에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계속 보호육성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첫째,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양도·증여·상속에 따른 세제 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지유통관련 각종 지원규정에 대해 세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상속이나 이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일괄 상속·증여할 때 세제 감면제도가 없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일괄 상속하는 경우 농지상속 공제한도가 너무 낮아 세부담 가중으로 인해 농지 세분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바, 자경 농민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일괄 양도·증여·상속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하여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영농규모 확대사업 지원을 위한 자경농지의 지방세 감면의 확대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과중함에 따라 원활한 농지취득을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영세 전업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경농지 취득(유상, 무상, 교환, 분합 등 모든 취득 포함)때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 세제감면 대상 농민범위도 현행 농민후계자에서 농촌 정착희망 고등학교 출신자(재학생 포함)까지 확대해야 한다.

세제경감 대상면적을 현행 9천평이내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6만평이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9천평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비료, 농약, 농기계, 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으나 부업인 축산 배합사료, 농업용 폴리에스틸렌 필름, pp포대, 비닐하우스용 자재, 농업용 파이프, 출하 농산물 포장용 상자, 농기계 부품 등은 값이 비싸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에 따른 농업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산물 포장용 상자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세제 감면혜택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농어촌 정주권 사업은 농어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도 중소도시 수준의 문화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농민의 자발적 의사 못지않게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시계획등 여타 지역개발사업과 대등한 지방세제가 절실이 필요하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어민이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지방세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의한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소형 자동차(화물)의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최근 농업경영의 필수품품으로써 쎄렉스 등 농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보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전액 과세함으로써 자가 농산물 수송차량 확보에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트렉타 경운기는 시가지 운행이 제한되고 있어 자가 생산농산물 운반을 위해서는 부득이 농업용 소형화물차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바 적재톤수 1t 미만의 소형화물차 구입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

여섯째, 농어촌 생산기반과 구조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폐가치로 보장한 예산의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실정이다.

이를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부흥세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1993년 8월 10일

지적업무 일원화 방안 건의문

지적·등기 등의 부동산 등록제도는 일제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입 시행된지 80여년이 지났으나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자료로서의 공시기능이 아직도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지적과 등기는 상호 목적과 효력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 되어 업무의 협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산업구조가 복잡화되고 행정기법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나 국민모두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정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정부 출범이후 작은정부 구현 방침이나 국민을 위한 정부적 차원에서 지적과 등기업무는 하나의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장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군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적업무 일원화방안」을 결의 건의한다.

첫째, 지적과 등기업무를 주민이 활용하는데 편리한 기관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지적과 등기업무는 현재 취급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비능률과 주민의 불편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과 등기업무 관장기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토지분할 등기시의 예 : 시군민원실, 등기소(법원), 지적공사, 법무사 등)

둘째, 등기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대행기관 개선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등기제도를 기존 등기관계 대행기관(법무사)대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써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3년 8월 10일

고창군 패류 어가의 재해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전국민이 그토록 갈망하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와 함께 침체와 좌절 속에 침잠된 농어민에게 활력을 넣어주고 농어촌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5년으로 앞당겨 수립시행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원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살고 싶은 농어촌,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고창군도 이에 발맞추어 고창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의 엄청난 피해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우리 고창군 상하·해리·심원·흥덕·부안면등 5개면의 74㎞에 이르는 해안에 접하여 생활하는 6,000여 어민들의 피해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248㏊의 면허패류어장은 물론 영세어민의 생존수단인 무면허어장 반지락이 완전폐사되어 생존의욕을 상실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변화와 개혁 속에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고 특히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문민정부에 뜨거운 애정과 깊은 신뢰를 표하면서 고창군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다음 몇가지 사안을 건의한다.

1. 전남지역은 물론 고창군과 인접한 부안군의 피해는 극소한데 비해 유독 고창군 해안에만 양식패류가 완전히 폐사된 이유의 규명
 -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간만의 차가 현저한 연안의 급격한 수온의 상승과 불볕 속에 장시간 노출된 원인도 있겠으나, 영광원전의 온배수의 영향이 근접한 고창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더하였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그것은 페열·방사성폐액·염소가스·합성세제·금속 등이 함유된 원전의 폐수 및 온배수에 의하여 수산생물의 폐사반경은 10㎞에 걸친다고 발표된 일본 동경국립수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미즈구찌겐야(水口憲哉)교수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반경 10㎞이내 고창군 연안 어장의 폐사가 원전온배수의 영향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2. 폐사된 면허패류어가의 충분한 보상은 물론 영세어가의 생존수단인 무면허 패류어가의 피해보상도 포함하여야 한다.
 - 무면허 무신고 어업은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보아 면허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못했을 뿐 당사자의 물권적 권리는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배상이나 보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공인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영세어민의 무면허 패류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1994년 10월 1일

월곡택지 재평가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제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 본군의 주요시책과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의지와 군민의 대의자인 동료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사개진으로 본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행정으로 자치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으로 영원히 남게되리라 생각하며 그야말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리더를 선택한 현명한 군민만이 복지사회를 구가하며 살아가리라 예견되는 바 입니다.

1991년 4월 15일 본군의회가 개원되어 지역의 발전과 자치역량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내의 유명한 국민휴양지가 될 석정온천 개발과 모양성 복원, 선운산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 고창~정읍간 4차선 확·포장, 구시포항의 2종항 승격 및 개발, 고창직업훈련원 유치, 고수아산농공단지 조성 등 괄목할만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문화 창출과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8만8천평의 월곡택지개발사업은 절대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본군의 주요현안사업이나 본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가 보상금 책정이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결정되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사태가 잇달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때에 화합단결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분열과 반목의 불씨가 되고 주민의견을 올바로 수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실예로 본군에서 90년도에 시행한 덕산택지개발지구 평균지가보상금이 평당 90,000원 94년도에 산정한 석정온천 우회도로 편입용지 평균지가보상금이 평당 59,400원이었음을 비교 감안하고 본지구내 매매실례 입지여건과 개발전망 등을 종합검토할 때 월곡지구의 평균보상가격 평당 69,500원은 적당치 못한 보상가격이라고 판단되는 바, 지역의 화합과 발전이라는 조화있는 행정수행의 추진을 기대하며 관계법에 따라 지가보상가격을 재평가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하여 드린 월곡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재평가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지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 3월 8일

제4절 군정질문 및 답변

1. 제2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류 길 규 의 원	• 집단민원이 발생된 신림면 무림리 산 45-1번지외 15,000평에 대하여 1982년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여 고창양계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그후 허가취소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기획실장 정 창 진	•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동사건이 계류중이므로 패소시에는 대법원에 상고계획이며, 앞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대처하겠음.
	• 신림면 신평리 산 9번지내 약 100,000㎡가 개간촉진법 제30조에 의거 개간허가경위가 적법한 행위이며, 행정의 공적개념에 비추어 공공목적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가?	건설과장 손 영 국	• 89년 7월 21일자로 개간허가업무가 읍면장에게 이관되어 허가취소여부등을 추후 보고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 14개 읍면의 직원결원이 많아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충원대책은 무엇인가?	내무과장 표 희 종	• 읍면 결원 인원 85명에 대하여 특채 및 공채로 충원할 계획임.
전 재 준 의 원	• 농촌의 취사용 연료가 프로판가스로 점차 확대되는데 비례하여 사용자인 군민의 불평 또한 커지고 있다. 불편요인을	지역경제과 장 황 태 성	•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간략하면 프로판가스 정량주입 불분명, 배달요청시 시간 지연 등이며 면단위 보급소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한 것인가? 고시에 의한 것인가? 또한 기준은 무엇인가?		고창군수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동고시에 의하면 읍의 경우 판매량이 월 15톤당 1개소로 정해져 있고 면당 1개소임. • 앞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은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허가기준 고시 개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김 동 훈 부 의 장	• 사적 145호인 모양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화장실시설이 미비해 관광객들의 불편과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희귀종인 맹종죽의 도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진서루, 등양루 등이 파손되고 있는데 대한 관리 대책은?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근무제도 개선방안은?	공보실장 강 유 원	• 고창읍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직제 및 조례개정에 필요한 자료등을 수집중에 있음. • 화장실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복원 후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맹종죽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호철책 및 보호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음.
	• 20세기 과학이 낳은 최대의 범죄는 환경파괴와 생활환경의 오염이다. 현재 고창천은 수중의 산소가 부족하여 물고기가 없는 상황이며 악취가 심하다. 고창천에 흘러내리는 생활하수, 축산폐수, 기타 폐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오염도는 조사하였는가?	사회과장 신 균 남	• 고창천은 준용하천으로 13.5㎞이나 고창읍 구간은 2㎞이다. 고창천 오염원은 가구의 생활하수로서 4,988호 인구는 19,153명이며 1일 하수량은 3,000톤으로 고창천 정화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4억원 예상되며 현재 재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여기서 밝힐 수 있는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고창읍의 폐수 배출업소는 몇개소이며 정화시설을 갖춘 업소는 몇개소인가?		것은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생물학적 산소용량, 즉 산소는 기준치 이하이고 부유물질은 기준치 이상임. 또한 고창천 정화사업은 전군민의 협조가 매우 중대되고 있음.
	• 석정온천 개발중에 온천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식수로 적용판정은 받은 것인가? 석정온천 추진상황과 주민을 위하여 업자와 협의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향은 없는가?	건설과장 손 영 국	• 전라북도 보건연구소에 음용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이 0.1이하로 검출되었음. • 1일 이용객은 300명선이며 업자와 협의한 결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임.
	• 고창읍 주요도로가 상수도사업, 통신공사 선로매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은 합목적성 결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용의 영조물설치 또는 관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 및 생명, 신체를 해할 때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고창군의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에는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매년 1월, 4월, 7월, 10월 4번정도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사업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중으로 굴착되지 않도록 시공방법, 시공기간 등을 조정하여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무단점용사례는 없음. • 좁은 시가지에서 단시간내에 12개소를 동시에 굴착함으로써 공사중에 다소 불편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 균 호 의 원	• 농업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소형관정개발은 큰 성과를 거양하여 한해를 모르는 전천후 농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본 사업을 시행한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를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있는 바 개선대책과 확대개발 의향은 없는 것인가?	건설과장 손 영 국	• 관정개발현황은 수도용이 8,930공, 원예용이 890공이며 금년에는 수도용이 30공, 원예용이 80공으로서 총 9,930공 개발하였음. • 관리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하지만 행정에서 연2회 점검하고 있으며, 개발물량이 도 및 중앙으로부터 감소되어 할 수 없이 감배정하고 있으나 증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해안지구 배수갑문의 노후화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해리면 신동호에서 바다로 흐르는 배수갑문, 광승리 외경지구 삼정사갑문, 상하면 용두옆 배수갑문이 노후화로 제구실을 못하여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해안지구 배수갑문이 노후화되어 삼정사장호갑문이외에 소류지 방파제, 갑문 여러가지 보수할 곳이 많으나 모두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음.
이 종 문 의 원	• 전국의 수박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재배농가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판매대책이 있는가? 고창수박 촉진을 위해서 수박품평회, 수박아가씨 선발등 대대적인 수박축제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산업과장 황 춘 웅	• 수박판로 홍보를 위하여 중앙방송이라든가 신문에 수시홍보하며 고창지역출신 향우회에도 권유문을 발송하겠으며 수박제 행사는 7월중에 대산면에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박아가씨 선발대회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로문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며 농협을 통하여 계약재배 계약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진 남 표 의 원	• 고창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의 수립문제이다. 석정온천, 모양성, 선운산, 동호해수욕장을 연계하는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실시할 용의는? 또한 석정온천지구의 관광휴양지구시설 고시 후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본유치활동을 전개할 용의는?	군 수 박 병 식 공보실장 강 유 원	• 고창군 전역에 유명한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고창읍성을 개발하면서, 인근 석정온천의 개발상황과 관광객 추이등 기타 우리군의 전체관광객 이동상황 및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주변관광개발계획을 연구 검토할 계획임.
	• 현선운산 상가시설 구획은 대단히 불합리한 모순점으로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는 바 선운산 상가시설 구획을 재조정하여 제2차 개발을 실시할 방안과 현재까지 시설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무서와 협조 부동산 투기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용의는? • 모양성은 국내유일의 현존석성으로써, 국내유일의 관아촌으로	건설과장 손 영 국	•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사업비부족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한 블럭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려고 하나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미착공 상태이며 건축제한이 해제된다면 바로 착공토록 조치하고 부동산 투기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개발을 목표로 민관이 합심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에 모양성외곽지역에 민속촌과 관광레저타운을 건립하여 안에는 관아촌 밖에는 민속촌으로 복합개발하여 관광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은 없는가?		
	· 구시포해수욕장은 옛부터 염도가 높아 피부질환 및 해수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명사십리와 우거진 송림으로 유명한데 휴양지로 지정 개발할 용의는?	공보실장 강 유 원	· 1960년이래 기존시설물인 화장실, 샤워장, 음료수대, 이동과출소, 민박촌, 식당, 상가, 야영장 등 계속 개보수를 연 1,000만원씩 투자해서 지원해 왔으며, 또한 금년에는 3,000만원을 투입 편익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장 및 기업인의 자본유치 등 개발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음.
	·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 보조금이 국·지방비 포함 6억 4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일부지구에서는 당초목적 및 제도와 상이하게 사유화함으로써,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위탁영농회사 설립계획은 있는가?	산업과장 황 춘 웅	· 우리군의 영농단은 570개소입니다. 농기계 구입시 농가가 차주가 되어 소유담보물을 제공, 농자금지원을 받고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지원사업이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영농추진과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우루과이 협상타결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는 시설채소 재배단지, 과수단지,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단지 등 권역별로 집중육성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운동 전개등을 향우회 및 아파트단지 등과 연결한 소득증대방안은 없는가?		• 고창군은 3개권역으로 유망작물단지를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농민들이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스스로 작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할 것임. 또 여건조성과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자금, 기술, 국제정보,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것 등을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대하고, 가공공장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음.
	•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고창읍 중심화를 위하여 모든 시내버스노선이 고창읍을 경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할 용의는?	지역경제과 장 황 태 성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고창읍에 집약될 수 있도록 교통망 조정에 유의하겠음.
	• 각종 군세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신규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밝혀 줄 용의는?	재무과장 박 춘 오	• 은닉세원 발굴은 취약부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를 연5회 실시하겠고 세무공무원을 전문요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덕산택지개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이 78%, 전북이 52%, 우리군은 36%로 극히 저조하며, 하수도 보급율 또한 전국이 78%, 전북이 69%인데 비해 우리군은 4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고창군민의 얼굴이자 고창읍민의 숙원인 고창천 종합개발사업은 건설부에서 금강지류 기타 하천으로 분류, 우선순위 46위로써, 94년부터 국비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상태로는 개발이 요원한 실정인 바,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드는 부분, 즉 오수관매설, 호안블럭, 하상정비, 일부 고수부지의 주차장화, 가로등 시설 등은 연차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투자개발하면서 94년부터 본격 개발할 용의는 ?	사회과장 신 균 남	• 환경처계획으로는 94년도에 하천정비에 5억원이 계상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확실한 재원확보 대책은 없으며 고창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가 약 64억원정도 예상되고 있음. 고창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군비를 확대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음.
		건설과장 손 영 국	• 정부계획의 의존을 떠나서 공사가 조금 늦게 되더라도, 정비계획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과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상·하수도 보급율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도 영광원전과 협의하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부안댐을 결들여서 종합적으로 서면보고 한 계획임.
최 석 기 의 원	• 공음, 대산, 신림 3개면의 공동묘지가 약 26만평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약40%가 개간되어 경작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고창군에서 무단경작자에 대한 대부료미부과 경위 및 관내 공동묘지 개간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가정복지과장 이 창 남	• 공동묘지현황설명 — 생략 읍면장, 관계실과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모경을 단속하고,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장기수를 식재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지에 기여하겠음. 묘지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묘지관리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현행민법 제245조에는 타인의 부동산이라도, 20년이상 점유하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소유권이 상실되는 공유재산은 없는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고창군의 총건수가 3,164건인데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즉 개인소유로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은 없음.
김 양 진 의 원	• 상하면 구시포해수욕장 백사장에 아카시아를 식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며, 아카시아나무를 선택한 이유, 해수욕장 조림의 근거, 예산투입현황 등과 수종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교체할 의향은?	산림과장 오 상 규	• 식재현황설명 — 생략 염기에 강한 수종으로는 해송과 아카시아, 수양버들이 있는데 아카시아는 선입감이 불쾌합니다만 성장되면 가시도 없고, 뎅아락도 없어지며 경관면에서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 91년도부터 발생한 산불의 일자별 발생사항과 실제 피해면적 그리고 실제피해면적과 보고면적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피해지역의 복구대책은 무엇인가?	산림과장 오 상 규	• 본군의 산림피해면적은 6건에 4.6ha이며 실제피해면적과 상이한점은 산림청예규 제300호(86. 8. 27)호에 의한 것입니다. 복구대책으로는 첫째 산불가해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산주 및 연고자에게 설득 종용해서 복구하고 있는 중임.
김 기 채 의 원	• 지방자치 정착은 주민의 참여와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고 본다.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건수 293건에 8,882,290원이다. 이중 대산, 공음, 신림 3개면을 취합한 바에 의하면 76건이나 군에서 부과한 건수는 29건으로 34건의 미부과 사유를 밝혀주기 바람.	재무과장 박 춘 오	• 미부과된 건수는 유휴지, 소관청이관(산림청)등 공부상과 실제상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읍면과 군의 장부는 차이가 없으며 단, 유휴지·잡종지·구거·도로·기타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전·답·대지만 부과함으로써 오차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관내 대부분의 소류지가 노후화 및 토사가 밀려 유지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관정개발도 유명무실한 소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몽리답에는 대형특수관정을 파서 해결하는 것이 실익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소류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으로 전환, 세수를 증대할 용의는?		
최 형 식 의 원	· 지방자치법, 제48조 2항을 보면 의회간사를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토록 되어있다. 원구성 이전이므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겠지만 군의원과 전화한 번 하지 않고 발령한 것은 군수의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전문위원만큼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와야만이 고창군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어지기를 바람.	군 수 박 병 식	· 의회 구성전이라 의장이 있을 수 없어 내부적인 애로를 겪으면서 의회간사를 발령하였으며 현재 전문위원 발령을 못하고 있으며 고창군 공무원들의 순환보직과 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추진하겠음.
	· 선운산시설 지구내 아산면 삼인리 287-3번지 2필지가 이찬재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87년 12월 3일 매각당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재무과장 박 춘 오	·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수의계약이 10건, 경쟁입찰 한 것이 11건으로 21건이 되며 개인별 명세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현재는 기둥과 지붕만 세워놓아 선운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현재는 50만원에서 80만원의 평당가격이 형성되어 부동산투기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에 위배된다면 환수조치 및 양도가 가능한가? 87년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건축물 완공후에야 필했는데 건축신축시 보존등기를 해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의료보험료 인상폭이 쌀값인상폭에 비해 터무니없이 49%나 인상되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상폭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이 22명이나 실제농민은 2~3명에 불과하며, 기가 막힌 일은 민자당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나 신민당 사무국장은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운영위원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	사회과장 신 균 남	• 고창군 의료보험조합 경영상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당시 군정자문위원회가 존속해 있을 때 3명이 추천이 되어서 자문위원자격으로 위촉된 것임.
	• 시내버스가 자율버스로 운영되면서 거스름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관계과에서는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관내에는 자동차신규, 이전 말소등록을 관할	지역경제과 장 황 태 성	• 시내버스회사내 환전기를 설치토록 촉구 및 지도하고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정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군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하는 소관부서가 없어 정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탑정삼거리는 선운산의 관문이면서도 도로폭이 협소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도로확장 용의는 없는가?	건설과장 손 영 국	•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음.
	• 주진천직강공사가 1974년도에 주민자력으로 실시되어 편입토지와 폐천부지를 상호교환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본군에서는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팀을 구성하여 한건 한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가 농수산부 소유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 관리권을 신청결과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나산실업의 골프장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이 양론으로 팽팽한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경위는? 또한 장학금 지원관계가 결부되어 있는데 차음 계약조건은 무엇인가?	새마을과장 김 덕 진	• 나산골프장 추진배경설명 — 생략 환경영향평가는 전북대 공업연구소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허가과정의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학금 관계는 도에서 15억을 기탁하는 것으로 승락을 받고 그중 3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사업추진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안되었기 때문에 91년 5월 31일까지 도에서 연기하였으나 다시 금년말까지 연기되어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중임.
	• 땀흘려 농사를 지어놓고도 한숨을 쉬는 농민을 위하여 쌀, 무우의 대체품목 개발과 고창 수박, 선운산의 풍천장어, 복분자술 등 판매촉진망을 개발하여 우리고장의 수입증대에 공헌할 의향은 없는가?	산업과장 황 춘 웅	• 수입개방예시품목이 130품목이며 우리고장에 해당되는 복숭아, 땅콩, 콩은 수입개방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품목등은 점차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정보 등을 행정에서 제공토록 검토하겠음.

2. 제7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 균 호 의 원	• 경지정리 실적이 전국은 대상 면적의 80%, 전북은 82%이나 고창군의 경우 41%로 저조한 이유와 확대실시방안, 그리고 사업비가 국고 70%, 지방비 20%, 농가부담이 10%로 되어있는데 농가부담금을 국고보조로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본군의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0,200ha이며 현재까지 실시한 면적은 40%에 해당하는 4,200ha이다. 지난 20년간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71년부터 87년도까지 2,847ha 88~91년까지 1,402ha로서, 87년도까지 자부담이 20%이나, 88년부터 자부담이 10%로 융자 지원되고 있는 사유로 인해, 농가의 호응도가 낮지 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 전북평균 수준에 육박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음.
	• 고창군에는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의사 24명 간호원 24명, 진료소장 16명이 근무하고 있어 어려운 농촌에 큰 보탬이 되고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회의다 일요일이다 하여 비우는 날이 많아 농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또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처우개선대책은?	보건소장 김 백 현	•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 진료소에 간호사 한사람씩 근무토록 되어 여러가지 요인으로 더이상 배치할 수 없으나, 보사부에 건의해서 진료소장이 없더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공무원화, 정규직화등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관내노인현황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이 10,014명(남 3,905, 여 6,109명), 경로당이 55개소, 이용노인이 2,600명으로 연간 운영비 지원액이 개소당 144천원으로서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승차권이 1인당 연 144매로써 70%노인과 경시풍조가 만연되는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 여가활동에 필요한 놀이기구 및 문화소식지 지원실태는 무엇인가?	가정복지과장 이 창 남	•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80년에는 65.9세, 85년 68세, 90년 70.2세이며 본군의 10만인구중 65세이상이 약12%를 차지하고 있음. •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 80%, 군비 20% 연간 경로당별 144,000원이나 92년도에는 240,000원선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임. • 관내 55개소의 경로당에는 TV 26대, 신문이 57부, 전화 22대, 장기 57조, 바둑 53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92년도 오락기구 구입비도 개소당 10만원씩 총 550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음.
	• 1990년도 농지세 과세면적이 13만공 450ha에 부과액은 1억 6천748만원으로 되어있고 부과근거를 보면 총생산비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표로 보며 과표에서 기초공제액 2백8십만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어 필요경비산정 기준을 보면 관할시장 군수나 작목별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 많으며 개선대책과 기초공제액을 600만원정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필요경비 산출은 읍면에서 5농가이상 작목별 산출해서, 군에 제출 군에서 도로 보고하여 내무부에 종합 조정하여 자경농지는 68%, 임차농지는 83%가 필요경비임.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의 건은 지방세법 제209조에 의해서 소득공제액이 92년부터 5,800,000원으로 상향되는 것을 알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세대가 14,471세대에 55,195명으로 되어 있고 90년도 의료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6,420원이었던 것이 91년에는 41%가 인상된 9,567원이 부과되어 있다. 부과기준을 보면 농가소득, 종합소득 재산과 자동차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의 보조금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사회과장 신 균 남	• 보험료 상향이유로는 90년도말 7억 5천960만원, 91년 10월말 현재도 똑같은 적자를 내고 있어 부득히 40%인상하였음. • 전북도 평균인상률 37.8%임. • 국고부담금이 '91 보사부 업무지침에 의한 50%임.
김 동 훈 부 의 장	•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그 생활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가정복지과 장 이 창 남	•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총 52세대이다. 순수소년소녀 가장세대 27.5세대,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18세대, 외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세대가 7세대로 구분됨.
	• 자매결연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과 어려움은 없는가?		• 연 지원 내역은 백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50,840원, 정맥 30,600원, 부식비 146,000원, 피복비 46,040원, 연료비 187,240원, 영양급식비 54,000원, 중고생교통비 48,000원, 학용품비 국교생 13,000원, 중고생 22,000원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방문하여 상담지원하고 있음.
	• 결손불우노인에 대한 대책과 고창군의 현황은?		• 현재 무의탁 노인 10세대를 선정 거택보호자로 책정 관리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집중강우가 지역에 편중되어 큰재해가 발생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현실앞에서 관내 미개수하천과 노후화된 소류지, 절개지 위험지구를 비롯 소하천, 산사태, 상습침수지역이 무수히 많이 있음은 걱정되는 일로서 관련부서에는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건설과장 홍 성 춘	• 재해예방대책은 매년 12월중에 수립하는데, 1~5월까지 재해사전대비 계획을 6~10월까지는 풍수해대비 태세를 갖추고, 11~12월까지는 설해대책대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내년도 준용하천개수에 필요한 예산중 약 35%에 해당하는 비용이 본군에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하천준설 등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 고창읍 청용동에 위치한 유진청하아파트 뒷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와 인접한 절개지가 70~90도 정도로 대형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건축허가절차는 적법하였으며 준공검사는 실시하였는가? 또한 재해예방차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는가?	도시계장 김 영 관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 89년 11월 10일 건축허가 하였으며 현재A동 60세대는 91년 15일 준공이 되었으며, B동과 C동 105세대는 91년 4월 28일 가사용승인을 하였음. • 절개지문제는 장흥측량설계사무소에서 안전을 고려 설계하였으며 91년 4월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 안승엽교수팀의 안전진단결과 안전판단을 받았으며, 공사완료 후 2차 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개수하천의 노후화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 하천제방 유실은 물론 농경지침수가 가중되어 민원 및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하천준설 작업을 실시할 용의는?	건설과장 홍 성 춘	• 하상준설대상은 약 30개소에 105km로 도에 보고를 하였으며 92년도에는 1개지구 무장면 주진천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하상준설 대규모 관계는 도에 건의하여 준설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장비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 재해예방장비는 덤프 4대, 포크레인 1대와 각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마대, 말목, 시드, 제설용 소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해발생시 긴급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마대 20,000매, 말목 150개 등을 구입하고 부족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 응급조치로 신속하게 하겠음.
전 재 준 의 원	•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을 하면서 개인소유전답이나 대지등을 헌납 또는 매입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고 있어 세제상 불이익과 사회통념상 관례를 저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 군도 및 지방도개설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창군의 대책은?	새마을과장 김 덕 진	• 72년부터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는 15,476필지에 1,053,748㎡로서 지금까지 13,428필지에 846,495㎡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나 2,048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115필지는 승락을 받았으며 933필지는 해줄 수 없다는 결과이다. 승락필지는 92년까지 등기이전 완료하고, 933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여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군내 관급공사 대부분이 부실공사라는 군민의 소리가 들리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국악당 하자보수, 새마을사업, 재량사업, 각종 공사 부실로 인하여, 소송까지 있는 것으로 군재정손실방지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		• 새마을사업 부실방지를 위하여 토목직공무원, 새마을담당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마을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준공검사이후 하자발생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 내지 74조 규정에 의거 꼭 하자가 보수되도록 조치계획임.
최 석 기 의 원	•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의욕이 강한 소유자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선발지침에 의거 점수배정을 획일적으로 선발하고 있어 실패의 요인이 있다. 선발지침을 폐지하고, 진실하고 농촌에 정착의욕이 강한 자를 선발할 의향은 없는가? • 현재까지 육성한 후계자중 착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숫자와 이농한 후계자는 몇명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염 한 섭	• 농어민 후계자는 총 농민 553명과, 어민 27명이다.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결과 부실후계자 44명중 이주자 25명, 무단이탈 12명, 결혼 2명, 기타 3명, 사망으로서 25명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조치 하겠음.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일정한 배점기준에 의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기계화 영농단지가 90년도말 전마을에 조성되어 농업기계화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가? · 농기계를 공급받아 사중에 처분 차익을 노린 농민도 있다는 여론이 있다.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계화영농단조성은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을 선정하고 농기계 구입농가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하여 읍면장이 매월 점검하여 사고발생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병행하여 불미스런일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난 1974~1976년도까지 고창군의 대단위 아산개발로 인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환지청산금이 현재까지 미정산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아산개발현황은 10개지구에 1,117ha이며,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가 83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 민원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이문제는 세부조사를 별도로 해서 보고하겠음.
김 기 채 의 원	· 지난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수박제 행사가 대산면 청년회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민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UR에 대비한 우리농산물 품질향상과 대체작목으로서 소규모영농에서 대규모영농으로 전환하는 기업농육성책이 시급한데 고창군의 견해는?	군 수 박 병 식	· 수박이 고창의 특산물로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있다. 대산 수박제 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격상 및 확대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그리고 대산수박제를 고창수박축제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 농산물 상품권문제로 농민과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가?		
	• 우리고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나 현재는 일일관광권에 들지못하고, 쉬어가는 형편으로 관광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개선대책으로 적극적인 관광홍보 방안은 없는가?	공보계장 이 기 영	• 4개산문사에 7회에 걸쳐서 관광홍보 및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고창군 관내건에 보도된 것이 총 875건입니다.
	• 우리 군을 소개하는 관광안내도의 제작·배포 경위와 적은 예산보다 행정의 묘를 살려 각 급단체와 협의하여 제작할 의향은 없는가?		• 관광화보를 제작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약 3,000부 제작할 계획이며, 특산품과 관광안내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중에 있음.
	• 불우이웃을 수용하여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인간상록수의 길을 걷고 있는 높은 뜻에 대한 경의를 표하나 기형적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본군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법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가? 또한 입소절차는 어떠한 경로인가?	가정복지과 장 이 창 남	• 관내 2개소의 육아시설과 교호시설에 정원 315명중 287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입소자격은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에 의거 육아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 보호양육하며, 교호시설은 불량행위를 하였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시설보호소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이 미칠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자매결연등 후원하고 있는 단체 및 독지가는 얼마나 되는가?		보호자가 없는 아동친권자나, 후견인이 신청한 아동,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복지원에서 보호위탁한 아동을 1년을 원칙으로 보호하고 있음. 후원자 153명중 공직자 89명, 기업인 및 단체장 35명, 성직자 9명, 일반인 20명임.
	· 오지마을까지 군내버스가 운행되어 주민편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각종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중 한가지가 시내버스 환전기 미설치로 인한 주민과 마찰이 일고 있는데 그 개선대책은 없는가? 또한 환전기 설치문제가 어렵다면 바구니에 10원권을 준비하는 환전방법을 고려해본 일은 없는가?	지역경제과장 황태성	· 승차권구입이 용이하도록 승차권판매소를 7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환전기를 설치토록 회사측에 촉구하였으나 경영난을 내세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바구니나 어떤 그릇에라도 동전을 준비해가지고 거스름돈을 내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음.
고병윤 의원	· 당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설계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으나 시공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각종공사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감독공무원의 직급이 하위직으로 대형공사를 감독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공사에 따라 감독관을 선별 배치하여 견고한 공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류 길 규 의 원	• 중앙집권적 정치풍토에 길들여져 온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체성, 자기결정성, 자기책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실천노력의 대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군내 관변단체에 지급한 정액보조금 지급내역과 비정액단체지급내역을 밝혀주시고, 순수 민간단체에게도 지역발전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용의는?	기획실장 정 창 진	• 정액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월 100,000원씩 14개읍면에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예총 고창군지부에 연 11,000,000원,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10,000,000원, 한국노인회 고창군지부 5,000,000원, 고창문화원 5,000,000원, 체육회 2,000,000원등 93,8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존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우회, 노인게이트볼대회등 18개단체에 49,720,000원 지원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의하면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회나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제시토록 되어있으나 지연경위와 동법3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순이 있으므로 고창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대책은? 또한 행정사무기간이 현행 3일로 되어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5일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집행부의 견해는?	군 수 박 병 식	• 결산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치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부터는 그런일도 없도록 하겠음. •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이 많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결산검사위원 확대문제는 법령사항으로 군수의 재량밖의 일이기 때문에 귀속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결산검사위원선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진 남 표 의 원	• 지방자치의 연륜이 깊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재정확충일환으로 민·관 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터를 구성하여 재정수요를 증대시켜 복지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은?	기획실장 정 창 진	• 제3섹터사업은 보다 신중을 가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를 구상중에 있음.
		군 수 박 병 식	• 제3섹터 사업은 상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본군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분야가 없어 추진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하겠음.
	• 고창천은 날로 오염이 심해져서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군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94년도에 오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5억정도 지원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준비도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창군의 계획은 무엇인가?	도시계장 김 영 관	• 제1단계로 고창천 되살리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제2단계 추진으로 총사업비 84억원을 들여 하천정비, 고수부지조성, 하수관로설치, 하수처리장설치, 주차장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음. 건설부, 환경처, 도, 그리고 농조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고창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위업을 기리는 동리 국악당건물이 완공되어 군민문화의 전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	군 수 박 병 식	• 이문제는 경찰서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악훈련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겠음.

	가 국악훈련원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유적지를 갖추기 위하여는 현 경찰서 건물이 위치상으로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경찰서건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악훈련원을 건립하여 국악의 발상지인 고창에서 숙식 훈련하며 국악의 성지로 가꾸어나가고 또한 건립비에 대하여 만관이 합심노력하면 국·도비·문예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한가?		
	• 군관내에 도시가로등 478등 농촌가로등 900등이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며 범죄예방에도 큰 몫을 하는 중요한 주민편익시설이다. 도시가로등은 도시과,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문제에 허점을 노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문제만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을 채용할 의향은 없는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현재 보수대상이 도시가로등 310등, 농촌가로등 159등으로 총 469등이다. 기보수한 것은 222등이며 미보수 241등이다. 문제점으로 유지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적인 집중관리와 기능공채용으로 각읍면을 순회토록 하여 보수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처리하겠음.
	• 군관내 축조식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대화의 경우 보관시설을 장항의 급냉동창고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연간생산량을 200톤	군 수 박 병 식	• 저온창고는 섭씨 5~10℃에서 서서히 룰링하는 부분과 수위장을 하는 부분이 요즘 병행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으로 봤을 때 냉동수수료가 kg당 900원씩 약 1억 8천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보관료 7,50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때 연간 2억 5천만원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대체 방안으로 급냉동창고를 군에서 직영으로 건립하여 어민의 편익도모와 군세수입증대 방안은 없는가?		냉동창고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합니다만 군직영보다는 수협의 본 임무이기 때문에 수협으로 하여금 냉동창고를 건립해서 어류의 근대적 유통과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권장하겠음.
	• 도축장시설의 현대화문제이다. 현재 1개소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읍, 부안, 고창이 한지역에서 도축물을 광역화 할 전망으로 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시설에 냉동창고를 건립하고, 폐수처리장을 확장하여 하루 200두 이상을 처리 보관하는 능력으로 현대화 한다면 금구에 있는 육가공공장에 하루 200두씩 납품할 수 있으며 광역도축장유치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월 200만원의 수입이 2,000만원으로 세입이 증대될 뿐만아니라, 8,000여 양축농가의 이익도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는 무엇인가?		• 중앙부서의 방침이 광역도축장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현 도축장 기간 연장과 급지 상향 문제를 완전히 막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도록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을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업시설 지원과 농산물 유통문제이다. 중간상인의 농간과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제값을 받기 위하여는 저온창고를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고 또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 농산물가격안정과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농어촌구조사업 일환으로 저온, 저장시설용 창고건립이 고창군으로 확정된 배경은 개인이 아닌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하도록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이며, 아마 내년도에 건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협·수협·원협 등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겠음.
		산업과장 염 한 섭	• 92년도에 선운사에 토산품 판매센타를 설립하여 쌀, 땅콩, 도자기, 도토리묵가루 등 고창토산품을 판매할 계획임.
	• 쌀시장개방이 언제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점에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로 양보다는 질위주의 생산으로 기호에 맞는 무공해 쌀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고 상품화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읍면별 1마을씩 시범육성 지원하는 유기농육성책과 미곡행정 방향전환 의향은 없는가?	지도소장 이 재 수	• 미곡증산이 지금까지는 증산위주였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상업농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유기농법이라는 통칭은 일반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더 깊은 연구와 정책적인 배려 등 여러가지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음. 또한 읍면마을 시범사업은 우선시범포로 시험재배한 후 전읍면에 확대 보급하고, 비료 적게주기, 농약 적게쓰기 등 지도력과 행정력으로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 형 식 의 원	· 고창군의 민원사항이 매년 증가하여 91년 17만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총 민원사항중 미처리 유기민원은 몇건에 이르며 미처리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내무과장 표 희 종	· 91년 민원은 11월 15일 현재 176,206건이다. 그중 176,151건은 해결되었고 55건은 미처리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53건은 처리가능하나 2건은 처리불가 민원임. 내용은 개인택시면허 이의신청 건임. 앞으로 민원부서 공무원교육을 강화해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음.
	·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중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담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담배판매 근절대책과 국산담배 홍보대책은 무엇인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고창군보 2회, 지방신문 및 유선방송 7회, 플랭카드 전읍면 1개소씩 게첨. 스티카 5,000매 제작배부 및 게첨하였으며, 읍면에 행정지시도 수차례 하였음. 양담배근절은 전군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망됨.
	· 90, 91년 자동차세 징수목표는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체납액은 얼마인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91년 징수조정액이 25,984,200원이며 징수액은 24,776,200원, 미납액은 12,000,000정도임.
	· 체납된 이유와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이중 공직자중 체납자는 몇명이나 되는가?		· 분기별로 미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4분기 78대, 2/4분기 60대분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의 주된이유는 차적을 본군에 두고 외지에 나가 사업을 하는 차량이 대부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소유차량의 미납은 없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동리국악당은 고창의 자랑이며 전군민의 문화의 전당이다. 그러나 준공된지 몇개월이 지나 부실공사로 인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하자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은 공사를 맡은 업체가 2~3단계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데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군 공사계약자료에 의하면 공사예정단가와 공사계약단가가 수의계약을 합해 89년 1월부터 91년 6월까지 같은 단가가 68건이나 되고, 거의 비슷한 단가로서 군민의 의혹이 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바람.	공보계장 이 기 영	• 하자보수내용으로는 무대, 연수실, 기계실, 객석, 지하실바닥 방수공사 등이며 장마철에 대비한 집수정에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장치를 완료하였고 공연장 천장과 벽, 연습실, 지하실, 복도, 천정을 다시 도색하였으며, 또한 동파된 기와 옥상배수관 교체, 외수를 돌로 쌓았으며, 한가지 마무리 안된 것은 공연장 바닥의 페인트칠인데 11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임.
		부 군 수 최 영 수	• 본건물의 하자발생으로 군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재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방문 조사하여 완벽하게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답허가를 받고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허가면적보다 많은 면적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어 분쟁과 민원이 자주발생되고 있다. 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현황과 대책이 있다면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답변 바람.	건설과장 홍 성 춘	• 개답허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조에 의해 허가를 하고 있으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반되는 것으로써 불법사항 발생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속 및 고발조치하고 있음. 앞으로 개답허가는 지양하고, 농한기에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득하여 실시토록 유도하고,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소유행성 열병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열병으로 인한 피해현황과 중앙정부와 본군의 지원액과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진흥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축산과장 박 용 규	• 소유행성 열병은 전남에서 전염되기 시작하여, 도내전역으로 확산 우리군에는 8월 27일 발병되었음. 소유행열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35~100%가 8~10월사이 성우에 발생하고 10년 주기로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음. 총발병 두수는 505두로 전북의 4%이며 예산지원액은 4,026,000원의 예비비를 투입, 긴급방역약품 아스디딘외 5종을 구입하여 축우 5두이하 영세농가를 중점으로 지원하였음.
	• 해안에 연접한 상하 심원 해리부안의 선박보유 대수와 현소유자를 밝혀주시고,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가? 외부인에게 선박이 매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 고창군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수산과장 박 병 호	• 91년도에 타시군으로 전출된 것이 22척이며 현재는 본군소유선박이 27척입니다. 어선 실태조사는 어업허가사항, 어선표지판 부착사항, 어선검사현황 등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매매이유는 군산, 옥구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이유로 평상시 값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매차익도 좋지만 앞으로 전망과 어업발전을 위하여 매매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군 아산면에 설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10월 13일 완공되어야 하는데 준공이 연기된 사유는 무엇인가?	사회과장 신 균 남	• 공사개요는 아산면 계산리 산 138번지 면적은 5,984㎡로써 액상부식법의 위생처리장으로 총사업비 10억 9천3백만원정도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 19,205,000원을 징수할 계획임.
	• 화장실에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을땐 미생물이 죽어서 용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화장실에 농약을 사용치 않도록 홍보하고 농약 사용시는 약하게 사용토록 홍보하겠음.
	• 나산리조트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아산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해결되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유는 상수원오염 10㎞이내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나, 부동산투기 목적이나 다른 사유는 없는지? 또한 지역개발기금 15억중 3억원을 군장학기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새마을과장 김 덕 진	• 아산골프장은 90년 1월 23일 시행청인 도에 허가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목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군장학기금 3억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순경에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장학금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성송면 괴치리 산 527번지 3㏊가 양계장설치 여론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동 지역이 양계장설립 허가지역으로 적지인가? 또한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축산과장 박 용 규	• 성송면 괴치리 산 527번지는 91년 10월 22일 토지전용 허가신청되어 토지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토지전용허가 신청자인 고창양계측으로 하여금 인근부락 주민들과 협의토록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전 종 열 의 원	·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궁산저수지 매입문제 즉 중앙정부가 매입하여 농조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삼양시축과 협의해서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세차례 도나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매입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음.
	·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지역에서는 누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 공개행정에 역행되는 처사로써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처사가 비일 비재하다. 모든 공사설계서를 배부해서 설계대로 추진되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의 협조체계가 요망되고 있는데 고창군의 견해는?		
	· UR대체품목으로 상전 즉 잠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지시로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다. 개선대책과 유통문제, 소득적인 측면의 상세한 답변요망.	산업과장 염 한 섭	· 잠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물 및 농가고소득 작목으로 247농가에서 240ha를 조성하여 금년도 71,365kg의 누에고치를 생산, 4억 9천9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지역특성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공급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3. 제10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돈 우 의 원	• 고창키우기 5대운동의 내실있는 전개방안으로 위장전출자 근절대책, 공무원의 솔선참여 방안은 무엇인가?	내무과장 표 회 종	• 고창키우기 5대운동중 인물키우기로 지역거주 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이라 생각됨. 범군민운동으로 확산 키워해 노력하고 있음.
	• 현 원예조합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다. 우리농민소득과 직간접으로 많은 관계가 있는 원협육성방안은 없는 것인가?	군 수 최 충 일	• 원예조합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 추진하겠음.
	• 농촌쓰레기 수거대책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환경보호 과 장 정 규 학	• 읍면당 5~6개소씩 쓰레기장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며, 고창군 전체 106개 쓰레기장이 설치계획임.
	• 추곡수매 배정에 있어 주민등록 전출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염 한 섭	• 추곡수매물량은 대지본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전출입과 관계없이 배정함.
오 균 호 의 원	• 해리천직강공사로 인한 사유지와 폐천부지의 교환 이전절차 대책과 소도읍정비시 도로편입 부지 및 사유토지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91년 11월 21일 건설부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12월 18일 지적측량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 양여인가가 나는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새마을계장 이 상 근	· 도로확장시 사유지 편입현황과 동부지 뒤편 구거 매매대금 사용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보고 하겠음.
최 석 기 의 원	· 본군에 산재해 있는 소류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작용이 발생되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소류지운영개선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소류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군관내 소류지는 총 324개로써, 연도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91년말 실시결과, 재해위험지구 4개소, 수문통관불량지구 34개소임. · 토사매몰 등으로 저수량이 감소되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류지는 준설 및 용도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준설사업과다예산소요와 경제성이 없고 부족용수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하고 있음.
김 기 채 의 원	· 일정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이 생산지의 값보다 소비자와의 가격이 2배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로써, 유통구조개선안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있는가?	산업과장 염 한 섭	· 산지경매장을 건립하고 두번째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고, 세번째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고, 네번째 미곡처리장을 설치하고, 다섯번째 농산물 집하장건립과 여섯번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등임.
	· 각종 영농개선책이 시대상황에 맞게 기업영농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염 한 섭	· 기업농육성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으나 업무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반조성은 물론 기업농육성에 힘써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류 길 규 의 원	•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섹터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가칭 고창종합식품공사 및 대단위저온창고 건립계획에 대한 실효의문성 및 장래성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 있는가?	군 수 최 충 일	• 지방재정력 증대를 위한 제3섹터사업을 창의적으로 한번 시도하자는 것임. 우리군의 실정을 십분고려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단 운영에 있어 계획이 자주 바뀌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각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종합하여 계획시안을 작성 세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투입 시행하겠음.
	• 예산책정시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 군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획실장 정 창 진	•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꼭 필요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이 종 운 의 원	• 노인복지정책이 형식과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울 용의는?	가정복지과 장 이 창 남	• 노인들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노인당에 문고보내기 등 양서보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기계화영농단에서 구입하는 농기계가 특정대리점을 통하여 구입되고 있어 대리점의 수수료 및 이득금으로 농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과장 염 한 섭	• 농기계 판매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구입하나 가격은 동일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농협을 통한 농기계 구입방안은 없는 것인가? •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경지정리라고 믿는다. 전북에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경지정리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고창군 경지정리율 42%는 전국 및 전북도 평균 82%에 비하면 아주 낮은 실적이나 91년도 416ha 92년도 430ha, 93년도 510ha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지정리 사업은 점차 확대시행될 전망임.
신 세 재 의 원	• 삼미항공이 흥덕에 유치되도록 전면민이 참여하여 공장유치하였으나, 당초 조립공장의 기능은 외면하고 비행센터로 운영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면민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 수 최 충 일	• 비행훈련센터가 아닌 비행센터라는 개념으로써 이는 비행기를 조립하는 공장과 이를 판매하는 판매장을 합친 개념으로 비행기에 흥미를 갖고 많이 사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의 차원이지 무슨 대량의 교육을 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문제는 오늘 주민들과 유지들을 모아놓고 시험비행을 한다고 하니 어느정도 소음인지 판명될 것이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전 종 열 의 원	•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의 부실운영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새마을계장 이 상 근	• 사업추진중에 전마을에 대하여 군 및 읍면 특별지도반 편성 일제조사 후 사업목적위배 및 부진마을에 대한 특별조치강구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소득금고 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에 농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원 한도액을 늘려 실질적인 지원 효과와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염 한 섭	• 소득금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가가 많아 조성된 금액이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사업지도관리는 현지확인 후 부실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수조치하여 금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최 석 기 의 원	• 정부에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약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군에 지원되는 사업규모 및 예산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와 경지정리 사업에 집중투자할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염 한 섭	•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 투자될 계획이며, 본군에서는 92년도에 실무자만 구성하였고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공음~무장간 도로공사로 인한 기존하수구 류수변경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어 인근주민 일동명의로 하수구신설 요청건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은 관계규정을 무시한 처사로써 고창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과장 황 의 열	• 하수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시행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 형 식 의 원	• 아산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장학성금 3억원의 어음이 3차례에 걸쳐서 연기되어 군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어음연기 배경과 고창군의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가?	군 수 최 충 일	• 전라북도의 처리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음결재가 이루어지도록 나산실업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 덕산택지개발 분양시기가 지났음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미영아파트 미준공 검사 이유와 주민피해상황과 대책은 무엇인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92년 5월중에 공고를 실시해서 6월중에 매각할 예정임.
	• 석정온천에서 모양성, 선운사 그리고 해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매년 5월에 실시되는 동백연행사 군민축제행사도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군 수 최 충 일	• 관광벨트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관광안내도는 석정온천 구시포에다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음.
		공보실장 강 유 원	• 동백아가씨 선발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간을 갖고 검토하겠으며 등산대회 등 현행사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선운사 시설지구 세분화계획은 영세상인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군 수 최 충 일	• 상가를 음식점으로 용도를 해제해 줄 경우 당초 매각계획과 상이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쪽이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전화공사와 상수도공사시 도로가 파헤쳐져 사고 및 주민피해가 있다. 이런 공사시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즉시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홍 성 춘	• 전기·전화·상수도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및 접형공사 시행시 도로굴착허가기간은 최소한으로 단축하여 주민 및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복구공사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하자복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음.

4. 제16회 정기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돈 우 의 원	•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배단지를 적극 조성하고자 하여 묘목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지도소에서 직접생산하여 묘목을 공급할 방안은 없는가?	지도소장 송 병 곤	• 본군은 과수재배에 알맞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과등 일부만 재배하고 있어서 배재배에 소득금고나 기타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배묘목 생산체계는 묘목관리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으나 2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 수매가격도 일반보리보다 10~20% 높은 맥주보리를 본군관내 야산개발지 및 휴경지에 적극재배를 권장하여 신소득향상 방안은 없는가?	산업과장 김 계 환	• 맥주보리 재배는 기후조건으로 1월중 최저의 평균기온이 영하 3도이상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써 부적지로 사료되오나 농수산부에서 진흥청맥류 연구소에 시험재배를 의뢰하여 영광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음. 진흥청 시험결과 적지로 판명되면 대폭 권유, 재배토록 하겠음.
	• 농사용전력은 한전전기공급 규정 제66조에 의하여 갑·을·병 세가지로 구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촌구조변화와 농산물수입개방 대응전략차원에서도 갑·을·병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규정을 단일 농업용으로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건설과장 홍 성 춘	•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을·병으로 구분되어 소형관정은 갑, 원예용 관정은 을 등으로 구분되어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단일화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차원에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농촌마을 주변에는 헤아릴수 없는 각종 폐기물이 산재되어 비가 오면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괄쓰레기 처리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환경보호과 장 정 규 학	• 마을단위 쓰레기장 설치문제는 예산확보문제, 주민과의 마찰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코자 읍면에 청소차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고 병 윤 의 원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산물창고 증개축등 어떠한 시설등을 할 수가 있는가? 또한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촌일품운동을 우리지역에 맞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산업과장 김 계 환	• 농업진흥지역은 농토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정했으며 고창군의 41%인 11,439㏊가 지정되었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업의 기계화, 시설현대화, 정예인력육성이며, 가능행위는 농축산업농가주택 양어장, 농수산저장시설등 가능함. 2001년까지 10개년동안 농산물 가공 육성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임.
	• 보건소 의료수가가 1회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환자의 경중을 가리기전에 경영적 적자를 생각하여 부작용이 결국 환자에게 돌아온다는데 사실여부와 대책은 무엇인가?	보건소장 김 백 현	• 보건관계 의료기관에서 1일 3,100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는 보사부고시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음. 개선대책으로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상향조정토록 건의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신 세 재 의 원	· 91년 체납액이 총 178백만원이다. 앞으로 징수대책등 계획은 무엇인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체납세일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군수님 주재하에 대책보고 및 일소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발전기획단에서 중점연구 9개 분야의 추진과정과 실적을 밝혀주기 바람.	기획실장 정 창 진	· 외부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군내의 부존 관광자원 개발방안과 단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발전 구상안을 만들었으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민원처리를 민원관련공직자들이 서류보완등으로 처리기간을 지연하고 있으며, 창구민원의 가장 큰불편과 불만은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민원행정쇄신 방안은 무엇인가?	내무과장 표 희 종	· 민원행정을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교육을 수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군·읍면 민원창구공무원을 친절봉사 시범기관인 삼성교육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 친절봉사 자세를 일층 강화하겠음.
	· 91년도 폐품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고 약 5천만원만 집행한 이유와 농촌환경보호 차원에서 폭넓은 수거계획 및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새마을과장 김 덕 진	·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 주민의 참여가 있을때 사업성과가 나타나지만 예산액이 미집행된것은 수거실적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이며 행정의 하자는 없었음. 금년에도 농촌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가공산업육성과 농산물 수출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기에 유통센터 및 농산물집하장 지원계획,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책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또한 농업기계화 영농단의 운영부실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료는 일률성이 없고 매매 및 전매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 후 대책은 무엇인가?	산업과장 김 계 환	• 농촌주택개량, 상수도사업, 농어촌도로포장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 6,670동에 312억원 지원계획임. • 농업기계화, 영농단 부실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및 운영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음.
	• 농촌일손부족, 농자재 상승, 농산물가격불안정, 수입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특화사업실태와 생산품목과 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대책 및 앞으로 방안은 무엇인가?	지도소장 송 병 곤	• 본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소득작목을 보면 사과, 배, 수박, 딸기, 참외, 알타리, 참깨, 땅콩, 절화용 꽃, 관엽류등이 주종이며, 국민경제향상에 따른 식품수요가 다양하고 고급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유기농법에 대한 진흥청등 연구기관의 연구보고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 농공단지가 경제불황으로 인해 휴·폐업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공단지현황과 차후 농공단지업체를 우리농산물 가공공장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령자와 부녀자의 인력을 요하는 공장 유치방안은 없는가?	지역경제과장 황 태 섭	• 농공단지에 비교적 자본이 영세한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금융지원기준액 5억, 3억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해결이 되도록 건의하겠으며, 농산물 가공공장은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주 빈약하고, 투자대 수익이 아주 불투명하여 농산물가공공장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김 동 훈 의 원	• 10월 3일 개천절은 배달의 나라 단군조선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도덕의 핵임을 널리 교육시키고, 개천절행사를 범군민적인 행사로 승화할 계획은 없는가?	공보실장 정 종 호	• 개천절행사는 중앙부처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시·군단위에서는 행사간소화방침에 따라 생략되고 있으나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내무행정의 인사분야로서 모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5개실 과장들이 4년3개월동안 보직을 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 이제는 보직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가?		
	• 고창천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군민휴식공간 확보 및 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을 만든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군의 계획과 대책은?	건설과장 홍 성 춘	• 고창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특산품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임. 수원미확보등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검토하겠음.
	• 비지정관광지 조례 제정이후 세입이 전무한 이유와 투자대 수수료 징수현황 그리고 앞으로 세원발굴방안은 무엇인가?	새마을과장 김 덕 진	• 상하 구시포해수욕장과 동호해수욕장을 지정하여 92년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5일간 운영 약 1천7백만원의 입장수입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여 관광지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공단지내 경공업회사와 협의할 용의 및 노인건강 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개선책과 노인복지법 제7조에 의하면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본군은 확충되었는가?	가정복지과장 이 창 남	• 현재 고수농공단지에는 전자부품 2개소, 농어민 기계자제생산 1개소, 석유보일러제작 1개소, 식용유제조 1개소 등 10개업체에 약40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지만 업주와 협의해 추진하겠으며 노인건강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최 석 기 의 원	• 우리고장은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생산량이 적어 유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가로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판로대책으로 농협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군비를 투입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는? • 고창군 원협이 법인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어 군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고창군 원협을 정식 법인조합으로 육성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가?	산업과장 김 계 환	• 농산물 유통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고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농산물 판매장, 부안면 중흥리에 농산물집하장, 대산면 산정리에 저온저장고와 산지경매장을 완공할 계획임. 금후 산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고창 상설시장 주변에 위치한 원예조합은 경매장소와 사무실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협소한 장소로 농산물출하 성수기에 수송차량통행이 지극히 불편한 실정으로 경매장 부지 확보 이전이 시급한 문제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특수조합 설립조건을 보면 농협조합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설립동의자 300 이상으로 제반요건이 충족되어야 설립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관내병원 구급차량에 설치되어야 하는 각종 응급치료 장비가 없이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데 실태파악 및 단속한 사항은 있는가?	보건소장 김 백 현	• 구급차량 의료장비는 후두결과 기도사관장치, 수혈세트, 휴대용 인공호흡기, 쇼크방지용 하이두묘 및 기타 고정장치가 있으며 응급치료용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월 1회이상 구급차량 확인을 실시하여 응급환자수송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석탄사업법 제2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탄공급구역의 지정고시 및 공급가격이 고시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읍면판매소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지역경제과 장 황 태 성	• 관내 연탄공급가구는 15,217가구이며, 판매업소는 단협 14개소와 일반판매소 16개소로 30개소가 있음. 현재 연탄공급구역제도는 동자부고시로 전라북도지역은 전라북도 공장에서만 공급하고 남원군만 전남도에서 공급가능토록 하였음.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관내 농협에서는 전남산 및 서울탄을 공급하고 있음. 그리고 93년까지 공급지역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사료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기 채 의 원	• 지난 읍면순회 간담회시 농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으로 농로, 구거, 유지 관리부실로 각종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로, 구거, 유지 관리대책을 세울 계획은?	건설과장 홍 성 춘	• 농로 및 구거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개수토록 노력하겠으며 관내소류지 실태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324개소중 154개소가 기능저하로 되어 소요사업비는 약 22억원 정도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시내버스환전기 설치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이유와 군단위이하 지역에서 택시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부당요금시비가 있는데 전국시범으로 현실화한 미터요금을 실시할 용의는?	지역경제과 장 황 태 성	• 시내버스 환전기설치를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현재까지 안되고 있어 다른방법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택시요금미터화 방안 및 시내권 영업용 택시 순회운행등 제반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이 종 운 의 원	• 고창키우기 5대운동이 지역발전의 정신적 운동으로 판단되어 많은 군민의 동참이 있었음에도 군수의 이동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일까?	기획실장 정 창 진	• 고창키우기 운동은 강제성보다 자발참여나 정신운동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였음. 주춤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면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겠음.
	•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의 처우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내무과장 표 회 종	•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의료보험혜택 및 법정리별로 1명을 임명하여, 준공무원화 계획등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 시행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리하부조직의 활성화와 리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음.
	• 성송대신제 매립사업이 부진하여 성송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무엇인가?	기획실장 정 창 진	• 93년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과 협의관계과의 협의등 행정추진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시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 부대사업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정잔여면적 발생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구별, 지역별로 특성을 냉철히 파악 시행할 용의는?	건설과장 홍 성 춘	• 간이지구는 10㏊미만 지구로 헥타당 8백만원이 소요됨. 농지의 집단화나 우량농지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지구를 우선시행하고 있으나, 논두렁 바로잡기, 농로 개설용 배수로나 용수로를 간이정리 하고 있음. 헥타당 단비가 적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자역여건을 감안해서 일반지구와 병행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 금년은 유례없는 한해로 농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한		• 한해방지를 위한 관정개발 대상은 대형관정 41공, 소형관정 982공, 소류지 신설이나 승상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수해 상습지구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6개로 판정되었고, 보수가 9개소로 153억원이 소요됨. 현 군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 및 도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추진하겠음.
전 종 열 의 원	• 농어업법 보상법에 준한 재해대책 시행규칙 2, 3, 4조를 보면, 재해농가 보조 및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 한해 발생시 군의 안일한 보고와 태도로 인하여 농민의 혜택이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고창군의 견해는 어떠한가?		
	• 군수포괄사업비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간 격차가 심하고 편중지원된 경향이 있는데 군의 견해는?	기획실장 정 창 진	• 재량사업비를 책정한 근본취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앞으로는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소규모도 주변주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음.
최 형 식 의 원	• 덕산 택지개발 분양지연으로 입주희망자인 군민에게 피해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장 황 의 열	• 사업지연지구 1지구를 제외하고는 바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나산리조트에서 성금으로 발행해준 장학성금이 세차례나 연기되어 금년말 지급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결재일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새마을과장 김 덕 진	• 앞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하고 나산과 절충하여 어음결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제19회 모양성제 행사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 광고, 풍물시장 등 행사준비 추진사항 그리고 결산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는가?	공보실장 정 종 호	• 모양성제 행사는 전국 답성놀이를 포함하여, 21개 각종 문화행사를 모양라이온스외 15개단체가 자진참여하여,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하였다. 우리군 모양성제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애향심, 대화합, 군민의 단결을 뜻하는 행사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림.
	• 선운산도립공원 관광객을 상대로 1년여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건의 사항이 접수되어 의정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관광객 편익시설의 확충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과장 황 의 열	•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광장을 확장하여 연못, 체육, 수영, 위락시설, 산장, 상가, 잔디밭 또는 보트장, 전망대, 케이블카 등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새마을 공원 뒷편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승격이 전망되는 고창읍 입구에 공원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운곡댐상수원 원수공급 계약서상 군에게 불리하게 된 점과 원수확보대책 그리고 영광원전 발전소 주변개발기금이 아산면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나설 용의는?		
	• 군청 신축청사시 당초계획보다 10억원의 추가요인 발생배경, 의회승인여부,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재무과장 박 춘 오	• 전라북도 설계심의결과 부적격되어 부득히 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재원 및 인건비 등 자재값 상승으로 추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의회승인보다는 협의없이 시행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함.
	• 읍면 추곡수매 적재시위의 규모와 이유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수입농산물이 중국에서 다량수입되어 유통질서는 물론 비위생적으로 군민의 피해대책과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		
	•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리·반장 퇴직 현황은?	내무과장 표 희 종	• 리하부조직의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전달교육 지침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대산 김범기외 8명의 반장을 해촉하였으며, 공직자는 엄정중립토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류 길 규 의 원	· 재정운영에는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당군의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상수도 및 경영수익 사업면에서까지 지방재정에 악화를 주고 있어 고창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군의 견해는?	도시과장 황 의 열	·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라북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민원과 세입의 지연등 문제점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모든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음.
	· 우리고장의 효와 충을 말할때 효에는 효감천선생, 충에는 정시해선생이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시 제반여건을 고려치 않고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 특히 고창의 1,000여 유림들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시해사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시해사당 미철거로 인하여 1개블럭 3,000㎡는 미완료상태에 있다. 정시해사당 이전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업무보고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겠다는 보고는 최후방법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5. 제19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준형 의원	• 본군의 천혜적 입지여건을 갖춘 선운산 관광지 확장사업에 대하여 90년부터 추진해온 집단시설지구 및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부진사유와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의 불만해소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책은 무엇인가?	도시과장 황의열	• 인근토지와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없지 않으나 표준지가가 낮게 확정되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 매입예정지에 대해선 영농을 못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매수토지에 한해 영농을 못하도록 하였음. 선운산은 공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토지주들의 손실에 대해 특별히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음.
고병윤 의원	• 민원사무편람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있어 한문을 모르는 문맹인들에게는 불편이 없지 않다.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 장현돈	• 민원사무편람은 도에서 일괄인쇄 배부하고 있음. 한문으로 되어 있는 편람을 한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할 사항임.
	• 정읍~고창간 4차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도로변화단의 조경수 및 조경석 처리대책을 국토관리청과 협의, 예산절감 방안은?		• 산림과와 건설과로 하여금 소상한 실태를 파악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 돌에 대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관리청인 이리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군유지중 메어전원 2종토지 이전대책은 무엇인가?		• 94년말까지 이전등기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국유재산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음.
오 균 호 의 원	• 1963년도 해리천직강공사로 인해 편입토지보상을 폐천부지로 대토받아, 현재까지 경작해오고 있으나 행정의 무성의로 인해 현재까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군의 추진대책과 경위는?	건설과장 홍 성 춘	• 현재 농수산부로 되어있는 것은 35필지에 29,936㎡가 되며, 92년 7월 1일 관리계획을 신청하여 92년 12월 14일 통보가 왔는데 부처간 의견조정이 안되어 처리가 안되었으므로 다시 7월중에 관리계획을 재신청하고 처리해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진 남 표 의 원	• 고창군에서 수립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군수에 따라 변경 및 시달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군민의 피해가 있다.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책추진의지는? • 지역주민의 의지를 담은 사업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의 재정자원 즉 교부세 및 양여금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경인사와 지역인사를 포함한 민관협력체제인 중앙로비스트 성격의 조직체 구성용의는?	군 수 장 현 돈	•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관리자가 바뀐다고 해서 함부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의원님들과 뜻있는 재경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창군의 행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고창키우기 5대운동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92년도 현내 초·중·고생의 타지역 진학실태를 보면, 국민학생 678명, 중학생 604명, 고등학생 687명, 총 1,969명이나 된다.		•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애향장학재단 설립문제는 4월중에 발기인 모임을 갖고, 모든 사항을 협의하겠으며, 애향장학재단 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타지역 전학을 위해 부모까지 동반 전출되고 있으며, 막대한 교육비등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해결책으로 애향장학재단 설립과 애향학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구체적 대책과 고창군의 견해는?		립 운영문제는 재단의 정관사업 확장시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 2000년 고창시 승격을 대비하여 • 첫째, 고창읍을 본군의 구심지역할지로 인구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육환경개선, 지역특성개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인가? • 둘째, 시승격을 대비한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발전의 제한과 저해가 되는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도로망조정 및 확장, 용도지역조정과 지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부심도시육성, 중심기능배치, 토지이용계획조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작업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군수의 의견은? • 셋째,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는 연 28%씩 증가추세로		• 먼저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석정온천등 종합관광개발을 서둘러 내장산, 변산반도등과 연결, 관광권을 형성, 관광유동인구를 늘려나가고, 직업훈련원 설립, 농공단지조성, 전문대학 유치와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는 등 상주인구증가에 힘쓰겠으며, 두번째로, 시승격을 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개선하여 향후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고창읍 도시계획 약 30억정도로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재투자하면 균형있는 도시재개발이 촉진되어 장차 시승격에 대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3년안에 교통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커다란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감안, 주정차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아닐런지, 본인의 생각으론 고창천변을 확장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넷째, 월곡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건설부인가를 득하고, 동 사업의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감안,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과 수익성검토와 재투자 방안등을 구상하였는지 군수의 견해는?		
	• 고창군 종합관광개발에 관하여 • 첫째, 석정온천은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온천개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겠기에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레저산업에 기업이나 민간투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우리고창은 석정온천과 고창읍성, 선운산, 해수욕장, 선사유적지 등 천혜의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원의 부족으로 종합개발이 늦어 항상 군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임. • 관광자원을 연결할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과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며 공공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먼저 중앙과 도로부터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둘째, 모양성복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복원사업비가 중단되어 결실을 맺지 못할 위기에 있는데 지속적인 복원대책과 주변 권개발을 통해 완전한 관광지로 착실한 진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셋째, 선운산개발은 다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볼때 1단계사업으로 군재원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회원권판매로 충분히 가능한 군유지 콘도지역에 콘도시설을 건립하여 휴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주는 등, 민간투자를 위해 행정 및 재정자원등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넷째, 구시포항 개발은 2종항의 전진기지항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병행하여 항만청관리항으로서 여객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또한, 구시포·동호해수욕장보다 여건과 환경이 좋은 명사십리를 신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의지와 군수의 견해는?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군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과 제3섹터 개발방식도 지역개발기금 활용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방대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교통부의 관광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융자지원할 계획임. • 우리군내 모든 관광권이 연결되어 종합개발이 되면, 관광지만을 이어주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급증하는 관광유동인구의 편익증진시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돈 우 의 원	• 농산물 유통개선방안으로 고창군 원예협동조합육성이 시급함에도 현재까지 미추진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고창군의 추진대책은?	군 수 장 현 돈	• 원예조합은 82년 4월 설립되어 조합원 456명, 임직원 5명으로 운영실태가 영세하여 농산물유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수법인 설립인가를 위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 설립인가를 받도록 서둘러,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조직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음.
	• 각읍면에서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데 운반장소에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냥 매장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선별장을 설치해서 비철금속은 압축기를 이용하고, 철금속은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 장 정 규 학	• 면단위 선별장설치는 사실상 2개의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현재 청소인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현재 읍면에 있는 매립장에서는 청소인부 및 영세수집상들이 선별 수집해가고 있음.
	• 주진공설묘지가 이론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군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사회유공자, 공직유공자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묘역으로 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정복지과 장 이 창 남	• 주진리 공동묘지 현황은 면적 8,926㎡로 매장가능기수는 859기임. 시범공동묘지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내출신인사중 의병활동 및 독립유공자중 연고가 없는 의병 김공삼씨와 유금동, 오장환씨 등 유공자도 금년상반기에 안장토록 할 것임.
	• 금년도에 신설된 묘지는 몇기이며 경작지에 매설된 묘지는		• 통계상으로 보면 사망자가 255명이나 농경지나 기타 집계된 통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얼마나 되는지?	군 수 장 현 돈	계자료는 없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 매장은 묘지외 구역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의법처리는 어려운 실정임.
	• 정부의 지속적인 가족계획사업으로 인구정책기를 벗어나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아선호사상 만연으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창군 의료업계에 양수천자식 태아성 감별기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지, 또 있다면 몇 대가 있는지 답변 바람.	보건소장 김 백 현	• 태아 성별 감별은 의료법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의법처리토록 되어있으며 우리 군관내에 그런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의료진도 없음.
최 석 기 의 원	• 93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첫째, 읍·면조사 담당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는 바, 지가조사 실무자를 시한직으로 두어 토지조사의 일관성을 이룸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밝은 이장 또는 농지위원을 선임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 둘째,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토지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	도시과장 황 의 열	• 조사공무원과 일용공무원에 대해서 지가사례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사기간중에는 지가조사담당자의 전보등은 가급적 억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음. • 93년도 개별지가는 지방토지평가 심의회의를 거쳐 4월 20일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을 계획에 있음. 열람 후 5월 10일까지 접수받아 접수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는데 통합적으로 표준지의 배율을 정해 지가를 조정함으로 지가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각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채택 배율을 적용하여 지가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셋째, 동일지역내의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기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인근 유사토지와 지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를 타조항에 관계없이 표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창군의 견해는?		의견에 대해서 재심의하고 5월 22일 지가결정 공고할 예정임. 표준지로는 2,250필지로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개발지가 및 보상가격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있음. 제한된 인력과 짧은기간내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1필지당 48개항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중 현지에서 10개사항과 공부조사에서 25개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1필지에 3~4번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 첫째, 85년 이전에 토지를 구입하여 경작하다가 타지로 이거하여 생활하는 지주에 대하여는 특혜를 주지 않고 있으며, • 둘째, 현행 시행하고 있는 일반등기중 연명된 종중답은 이전이 불가하나 지분등기는 시행하고 있으므로 미등기된 부동산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토록 하는 법인 만큼, 연명된 종중전답과 85년이전에 거래한	지적과장 한 상 배	•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450호로 1992년 11월 30일 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9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3796호로 제정공포되어 93년 1월 1일~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농지취득 및 대도시거주인, 종중문중, 제일동포 등의 농지취득에 대한 본법 적용여부는 내무부와 법무부에 의견절충중으로 보류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음. 그리고 보증인을 마을당 즉, 행정리당 3명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토지인 문증전답 및 연명답도 특별법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 셋째, 보증인제도는 신청자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타마을의 토지거래사항이나 상황을 잘모르는 상태이므로, 확인을 꺼리는 사례가 있음. 분리당 3명의 보증인을 두어 확인토록 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으로 위촉 시행토록 개선 요망건에 대해서는 본법이 시행되기전에 개정할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때, 본군에서는 작년에 보증인을 행정리당 3명으로 위촉토록 개정하여 줄것을 내부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에 재건의 하겠음.
	· 합배미 사업농가 융자조건을 보면 단보당 18만원, 이자 5%에 2년 균등상환하게 되어있다. 해당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농어촌구조사업의 차원에서 융자액도 늘리고 이자도 낮추어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좋은 조건 속에서 산간오지에 산재한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합배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산업과장 김 계 환	· 합배미객토사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있어서 헥타당 1,8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를 3년 균등상환토록 하고 국고보조 50%를 지원했음.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일환으로 하여 합배미 농가에 대해서 94년도부터는 헥타당 1,300만원 기준 60%를 국고보조해 주도록 3월초에 도에 건의하였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최 형 식 의 원	• 본군 홍덕면에 소재한 삼미항공은 경비행기 조립생산공장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생활에 유익무해한 사업체가 될것임을 약속하고 입주하여 시험비행까지 했는데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 생산실적은 전무하고 오히려 비행훈련교육장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여론이 일고,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 오지개발지역은 오지면이라는 개발차원에서 선정되어 10년간 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주권지역은 1단계와 2단계로 20년간 예산이 지원되어 오지면과 정주권지역과 발전의 격차가 더욱 커질것으로 사료되어,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면인 아산면외 2개면을 정주권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산업과장 김 계 환	•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선정배경과 목적이 다르고 국가적 공통사업으로 틀린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시점에서 정주권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어려운 실정인 바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정량포장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질좋은 농산물을 선택케하고 생산자는 소득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는 89년부터 농산물 수입가격에 따른 원산지 대상품목을 총85개 품목으로 정하여 이중 임산물 19개 품목을 제외한 66개품목이 표시품목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또, 가격폭락으로 출하를 포기하고 무우밭을 뒤엎어버리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견해는?		우리군 수입판매소는 6개소이며, 주요 취급품목은 고사리, 파인애플, 바나나임. 본군에서는 행정, 경찰, 농검, 농협을 중심으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에는 의법조치할 계획임.
	· 군내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소득과 전원도시로 육성이 시급하다. 관광요원을 양성하고, 석정온천, 고창읍성 선운산~해안선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형 교통노선 체계확보 및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숙식, 홍보시설의 개선 및 대책은?	장 현 돈 군 수	· 관광지 안내공무원 증원은 인사동결령에 의해 어려우며, 고창읍성과 선운산관리사무소의 상근직원을 안내요원화하겠음. 우리군내 모든 관광권이 연결되어 종합개발이 되면 관광지만을 이어주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급증하는 유동인구의 편익증진시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음.
	· 석정온천내에서 내고장특산물을 판매할 용의와 온천폐수 배출로 하천의 수온을 상승시켜 세균류의 급속한 번식과 생태계의 파괴, 오염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또, 모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창읍상수도의 경우 세균이 150% 탁도가 100% 기준치를 초과했고, 해리정수장도 불	환경보호과 장 정 규 확	· 작년 3월 개장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갖고 비가 오면 비오는대로 날이 좋은 날은 좋은대로 수십번 방류수 수로를 따라서 확인점검을 했음. 지난 1월 28일 수질검사결과 기준치가 10㎎인데 결과는 3.3㎎으로 판명되었으며 금주중에 수온과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소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로 인해, 군민에게 충격과 염려를 안겨주었는데 본군의 처리대책과 앞으로 개선방안은?	도시과장 황 의 열	• 고창정수장의 경우 일반세균이 ㏄당 100이하여야 되는데, 140으로 되어있고 탁도가 2이하여야 되는데 4로 되었음. 일반세균의 초과사항은 그 잔류 염소량이 적을때 채취하여, 검사를 당일 하지 않고 다음날 할때 검출되는 사례가 있으며, 해리정수장 1공은 현재 폐기하였음.
	• 본군조례 및 규칙으로 설치규정된 각종위원회, 협의회, 심의회가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발휘하는 기구는 불과 몇개 뿐이라는 여론임. 본의회에 명실상부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대부분의 기존기구가 무용, 무기력화되었는바 이런기구의 전면적인 축소·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구운영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는?	내무과장 표 회 종	• 법·훈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 15개위원회, 지침에 의해 설치된 것이 2개위원회, 고창군 조례 4개위원회 등 총 21개 위원회임. 각종 위원회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제정비하여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는 억제하도록 하여 현재, 법·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15개등 모든 위원회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발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코자 함.

6. 제25회 정기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 균 호 의 원	• 축산물작업장을 94년 12월말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간이도축장은 폐쇄가 된다는데 본군의 도축장도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도축장이 폐쇄된다면 군민들의 불편과 세수결함 등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을 보완해야만이 97년말까지 폐쇄되지 않고 연장된다는 것이므로 고창군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축산과장 박 용 규	•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도축장 시설은 고창읍 월계리 327번지에 2,767㎡로 현재 작업장 냉동·냉장시설, 폐수시설이 되어있음. 현재 허가기간이 95년 5월 14일까지로 되어있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에 따라 간이도축장 시설보완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기준에 적법할 때는 97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가능하게 되므로, 본군의 간이도축장 시설보완에 따른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본군의 서울농산물직판장 1,2,3 운영에 있어, 쌀 및 쇠고기등 몇가지 주곡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추어 고창을 상징하는 상표로 박스나 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직판장을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	군 수 장 현 돈	•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개설상황은 송파구 방이동에 제1직판장, 금년 11월 12일 성동구 하왕십리에 제2직판장 그리고 제3직판장은 강동구 암사동에 개설할 예정임. 앞으로 시설을 더 늘려, 쌀위주에서 탈피, 수박, 오이, 땅콩, 배 등 품질이 우수한 품목을 취급해서 생산농가를 보다 더 유익하게 하겠으며, 고창상징상표를 개발 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대량소비처를 찾아 계절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을 위한 행사도 개최하고 수박, 배, 우수품목에 대하여는 일본 등 해외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음.
김 기 채 의 원	• 우리지역은 천혜적인 여건으로 인해 광활한 면적이 개발되어 특용작물재배지로 전국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통구조체계와 생산기반조성이 안되고 있음.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유통지원 특수시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군 수 장 현 돈	•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간접유통시설인 저장고 8동을 건립하였고, 특작위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33억 5천만원이 투입되며 저온저장고 시설 300평을 비롯, 30ha의 과원을 조성하는 등 집중투자할 계획임.
	• 또한 본군의 특수한 사항에 맞추어 전작 및 생산기반시설의 대대적인 실시가 요망되는 바, 군수의 의향과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유통구조개선과 특작위주의 생산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득작목으로 전환시키고, 일시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직판장과 저장시설 등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임.
	• 고창수박축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수박판로대책과 고창군에서 시행할 용의는?	산업과장 김 계 한	•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행사 간소화 및 예산절감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군단위행사로 군민의 날인 모양성제가 있어 고창읍에서의 개최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박주산지인 대산면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가 대산에서 영광지선인 전북도와 연접한 전남지역에 대규모로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진을 기하고 있으나 종돈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인근주민들은 두통 및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집중호우시를 이용하여 종돈장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행정조치와 현지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14일밤 MBC 9시뉴스에 방영된 카메라 고발 프로를 보고 과연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사안으로서 향후대책과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군 수 장 현 돈	· 화산쓰레기매립장 고사경위와 매립장쓰레기 소각장면이 방송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과장된 보도임.
		환경보호 과 장 강 유 원	· 지난 6월 22일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이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에서는 보다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현기성 발효시스템으로 확장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시험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가동할 것임. 동사업소에 대해서는 분기회 1회 정기 및 수시로 축산폐수수질오염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시에는 영광군과 사업소에 통보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지방자치 3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현실성이 없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며, 정비대상 건수와 정비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기획실장 홍 종 섭	· 지방자치실시이후에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여건에 따라서 총 49건을 정비했고 한건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 행정쇄신추진이후에 주민편익과 법률용어 순화 등을 주내용으로 해서 각실과소별로 일제 점검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군정쇄신과제중 군청기구정비 문제입니다. 군조직 전반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인원조정을 실시 기구확대, 축소, 폐지하여 주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자체진단을 할 용의는?	군 수 장 현 돈	• 행정방향은 주민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분야별로 과학화 전문화되어가는 추세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구와 인력감축계획의 조직진단은 내년 1월말까지 마쳐서, 정부의 조직인력 관리계획에 의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이 종 운 의 원	• 우리군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화산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쳤는지? 그리고 화재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대책과 피해는 또한 매립장 관리실태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MBC TV카메라 출동 쓰레기매립장이 방영된 사실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람.	군 수 장 현 돈	• 쓰레기문제와 환경오염문제는 비단 우리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화산쓰레기장 개선대책으로는 침출수 방지를 위한 집수탱크를 이미 설치해 놓았고, 어느정도 매립이 되었음. 일부에 대해서 확장을 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억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확장부분에 대한 침출수정화시설, 차수막, 기타 필요시설을 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인 대상지구 선정과정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구성원은 어떤 기준		• 첨단자동화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꼭 우리고창군의 농촌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만큼 끌낼 수는 없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에 의해 선임하였으며, 또한 시범마을 선정 대상은 몇개 마을이며 차기년도 육성계획은?		따라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역점을 두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의 내실화 방안과 앞으로 대책은?	산업과장 김 계 환	· 지원절차는 읍면장이 신청을 하고 해당실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 심의회에서 심의결정 후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 또한 읍면장이 하고 있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산압류를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 회수토록 하겠음.
	· 고수농공단지내에 부실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업체선정과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결과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산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분양대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경제과 장 박 춘 오	· 고수농공단지내 10개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금년초 삼성화학과 혜성써람이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군에서는 대체기업 및 기업이 회생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아산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안내서발송 및 계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음.
류 길 규 의 원	· 본군조곡생산량중 추곡수매량과 자가소비량을 공제한 잔량이 1,660,295가마로 추정하는데 고창군의 판로대책은?	군 수 장 현 돈	· 추곡수매 문제는 우리모두 다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고창군의 특수한 지역실정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대도시직판장, 농협자율매입분, 일반정미소매입량을 제외한 잔량소비를 위해 여러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음.
	•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 첫째, 관계법개·폐에 따라 정비대상 건수 • 둘째,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건수는 몇 건이며, • 셋째,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을 요하는 자치법규는 몇 건이 되는지?	기획실장 홍 종 섭	• 91년 4월부터 93년 11월까지 제정·개정·폐지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제정된 건이 8건, 개정이 39건, 폐지가 2건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관리했던 조례·규칙·규정이 216건인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2건임.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관계법령개정과 행정여건에 따라 총 49건을 정비했고, 한건은 개정키 위해 추진중에 있음.
	• 93년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중 미집행사업비가 1,854백만원으로써 이를 분석하면 7개과에 10개 사업으로 도시과와 산업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동과장들께서는 향후대책에 대하여 서면보고바라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매주초 간부회의시 실과별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를 받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집행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7개 사업 12억 7천1백만원임. 내고장명산품 육성사업 1억 5천만원, 석정온천개발 5억 8천9백만원, 특산품전시장 부지매입비 2억원, 서흥동 도시계획지구 토지매입비 85백만원, 선운산쓰레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기처리장 120백만원, [illegible] 차장 확포장 97백만원, [illegible] 강학당보수 30백원이며, [illegible] 월 및 군비를 확보해서 [illegible] 겠음.
	• 아산농공단지 사업비가 시책보고와 사업보고서에 5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지정면적과 조성면적이 상이한 점에 대한 견해와 아산농공단지의 경영측면에서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경제과장 박춘오	• 조성면적은 실제단지 [illegible] 추진과정에서 진입도로 [illegible] 분 및 누락필지 추가편입, 대지 등이 당초지정된 면적보다 약간 필지에 2,180평정도가 [illegible] 약 42,449평이 되겠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10%범위내에서 조성면적이 [illegible] 능하도록 되어 있음. • 분양가격결정시 법규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제외하고 [illegible]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장기 대차원에서 부지대금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임.
반 기 진 의 원	• 지난 군민의 날 행사시 고창JC와 농민회가 전개한 양담배안피우기 운동과 관련하여 전매청과 타협하여 직접 다방가에 다니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고, 연초소매인 25개소를 지정	군 수 장 현 돈	• 담배수입이 개방되어 [illegible] 안피우기운동은 순수하게 민간 운동으로 추진해야만 [illegible] 있을 것으로 생각됨. [illegible]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도 [illegible]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해서 전매서와 협의, 외국담배를 국산담배와 바꾸어 주고 그날부터 판매하면 역시 다방과 같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캠페인을 슬기롭게 마쳤다. 또한, 담배소비세가 군세입인만큼 우리군은 외국산담배 없는 군, 외국산품 안사는 군으로서, 모범소매인과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단합대회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다만, 양담배를 수거해서 사는데 필요한 돈은 지원할 수 없는 처지임. 타도 예를 보면 통상마찰을 행정부가 앞장서서 일으킨다는 것이었음. 그러니까 이운동은 꾸준하게 민간차원에서 전개하여 순수한 의식개혁운동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짐.
전종열 의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존되어 군민들의 보물인 모양성 밖에 초막집 3동은 휴게실 겸 우천시 잠시 머무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과 제도를 지키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기관의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떠한 예산으로 건립되었으며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공보실장 점종호	• 모양성복원 추진위원회에 보조금 4천만원 지원결정되어, 외곽도로 화목류 또는 잡목제거 수로정비가 말끔히 정비되어서 외래객이나 군민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음. 초막 3동은 외곽도로 주변정비에 따라서 산책객이라든가 또는 관광객의 휴식 및 우천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건립된 것임. 그러나 문화재관리국, 도에서부터 또는 일부군민들로부터 합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도문화재 관리위원들은 전북도에서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바람.		• 이점에 대해서는 복원추진위원회와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내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음.
	• 영광 원자력발전소 1·2호기가 86년 3월에 가동되어 해가 거듭할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4호기가 완공되어 95, 96년 가동을 앞두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5·6호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공청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1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수산진흥원 한상복 과장이 조사발표한 예를 든다면 생태계파괴는 물론, 김이나 미역양식도 불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직접 피해를 보는 해태양식을 포기한 어민수와 피해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내 보리새우 양식업자들이 타지역이전 움직임에 대한 고창군의 대책과 생태계 피해상황 현황조사 계획은 있는지?	군 수 장 현 돈	• 영광원전건설로 인한 연안해변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피해에 따른 어민보호대책은 한전과의 관계, 앞으로 전망 등 간략하게 설명하겠음. 한국해양연구소에서 92년 6월부터 93년 8월까지 14개월 실시하였으나 우리어민과 견해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어민들이 추천한 여수수산전문대학과 한전간에 피해용역계약을 다시 체결 피해조사중에 있음.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축제식양식장과 새우양식장은 내년에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연안지역 피해보상과 아울러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임.
	• 체력은 국력이다. 사회안정과 화합도 건강한 체력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군에서 공설운동장 유치 전략과 계획은?		• 많은 자금과 부지가 소요되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현안사업인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난도 해결하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고 주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조각공원도 만들도록 계속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라 생각함.
김 백 수 의 원	• 부안면 용산리 산 21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조성은 85년도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반편익시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어 한심스럽기 그지없으며 특히 급수대와 화장실, 소각장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이 창 남	• 부안면 공설묘지 시설물은 취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설치된 급수대는 철거하고 수세식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개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정비계획 및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는?	도시과장 함 의 열	• 고창군 도시계획 대상도시는 1읍 7면으로 되어 있으며 92년도는 고창, 해리, 성송, 대산, 흥덕면이며 93년도는 무장면임. 도시계획 도로의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기준 및 통제규정에 의거 군수가 입안하여 주민의 견청취,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결정하게 됨.
최 석 기 의 원	• 고창키우기 5대운동의 실적과 특히 고창학교 보내기운동에 공무원의 참여도와 실상은?	군 수 장 현 돈	• 이런 운동은 1~2년사이에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고창을 사랑하는 애향정신과 더불어 의식개혁운동이 병행해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군보 보급매수가 26,000부이나 군보를 받아 본 사람은 거의없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급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지난해 말썽이 있는 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군보발행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기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다음, 고창의 찬가를 보급하기 위해 테이프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창의 찬가 보급을 위해 고창유선방송과 협조하여 보급할 용의는? 또한 고창의 찬가 합창경연대회 시상금이 직장부와 학생부의 금액차이에 대한 수정 개선할 용의는?	공보실장 정 종 호	· 출향인사는 우편으로 배부되고 관내세대는 담당공무원 및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군보가 제날짜에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임. 앞으로 전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군보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일간신문과 같은 성질을 갖지 않고 정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고창의 찬가 테이프 1,000개를 제작하여 초·중·고 및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음. 유선방송을 통한 고창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계도함과 동시에 고창의 찬가 합창경연대회 시상금 조정문제는 계획을 수립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음.
	· 보궐선거시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이나 불법선거에 대한 적발사례는 있었는지?	내무과장 김 덕 진	· 군의회 구성이후 부안면, 흥덕면, 아산면 3개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부정선거 고발이나 불법선거운동 적발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거택, 자활보호자 및 의보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읍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은?	사회과장 점 창 진	• 생보대상자의 자격은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해 선정하고 있고 거택구호대상자는 월평균소득이 13만원이하 가구당 1,3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월평균소득이 14만원이하, 재산은 1,3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이규정에 의해 선정하고 있음. 그리고 읍면 대상자선정시 8명이 잘못되어 취소하였음.
	•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1ha 미만 재배농가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한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위배되고 있으며 냉해피해농가수와 생활보호대상자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냉해피해를 줄이기보다는 실제피해농가를 조사할 용의는?	군 수 장 현 돈	• 금년도 우리군의 냉해피해상황은 111농가에 149ha임.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밀조사하였으며, 생계보조대상은 52농가임. 52농가에 쌀 240가마를 지원하고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중고생 수업료지원등을 하고 있으며 이재민 4농가에 대해서는 구호비를 지원하고 생계비 지원농가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할 계획임.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한 보고와 과태료미납차량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또 현행 격일 주·정차 허용구간의 안내표시판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지역경제과 장 박 춘 오	• 90년 10월 13일 이후 총단속건수는 1,148건으로 34,2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과액 60%를 징수하였고 178건은 등록압류, 279건에 대해서 독촉중에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또한 주정차 및 격일제 허용구간은 11개노선에 5.7km 고시한 바 있으며, 190개의 안내표시판이 세워져 있으나 적다고 판단되어 9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함.
	· 산불예방대책 및 산불예방 감시원의 운영실태와 장비부족 유무에 대한 설명과 쓰레기매립장선정시 환경보호과로부터 협조 의뢰가 있었는지 또한, 소각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대책은?	산림과장 채 주 석	·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은 고창읍급 감시원 진화대원 40명으로 이중에서 산상감시원 21명 기동진화대 19명이 군 및 읍면에 근무하고 있음. · 진화장비는 무선지국 1개소, 휴대용무전기 57대, 등짐펌프 16종 244점이 있음. 화산쓰레기장 산불피해상황은 10ha 소실부분중 2ha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8ha는 92~95년까지 복구할 계획임.
	· 농촌총각 짝짓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녀 선정과정에 기준이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미자격자를 참여시키고 있기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정복지과 장 이 창 남	· 현재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만 우리농촌에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 결혼사업을 위해 민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7. 제26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성 호 익 의 원	• 현재 아산위생처리장 처리용량이 25톤인데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40톤규모용량의 처리시설을 18억 4천만을 확보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아산면민들은 위생처리장 증설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은 외면하고, 다른면에 투자하면서 최적지도 아닌 아산면에 설치하면서 반대급부사업은 없다. 이에 대해 어떤방법으로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설득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대안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지못할 때 사업시행을 보류하거나 다른지역을 선정하여 위생처리장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위생처리장 면적이 25필지에 406,366㎡나 되는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없다면 그땅을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군 수 양 규 장	• 아산위생처리장은 부지 1,807평에 13억원을 들여 1일 25톤의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한 후 92년부터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음. 시설 후 특별청소구역이 당초 읍면소재지권에서 군전역으로 확대되어 현재시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처리용량 25톤에서 65톤으로 증설코자 하는 사업임. 동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주민대표와 군수실, 부군수실에서 면담을 가진 바도 있고, 여러경로를 통해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반대의견이 많습니다만 해야 할 일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임. • 또 같은 위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동토지중 활용이 가능한 밭 5ha중 2ha는 아산면민에게 임대해주고 있지만 3ha에 대해서 희망농가가 있을시 임대는 할 수 있지만 매각할 용의는 없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현재 모양성에는 22동의 관아 건물가운데 12동이 복원완료되고 나머지 10동의 관아를 복원해야 하는데 94년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 첫째,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대안은 있는지? • 둘째, 국고보조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모양성 복원의지를 갖고 계신지? • 셋째, 모양성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구상이나 계획이 있는지?		• 고창읍성 복원은 75년부터 20년동안 48억을 투입하여 성곽보수 학교이전 고건물 12동을 복원하고 아직까지 10동은 미복원 상태임. • 복원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더이상 건물복원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봄. 복원추진위원회와 군과 합심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복원토록 하겠음. 그리고 고창읍성 주변권종합개발은 관광소득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 아산농공단지 유치활동과 앞으로 인력유치 활동계획은? 또한 기업유치활동비는 본예산에 단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농공단지 안내 팜플렛 역시 시중에 나도는 팜플렛수준이다. 이에 대한 시정과 언제까지 유치완료할 계획인가?	지역경제과 장 박 춘 오	• 아산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상황으로는 93년도 재경향우회 총회시 유치설명회와 입주안내서 및 서한문을 3회에 걸쳐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기업유치반이 입주 상담업체 및 관계기관등 30개소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 금년 들어 입주문의 및 상담업체가 6개업체나 되고 이중 식품가공업체와 첨단기계부품업체등 2개업체가 입주의사를 갖고 있으며 년내에 전업체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의 얼굴인 버스터미널에 대해 • 첫째, 버스터미널을 관리 규제할 법적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그동안 행정지도나 단속한 실적은? • 둘째, 현재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고창군의 견해는? • 셋째, 만약 분리할 수 있다면 사업자위주가 아닌 승객위주의 재반시설로서 청결하고 포근한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4조에 의해 행정지도는 년 10회로 이용객편의 위주시설 및 제도개선, 화장실 대합실 청결유지, 매표원 친절서비스, 주위환경정비로 단속실적은 개선명령 4회, 시정명령 3회임. 그리고 현재 고속버스 승차장을 시외버스 승차장 1번홈으로 옮기고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장실을 개조, 전용대합실로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 회사측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음.
김 백 수 의 원	• 고창군조직의 재진단에 대하여 고창읍성관리사무소와 동리국악당을 통폐합하여 인력감축 및 부족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군 수 양 규 장	• 두사업소는 업무성격상 당초 설치목적이 대단히 다른 점이 있음. 그러나 근거리에 인접하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면을 상반기 조직진단이 있을시 검토해 보겠음.
	• 94년 1월 1일부터 모자보건센터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현재 전문직공무원 조산원을 계속 채용함은 채용계약서 제7조에 의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건소장 송 용 관	• 계약직 공무원은 산전·산후관리에 있어서 2436건을 관리해야 하고 임산부관리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 조작에 필요한 전문요원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기 때문에 연장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조산원계약기간이 91년에는 2년으로 하고 93년에는 3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람.		앞으로 금년 1년에 걸쳐 관리를 하여 만약 연말평가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약조치 하겠음.
	· 읍면사무소 인원 배치현황을 보면 19명이 부족하며, 직급별로 상위직급은 조정되어 있지만, 8·9급의 직원은 고루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부족인원은 언제 충원되며, 읍면에 근무지를 두고 군청 차출함에 따른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내무과장 김 덕 진	· 읍면사무소 결원인원은 일반직 10명, 기능직 4명이며, 바로 충원되도록 하고 읍면직원중 군에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토목직 7명, 농림직 2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가 마무리되면 읍면에 환원토록 조치하겠음.
	· 농어촌가로등 설치시 91, 92년도에는 관내업자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93년만은 남원시에 소재지를 둔 안산전력, 추가분은 군산시가 본지인 서구전기회사가 도급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하자발행시 1~3등을 보고 원거리에서 오는데 따른 그 피해는 누가보겠는가?	관리계장 유 병 열	· 90~92년도까지는 총괄 낙찰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93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키 위해, 당초 설치계획 735등의 시공을 자재구입과 시설공사를 분리시행한 결과 공사 낙찰차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하여 재투자하여 134등을 추가시공 총 869등을 설치하였음. 보수공사는 본공사를 시공한 회사가 1~2등 고장시는 보수공사를 잘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자재구입과 시설공사를 분리시행한 낙찰차액으로 보수자재를 구입하여 군청 고도차와 도시과 보수공무원 2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보수조치하겠음.
	· 공사입찰시 자재와 시설공사를 분리시행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회피 및 규명이 어려워 주민불편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관내는 5개면이 해안에 접해 있으며 화산쓰레기매립장은 94년말까지 매립하면 더이상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므로 수산자원이라 해서 개인에게 양식장 허가로, 관광단지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그런장소에다 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과 아울러 주변의 환경사업과 기반시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군 수 양 규 장	• 면단위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 제반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간이위생매립장에 대해서도 14개중에 5개소가 위생매립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단순매립장이 9개소가 있음.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0년이상 사용되어야 하고, 20,000명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 로선 확정지역은 없으며, 구상중에 있음.
고 병 윤 의 원	• 우리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리하여 농촌의 문교행정은 구멍이 나서, 설립된 국민학교가 20년도 채 못되어 폐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이농억제방안은 무엇인가?	군 수 양 규 장	• 농어촌발전계획 농업구조개선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에 집중투자계획 등 이농억제방안으로 계시되고 있지만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고령화 되어있는 사람 즉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책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농촌이 발전하리라 믿으며, 모든 시행이 현실과 미래에 부합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고장은 인물의 고장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고장에서 배출한 인물을 소개할 공	공보계장 이 동 열	• 고창군 관내문화재가 46점으로 국가지정·지방지정이며, 동산문화재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간을 마련하여 어른들을 기리고, 역사적인 평가도 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물관을 건립할 의향은? 인촌 김성수, 근촌 백관수, 동리 신재효, 만정 김소희, 전봉준 장군, 마당 서정주선생 등을 기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이러한 동산유물과 선열들의 유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하면 분실 훼손되는 일이 없을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산교육장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는 이것들을 보관전시할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동리국악당 일부를 개조해서 신재효선생 유물부터 모시고 있으며, 도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멀지않은 시일내에 유물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농기계가 다양해서 우리군에 있는 농기계회사 대리점만으로 농기계 부품을 수급 조절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을 군에서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어촌 발전계획 설명회가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산업과장 김 계 환	• 우리군의 수리업소현황을 보면 44개로써, 대리점 6개소, 농협 4곳, 일반수리점 34곳이 있음.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수리반은 농촌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봉사를 하고 또 부품을 공급해주고 각읍면 수리센타에 대한 부품대용자를 소득금고에서 해주고 있음. •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부품수리센터 운영하도록 하고, 농협도지회 부품센터와 우리군에서 개설하는 농협에서 하는 센터와 연결, 부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류 길 규 의 원	• 농어촌발전 개발계획 조정안에 의하면, 향후 5년동안 총 3,228억원을 투자한다는 설명회가 있었으나 유통구조개선, 시설의 현대화, 농촌복지 및 구조개선 등에 소요되어 직접생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결여되어 있는데 생산자금 확보 대책은?	군 수 양 규 장	• 소득금고 지원자금과 이차보전 자금을 확충 융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법인지도방안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 육성요령을 읍면에 시달 및 추진중에 있음.
	• 공동묘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방향 및 관리체계를 확립 중기계획을 세워서 공동묘지 부지의 사유방지와 불법묘경 근절대책을 세울 용의는?	군 수 양 규 장	• 공동묘지가 경작권전매 등으로 집단사유화 및 불법묘경과 농경지에 묘지조성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기획실에 공동묘지 집중관리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음. • 읍면종합행정담당과장과 읍면장 연대 책임하에 공동묘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묘경지와 실지사용하는 묘역에 대한 일제 한계측량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음.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을 색출 정리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에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재무과장 정 규 확	• 군유재산은 총 15,191필지에 6,907,153㎡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등기가 안된 군유재산이 161필지 111,008㎡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실적도 있습니다만, 특별조치법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최 석 기 의 원	· UR협상타결이 목전에 있는 이때 군수는 어떤 견해와 대책이 있는가?	군 수 양 규 장	· UR종합대책은 정부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원분야에 3,709억원을 집중투자하게 되고 생산기반조성, 기계화영농, 축산·수산 등 13개분야에 융자·자부담을 포함하여 8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대책으로는 생산비절감,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집단화, 유통시설의 확충, 고품질 생산지원, 농산물 수출촉진 등 농업육성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본군은 도립공원 선운산, 모양성, 해수욕장, 석정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관광도시로서 지속적인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구정연휴기간 정전, 폭설, 폭풍등의 많은 재해가 한꺼번에 몰아쳤는데 이에 대한 보고와 정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한전측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58,300천원정도, 설해피해가 35,000천원정도 있었으며, 김양식 피해와 김가공공장 피해도 모두 도에 보고하였음. 자연재해는 막을 길이 없지만 정전으로 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한 문제는 관심이 커서 농촌지도소장으로 하여금 기술진단반을 편성하여 현지답사를 한 결과 냉해피해가 미미하고 시설주도 앞으로 잘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임.
	• 각종 성금을 유용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91년부터 성금모금내역 및 기부현황에 대한 보고 바람.	내무과장 김 덕 진	• 91년도 적십자회비 목표액 3,590만원, 92년 3,700만원, 93년 4,080만원, 94년 4,470만원으로 매년 10%씩 증가하였으며, 읍면별 목표액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똑같으며 회비모금 방법은 읍면장책임하에 모금하여 직접 우체국온라인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음.
	• 인사정책 만큼은 공명정대한 인사가 바람직하다. 인사위원회를 공무원 5인과 민간인 2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민간인을 선임할 것인가?		• 93년까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5~7인의 공무원을 위촉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94년부터는 인사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2명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위촉기준은 법조인, 학계인사, 20년이상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중에서 지역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사회에서 주민의 신망과 덕망을 얻은 민간인은 위촉토록 하겠음.
	· 3불운동의 하나인 부정추방 운동 추진 계획은?		· 3불 추방운동은 공직자부정, 공사부실, 민생불안으로 모든 행정력과 교육,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 현재 외지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의 편익시설계획이 있는지?	재무과장 정 규 학	· 외지인이 고창군에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고창군 총필지 30만 필지로 이 필지를 저희들이 단시간내에 확인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읍면재무계직원을 총동원해서 조사완료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음.
	· 석정온천개발의 종합적인 추진 상황과 외지인 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세수입은 얼마인가? · 석정온천 폐수로 인한 고창천 오염이 우려되며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식음료에 대해 물한통에 200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람.	도시과장 이 용 남	· 석정온천 추진사항은 464,000평을 개발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0년 2월 26일 온천지구지정을 받았고 92년 1월 29일 국토이용계획변경, 2월 24일 관광지지정, 8월 29일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로부터 받았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4년 4월까지 관광지 사업시행 허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96년 12월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석정온천개발로 인한 지방세수입은 도세가 87,528천원, 군세 9,115천원 등 130,088천원임. 식용수 체수시 통당 200원을 받는 것은 청소비 및 관리비형식으로 성금함을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성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용수판매 및 청소수거료 징수에 관한 징수사항은 아니며 금후 식용수값 또는 청소비명목으로 징수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 돈 우 의 원	• 타도 시군의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대리점과 공급받을 농가와 선계약 후 공급이라는 것이 있다. 기계화 영농단은 기존 농기계를 합하여 조직하고 행정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찾아서, 갈치 자기꼬리 베어먹는 식으로 대리점도 기계공급 없이 이득을 챙기고 농가도 기존농기계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본군의 사례와 예방대책은?		
	• 동리국악당의 공연횟수와 관객수가 하행곡선을 이룬 이유와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정읍사국악원, 전북도립국악원 등과 비교하여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공보계장 이 동 열	• 94년 공연계획은 12회로 국악공연 8회 일반공연 4회를 유치할 계획임. • 타국악원을 방문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는 방문후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발상지가 고창이라고 학계에서 집약되었다. 인접 정읍군에서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데 우리고창에서는 기념비조차 하나 없다. 이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는?		•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군에서도 지난 1월 19일 무장봉기 100주년 동학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모든 사실이 인정, 규명될 경우 우리고창이 농민봉기의 새로운 성지로서 뜻깊은 고장이 될것으로 판단됨. 동학농민의 역사적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전봉준장군의 생가를 정화하고 첫봉기지인 무장에 사적비를 건립하는 등 새로운 역사유적지로 가꾸어 나갈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사후치료체계로 되어 있어, 병이 발병했을때 병원에 간다. 그러므로 보건행정을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 요즘 중국산 미꾸라지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된 1,300마리 속에 악성회충이 서식하고 있어, 치명적인 유충으로 학계에서 진단하고 끓여먹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씻은물을 고랑에 버리면 타 곤충에 전염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는지?	사회과장 정 창 진	• 고창시장에서는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상을 아직 발견치 못했으나 금후 지도단속을 해서 발견되는대로 수거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군에 개인이 자체개발해서 먹는 지하수문제인데 수질검사 비용이 공동검사료는 8,000원인데 반해 개인은 101,000원을 받고 있는 경위와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재수물품이 국산과 외국산과 식별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수입농산물은 수입과정에서 잔류농약을 검사 후 유통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자체로 유해 여부를 검사해 본 일은 없으나 곶감, 참깨, 고사리 등의 수입농산물을 수거해서도 환경보전연구원에 의뢰했음. • 주민들의 음용수 수질검사관계를 질문하셨는데 현행제도상 간이상수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에 부적당한 유독 내지 다른 성분이 검출된 바가 없음.

8. 제30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 돈 우 의 원	•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건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사회불안심리가 팽배하다. 모든 이익배분이 불공정하고 지도층의 과소비가 범죄심리를 유발한다. 인간성회복을 위해 모든 단체들이 앞장서 인명중시 사상고취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연합 전개시켜야 한다. 범죄예방에 대한 고창군의 견해는?	군 수 양 규 장	• 본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를 비롯 새마을조직, 각종 사회단체를 총망라하는 가칭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화합과 도덕성 재무장 등 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경찰제를 조직운영하여 청소년계도 환경순찰등 지도와 홍보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기대책에서 추진하고 근원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적극적인 방법이라 사료됨.
	• 건설행정 및 재해예방대책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사부조리 유형을 보면 무리한 사업계획, 설계부실, 설계서검토, 부실업체 입찰참가, 덤핑입찰과 업체간 담합, 예정가의 누설 등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소하천 준용하천을 막론하고 준설을 해서 그곳에 유공 토판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과 또 사리를 묻고 옆으로는 흡수공을 묻어서 또 중간 중간 점토로서 누수를 막는 형식으로 하천을 전부 정비한다면 한해가 들어도 굴착할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모양성내, 무장읍성 등에 옛날 현감들의 선정비가 많이 수립되어 있다. 도로변에 있었던 것을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 놓았는데 그것들을 일정장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아산공설묘지에 집결하여 세워놓고, 독립유공자 묘와 병행하여 학생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김 기 채 의 원	• 노후화 및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가? • 국·지방도 및 군도 등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유흥음식점 등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시설물을 비롯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물의 화재예방과 가스시설물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고창군의 견해는?	군 수 양 규 장	• 대형사고 및 화재예방대책 추진상황은 군내 393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해안방조제, 어항시설, 교량재해 위험도가 높은 84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금년에는 총 35개소에 35억5천 7백만원을 투자했음. 이번에 도로와 교통안전에 대해 진단한 결과 보수를 요하는 시설등에 대해 95년 예산에 계상 하였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간이급수시설관리 및 이용실태에 관하여, 간이급수시설개소중 주민활용시설은 몇 개소이며, 재정적 지원사항은? •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주민신뢰도를 높이는 공정한 수질검사 계획은? • 동포 및 구시포해수욕장에서는 고창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적용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서로 형편이 맞지 않고 있어 선운산 주차료와 읍성주차료를 인근 내장사와 백양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용요금을 현실화할 방안은 있는가?		또한 위험교량 보수 14건에 2억 3천9백만원이며, 고창읍 유진 청하아파트가 있는데 일찍 안전진단을 하였으나 다시한번 재진단을 거친 후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심원의 두어지구, 흥덕사포지구 방조제는 국비 10억가량 요청했으며, 고창읍 도산교와 대산면 광대교는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정주도로 관리사업소와 전북도에 하자보수토록 요청하였음. • 재해와 대형사고는 사전예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수입개방대응 전략으로 농업의 구체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설채소 하우스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의 우려가 있고, 우리는 소값파동을 경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시설채소의 농가규모 예산지원사항과 자체시설을 포함한 생산된 작물은 파악되고 있는가? 또한 판로를 위해 행정적 지원사항과 가격폭락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 석 기 의 원	• 영광원전 제1, 2호기의 가동으로 인해, 어민들은 어업권과 생존권을 보호를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영광원전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고창군민이 보고 있음에도 5·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영광에서 실시되었는 바 고창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고창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은 무계획적인 사업선정이다. 93년도 이월사업중 선운산 쓰레기장, 선운산주차장 부지확보, 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고장육성사업등의 경우 94년 한해가 다 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추진된 경위는 무엇인가?		
	·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종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실적본위의 인사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라 가산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인사이동에 있어서 출신지역을 고려한 인사가 있을때 업무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대책이 시급하며, 쓰레기 종량제실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봉투를 불법제작해 사용할 경우 대책은?		
	·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임대할 경우 전시와 판매라는 본래취지와는 달리 판매에만 치우쳐, 이미지가 손상된다 생각하며 본직판장 운영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을 작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어촌 노선버스가 고창~대산, 고창~해리는 밤 9시 40분까지 배차되고 있으나 공음의 경우 7시 45분이 막차다. 고창과 무장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타지역 학생보다 2시간 피해를 보고 주민 또한 피해가 큰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농어촌 노선버스 재조정 용의는? • 고창군의 재해위험지구는 몇군데이며, 어떤 시설물이며 진단결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 1990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 지구내에 지금까지 환지청산이 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환지 청산금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주기 바람.	군 수 양 규 장	• 김기채의원 답변과 동일

9. 제31회 정기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성 호 익 의 원	•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과 농수산물 수출판매 구축을 위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지원 용의는?	군 수 양 규 장	• 현재 도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국제업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역업무의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전라북도가 일본 가고시마현과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자매결연 보다는 기맺은 두도시를 교역거점도시화 하여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으며 농수산물 수출지원 방안으로는 수박, 땅콩, 젓갈류 등 5개 업종 1,592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5만 6천톤의 수출물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 대산농협에서 일본에 1억 5백만원 상당의 수박을 수출한 바 있음. • 농수산물가공 및 수출업체 지원은 보조와 융자 4억 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수박, 젓갈, 쌀가공 공장에 보조 5억 9천6백만원, 융자 10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경쟁력있는 농수산물의 수출신장을 위해 매년 지원규모를 늘려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읍 죽림리 일대 지석묘군의 보존과 개발전략에 대한 대책은?		• 92년부터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합동으로 선사시대 유적지인 고인돌에 대한 지표조사와 정밀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 일대에 442기의 지석묘가 분포돼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자료를 근거로 금년 2월 문화재 관리국에 사적지 지정신청을 하여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답사를 마치고 현재 심의중에 있음. • 지석묘군이 사적지로 지정되면 우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토지매입과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과 편익시설, 선사시대의 장례문화를 재현하는 전시관 신축 등 연차적으로 추진, 주변관광지와 연계 개발하여 종합 관광권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관광자원 연계 종합개발계획과 구상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우리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운산 도립공원과 고창읍성, 선사유적지, 문수사, 해수욕장, 석정온천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복받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미미한 투자에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는 종합개발 구상을 말씀드리면 선운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으로는 고창읍성 석정온천과 선사유적지를 연계 개발하고 서쪽으로는 구시포와 동호, 명사십리 등 해안과 분청사기 요지를 잇는 방식의 두가지 축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합관광개발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행정투자와 민간자본 등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음. • 우선 내년에는 명사십리 해안 관광개발 기본용역을 발주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석정온천은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는대로 민간자본을 유치, 적극 개발해 나가고 선사유적지와 분청사기 요지는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와 군비로 개발할 계획임. • 관광지를 상호연계하기 위해서 금년 6월 4일 구시포와 동호를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도로 85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km를 군도 1호선으로 승격시켰으며 이 도로 개설 포장에는 양여금 70%가 지원되며 가능한한 해안선 72km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선운산 진입로 4차선 공사를 서둘러 투자하고 흥덕에서 선운산 입구까지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리 동호에서 온천도로를 거쳐 전남 담양과 연결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 연차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음. • 이와같이 관광자원을 병행 개발하고 연결도로가 완성되면 고창 읍성~지석묘군~선운산~해안 관광단지 등 사계절 관광지로 면모를 일신하고 변산반도, 내장산, 백양사 등과 상호연계하여 탐방형 관광지에서 숙박형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관광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김기채 이중운 류길규 의원	• WTO에 대응하는 농정추진 기본방향과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은?	군수 양규장	• 정부에서는 WTO에 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8년까지 42조원 2001년 농특세재원 15조원 등 57조원을 농어촌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며 본군 농정추진 종합대책은 2001년까지 다음 목표를 달성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전업농은 현재 422호에서 1,077호로 육성하고 호당경지 면적을 1.3ha에서 3.1ha로 규모를 늘려나가며 논경지정리는 현재 53%에서 100%완료하고 밭경지정리는 5ha에서 1,150ha까지 확대하며 수도작 기계화율을 100%달성하게 되며, 유리온실, 고품질 생산유도, 정주권과 오지개발 완료, 직업전문학교 설립, 문화마을 조성등 환경문화 복지시설이 확충되고 도시와 비슷한 생활기반 조성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획기적인 농외소득을 가져올 계획임. · 제반 사업들이 2001년까지 7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효과는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과 의회와 행정이 하나로 뭉쳐 스스로 자구적인 모든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임.
김 백 수 의 원	· 광역 쓰레기장 확보에 대하여 부지확보나 시설계획은?	군 수 양 규 장	·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쓰레기장이 있지만 3~4년내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대규모 쓰레기장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70억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적지가 선정되는대로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창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집중화 방안은?		•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정주와 영광 등 우리지역이 경제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 의료, 교육시설, 서비스시설 등의 열세와 취약한 시장형성 해소를 위해서 우선 고창물건 사주기등 군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하는 의식개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온천, 관광지 자원개발, 도로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유치와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하여 균형있는 개발과 투자가 된다면 우리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시내버스노선 증차와 노선변경에 대한 대책은?		• 현재 관내에는 대한여객 37대 차량이 76회 노선에 연장 314㎞를 3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증차와 노선변경은 주민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생활 편익과 직결되므로 11월중 신설노선과 연장노선을 조사한 바 7개읍면 11개노선 28.7㎞로 12월중 회사측과 현지답사 통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못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 공영버스 운행차량을 요구 내년 1/4분기내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전 종 열 의 원	•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의 추진경위와 전망에 대한 견해는?	군 수 양 규 장	• 사업개요는 성송면 하고리 일대와 대산면 중산리 일대 100만평의 부지에 주행시험장 80만평, 공업용지 17만평, 주거용지 3만평을 금년부터 98년까지 170억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월 현지답사 결과 11월 24일 예정지를 확정하고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공업단지를 지정받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 설계가 끝나는대로 토지매입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10월부터 98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공단조성이 완공되면 1,500명 정도의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고용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공단을 방치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세금이 중과되고 각종 세금이 추징됨.
	• 군민체육 진흥을 위한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계획은?		• 공설운동장 건립비는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6억정도로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함. 본군 실정으로 장애복지회관, 부녀회관, 청소년회관, 군민회관, 예술회관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밀집시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견됨. 조각공원 군민상징탑등을 상호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임. •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같은 장소에 각종 시설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뒤에 본격적인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류 길 규 부 의 장	• 월곡 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등 제반 민원해소 방안은?	군 수 양 규 장	• 월곡택지개발지구 사업개요는 고창읍 월곡리와 교촌리 일원 88천평을 금년부터 96년까지 182억원을 투입 개발해 나갈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계획으로 금년 8월 30일자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시행협약을 체결하여 금년에 76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보상금 사정작업에 들어갔음.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사업이 착수될 것임. · 지가 보상등은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직접보상은 물론 영농비와 이농비, 농기구 이주대책 등의 간접 보상금이 지급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추진될 것임. 협의양도자에게는 50~70평 규모내에서 단독 주택지 조성원가의 110%에 택지를 공급하게 됨. · 이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고창에 인구가 집중되고 또 도시화로 가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등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기 채 의 원	•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진흥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장 정 종 호	• 우리 고창은 고유문화 행사로 모양성제가 있습니다. 현재 20회까지 거치면서 관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반여건의 한정성을 벗어나지 못한 행사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주도 행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을 시도해 보았지만 추진할 사회단체가 없었음. •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모양성제가 종합문화행사로 승화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람.
전 증 열 의 원	• 여류 국창 진채선씨의 행적발굴과 심원면 검당포의 천일염을 발굴할 계획은?	문화공보실 장 정 종 호	• 100여년전 우리 고장에 여류국악인 진채선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행적이 기록상이나 문헌상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 국창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이 전해져 오고 있음. 천일염을 제조했던 심원면 검당포도 천일염을 제조하여 선운사에 바쳤다는 전설만 있음. 앞으로 여류 국악인 진채선씨와 검당포 천일염 제조지를 발굴할 수 있는 각종 자료수집 등 관련된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백 수 의 원	•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공사감독부서 신설계획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은?	내무과장 김 덕 진	• 본군의 경우 공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은 군·읍면 7급 내지 9급 공무원인 토목직 27명, 건축직 7명등 34명으로 연간 평균 290여건의 토목 및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1인당 8건정도 설계추진,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독부서 신설은 직제조정 등 내무부의 승인사항이며 기술직 공무원에 비해 공사건수가 너무 많아 시행부서와 감독부서로 나누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 • 금후 발전행정 수행을 위해서 기존 군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건의하겠음.
	•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 자기직분을 다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전공직자가 자중하여 주민봉사의 계기가 되도록 다짐하고 12월 31일까지 특별봉사활동기간을 선정해서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3명에 대하여 연말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자기직분을 다하는 공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원이 근무평정, 승진, 전보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연수등 각종 직무교육, 외국어 교육등을 통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읍면하위직부터 50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60명에 대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음.
	• 의회의 표창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반영 견해는?		• 공직자 포상에 대한 가점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훈장, 포상,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은 1점, 대통령표창 0.75점, 국무총리표창 0.5점, 장관·시도지사 0.25점, 시장·군수·병무청장 표창 0.1점 평정시 가점을 적용하고 있음. • 규정상 의회 표창은 가점 평점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가점평점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음.
이 증 운 의 원	• 도농간 추진되고 있는 자매결연의 성과 및 앞으로 추진방향은?	사회진흥과 장 강 유 원	• 현재 광주 울지구 의료보험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금년 6월 9일 고창군 새마을 지회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관악구 새마을 지회가 결연을 맺었으며 결연성과는 지난 7월말 한해지구 지원으로 양수기 23대와 송수호스 2,300m, 현금 700,000원을 보내왔고 관악구에 수박 2,800개를 판매하였으며 광주 울지구 의보에 고추 600근을 직거래 한 바 있음. 지난 8월 12일에는 관악구 새마을 지도자 200명이 수련대회를 동호해수욕장에서 2박3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20일 고창군 새마을 지회에서 관악구를 방문,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음. 물론 결연을 체결했다해서 초기 단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미체결읍면에 대해서는 95년 상반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 고향발전지원 등 정신면에 중점을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음.
	· 비지정 관광지에 산재한 쓰레기 수거방안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군에는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2개소에 지정되어 여름철 성수기 수거인부 10명을 고정 배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음. • 금년 입장객은 78,736명으로 2천8백만원의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기타 유원지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하여 수거하고 있음.
김 기 채 김 백 수 의 원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 소송수행상황, 재산관리, 소유권 미등기재산, 보건소·면사무소등 개인명의 토지점유 현황은?	재무과장 정 규 학	• 소송수행 상황은 토지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이 부안면 상암리 최중기외 184인으로 청구금액이 7억 6천128만 1천원이었음. • 사건개요는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원고들이 자력으로 조성한 해안토지를 고창군이 강제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매각한 토지대금은 부당이익이므로 반환 요청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변론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없어지자 94년 5월 10일 6건 전부를 취소하였으며 국가소송은 94년 2건 접수중 1건은 본군이 승소하였고 1건은 법원 계류중에 있음. • 군유재산은 총 15,315필지 6,985,286㎡로써 행정재산이나 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존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이용하고 있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관리하는 재산으로 14,335필지 5,036,466㎡임. 나머지 980필지 1,948,819㎡는 잡종재산으로 주로 마을 공공이용부지로 활용되고 625필지 302,213㎡는 대부계획을 매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음. • 행정재산으로는 고창군 청사부지중 173필지 157,212㎡(47,556평)으로 별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미등기 재산현황은 리읍면 소유의 시군귀속토지 및 회계전환된 임야 등 107필지 47,914㎡를 금년도 잡종재산으로 편입 전체 등기가 완료되어 본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관련사업 편입부지로 확정된 776필지 298,407㎡중 약 85%인 639필지 254,911㎡는 등기의뢰가 되어 있으나 남은 137필지는 매도인들이 용자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아 등기의뢰가 지연되고 있음. 12월중에는 용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전체등기가 가능하도록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 하겠음. • 개인명의 토지 점유현황은 고수 보건지소외 2개소(상하보건지소, 대산면사무소)에 사유지가 일부편입되어 95년중 분할측량을 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요청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찾기는 94년도 군유지 107필지 47,914㎡와 무주부동산 109필지 780,097㎡를 국유지로 권리귀속을 마쳤음.
김 백 수 의 원	• 공유재산 관리시 중대하자가 발생 재산의 손실과 행정소송의 패소등 책임한계는? • 군청청사신축에 대하여 – 93년 준공된 청사가 냉방시설 고장등 각종 하자발생으로 부실공사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향후처리 대책은?	재무과장 정 규 학	• 1차적으로 군에서 보상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한 후 2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발생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 본군청사는 5,717㎡의 대지에 건축면적 1,063㎡로 지하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5,806㎡로 91년 12월 24일 착공 93년 10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하자기간은 3년이며 하자발생시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하자기간이 연장됨. • 금년 여름 냉방기고장으로 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청원·의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설비부분에서는 전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배관설비의 결로현상은 혹한기나 혹서기 때를 예견 재점검하여 시공토록 조치하였음.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겠음.
성 호 익 의 원	· 간이상수도 시설투자를 대폭늘려 군민들의 안전급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사회과장 최 봉 호	·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291개소로 양수식 240개 자연유하식 51개소인데 이중 9,183세대 27,492명이 사용하고 있는 238개소를 현재 활용하고 보수대상이 수원고갈 18개소, 송배수관 보수 16개소가 있고 폐쇄대상은 29개소가 있음. 94년 상수도시설은 19개소에 1억 7천2백4십만원을 투자완료 하였음. · 95년이후 상수도시설 수요량 조사결과 69개소에 612,96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군의 예산이 취약하므로 내년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군민의 안전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기 채 의 원	• 과채류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김 계 환	• 과채류 경쟁력 제고 추진상황은 92년 6.8ha, 93년도 2ha, 94년도 12ha로 총 20.8ha가 시설하우스로 재배되고 5,51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참외, 수박, 토마토 등으로 작부체계를 수립하여 투자하고 있음. • 군에서는 서울에 3개소의 직판장을 운영하고 직거래 판매하고 있으나 영농법인 작목반에 행정지원을 계속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앞으로 간이집하장 등을 시설해서 대단위 소비처와 대도시 공판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음.
이 종 운 의 원	• 새마을 활성화중 도농간 추진되는 자매결연 사업성과 및 추진방향은?	산업과장 김 계 환	• 도농간 농산물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본군의 얼굴있는 판로개척과 자매결연 사업으로 도시 농산물직판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총 19개소로 군농협이 1개소, 읍면농협 11개소, 읍면 5개소, 마을단위 2개소가 결연되어 있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는 제1직판장이 송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파구 방이동에 36평을 179백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제2직판장은 성동구 하왕십리에 56평으로 128백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제3직판장은 강동구 암사2동 22평 85백만원을 들여 임차하고 있음.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 및 특수성 홍보를 위하여 전단 및 군수 서한문을 활용하겠으며 우리농산물의 중개 및 판매기지로 활용할 것임.
김 기 채 의 원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항 및 대책과 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은?	지역경제과 장 안 선 희	·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5개업체에 9억 3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구조조정자금은 2개업체 7억 8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음. 94년도에는 경영안전자금이 3개업체에 1억 7천만원, 구조조정자금이 3개업체에 6억 7천만원으로 총 6개업체에 8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음. 군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정지원 계획으로 내년부터 99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지원 상황은 94년도 총 12명을 부족인력으로 지원하였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아산농공단지 입주전망 및 업체선정 계획은?		• 33,651평 조성에 14개 업체 분양계획으로 현재 8개업체 15,494평을 분양 46%의 실적임. 최근 국내경기가 풀리고 있어 입주상담 업체를 대상으로 '95 상반기중 분양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음. 사업성이 건실한 업체와 전자, 기계제조 등 고부가가치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음.
이 종 운 의 원	• 고수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과 아산농공단지 미분양에 따른 사유 및 분양대책은?	지역경제과장 안 선 희	• 고수농공단지는 89년 10월 29일 착공, 90년 8월 15일 완공되었고 조성면적이 31,675평으로 16억 2천4백만원이 투입되었음. 입주 10개업체 24,188평중 2개업체가 부도 발생, 입주기업 사전 부실화방지를 위해 업체당 진흥공단에서 2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적극 알선토록 하겠음. • 아산농공단지는 14개업체에 분양계획중 8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분양이 부진한 이유는 조성초기 12개 업체가 입주토록 승인 결정까지 되었습니다만, 당시 금융실명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경기침체 등으로 8개업체가 도중에 입주를 포기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하여 금융실명제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억제와 위축된 사기가 분양시기와 맞물려 분양이 부진한 상태에 있음. 유치반원을 편성 서울등에서 3회에 걸쳐 유치활동을 하였고 입주안내 서한문을 4회에 걸쳐 900매를 보낸 바 있음. 2개 업체가 상담을 끝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음.
성 호 익 의 원	• 석정온천에서 고창읍성, 지석묘군과 선운사를 연결하여 구시포까지 연결하는 4차선 관광도로 건설 및 꽃길조성 계획은?	건설과장 황 천 욱	• 4차선의 한계 교통량은 1일/8,000대 이상으로 교통량 조사결과 아산과 선운사로 통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1일/3,200대로 한계 교통량에 상당히 미달하여 4차선 확·포장은 어려운 실정임. • 선운사 입구 1.4km에 대하여 4차선 확·포장을 위해 93년부터 4억원을 투입 용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착공을 위해 도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석정온천에서 월곡교간 2.44km에 대해서 93년부터 3억원을 투입 용지매입을 하고 있으나 국도예정지로 고시되어 금년내 국도로 승격될 노선으로 승격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된 후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4차선 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아산에서 탑정구간 7.7㎞에 대해 노폭이 5m정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3천만원을 투입 갓길포장 430m를 시행하고 있음. 금후 한계교통량이 임박해질때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확정된 후에 관광꽃길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시행하겠음.
류길규 부의장 성호익 김기채 의원	•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행정방안과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건설과장 황천묵	• 관내 경지정리 면적은 총답 면적의 68.1%인 10,726ha임. 그중 52.7%인 5,654ha는 금년 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가을 착수 계획인 23개지구 1,772ha에 332억 1천1백만원 투자할 계획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지정리 사업률은 69.2%가 될 것임. 금년 가을 착수 사업량이 예년의 4배에 가까운 양이 되므로 공법기관인 농진공사, 농지개량연합회에 각1개지구, 책임감리에 2지구, 일반감리에 13개 지구를 감독케 하여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민원파악과 해결을 위해서 지구별 추진위원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할 계획임. •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94년도 저수지축조 개보수 대·소형 관정개발 등 25억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수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행정조치 사항으로 취입보 배수문 등 수리시설을 정비 저수량을 최대한 비축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
류 길 규 부 의 장	• WTO에 상응하는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건설과장 황 천 묵	• 관내 농어촌 도로는 94년 10월 전국 재정비시 196개 노선 594.5km를 255개 노선 680km로 늘려 59개 노선 84.6km가 상향정비 되었음. 지금까지 106.7km확장 되어 확·포장율이 15.7%이며 내년도에 7개노선 15.7km 4,05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음.
전 종 열 의 원	• 석정온천개발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전망은 무엇인가?	도시과장 이 용 납	• 고창군 고창읍 석정, 월산, 월암리 일원 464,000평 개발계획에 93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게 되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사업비는 3,644억이 소요되며 추진사항으로 90년 2월 26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3년 1월 19일 온천개발 승인을 득하여 94년 8월 22일 기반조성 사업시행계약을 롯데건설과 체결하였음. 94년 9월 2일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34억원을 납부했으며 94년 10월 19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94년 10월 28일 착공 94년 11월 22일 대체조성비 2억 7천7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전용부담금 25억을 95년 1월 23일까지 납부하겠으며 96년 12월 31일 계획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민자를 유치하겠음. • 향후 전망으로는 기반조성 사업비 약 28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석정온천지구측과 롯데와 협의시 채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 지불계획으로 계약되었으며, 채비지 미매각시 토지 50,000평을 공사비로 대체 인수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므로 개발 후 대지로 방치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석정온천은 2000년대 호남제일의 온천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류 길 규 부 의 장	· 석정온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 및 고창읍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실시와 제반 문제점 해소 대책은?	도시과장 이 용 남	· 환경영향평가협의는 환경처와 92년 8월 28일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중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 지장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취락구조 개선사업 확충방안		· '94 취락구조 배정량은 9개소로 2개시군당 1개소 정도가 해당됨. 금후 내무부에 건의하여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음.
	· 농어촌 화장실 및 축사장 개량 확충 방안		· 화장실 개량은 대상 7,000동중 1,060동 부엌개량은 6,500동중 860동으로 전북에서 최고배정되었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음.
김 기 채 의 원	· 농어촌활력화 대책중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도소장 송 병 곤	· 국제화 시대에 새로운 농업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농업문제를 전담하는 농업전문기관으로 금년초 도비 1억, 군비 2억을 투자하여 고수면 남산리 23,653㎡를 1억 2천9백만원에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매입하여 기반조성과 관정설치 묘목등을 구입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3억 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실 15평, 순환온실 50평, 자동하우스 300평, 비가림하우스 1,500평, 과수시설 재배용하우스 500평과 관리실 작업실을 완료하고 우리 고장의 유망작목인 수박, 고추, 과수에 대해 연작장해 병충해 발생 및 방제대책, 연중생산체계 확립, 단경기 출하요령 조직배양 등을 통한 현장애로와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여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보고 배워 국제수준의 기술로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10. 제32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김 준 형 의 원	• 지난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이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개통으로 고창지역의 생활용수는 공급되고 있으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류지 및 저수지의 저수율과 정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 준설대상 소류지는 몇개소이며, 준설지구 진척사항, 대형관정의 경우 전기시설공사 지연으로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등 고창군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확보대책은?	군 수 원 종 태	• 관내저수지 총 351개소에 6,907ha의 몽리면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준설대상 저수지는 120개소로 판단되며 작년에 6개소, 금년에는 18개소에 6억 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준설중에 있으며, 또 향토사단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5개소 준설계획으로 현재 공음옥산제를 준설중에 있음. 이외에도 1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대형암반관정 22공, 소형관정 2천공을 개발중이며, 기능이 상실된 제수문 3개소도 보수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양곡자급율은 29%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WTO출범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중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신청받은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신청만 받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위화감 해소		• 정부가 농정개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종합지원 대상사업은 농어민 자율사업이 70개사업, 공공사업이 205개사업등 총 275개 사업이 있음.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신청받은 결과, 총 393개사업 4,876건에 1,864억여원의 방대한 물양의 신청이 되었음. 이 사업에 대하여 객관성있고 투명공정한 토론과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대책과 신농정추진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와 농특세 사업비 배정내역과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사업을 선정할 계획임. • 우리군에 배정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는 96년부터 98년까지 1,849억원이며, 96년에서 2004년까지 배정될 농어촌 특별세는 518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쓰레기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케함으로써 배출량 감소에 따라 시가지가 한결 청결해지고 있다. 그러나 규격봉투가 땅속에서 분해되는데 오랜세월이 소요되어 공해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국지방도변, 하천, 계곡, 불법투기 사례가 있는데 지도강화와 규격봉투 확보대책은?		•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정착되고 있음. 종량제이후 쓰레기 발생율은 약 43%정도 줄었고 반면 폐지, 공병 등 재활용수거량은 종전 1일 3톤에서 6톤으로 증가되었음. • 일부주민가운데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우선 군보나 유선방송등을 활용 계도해 나가고 기동단속반 및 환경감시원 210명을 위촉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지도단속하겠음. • 그리고 규격봉투는 매분기당 46만 5천매를 공급토록 하고 20ℓ, 50ℓ 규격의 봉투에 대하여는 두께 등을 보장,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각종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제3섹터인 민관공동기업 설립 등 보고는 있었으나 추진사항이 부진함므로 그 사유와 향후 대안은 무엇이며,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등 전문기관에 수립된 계획등이 실효성 없는 구상안에 불과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4년간 각 분야에서 용역으로 수립된 계획은 무엇이며, 예산투자액과 이 계획의 추진사항은?		• 제3섹터 사업은 특성상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용이 어렵고 경영투자가 많은 실정임. 신속한 시장대응능력이 취약한 점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영면이나 관리면등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임. • 우리군의 각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최근 4년간 용역수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6건에 4억 4천5백만원, 94년도 2건에 2천만원, 금년도에는 4건에 2억원 4년동안 12건 6억 6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했으며, 각 분야별로 수립된 계획들은 현재 활용되고 있음.
류길규 의원	• 석정의 대지위에 펼쳐질 46만평의 온천관광지개발은 기반공사 기공식과 더불어 군민의 기대가 크다. 이에 민자유치대책은 어디까지 왔으며 성과는 어느정도인가? 온천방류수 정화는 온전한지, 46만평이 개발되었을 때 고창읍민의 유해로운 요인은 없는가?	군수 원종태	• 9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착수하고 금년까지 40%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내년말까지 마무리하면 호텔, 숙박시설, 스포츠센타, 유희시설 등 총3천3백8십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석정온천 대중목욕탕에서 방출되는 온천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치는 20~30㎎ 정도로서 그 허용기준치인 60㎎에 미치지 않는 상태임.
	• 월곡택지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습대책은? • 공공사업의 투지수용등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시도하기 위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는? 본 사업추진이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시행으로 추진되는 바 이득금의 배분율과 청약서 사본을 요구하며, 토지재감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계법령에 위반 부당한 평가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때 시행된다고 본다. 재감정 사유는 있는가?		• 월곡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주요내용은 근본적으로 보상비가 턱없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의견이 어느정도 타당하다 사료되어 공공용지 보상관련법과 판례법 재평가 건의에 대한 건설부의 질의회신을 검토하여 본사업의 위탁시행청이자 직접감정평가를 의뢰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재감정평가 해줄 것을 정식요구 한 바 있고 전체적인 재감정을 원했습니다만 질의회신이나 특례법상에 전체적인 재감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본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득배분은 협약체결에 의해 5억이상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40%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고창천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67억 6백만원중 94년까지 3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3.1km, 저질토준설 7,514㎥, 차집관로 5.0km, 호안블럭 16,585㎡으로 전체공정의 52.6%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공사에 이상은 없는지, 또 저질토 준설실태와 처리과정에 대해 답변 바람.	도시과장 이 용 남	· 저질토 준설의 목적은 현재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수로를 정비하면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흐르는 유수를 정화시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음. 저질토 준설절차와 방법은 오염조사를 토대로 준설구간을 정하여 중장비를 이용 굴착, 하천변에 놓아 건조시킨 후 오염정도를 분석하여 본공사에 이용할 토양과 이용할 수 없는 토양으로 분리처리하여야 하나 저질토는 이용도가 없어 사토장 고창읍 석정리 33번지에 매립하였음.
	· 예년에 보기드문 봄가뭄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다. 금년 가뭄대비책으로 한해상습답에 건답직파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소형 관정개발, 기존관정의 점검정비, 그리고 소류지준설사업과 집수정 양수장 시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군 수 원 종 태	· 건답직파는 표고 200m 경사 70%이내인 수리안전지역이 적지이나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용수량이 부족한 곳에 건답직파를 농가자율선택에 의해 유도할 계획이며, 극심한 한해상습지에는 관수, 담수관리 등 재배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건답직파를 적극 권장할만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영농지도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건답직파보다는 수분증발을 아낄 수 있는 모판 및 도랑피복 등 물을 적게 쓰는 관리요령을 적극 홍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보계도하여 가뭄에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군의 도로현황을 보면 288노선에 약 110만 km로 알고 있다. 전체포장율은 35%로, 국·지방도 100%, 군도 약 40%, 농어촌도로 16%에 불과하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중장기포장계획은 무엇인가? • 농어촌도로에 양여금을 집중투자하여 포장할 용의는 있는가?		• 우리군내에는 군도 22개 노선 217.3km 농어촌도로 255개 노선 680km 총 277개노선 897.3km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가운데 작년까지 187.7km를 포장하여 20.7%포장율로 저조한 실정임. 금년에는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7개 노선 총 9개 노선 21.7km에 67억 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임. • 앞으로 포장해야 할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690.5km에 2,103억원 소요예상되어 중기계획을 3년단위로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본투자재원은 양여금 70%와 군비 30%임.
	• 도축장민영화대책과 관련 91년부터 94년까지 냉동·냉장시설 도축장신축 등 순군비만 약3억 6천2백만원 투입되어 예산심사시마다 논란이 있었다. 97년 7월 21일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는 시설현대화를 추진해온 집행부가 현대화되자 민영화란 미명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민영화하였을때 위탁		• 고창군간이도축장은 고창읍 율계리에 668㎡의 시설규모로써 군내도축물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관리는 92년 7월 22일~97년 2월 21일까지 현재의 위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축산물 작업장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경영을 못 하도록 93년 5월부터 14회에 걸쳐 도의 행정지시가 있었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계약자는 없는가? 민영화 후 중앙정부의 간이도축장 일소책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 현재의 위탁관리로 인해 1차 영업정지를 받은 바도 있음. 본축산물 작업장시설을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매각절차를 밟아서 추진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설치허가기간인 97년말까지는 현재 시설대로 계속 운영이 가능함.
이 종 운 의 원	·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과 관련 회사측 계획에 의하면 대산면, 성송면 일대 100만평에 일명 고창공업단지를 조성, 이중 80만평은 주행시험장, 20만평은 공장용지로 95년에 착공 2000년까지 약1천2백억원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군과 대우측의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현지주민반응과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흥덕삼미항공과 같이 기업에게 이용만 당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단조성시 유발인구가 7,4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영광 및 광주동으로의 생활권 및 경제권의 유출 방지대책과 고창직업훈련원생에 대한 연계취업방안	군 수 원 종 태	· 94년부터 대우에서 기본구성안을 작성하여 95년 2월 14일 우리군에 자방공단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각종 관련법규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각소관부서별로 면밀한 검토 및 협의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동안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여 타당성있는 의견은 적극 검토,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겠음. · 법형식상 및 절차상의 내부검토과정이 끝나는대로 전라북도에 승인신청을 진달할 계획이며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역대개발사업중 실패사례의 대명사인 홍덕 삼미항공에 대한 군의 입장과 회사측의 추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실시설계를 거쳐 95년 6월중에 공단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는대로 토지매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 앞으로 대우지방공단조성이 완공되어 조립 금속기계등 주로 자동차관련업종이 유치된다면 다수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나 이러한 고용인력가운데 기능인력은 고창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이곳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을 흡수토록 하겠으며 본 공단조성 후 외지로 경제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주거생활권을 우리고창지역내에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우리농촌이 기계화영농이 아니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으로 경지정리 사업실적과 완료계획은? • 본군의 총답면적 15,745ha중 경지정리 대상을 10,726ha로 전체의 68%만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외면적(32%)에 대한 경지정리나 기반조성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논물가두기도 할 수 없는 금년봄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물지급작업, 못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경지정리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에 대하여는 기책정된 대상면적을 우선 시행한 후 면적재조정, 건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물부족 해결을 위하여 집단못자리 설치 지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자리설치이앙 등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및 기존지하수와 하천수를 최대한 이용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금년도부터 미계상되어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순발력있게 처리 해결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부활요구가 비등한 바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 읍면소재지등에서 발생되는 상하수도 및 인도교손 등 제반민원해소를 위한 재량사업비 확보는 정부예산편성지침상에 시장·군수 및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예산반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상하수도, 가로등, 보도블럭 보수 등은 기존예산범위내에서 적극 검토처리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음.
김 백 수 의 원	• 조직의 활성화 및 인사제도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능력위주의 인사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있을 때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의혹이 있어 인사원칙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고창군의 인사원칙은?	군 수 원 종 태	• 효율적인 인사원칙과 연고지인사에 있어서 적정한 인사원칙은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참고로 금년 2월 21일자 인사는 승진 35명, 전보 102명, 신규인사 8명을 결원된 읍면에 배치하였음. 군은 행정수행능력, 능률적성 등을 감안 55명을 전보하였고, 읍면 47명은 연고지 위주로 인사를 하였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 군산하 공직자의 정신교육 및 업무향상을 도모키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행정단위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민원해결은 무엇보다 빨리 처리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각읍면 민원실 및 사무실에 직원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고정안내원화 할 용의는 없는가?		• 올바른 공직관과 정신배양 인성개발등 친절봉사가 몸에 승화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및 민원관련 업무연찬 등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민원인이 관청을 내집처럼 느끼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자동안내전화를 금년 4월부터 개통할 계획임. 또한 주민등록전산망을 개선 보완하여 전출입업무를 3분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되돌아가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민원안내원배치는 읍면민원실 직원전원이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석정온천개발의 장기화로 인해 일부군민의 우려사항인 투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 이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은?		• 일부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89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외지인은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개발된 후에도 개발희망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되나, 본군에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시 실수요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투기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겠음.
	• 고창의 명산품으로 93년 복분자술, 94년도 명산품 복분자로 결정 국·도비 및 군비를 지원한 바 있다. 95년 명산품도 금년 3월 6일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또 복분자로 결정했다. 행정과 복분자 영농법인과 밀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93년부터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93, 94년에 이어 95년도에도 복분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군비 5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확보해주신다면 공장원료를 확보하는데 약20만ℓ가 필요하다고 함. 복분자 육성지원내역은 공장신축 1억 5천만원, 상표 및 포장개발 3천만원, 홍보비 5천만원, 용역비 1천만원, 종묘대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고창 명산품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회에서 여론수렴하여 더좋은 품목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전 증 열 의 원	• 궁산저수지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심원면과 해리면 경작농가가 489농가이며, 면적이 345ha이다. 이 많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영농철이 되면 좋은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수지를 방치하고 있어 수문 및 8.2km나 되는 농수로가 엉망이다. 소유권이 없어 주민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어 궁산저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 군정발전에도 역행되는 바 궁산저수지를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서 매입, 농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그동안의 추진결과와 금년 영농을 위한 수로, 굴착에 필요한 예산지원(3,000만원)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군 수 원 종 태	• 궁산저수지는 유지면적 8.1ha와 용수로 2개 노선 8.2km로 345ha의 몽리답에 영농급수를 하고 있으나 농지를 개인에게 불하한 후 92년부터 삼양염업사에서 급수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아 몽리민들이 자체 농지개량계를 구성하여 시설관리를 해오고 있어 시설노후 및 용수로 매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90년부터 본저수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고창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도록 도 및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며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가장 진솔된 보고를 하는 지휘보고를 통해 건의하였으나 현재 확실한 해결책은 없음. 그러나 삼양사 및 농수산부를 직접 방문 해결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며, 농수로의 준설과 보수는 약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해 주려는 것이 행정의 기본생각임. 의회측과 충분한 협의를 한 뒤 어떠한 예산이라도 인출을 해서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제5절 민원처리

1. 민원처리 현황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1. 5. 1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노동현	도로부지 소유권 환원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개인 소유의 부지가 소유자 동의 없이 고창군으로 이전된 사유와 환원 요청	•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
탄 원	91. 8. 8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18 김갈년외 1인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 요구	• 88 한해사업으로 국도확장 사업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보상 요구	•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
진 정	91. 8. 8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이재숙외 10인	마을진입로 개설 요구	• 흥덕 삼미비행기 조립공장 신축으로 마을 진입로가 폐쇠됨에 따라 진입로 개설 요구	•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
진 정	91. 9. 5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고창병원장	진료지역 재조정	• 복수 진료권 개방으로 관내 환자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으로 고창종합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강구 요구	• 제3회 임시회시 집행부에 건의한 바 집행부에서 도에 의견서를 제출 11월중에 재조정 하겠다는 회신
진 정	91. 9.27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이남열외 2인	의원 사생활에 관한 진정	• 공인으로서 모든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해치고 있다는 진정	•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후 본인에게 공인으로써 의무와 사명을 고지시켰음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1.10.1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50－2 신익희	읍성 진입로 개설시 대토 협의 내용 이행 촉구	• 고창읍성 진입로 확장공사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대토를 하여 주겠다는 당시 협의내용 이행 촉구	•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
탄 원	91.11.19	정주시 연지동 김순자	가정문제에 대해	• 가정파괴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이 부정한 여자라고 집단구타를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에 대한 법적 혜택 요구	• 조사결과 회신 및 법률상담 안내
건 의	91.12.13	고창군 공음중학교육성회일동	학교옆 보도블럭 및 하수도 설치 요구	• 우기시 하수도 미설치로 교내로 하수물이 흘러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안전통학을 위해 보도블럭 설치 요구	•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
건 의	91.12.17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주민일동	상수도 재설치	• 기존 상수도 시설이 안근에 양어장 설치 및 농업용수 개발로 수량고갈에 따른 상수도 재설치 요구	•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
청 원	91. 5.20	고창군 심원면 궁산리 삼양사 간척지 경작자 일동	삼양사 사유 저수지 정부 매입 청원	• 삼양사 간척지를 37~87년까지 경작하여 오던중 3년여간 불하 분쟁으로 당국이 중재 정부고시 가격으로 불하받았으나 삼양사소유 저수지 관리권이 현재 이양되지 않아 농수공급에 어려움 있어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정부매입 요구	• 본회의에 청원을 상정 삼양사 소유 저수지 정부 매입 건의문 채택 관련 부처에 건의서 이송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2. 1.22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고복상외 117인	연기동 연결 교량 설치 요구	• 선운사 입구에서 연기동을 연결하는 현수교가 있으나 사람 통행만 가능하므로 우·마차 통행가능 교량설치 요구	• 집행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사업비가 막대하므로 중장기 계획에 검토하겠다는 회신 통보
진 정	92.2.18	고창군 고창읍 성덕리 김도남외 32인	마을 진입로 포장 요구	•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에 소외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포장 요구	• 집행부에 사업시행 검토를 의뢰한 바 '92 재량사업 및 '93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회신 통보
건 의	92. 2.12	한국정화협회 권달천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요구	•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종사원의 처우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 인상 건의	• 집행부에 의뢰한 바 조사 후 상반기중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회신 통보
진 정	92. 4.28	고창군 고창읍 성북동 문봉주외 14인	소방도로 개설 요구	• 미개설된 소방도로 개설 요구	• 도시 구역내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하여 제10회 임시회시 집행부와 진지하게 토의한 바 있으나 각종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회신
탄 원	92. 7. 3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최점동외 2인	대지 소유권 이전 요구	• 마을 재산을 주민대표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입 하였으나 마을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고창군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반환요구	• 당초 마을소유재산이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총독부령제103호)에 의거 읍·면에 귀속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에 의거 읍·면 재산이 군으로 이전됨. 당시계약은 군재산으로 이전된 후(61. 9. 1)법인격이 없는 자와 계약하였으므로 구제방법이 없음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2. 9.22	고창군 고창읍 성북동 문봉주외 14인	92년 4월 28일 진정의 건과 같음	·92년 4월 28일 진정의 건과 같음	·92년 4월 28일 진정의 건과 같음
건 의	92. 9.2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임영증외 1인	모양성 주차장 신설에 따른 건의	·모양성 주차장 신설로 인하여 담장 설치시 로타리 회관의 정면을 가로막기 때문에 현지 조사 후 대책 강구 요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재산 관리상 담장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회신
진 정	9211. 4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진영수외 5인	면허억제 및 불법어장 면적 확대 대책에 관한 진정	·심원면 하전리 지선내에 위치한 고창양식 제22-1호외 3건의 어장 합병 개발 추진 억제	·진정서 철회
건 의	9211. 7	전북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장 최규상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 신규허가 억제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신규등록 억제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존등록 업체 생존권 보호 요청	·건의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이송
진 정	93. 2.11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안병선외 14명	자가 발전기 유류대 보조 요구	·부안면 죽도 자가 발전기 유류대 및 관리비가 주민 부담만으로는 가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 유류대 500천원 지원 요구	·집행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유류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탄 원	93. 2.20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김병환외 주민일동	새마을 사업 추가 지원 요구	· 91년도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시 군지원금과 마을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추가사업비로 인하여 시공회사가 공사비추가 부담 요구 소를 제기, 마을에서 패소 이에 따른 추가사업 지원 요망	·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의 주민 지원사업 방안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신
건 의	93. 3. 2	고창군 무장흥덕향교 대 표	향교 운영 관리비 지원 건의	· 현재까지는 향교 운영비를 향교재산인 토지 임대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료 하락 및 운영비 상승으로 향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건의	· 집행부에 이송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회신
건 의	93. 3. 5	지체장애자협회고창군지부장 권영동	지체 장애자 사무실 건립비 지원 건의	· 지체 장애자 사무실 건립비 지원 건의 —부 지 : 약 150평 —건 물 : 조립식 25평	· 집행부에 이송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회신
건 의	93. 3. 5	어업보호대책위원장	원전피해 자료제출 및 어민 피해 조사 요청	· 원전피해 자료제출 및 어민피해조사 요청	· 원전피해 사항은 전문성이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의회에서는 처리 불가 회신
진 정	93. 3.20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이재인외 882인	영광 원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 영광 원전 1·2호기 온배수로 인한 업피해 보상 및 3·4호기 가동 이후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제19회 임시회시 건의서안 채택 관계기관에 이송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건 의	93. 4. 2	새마을문고고창군지부회장 김사중외 12명	새마을 문고 지원 건의	• 새마을 중앙협의회 조직 통합으로 지부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중단되어 새마을 문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새마을 문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 추경에 반영 회신
진 정	93. 4. 8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박문수	온천로 개설에 따른 의혹	• 석정온천 도로개설시 관계 공무원의 소유토지를 적게 편입시키기 위하여 도로선형 변경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	• 석정온천 도로개설을 조사한 바 도시계획선에 의거 시공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당시 도로개설 실무자로 용지매입을 불응하자 편입 잔여 면적을 소유자 요구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며 도시계획 변경은 90년 11월 19일 확정되었으며 토지취득은 91년 7월 6일자로 되어 있어 의혹이 없는 것으로 조사 회신
건 의	93. 5.17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부 장	건축 조례 개정 건의	• 건축조례 제40조 (온돌의 시공 등) 규정중 에너지 합리화법 제41조에 의거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 포함 건의	• 추후 건축조례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회신
진 정	93. 6.22	고창군 신림면 우성례 미곤임 직원일동	농경지에 골재채취 허가 요구	• 아산면 구암리 82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골재채취 허가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인근 농경지 모경 및 우기시 하천 사용시 재해 위험이 있으므로 농한기에 허가 여부 결정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탄 원	93. 6.22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이숙종외 6인	가물치 양식 피해 어가에 대한 금융지원	• 92년 5월 31일부터 성내면·흥덕면에서 양식중인 가물치가 갑자기 폐사함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가물치 양식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도에 요청 했다는 회신
진 정	93. 8.12	고창군 읍내리 이병훈외 24인	소방도로 개설 요구	• 동리 국악당 옆 골목길 도시계획선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회신
건 의	93. 8.2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한일건설임직원일동	수의계약 상한 금액 조정 및 계약 대상자 제한 요구	• 각종 건설 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의계약업자를 관내업자로 제한 건의	• 건의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 이송
진 정	93. 9.22	고창읍 성내면 신성리 이숙종외 6인	가물치 양식 피해어가 금융지원 요구	• 3년간 양식중인 가물치가 갑자기 폐사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환중인 지원자금 연기와 소득금고융자 및 사업소세 감면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기지원 자금 상환 연기는 이자 및 연체를 완납하여야 갱신이 가능하여 소득금고 지원은 2중지원이 어려우며 2차 보전사업은 불용액 발생시 검토하겠으며 사업소세 감면은 피해양식어가와 무관하므로 감면 불가 회신
진 정	93.11. 2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김대수	사유토지에 도로포장	• 사유토지에 있는 도로를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포장에 따른 보상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수년전부터 도로로 형성되어 주민이 사용하던중 주민 편리를 위해 면에서 포장한바 있으며 주민화합 차원에서 협조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3.11. 2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김대수	수로 설치로 인한 피해 시정 요구	• 본인 소유의 농로에 수로를 설치 농기계 진입이 불가하며 강우시 농경지 피해 예상에 따른 시정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농로를 정비하면서 수로를 준설한바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주민 화합 차원에서 협조 회신
탄 원	93.11.11	미영건설주식회사대표 김영헌	인접토지 매입 불가로 아파트 준공지연에 따른 협조	• 인접토지 매입 불가로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협조요청	• 집행부에 이송한 바 현재 관련법으로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에 적합하게 조치토록 회신
탄 원	93.11. 7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박종욱	택지내 구거 이전 요구	• 73성산주택개발시 매입한 땅에 구거를 설치하고 기존 구거는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전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구구거는 교환이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
건 의	93.12. 9	강호상업고등학교장	군유지 불하 요구	• 학교내 군유지 불하 요구	• 학교에서 불하를 요구한 17-1번지는 군보건소부지와 인접 귀교의 토지 209-3번지와 교환 할 수 있도록 통보한 바 귀교에서 회신이 없었다는 통보
건 의	94. 3.21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김오남	학원 설립에 따른 후원 청원	• 학원을 설립코자 하니 학원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요청	• 학원 설립과정에서 본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건 의	94. 4. 2	동학농민혁명기념사회 이기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지원 요청	· 당국의 후원속에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이 거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요구	
진 정	94. 4. 9	미영임대아파트주민 일동	미영아파트 사전분양 반대 및 하자 보수 요청	· 미영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보장 및 각종 하자 보수에 대한 진정	·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송, 하자보수 및 사전분양에 대하여 입주자와 원만히 해결 조정토록 집행부에 통보
진 정	94. 5. 9	고창읍상설시장번영회회원 일동	외지인 노점상 행위 및 기타 상행위에 대한 단속요구	· 외지인의 상인들이 천변도로 및 교량에서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여 주기 바라며 예식장 등에서 세일 판매 상행위 근절 요구	· 산업·건설 위원회에 이송
진 정	94. 6.14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박용순	마을 입구 지하박스 설치 요구	· 고창~정읍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중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복룡부락입구에 지하박스 설치 요구	· 사업 시행청인 이리 국토관리청장에 이송한 바 통로암거의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지하박스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인근 700m 지점에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니 그 시설을 이용 회신
진 정	94. 9. 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이문전외 85인	노상 주차 종전대로 환원 진정	· 김약국에서 신사거리 구간의 이면도로가 당초에는 일방통행로로 홀·짝수로 정하여 노상에 주차허용하였으나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주·정차금지에 대한 해제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바 지방경찰성 소관 업무이므로 종전대로 환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탄 원	94. 9. 6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이기섭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된 토지 정산 요구	• 90년도에 시행된 칠암리 경지정리 지구내 편입된 토지 정산 요구	• 집행부에 이송 94년 10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하겠다는 회신
진 정	94.10.20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김민현	소류제 준설 요구	• 대산면 성남리 성남제 준설 요구	• 의회에 요구 민원이 아님으로 반려
진 정	94.11.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창지부	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 규정 철회	• 중등인사관리규정중 장기순환 전보 유예 규정 및 동의내신 전보규정 철회 요구	•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회신
건 의	94.11. 2	대한석탄협회	연탄배달료 예산확보 요청	• 고지대 영세민의 연탄 공급시 배달료로 인하여 공급 가격이 높아지므로 예산 편성시 배달료 예산반영 요구	• 관내는 해당 지역이 아님을 회신
탄 원	94.11.24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주민일동	양돈장 설치 반대	• 낙양리에 돈사 신축 사업시 주민 동의서 도용에 따른 의혹 및 돈사설치 반대 진정	• 집행부에 이송한 바 양돈장 설치전 주민 대표와 동의서를 공증함으로 주민 요구 사항이 해소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법적 하자가 없었음을 회신
진 정	94.11.17	고창군 고창읍 성산동 박병원외 주민	소방도로 개설 요구	• 동 일부구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설 요구	• 집행부에 이송 예산 확보후 사업 시행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4.11.21	고창읍 읍내리 176 김점동	월곡택지 개발 지구 내 감정 가격 현실 요구	· 진정인이 선출한 조합원을 보상심의 위원으로 구성, 보상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 요구	· 집행부에 이송, 토지 보상가 감정 절차 회신
청 원	94.12. 3	고창군 화평경로당 김석근	경로당 신축부지 불가 요구	· 고창읍 우회도로 진입로 개설시 경로당이 편입되어 보상금으로 신축이 어려우니 부지 불하 요구	· 집행부로 이송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
진 정	94.12.22	정주시 승산동 51-2 이상원		·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 후 시행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되었으나 현재까지 철거지연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하니 조속히 철거 요구	·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 후 철거하겠다는 회신
진 정	94.12.27	무장면 옥산리 산17	소류지 준설에 대한 의혹 조사	· 무장 옥산제 준설사업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요구	· 진상조사서 철회 요구로 진정서 철회
진 정	95. 1. 1	아산면 삼인리 김영철외 160인	도로 확포장 공사 선형변경 요구	· 선운산 4차선 확포장 구간 중 삼인 국교앞 정미소 및 보호수가 편입되지 않도록 선형변경 요구	· 집행부에 이송한 결과 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
건 의	95. 1.16	고창읍 중앙동 285 박봉리외 17인	선운산 토산품 판매장 운영권 요구	· 선운산에 건립된 토산품 판매장 운영 및 경영권 요구	· 집행부에 이송 현재 임대운영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경영방법 결정시 운영자 선정 회신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5. 1.23	고창읍 읍내리 176 김점동외 조합원 일동	월곡택지 개발 반대	• 월곡택지 지구내 편입된 토지보상 가격이 현실보다 낮게 감정되어 택지개발을 반대한다는 진정	• 집행부에 이송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감정 평가하였으며 택지지구 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
진 정	95. 2.14	고창읍 월곡리 296 류제풍	월곡지구 택지개발 사업 반대	• 고창 월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보상액 인근지역 실거래 가격에 준하는 보상 없이는 택지개발사업 반대	•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임시회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 주민의사 반영 촉구 및 결의안 채택
진 정	95. 2.18	고창군 고창읍 야산면 삼인리 김종한	도로확장시 하천편입 반대	• 선운산 4차선 확포장 사업 하천을 편입하여 하천폭을 좁히는 사업 반대	•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조사한 바 선형변경은 농경지편입 최소한를 위하여 불가피하며 공사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 회신
진 정	95. 2.18	궁 산 저수지 몽리면적주민 일동	삼양사 소유 저수지 정부 매입 요구	• 삼양사 소유 저수지를 정부에서 매입 관리권을 농조에 이양 요구	•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송,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매입 이전에 집행부에서 수로정비지원 건의 및 정부 매입 촉구
진 정	95. 3.17	고창군 야산면 삼인리 이옥남	선운산 하천 정비 요청	• 선운산 하천이 상류는 넓고 하류는 좁아 강우시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정비 요청	•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송, 집행부에서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관리 촉구 통보
청 원	95. 3.20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임삼례	군유재산 매각 요구	• 진정인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군유재산 매각 요구	• 내무위원회에 이송하여 조사한 바 도로확장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매각이 어렵다고 의결 통보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 원 사 항	처 리 내 용
진 정	93. 3.21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장영수	재활용폐품 수집인에게도 보상금 지급 요구	• 95년부터는 마을 자체적으로 수집된 재활용 폐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지정된 수집상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구	• 내무위원회에 이송하여 조사한 바 95년부터는 수집상이 수집하는 재활용 폐품에 대해서는 군보상금 지원이 예산상 어려운 것으로 회신
진 정	95. 3.29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고복상	교량 신설 요구	• 선운산 입구에서 연기동을 연결하는 교량 신설 요구	•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송한 바 현재로는 막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결 회신

제4장 기타 의정활동 사항

제1절 유럽 선진의회 시찰보고

1. 연수개요
2. 선진의회 농업의 시찰 및 연수
3. 국가별 일반연수

제2절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1. 의정활동 총결산

제1절 유럽 선진의회 시찰보고

유럽선진국 시찰을 마치며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꾸밈없이 보고 느낀대로 시찰보고서를 작성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고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또한 그러한 것을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박 12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이해와 지방자치에 관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은 실로 연수목적 이상의 값진 성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문제로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교훈과 좋은 경험으로 삼아 새로 약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양식과 습성이 다른 선진유럽의 문화 및 발전상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점만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그들 나라 못지않게 우수하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국민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살기좋은 금수강산을 갖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생겨,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마치고 재삼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5

고창군의회의장 김 동 훈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지방의회 개원이후 경험하지 못한 해외선진의회를 비교견문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민복지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에 반영키 위함

2. 연수기간

- 94년 5월 11일 ~ 5월 22일 (11박 12일)

3. 연수지역 - 유럽 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4. 연수단 구성

- 총 14명 (의원 10명, 수행공무원 3명, 수행기자 1명)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의 원	의 장	김 동 훈	단 장
	부 의 장	류 길 규	부 단 장
	의 원	이 종 운	
	〃	이 돈 우	
	〃	최 석 기	
	〃	오 균 호	
	〃	김 기 채	
	〃	김 백 수	
	〃	고 병 윤	
	〃	김 준 형	
사 무 과	전 문 위 원	김 용 관	
	의 사 계 장	김 용 식	
	의 사 계 원	최 창 규	
기 자	도 민 일 보	양 일 섭	

II. 선진의회 농업의 시찰 및 연수

□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1. 의회 민주주의 역사

영국의 정치는 입헌군주제하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13세기에 이미 의회가 탄생되었다.

당시의 의회는 국가의 자문기관에 불과했으나 청교도혁명(1640년) 때는 왕권을 폐지하리만큼 의회의 권한이 막강해졌으며 그후 왕권이 회복되고 명예혁명(1688년) 때는 토리당과 휘그당의 협력으로 권리장전(1689년)을 발표하게 되고 이때부터 국왕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의회 민주정치는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현재 영국의 의회는 임기종신제인 귀족원의 상원과 임기 5년의 서민원인 하원의 양원제이며, 철저한 의원내각제로서 하원의 다수당이 수상을 맡게 되며 지금의 메이져총리는 보수당의 당수이다.

2. 영국 지방자치제도

가. 지방자치의 역사

영국의 지방자치는 의회가 탄생되기전인 9세기에 접어들면서 공공업무처리는 샤이어 또는 촌락 그리고 교구에 의해 처리되어졌다.

여기에서부터 주민들은 집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문제를 수시로 협의하게 되고, 11세기 통일국가가 형성된 후에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여 16세기경에는 도로, 교량 및 감옥을 관리하게 되고 영세민구호사무와 조세권이 부여되는 등 지방자치사무가 한층 확대되었다.

그후 1894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도시부와 비도시부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현재는 런던을 제외한 전국이 광역자치단체인 County(도)와 기초자치단체인 District(구)로 구분 2계층제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주민이 선출한 의회에 일원적으로 귀속되며 의회가 최종 책임을 진다.

나. 지방제도의 구조

영국의 지방제도는 2계층제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인 County(도)와 기초자치단체인 District(구)로 구분되어 있다.

영국의 지방제도는 도시권역과 비도시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도 런던은 별도로 취급되고 있으며, 즉 수도 런던의 지방자치 구역상의 위상은 다른 도시나 비도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1) County (도)

영국은 먼저 런던을 제외한 전국을 일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County로 나누어진다.

총 4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도시권이 6개이고 비도시권이 39개로 인구는 최대 270만명에서 최소 11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균 인구는 88만명 정도이다.

2) District(구)

District는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45개의 County(도)는 305개의 District(구)로 구별되어 있는데 도시권이 36개구이고 비도시권이 269개구로서 도시권의 구의 인구는 최대 100만명에서 최소 2만 4천만명까지이며 평균인구는 12만명 정도이다.

3) 런던 (London)

영국의 수도 런던은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편제에서 예외로 취급되며 이른바 대런던 의회라고 불리우던 대런던 정부를 구성하여 수도의 제반사무를 관할토록 하여 왔었으나 대처수상의 보수당이 집권한 뒤 그간 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던 대런던 의회를 없애는 특별법을 제정 통과시켜 지금은 그 권역안에 있는 개별적 자치단체인 32개와 특별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가 집행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한계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우리의 경우처럼 포괄적이고 중앙집권적이 아니어서 중앙정부의 관여나 간섭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업무의 성질상 광역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지역의 기본계획이나 도로·교통·경찰·소방 등은 County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집행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나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시권에서는 District(구), 비도시권에서는 County(도) 그리고 런던시에서는 특별구에 배분되어 있으며 그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District의 소관인데 지방의 개발계획, 주택행정, 환경위생 등이 이에 속하며 다만 상하수도, 수질오염방지 등

에 관한 행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지방수정청에서 관리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의회 (Council)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가 있는데 이 의회가 바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장은 임기 1년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지만 명예직이며 의원의 수는 County(도)의 경우 100명을 넘기도 하고 적은 곳은 42명이 있는 곳도 있으며 District(구) 경우도 규모가 다양해서 최대 126명에서 최소 21명인 곳도 있다.

의원의 보수는 명예직으로서 실비를 변제받는 수당과 의회출석수당 등이 지급된다.

2) 위원회 (Committee)

위원회는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행정각부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특히 교육, 경찰, 사회복지 등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위원회를 일명 "법정위원회"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County(도)와 도시권 District(구)의 경우에는 10개 안팎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비도시권의 District에는 6개정도가 있다.

바. 사무조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무조직의 수장으로서 수석행정관이 있고 각부국별 책임자로는 서무장, 재무장, 교육장 등이 있으며 각부서의 행정책임자의 임명은 관할위원회의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또한 의회의 관할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 부서장의 임명에는 중앙정부가 법률로서 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서 관계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3. 완즈워드(Wandsworth)의 지방자치

방문 : 94. 5. 12 10:00 대담 : 부시장, 부시장 비서

가. 일반현황

- 인 구 : 263천명
- 의 원 : 61명 (보수 45, 사회 16)

• 상임위원회 : 4개

나. 의회조직

완주워드(구)는 런던내 32개 특별구중의 하나로써 22개 선거구에서 61명의 의원이 주민 직선에 의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선출되어 시장, 부시장을 겸임하게 되며 현재는 4명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집권 보수당에서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의원의 당공천은 당 선발위원회에서 선정 공천하게 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여는 일체 배제되고 있다.

다. 의회의 구성

의회는 본회의와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며 시장, 부시장은 필요시 본회의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되 시장은 본회의 참석시 전통복장을 착용한다.

라. 회기

회기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모두 6주마다 개회되며 (회기는 보통 1일), 의회는 보통 밤에 개회하고 마약단속이나 특별히 필요할 때는 주간에도 개회한다.

마. 의회운영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주민의 여론이나 각종 민원을 사전 면밀히 검토, 확인, 심사하는 등 본회의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 시장, 부시장은 상근제이나 일반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대 당의 의원이 출석해야 개회되며 의석은 구분된다.

바. 의회의 기능

- 조례개발제정
- 예산심의확정
- 시영주택관리
- 조세부과징수
- 각종학교운영관리
- 교통, 청소, 공원관리
- 건축허가 및 관리

※ 우리나라의 광역, 기초의회의 기능수행

사. 시의 특장사업

- 시영주택사업 – 부족재원보충
- 교육의 내실화 – 런던시의 폐지로 업무이양
- 학교예산확보 – 중앙지원
- 업무이양 4년후인 현재 학생들의 실력이나 품행이 월등히 향상

※ 시정목표 : 봉사, 밝게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 독일의 역사와 정치 형태

BC 3세기경 서북방에 흩어져 있던 게르만 민족이 서기 375년 대이동으로 몇개의 부족국가로 형성되어오다 8세기경 유럽 중앙부를 장악하는 거대한 왕국으로 성장했다. 그후 독일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신흥왕국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무찔러 1871년에는 독일제국이 형성되었고 1918년과 1933년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에서 패배한 후 1945년 동서분단의 역사를 걷게 된다. 그후 1990년에는 45년간의 동서분단을 청산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어 통일 독일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독일은 전국적으로 연방공화제로써 의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2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수상이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2. 지방자치제도

가. 지방자치 구조

독일은 16개주로(Land) 구성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로써 각주는 수개의 도(Landkreise)로 나누어지고 각도는 다시 시·군·읍·면(Gemeinde)으로 나누어지며 각주는 헌법, 의회, 정부, 법원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시·군·읍·면중 주요 도시(군)는 행정상 도에서 독립하여 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독일의 지방제도는 도(Landkreise)와 시·군·읍·면(Gemeinde)의 2계층이며 특별시(주요도시)와 경우는 단층제로 되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1) 도 (Landkreise)

도는 시·군·읍·면의 연합체인 동시에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써 기초자치단체인 Gemeinde가 연방기본법에 따라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Landkreise는 한정적 자치권만을 가지고 Gemeinde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대규모화에 따라 Gemeinde의 행정, 재정상의 한계와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Kreise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 시·군·읍·면 (Gemeinde)

Gemeinde는 연방기본법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Kreise의 행정적 감독을 받으면서 그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Kreise의 연방정부부담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Gemeinde의 수는 8,700여개소이며 인구는 8천~1만명 정도이다.

〈시·군·읍·면제의 유형〉

독일의 시·군·읍·면 제도는 주마다 다르나 대략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의회형 : 시·군·읍·면의 주요 대의기관은 당해의회로써 5~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의회는 시·군·읍·면장을 선거하며 이는 의장을 겸임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시장-의회형 : 시·군·읍·면의회는 시·군·읍·면장과 6~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시·군·읍·면의 장은 의회의 의장이 되고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의회-참사회형 : 임기 4년의 5~8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의장과 6~12명으로 구성되는 참사회 위원을 선거하여 참사위원중 의회가 지명하는 1인이 참사회 의장과 시·군·읍·면장이 되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의회-의장-행정관리관형 : 임기 4년의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시·군·읍·면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수장이며 행정의 집행은 행정관리관의 책임이다.

3) 특별시 (Kreisfreirstadt)

우리나라의 직할시와 비슷한 제도로써 단층제인 점에서 2계층제인 Gemeinde와 구별되며 그 구역안에 하급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Kreise와 구별된다. 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설치기준은 각주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구 4~8만명 이상인 도시적 Gemeinde를 특별시로 설정한다.

3.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독일은 연방정부 형태로서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내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정부에 일임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중앙통제는 주에 대한 통제와 관여로 이루어진다.

4. 에스본시의 지방자치

방문 : 94. 5. 16 10:00 대담 : 시장, 시장보좌역

가. 일반현황

- 소 속 : 헷센주
- 인 구 : 20만명
- 의 원 수 : 14명
- 연간예산 : 400억원 (부족분은 주 정부에서 지원)
- 공무원수 : 400명

나. 의회 조직

에스본시는 국제적인 금융도시인 푸랑크푸르트로부터 서북방 15km에 위치한 인구 20만명의 전원도시로써 인구 600만명의 헷센주에 속해 있으며 상하에 3개군과 37개의 읍면을 통할하고 있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에스본시의 지방선거는 임기 4년의 의원과 시장을 주민이 보통, 자유, 평등, 비밀투표에 의하여 직접선거하며 후보는 정당추천위원회에서 선정 공천하되 정당은 의원들의 활동에 일체 관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시장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의원내각제하의 행정조직이나 독일의 시·읍·면제의 유형과 차이가 있다.

다. 의회 구성

에스본시의 3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며 의장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기타의원은 집행기관부서별로 보좌관제의 역할로써 행정을 담당한다.

라. 회기

월 1회(보통 1일) 개회하되 1일이내에 의안을 처리치 못할 시는 밤늦게까지도 회의 속개

마. 의회 운영

집행부서와 보좌관(의원)이 협의 제출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며 본회의장은 의장석, 의원석, 집행부석, 방청석 등 구분없이 우리나라의 일반 회의장처럼 자연스런 형태에서 토의하고 시장은 필요시 시장보좌역(의원)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의원은 명예직으로서 회의출석시 일비와 수당을 지급받는다.

바. 시의 현안사업

- 인구유입 억제
 - 헷센주 정부 소재 푸랑크푸르트시의 주민들이 세금(쓰레기, 식수 등에도 세금부과)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경이 쾌적하며 교통이 편리(독일고속도로 : 860개노선)한 에스본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적극 억제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음.
- 일터 확대 제공
 - 에스본시에는 현재 2만 5천개 정도의 일자리 밖에 없어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시장과 의회의 당면 현안임.
 -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 등을 유치해야 하나 전통적인 전원도시의 풍치와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이를 달갑게 생각치 아니하여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통일전 동독지역 자매결연 지원 확대
 - 상대적으로 빈곤한 통일전 동독지역의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자체만으로는 부족
 - 시자체에서는 노인복자 지원을 위한 주민 모금을 하고 있어 주민부담의 가중으로 자매결연시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임

사. 기타

- 주·정차, 음주운전 단속의 민간단체 위임
 - 관리위임 : 13개업체
 - 단속원대우 : 준공무원
 - 관리비용 : 벌칙금으로 충당하고 잔여분은 시에 납입
- 민원인용 복사기 비치
 - 위치 : 시청입구
 - 용도 : 민원인의 불편 해소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1. 이탈리아의 역사와 정치형태

로마는 BC 6세기경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를 지배하던 에트루니아 왕을 추방하여 공화정을 성립시키고 BC 3세기말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다가 5세기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로마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700여년간 통일국가를 유지했다.

중세이후 서부와 중부는 도시국가와 교황영지로 분단되었고 남부는 외국의 지배에 놓여있다가 1861년 에마누엘 2세에 의해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고 1870년에 다시 통일국가로 발전하여 오다가 1946년 공화제로 국가형태가 바뀐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화제 설립이후 의회는 임기 5년의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수상의 지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현재 내각의 평균수명은 1년도 되지 않지만 제1야당인 공산당(30% 지지)을 제치고 기독교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 정당들의 연립정권이 집권하고 있어 정국은 불안하지 않다.

2. 지방자치제도

가. 지방자치제도의 구조

이탈리아는 20개주(Regione), 95개도(Provincia), 8,090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Comune)의 3단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취하고 있다. 시·읍·면(Comune)의 규모는 인구 300만명인 로마로부터 작게는 500명 미만까지 다양하며 최근에 와서는 Comune의 일부를 복수 Comune의 사무공동처리조합에 위임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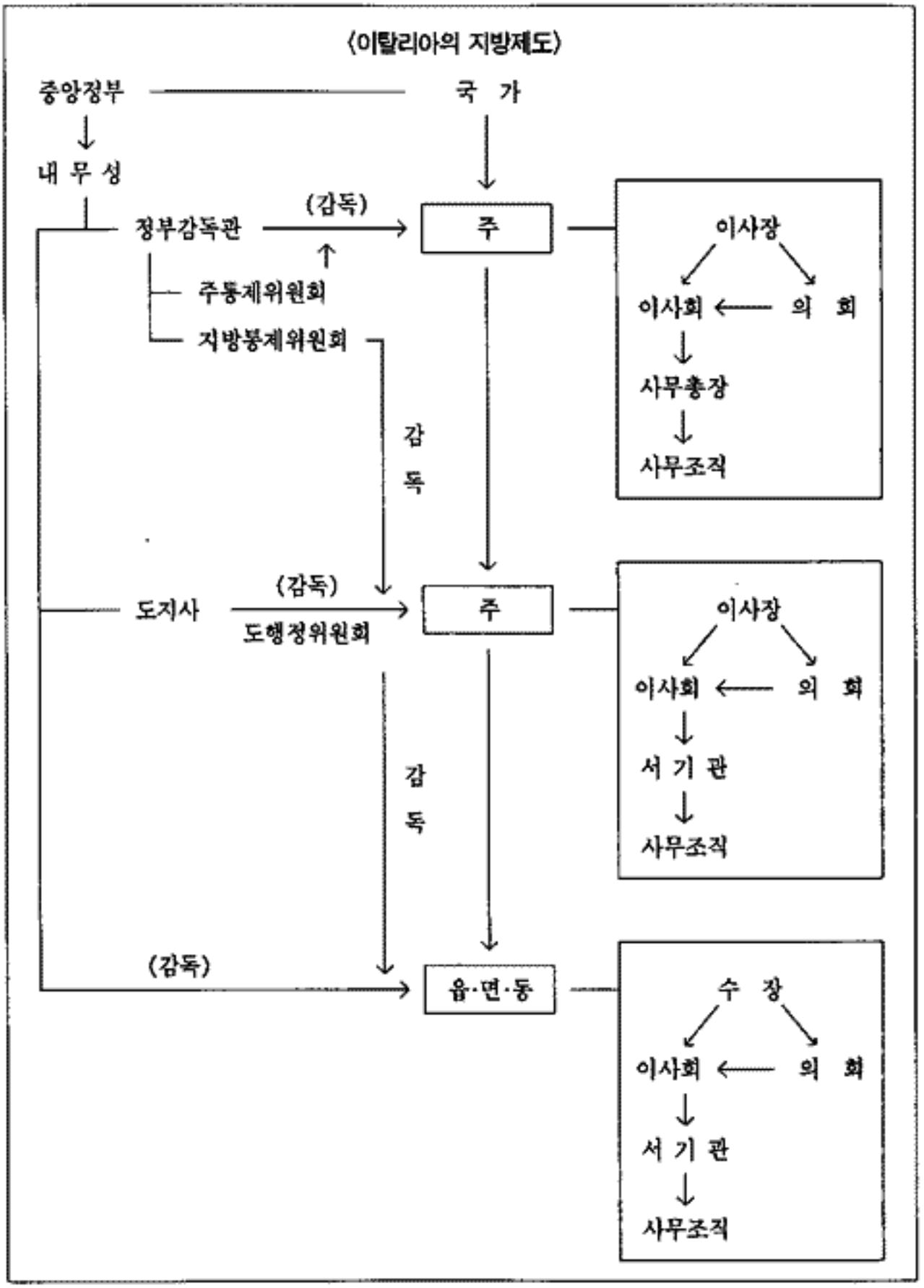
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1) 주 (Regioni)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주의 규모는 롬바르디아주의 890만명에서 모리제주의 45만명으로 각양각색이며 20개주중 특별주가 5개, 보통주가 15개이다. 주의 기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Comune의 구역결정, 지방경찰,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입법과 행정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기능은 주로 하부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입법 기능쪽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주의회는 임기 4년의 직선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정수는 주에 따라 최다 90명에서 최소 30명의 의원이 있는 주가 있으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이다.

〈이탈리아의 지방제도〉


중앙정부
국 가
내 무 성
정부감독관
(감독)
주
주통제위원회
지방통제위원회
감
독
이사장
이사회
의 회
사무총장
사무조직
도지사
(감독)
도행정위원회
주
감
독
이사장
이사회
의 회
서 기 관
사무조직
(감독)
읍·면·동
수 장
이사회
의 회
서 기 관
사무조직

내부조직으로는 주의회와 주이사회 그리고 주이사장의 3개기관이 있는데 이사회는 주의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주의회에서 호선하는 6~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주정부의 특정부서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료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이사장은 주의회에서 호선하며 법적으로 주를 대표하며 주의회 및 이사회를 주재하는 동시에 각종 공문서에 서명하고 계약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이외에 사무총장 등 사무조직이 있으나 주의 행정기능의 대부분이 도 등에 위임되어 있어 사무조직은 소규모로 되어 있다.

2) 도 (Provincia)

법률에 규정된 도의 규모는 최대인 인구 400만의 밀라노에서 30만미만의 도도 있다. 도의 기능으로는 중앙위임사무와 지자체 고유업무가 있는데 공공의 안전과 법 질서의 유지, 공중보건 위생, 법령의 공포 등과 Comune의 지휘, 감독 등이다. 도의회는 임기 4년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도에 따라 의원은 24~45명정도이며 정기회는 매년 가을 한달 정도이다.

내부조직으로는 도의회와 도이사회 및 도이사장의 3기관이 있는데 도이사회는 의원중에서 호선하는 4~8명으로 구성되어 특정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이사장은 도의회 및 도이사회를 소집 주재하고 도의 고유사무를 관리 담당하는데 비해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며 주로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되 지자체 사무로서 도 및 Comune의 행정을 조정하고 활동을 심사 통제하는 바 도의회와는 독립되어 있다.

3) 시·읍·면 (Comune)

시·읍·면의 규모는 최대인구 10만이상에서 최하 500명미만인 곳도 있으나 법적 지위와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코뮤네의 기능은 예산의 확정, 결산승인, 행정집행의 감시통제, 지방고유사무와 호적이나 병무행정 등을 집행하고 교통, 쓰레기처리, 수도, 가스 등을 공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뮤네 의회는 임기 4년의 직선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정수는 코뮤네의 규모에 따라 15~8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기회는 봄, 가을 2회에 개최된다.

내부조직으로는 코뮤네의회, 코뮤네이사회 및 코뮤네수장의 3개 기관이 있는데 2~14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수장을 의원중에서 호선하며 각이사회는 각부국의 업무를 담당하여 통제 감독하고 수장은 의회의 의장과 코뮤네를 대표한다.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각주에는 중앙정부에서 정부감독관을 두는데 이는 주통제위원회의 보좌를 받아 주의 사무조

직을 감독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과의 조정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통제위원회는 주내의 각도 및 코뮤네에 대하여 통제 감독한다.

각도에는 지사가 임명하는 10명(6명은 중앙정부의 행정관)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과 계약사무의 심사와 각종 민원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한다.

코뮤네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서기관을 두어 각부의 부장을 지휘하고 일상적 행정집행을 조정 감독한다.

4. 로마시의 지방자치

방문 : 94. 5. 20 10:30 대담 : 홍보위원장(전호주대사)

가. 일반현황

- 인 구 : 300만명
- 구 : 20구
- 의 원 : 60명 (기민 22, 민주사회 15, 사회 9, 공화 3, 사회주의 4, 사회민주 2, 기타 5)
- 상임위원회 : 8개

나. 의회조직

로마시는 BC 750년전 형성되어 27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로마의 부침은 바로 유럽 역사의 부침과 맥을 같이 해 왔다. 로마시는 현재 20개 구(시)를 통합하고 의원은 20개 선거구에서 60명을 직선과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로마시장은 종전에는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으나 91년 9월 26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현재의 롯데리아 시장은 녹색당 소속이다.

다. 의회구성

의회는 본회의와 8개 위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각상임위원장은 담당 상위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 제1분과위 : 도시행정
- 제2분과위 : 재무, 회계
- 제3분과위 : 사회, 문화
- 제4분과위 : 교통
- 제5분과위 : 보건 위생

- 제6분과위 : 상공업
- 제7분과위 : 공공산업
- 제8분과위 : 일반산업

라. 회기

정기회는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월 1회로 정하고 임시회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이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기는 본회의 경우 보통 1일을 초과한 적이 극히 없고 각위원회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어 모든 행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집행된다.

마. 의회운영

본회의 개회시 시장은 의장의 앞좌석에 착석하고 각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좌우에 배석, 의회의 의결은 법률과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바. 시의 현안사업

- 도시기반시설확충
 - 2000년전의 도시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도로, 주택 등 현대인의 활동에 불편한 점이 있으나 로마중심부 일정구간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
 - 주민들의 성향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를 꺼려 향후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음.
- 불법체류인 추방
 - 강력한 행정력의 부재와 각당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 불법체류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추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펴지 못하고 있음.
- 마약·환경오염의 일소
 - 특히 마약의 경우 국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들의 마약투약이 증가, 폐해가 늘고 있으나 적절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노령화
 -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현상이나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거하는 부부가 늘고 있어 출산율이 적어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부분의 인력부족 현상과 노인복지에 대한 막대한 예산사용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스위스의 농업과 UR대비

1. 지세

스위스는 중부 유럽 알프스산지 중앙에 위치한 면적 4만㎢, 인구는 약 650만 정도의 작은 나라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며 오스트리아와 함께 영세중립국이다. 스위스내 최고의 산은 4,634m의 몬테로자로서 이탈리아 국경의 마조레 호수의 표고가 193m여서 표고의 차이는 4,441m나 되어 국토 거의가 급경사를 이룬 산악과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다.

2. 기후

계절의 변화나 기온은 대체로 우리나라 영동지방과 비슷하며 여름은 6~9월, 겨울은 11~4월이며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 여름은 기온이 낮아 지내기에는 알맞으나 겨울은 항상 0℃이하로 추위가 매서울 정도이다.

3. 산업

가파른 경사지에 나무를 베고 바위를 깍아내려 푸른 목초지를 조성하여 현재는 국토의 25%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성 또한 근면하고 강인하며 자주적이고 창의적이어서 상공업과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농림,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5%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9,000달러로써 세계 제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농림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이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높다.

4. UR 사전대비

10년전만해도 농림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민의 7%에 해당했었으나 정부에서는 강력한 시책 추진으로 그 절반 수준인 3.5%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경지면적은 농가당 평균 7㏊정도였으나 고학력이나 노령 농업인구에 대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호주 등 외국에 이민을 보내는 등 농업인구 감소대책에 성공하여 현재는 농가평균 경지면적은 14㏊에 이르고 공장 등 생산시설은 상대적으로 품삯이 싼 외국에 건립하여 국내에서는 공장 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주택 등 건물을 제외하고는 초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음.

5. 방문농가의 영농 실태

가. 농가현황

- 위　　치 : 필라투스산 서방
- 가 족 수 : 본인(31세), 처, 자
- 경지면적 : 20ha (초지)
- 사육두수 : 유우 30두, 돼지 300두
- 고 용 인 : 1명 (중동인)

나. 영농실태

방문농가의 위치는 필라투스 영봉 등산열차 탑승지점에서 버스로 약 10분간의 거리에 위치한 비교적 평평한 평야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사와 주택은 30m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양돈축사는 100m거리에 별도 떨어져 있다.

목초지는 약 20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방문시 2번의 수확을 거두고 3번째 수확단계에 있었으며 4번째는 옥수수를 심을 계획이며 기수확한 사료중 일부는 젖소 등에 먹이고 잔여분은 건조하여 겨울용으로 비축하고 있다(일반가공사료는 일체 사용치 아니함).

젖소 사육 축사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축사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창고와 건초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3층은 사료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료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전부 기계화되어 있다.

보유 농기구는 트랙터 3, 컷터기 1, 경운기 1, 분쇄기 1, 벌초기 1대 등 목축업에 필요한 기계는 모두 갖추고 있으며 수작업은 일체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농가의 형편에 따라 곤란한 농가에는 농기구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 농가의 경우는 자비로 구입, 축산 폐기물 수거작업 역시 기계화되어 있으며 축산분뇨 부숙탱크는 넓이 150평, 깊이 3m의 정화조를 설치하여 완전 부숙화 한 후 초지에 살포 비료화하고 있다(산포역시 기계화 시설완비, 금비 등은 거의 사용치 아니함).

현재까지 노동은 혼자서 거의 해왔으나 얼마전 중동인 1명을 고용하였으며 고용의 첫째 조건은 품삯이 싸야 하고 각종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연간 소득은 35만달러(약 2억 8천7백만원)로 스위스 평균 국민소득의 약 3배이다.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패기와 희망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 국가별 일반연수

□ 영국

가. 일반현황

영국은 유럽대륙의 북서쪽에서 약 34㎞정도 떨어진 도서국가로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4개 연합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4만㎢, 인구는 5,600만이다.

잉글랜드는 비교적 완만한 평원지대로서 높은 산이 거의 없으나 스코틀랜드는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서 산업은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인종은 앵글로색슨족으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건실하고 착실한 청교도적 생활을 하며, 가족교육도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본적 틀을 배우게끔 사회적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국민의 보수성과 전통존중의 기질은 왕실의 존재, 계급제도 등과 더불어 사회 각 방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나. 연수내용

〈국회의사당 : House of Parliament〉

템스강가에 위치한 장려한 고딕양식의 건물로서 1834년에 착공하여 1852년에 완성하였으며 약 32,000㎡의 부지에 연장 3㎞의 복도와 1,000개의 방이 있다.

의사당에는 상원과 하원이 입주해 있으며 의사당 북쪽의 빅벤(Big Ben)시계탑은 90m높이의 종루에서 13.5톤이나 되는 종이 15분 간격으로 울리며 이 종소리는 BBC방송의 시보에 쓰이고 있다.

이곳은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태어난 역사의 중요함과 함께 고딕양식의 건물 발달사에도 중요한 몫을 다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사원 : Westminster Abbey〉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1세기 에드워드 참회왕 시대에 건립하였던 것을 13세기 헨리 3세가 고딕풍으로 개축하였고 16세기에는 헨리 7세가 예배당을 조영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크로스식 사원 건축양식에 따라 십자형으로 세워진 고딕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곳은 역대 영국왕실의 대관식 등 국가나 교회의 영예로운 행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역대왕과 왕비의 묘와 영국을 빛낸 챔버린, G 스콧, 리빙스턴 등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이 사원은 왕실의 통제를 받지만 사원에 누구의 묘나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 왕실이외의 저명인사들의 묘를 볼 수 있다.

〈대영박물관 :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은 1753년 의사 한스스론경의 유품 8만점과 로버트코튼경과 옥스퍼 백작의 장서와 고서 등을 일반에 공개한데서부터 비롯된다. 그후 국가에서 이들 작품을 매입하여 1759년 몬태규 하우스에서 문을 연 이후 1823~1847년에 걸쳐 오늘날과 같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건물은 44개의 이오니아식 원주에 받쳐진 그리스풍의 장엄한 건축 양식이다.

도서관 내부는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800만권의 장서와 400만종의 우표, 100만개에 가까운 미술작품과 동전, 메달 등이 전시되어 있다.

〈버킹검 궁전 : Buckingham Palace〉

버킹검 궁전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세인트제임스궁전에서 이주해온 이후 역대 왕실의 주거주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사용하고 있다. 궁내에는 20만㎡의 호수와 174천㎡의 대정원, 그리고 다수의 미술품을 소장한 미술관과 도서관이 있으며, 특히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실시되는 근위병의 교대식은 런던의 명물로 되어 있다.

□ 프랑스

가. 일반현황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면적은 55만㎢, 인구는 5,400만정도이며 동쪽으로는 몽블랑을 정점으로 알프스가 솟아 있고 서쪽에는 스페인, 북동부에는 독일·스위스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국토 대부분은 파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넓은 평야와 구릉지이고 산악지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는 북위 42°~51°에 자리잡고 있으나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사계절의 구분이 상당

히 명확한 편이며 밀과 포도를 많이 경작하고 목축업이 성하다.

프랑스는 BC 7~5세기경부터 부족사회를 이루고 살다가 BC 50년경에는 로마로부터 서기 406년에는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였으나 서기 508년에는 크로비스가 프랑크족을 통일하고 수도를 파리로 정하였고, 987년에는 백작 우드의 자손이 게르만민족의 재침입을 물리치고 카페왕조를 창시함으로써 프랑스왕국이 탄생되었다.

중세(11~15세기)의 프랑스는 십자군원정과 백년전쟁 페스트 전염 등으로 국내외적인 시련을 겪었으나 백년전쟁 후 봉건영주의 세력이 약해지고 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16세기에는 귀족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는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을 하게 되고 세계 제1,2차 대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나 1958년에 드골이 집권하여 혼란기를 극복하고 제5공화국을 설립하여 강력한 대통령책임제인 공화제정권을 수립했으며, 국회는 양원제로서 하원인 임기 5년의 국민의회와 임기 9년의 간선인 상원 양원제이다.

프랑스인의 국교는 카톨릭이 87%에 달하고 드가 등 세계적인 미술가와 레오나르도다빈치 등 조각가가 배출되어 예술의 나라로 꽃피우게 되었으며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요소를 통합하여 다양성의 국가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연수내용

〈루브르 미술관 : Musee du Louvre〉

루브르미술관은 1200년 필리프 소귀스트왕이 건축한 건물을 14세기에 샤를 5세가 개축하고 16세기에는 프랑수아 1세가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만점에 달하는 소장품은 고대 오리엔트, 이집트부분 등 6개부분으로 구분, 전시하고 있으며 나폴레옹의 대관식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세계적인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노틀담 대성당 : Cathedrale Notre-Dame de Paris〉

노틀담의 성당은 파리사교로 선출된 모리스드 쉴리가 4세기경에 기초를 닦은 후 1330년경에 완성된 건물로써 프랑스 초기 고딕건축의 최고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1160년 루이 16세의 결혼식, 1430년 영국왕 헨리 6세의 프랑스왕 대관식, 프랑수아 2세, 앙리 4세의 혼례식 등 수많은 국가적 행사가 거행되었다.

프랑스혁명 때는 파괴와 철거의 운명에 처하기도 했으나 1802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대성당은 교회로 돌아왔고 1804년에는 이곳에서 황제대관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개선문 : Arc de Triomphe〉

개선문은 샤를드골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높이 50m, 넓이 45m 건물로써 프랑스의 승리와 영광을 기리기 위해 1806년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 30년만에 건립되었으며 건물의 동서남북 4면은 10개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다.

개선문의 건립을 명령한 나폴레옹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의 유해가 1840년 개선문 밑을 지나 앵발리트에 안장되고 1885년에는 대문호 빅토르위고의 장례식이 여기에서 국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세계 제2차 대전때는 독일군의 군화에 짓밟히는 치욕을 겪기도 했으나 1944년에는 드골장군이 이곳에서 프랑스의 해방을 선언하기도 했다.

〈에펠탑 : La Tour Eiffel〉

에펠탑은 1889년 파리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는데 귀스타브 에펠이 설계했다해서 에펠탑으로 칭하고 있다.

탑의 높이는 TV탑까지 321m이며 전망대는 3개가 있는데 제1전망대는 57m, 제2전망대는 115m, 제3전망대는 274m 높이에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 오르내리며 탑안에는 영화관과 레스토랑이 있다.

탑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높이는 15cm, 좌우로 12cm의 차이가 생기며 건립에 사용된 철근의 양은 9,000톤이며 페인트 도색을 한번 하려면 7년이 소요된다.

〈콩코르드 광장 : Place de la Concorde〉

콩코르드 광장은 샹젤리제 거리 동쪽 끝에 있으며 18세기후반 루이 15세의 기마상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처음에는 "루이 15세광장", 프랑스혁명 때 루이 15세의 기마상은 철거되고 악명높은 단두대가 설치되어 1793~95년사이에 1,343명이나 처형되기도 하여 "혁명광장"이라고도 불리다가 1795년에 콩코르드 광장으로 바뀌었다.

콩코르드 광장 중앙에는 높이 23m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고 광장의 4구석에는 프랑스의 여덟 지방도시를 상징하는 여인상이 서 있다.

〈몽마르뜨 : Montmartre〉

몽마르뜨는 파리 동북쪽에 있는 130m정도의 언덕으로서 이곳은 19세기초까지는 포도밭이었으나 경치가 좋은 이곳에는 1820년대부터 농가를 개선해 댄스홀이 문을 열자 목자적인 화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피카소 등 유명한 미술가와 리스트, 쇼팽 등도 이곳에서 어울렸다.

언덕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사크레 쾨르 대사원은 로마네스크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로써 프러시아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876년에 착공하여 1919년에 완성

된 대사원이다.

〈베르사유궁전 : Palais de Versailles〉

베르사유 궁전은 태양왕이라 불리었던 루이 14세가 지은 궁으로써 당시 프랑스 절대왕권의 영광과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로써 왕가의 호화 사치스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왕가의 사치스런 생활은 서민들의 반발로 이어져 마침내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독일

가. 일반현황

독일은 유럽대륙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6만㎢, 인구는 약 7,700만명이다.

독일의 지형은 지표의 고저와 형상에 따라 3지역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남쪽은 알프스와 이어지는 고원지대로써 아름다운 호수와 고원 등이 있고, 중부는 산악지대로써 산악과 고원분지등 변화가 많은 지대이며, 북부저지대는 평야지대이다.

기온은 온대에 속하여 강우량이 비교적 많고 북서부는 해양성기후이나 동부와 남동부는 대륙성 기후로써 농사로는 밀, 호밀, 감자 등이 주산물이며, 국민 총생산액은 세계 제4위로 철강, 기계 등 공업대국이다.

인종은 게르만민족으로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상 카톨릭과 개신교의 끊임없는 전쟁의 무대였지만 현재는 90%의 기독교인중 신구교가 반반이다.

나. 연수내용

〈뢰머 광장 : Romerplatz〉

뢰머 광장은 1405년 프랑크푸르트 참의회가 뢰머 언덕에 있던 3채의 귀족저택을 매입, 시청사를 개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주변의 광장을 뢰머 광장이라 부른다. 뢰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대관식이 끝난 다음 화려한 연회를 베풀던 유서깊은 장소이며 광장의 중앙에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분수가 있다.

〈괴테 생가 : Goethehaus〉

괴테의 생가는 그로서 히르슈그라벤이라는 구시가지의 중심지 근처의 작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이 집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살았다.

세계 제2차대전 때 심하게 파괴되었으나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이로서 18세기 프랑크프르트 상류계급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괴테는 이곳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의 초고를 썼다.

〈하이델베르그성 : Schloss Heidelberg〉

하이델베르그는 프랑크프르트에서 100km 남쪽 네카어 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14세기 후반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창립하면서 도시로 확장 형성되었으며 독일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이 도시를 찾았으며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하이델베르그성은 시의 동쪽 200m높이의 언덕위에 있는 고성으로서 13세기경에 세워졌으나 라인 선제후 이후 대대로 내려오면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각시대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성의 지하에는 1751년에 만든 22만 ℓ 들이의 큰 포도주통이 있다.

□ 스위스

가. 일반현황

스위스는 유럽의 한가운데 있는 면적 4만㎢, 인구는 642만의 조그마한 나라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에 둘러싸인 영세중립국가이다.

스위스는 구석기시대 수렵민이 이주하여 서부·남부·북부로 나누어 살다가 중세기에 이르러 유럽에 군림했던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침략하여 오자 3개 지역의 주민들은 1291년 동맹을 맺어 침략군을 막아냈으며 17세기 독일을 무대로 한 30년 전쟁때는 끝까지 중립을 지켰고 1648년에는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왕권독립을 인정받고 1815년에는 빈회의에서 영세중립을 보장받았으며 1874년에는 26개주가 연방공화국을 형성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의회는 전주의회인 상원과 국민의회인 하원의 양원제이며 지방자치제도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국민의 44%는 카톨릭, 50%가 개신교를 믿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이나라 국민들은 중세기의 입김이 서린 집들과 성터 등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으며 전설의 알프스는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고 연중 관

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 연수내용

〈필라투스 : Pilatus〉

필라투스는 루체른 시가지 남쪽 15km 지점의 2,129m높이의 가파른 바위산이다.

산정상에는 지금도 하얀 눈이 남아 햇살에 반짝이고 있으며 맑은 날에는 독일이나 프랑스까지도 잘 보인다고 하며 정상의 등정길은 린데에서 4인승 콘돌라 리프트를 타고 프레크펀테크에 와서 다시 로프웨이로 갈아타고 정상에 오르는 길 (소요시간 45분 정도)과 알프나호슈타트역에서 등산열차로 오르는 방법이 있는데(약75분 소요) 철도는 폽니바퀴씩 궤도로써 100년전에 가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오스트리아

가. 일반현황

오스트리아는 서부유럽과 동부유럽을 가르는 내륙국으로서 국토의 70%이상이 험준한 알프스 산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8㎢, 인구는 760만의 나라로서, 기후는 대륙성기후로서 밤낮의 기온의 차가 심한 편이다.

오스트리아는 BC 4세기경 켈트족에 의해 성립된 왕국으로서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된 후 세계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에 군림하여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유럽을 지배했다.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신성로마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왕가는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1814년 빈회의에서 독일연방의 맹주가 되었으나, 세계제1차대전에서 패함으로써 650년동안이나 이어온 왕가는 드디어 멸망하고 국토는 4분의1로 줄어들었다.

1938년에는 나치독일에 합병되었으나 세계제2차대전으로 독일이 패함으로써 승전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으로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연방공화국으로서 국회는 상·하원 양원제이다.

목축업이 성하고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 민족이며 국민의 90%가 카톨릭을 신봉하고 있다.

나. 연수내용

〈인브루크시가 : Innsbruck〉

인스부르크시는 티놀지방의 중심도시로서 표고 574m의 고원에 자리잡은 인구 12만의 도시이다.

2000년 전에는 로마군단의 주둔지였고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주막마을의 역할을 해왔으며 15세기에는 막스 밀리안 대제가 티놀의 도움을 이탈리아의 남티놀에서 이곳으로 옮긴 후 함스부르크 왕가의 사랑을 받으며 번영해 왔다.

시내 헤르초크 프리드리히 거리의 막다른 골목에는 인스부르크시의 상징인 16세기에 황제 막시 밀리안 1세가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만든 금박입힌 동판 2,657매로 덮인 황금지붕의 궁중건물이 있으며 1964년과 197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경기장은 자연의 구릉을 그대로 이용한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2002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찬반여론이 무성하고 있다.

□ 이탈리아

가. 일반현황

이탈리아는 지중해상에 아펜니노 산맥이 뻗어 형성된 장화모양의 반도국가로서 면적은 30㎢, 인구는 5,700만정도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나라이다.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밀, 사탕무, 옥수수 등을 많이 재배하며 낙농업도 발달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는 국민총생산에 있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오르고 있으며 국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가 국민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인이며 종교는 전통적으로 로마카톨릭 교도의 인구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성은 지극히 낭만적이며 노래와 그림, 조각, 춤에 있어서는 세계적이며 레오나르도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같은 유명조각가 등이 탄생하였으며, 각종 디자인, 산업미술 등이 발달되어 있다.

나. 연수내용

〈베네치아 : Venezia〉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을 400여개의 다리로 연결하여 형성된 물의 도시로서 5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중반까지 번창하였으며 현재의 인구는 35만이다.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검은 곤돌라는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문명과 비잔틴문명을 합하여 독특한 문화를 꽃 피웠던 곳이며 거리는 언뜻보아 미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주변에는 산마르크광장, 산마르크대사원, 두칼레 궁전 등 유서깊은 유적들이 많으며 지금도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피렌체 : Firenze〉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가 꽃핀 피렌체는 중세 때부터 상업이 발달됐으며 아르노강이 동서로 흘러 도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인구는 46만 정도이다.

노벨라 광장에서 동쪽으로 4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두오모성당은 높이 106m로 13세기부터 착공하여 1471년에 완성된 대리석 건물로서 미켈란젤로의 명작인 "최후의 심판"이 소장되어 있다.

피렌체 동남쪽 아르노강 남쪽 기슭에는 피렌체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는 다비드상의 동상이 서 있고 벨베데레 요새와 이어지는 성벽을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의 방위를 위해 건설했다.

〈바티간 시국 : Citta Del Vaticano〉

바티간 시국은 면적 44ha에 인구는 800명 정도이며 교황의 거처가 있고 전세계 8억의 카톨릭 신자의 총본산이 위치하고 있다.

산피에트로 광장은 지름이 240m로 40만명을 수용할 정도의 타원형 광장으로서 17세기 베르니니가 설계한 이탈리아 바로크시대의 대표적인 걸작품이다. 광장 중앙에는 높이 25.5m, 무게 350톤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37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옮겨온 것이며 광장을 둘러싼 회랑에는 284개의 원주가 있는데 회랑지붕 가장자리에는 광장을 내려다보는 140개의 성인상이 있다.

산 피에트로 사원(Basilica di San Pietro)은 카톨릭의 총본산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서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베드로의 묘위에 성당을 지은 것을 시초로 1506년 브라만테에 의하여 개수를 시작, 120년동안에 걸쳐 오늘날의 모습과 같은 성당이 완성되었다.

성당은 정면, 회랑, 안회랑, 바깥회랑, 돔위, 지하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면 계단왼쪽에는 베

드로상이 오른쪽에는 성바울상이 서 있으며 안회랑은 교황만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주제단이 있는 곳으로서 사원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자리이며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다.

돔위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으로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상 50m지점에 테라스, 120m지점에 발코니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릴 수 있다.

〈콜로세오 : Colosseo〉

콜로세오는 고대 로마시대의 유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로마를 상징하는 지름 188m의 타원형 극장으로 높이는 57m에 4층으로 되어 있다.

콜로세오는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짓기 시작하여 300년 이상 걸려 완성하였으나 그간 지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중세 교회나 큰 건물을 짓기 위해 채석장화되어 현재는 외벽의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등 몹시 훼손되어 있다.

〈트레비분수 : Fontana di Trevi〉

트레비분수는 로마내 분수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분수로서 교황 클레멘스 12세의 명에 따라 1762년 교황클라멘스 13세가 완성하였다.

분수뒤에는 폴리후작의 궁전이 있는데 이 궁전과 분수가 전부 1개의 돌로서 조각된 것이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이 분수에 돌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온다는 전설로 인해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동전은 정기적으로 회수되어 자선사업에 쓰인다.

전 북 일 보

落點 효력 발휘할지 귀추 주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의원任期는 처음 會議日 議長자리 놓고

어제 2백80명에 당선통지서 교부



高敞郡報

고창군의회 의정활동 결목

개원 1년간 62안건 처리…6개 특위활동까지 펼쳐

1994년 3월 7일(월) 高敞新聞

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열려

여론수렴으로 일하는 의회 정립

임시회7회-정기회1회 개회





全北日報

1992年4月25日(土曜)

美항공기 문제 진통 거듭

초점

초선군의회 1회 임시회

시행착오 거치며 自治씨앗 싹터

郡民소리에 언제나 귀기울여 議員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조사실서

잔 확인 조사

군청과의 의견 마찰기 의장단 선출

쏟아지는 각종 請託·지원 要求에

明예직 地方議員 못

雅山목요장 기탄없는 연기 추궁

영광原電 폐쇄수 대비책 촉구

의원 의 主 動 吉 金 東 柳 의장에 부의장연

불부의광~권의중자과 지하발전우해 전면투구

슬의장~건강한 자세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월보

북일보 西紀1992年7月28日 (火曜日)

系派내분으로 집행부 制 한계

桐里국악당공사 瑕疵시정 성과
消耗性예산삭감 懸案사업 반영

○…화순군 의회는 의욕적인 예산활동으로 집행부를 전체 감시했으나 系派내 내분으로 응집력은 없기도 했다.

삼미항공 오염피해 심도있게 다뤄야

秋穀 전량수매·15%이上 촉구

道內 시군의회 불토론

생산량 기준 物量 배정도

4代 지방議會 總결산

利己主義 극복 과제

"내 地域區만 챙기면 그만"

1995년 5월 10일 (수)

제34회 군의회 임시회 열려

西北日報

禹敞新聞

7일(월)

주민의견 수렴나서

전·禪雲山 개발

신중 추진 촉구 高敞

議 政 白 書

발 행 일 : 1995년 10월
발 행 처 : 고 창 군 의 회
585-8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편집·제작 : 전 북 의 정 연 구 소
인 쇄 : 전 주 대 흥 정 판 사